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09. 5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목 차 -

1. 서 론	10
1-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0
1-1-1. 조사의 필요성	10
1-1-2. 조사의 목적	11
1-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12
1-2-1. 조사내용	12
1-2-2. 조사방법	17
2. 조사표 개발	24
2-1. 조사표 개발의 목표	24
2-2. 조사표 개발의 방법	25
2-2-1. 편의시설의 분류	25
2-2-2. 조사표의 개요	26
2-2-3. 조사대상시설의 유형분류	31
3. 편의시설 설치현황 분석	33
3-1. 설치현황 분석의 개요	33
3-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분석	34
3-2-1. 매개시설	36
3-2-2. 내부시설	57
3-2-3. 위생시설	84
3-2-4. 안내시설	101
3-2-5. 기타시설	109
3-3. 건물유형별 설치율 분석	118
3-3-1. 근린생활시설	120
3-3-2. 문화 및 집회시설	131
3-3-3. 의료시설	134
3-3-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37
3-3-5. 업무시설	147
3-3-6. 숙박시설	152
3-3-7. 공장	155
3-3-8. 자동차관련시설	156
3-3-9. 관광휴게시설	157
3-3-10. 기숙사	158
3-3-11. 공동주택	161

3-3-12. 공원	164
3-3-13. 공공 및 민간관련시설 설치율 분석	166
3-3-14. 정비대상시설 적정설치율 분석	168
3-4. 건축행위별 설치율 분석	171
3-4-1. 매개시설	172
3-4-2. 내부시설	173
3-4-3. 위생시설	173
3-4-4. 안내시설	174
3-4-5. 기타시설	174
3-5. 지역별 설치율 분석	176
3-5-1. 16개 광역시·도별	176
3-5-2. 광역시 및 도별	177
3-6. 편의시설 설치수준 분석	179
3-6-1. 설치수준 분석의 개요	179
3-6-2. 건물유형별 설치수준	183
4. 종합평가 및 향후 편의증진 정책방향	192
4-1. 종합평가	192
4-1-1. 편의시설 설치율 측면	192
4-1-2. 편의시설 설치수준 측면	197
4-1-3. 편의시설 설치 종합 평가	199
4-2. 향후 편의증진 정책방향	200
4-2-1.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의 수립 측면	200
4-2-2. 편의증진법의 개정 측면	202

부 록

1. 조사대상 건물군 및 건물유형
2. 조사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3. 건물유형별 설치수준 배점표
4. 전수조사표

- 표 목 차 -

<표 1> 전수조사원 현황	14
<표 2> 건물유형별 조사대상 건물수 현황	15
<표 3> 2003년도 및 2008년도 전수조사 결과비교표 (도로 제외)	16
<표 4> 2003년도 및 2008년도 전수조사 결과비교표	16
<표 5> 1998년도 및 2003년도 전수조사 결과비교표	17
<표 6> 정비대상시설	17
<표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8
<표 8> 대상시설 선정 기준일	20
<표 9> 대상시설 선정 교육 일정	21
<표 10> 조사원 교육 일정	22
<표 11> 조사원 교육 내용	22
<표 12> 편의시설의 분류표	25
<표 13> 전수조사표의 특징 비교표	27
<표 14> 전수조사표의 조사세부항목	27
<표 15> 전수조사표 양식의 예시	30
<표 16>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점에 따른 조사표 양식의 예시	30
<표 17> 조사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32
<표 18> 편의시설 종류별(대분류) 설치율	35
<표 19> 편의시설 종류별(중분류) 설치율	35
<표 20> 2003년도 및 2008년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비교표	36
<표 21>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36
<표 22>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38
<표 23>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38
<표 24>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39
<표 25>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39
<표 26>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39
<표 2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40
<표 28> 운동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40
<표 29>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41
<표 30>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41
<표 31> 공장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41
<표 32>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42
<표 33>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42
<표 34> 관광휴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42
<표 35> 기숙사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43
<표 36>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43
<표 37> 공원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43
<표 38>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4
<표 39>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5
<표 40>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6

<표 41>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6
<표 42>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7
<표 43>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7
<표 4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7
<표 45>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8
<표 46>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8
<표 47> 공장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8
<표 48> 자동차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9
<표 49>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9
<표 50> 관광휴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9
<표 51>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0
<표 52>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0
<표 53>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1
<표 54>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2
<표 55>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2
<표 56>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3
<표 57>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3
<표 5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3
<표 59> 운동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4
<표 60>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4
<표 61>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4
<표 62> 공장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5
<표 63>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5
<표 64>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5
<표 65> 관광휴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6
<표 66> 기숙사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6
<표 67>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56
<표 68>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57
<표 69>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58
<표 70>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59
<표 71>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60
<표 72>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60
<표 73>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60
<표 7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61
<표 75> 운동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61
<표 76>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61
<표 77>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62
<표 78> 공장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62
<표 79>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62
<표 80>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63
<표 81> 관광휴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63
<표 82> 기숙사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63
<표 83>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64

<표 84 >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64
<표 85>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65
<표 86>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66
<표 87>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66
<표 88>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67
<표 89>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67
<표 9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67
<표 91>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68
<표 92>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68
<표 93>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68
<표 94>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68
<표 95>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69
<표 96>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69
<표 97>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71
<표 98>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71
<표 99>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72
<표 100>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72
<표 101>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72
<표 10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73
<표 103>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73
<표 104>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74
<표 105>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74
<표 106>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74
<표 107>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75
<표 108>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75
<표 109>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76
<표 110>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76
<표 111>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77
<표 112>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77
<표 113>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77
<표 11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78
<표 115>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78
<표 116>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78
<표 117>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79
<표 118>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79
<표 119>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79
<표 120>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79
<표 121>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80
<표 122>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81
<표 123>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82
<표 124>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82
<표 125>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82
<표 12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82

<표 127>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83
<표 128>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83
<표 129>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84
<표 130>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84
<표 131>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84
<표 132>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85
<표 133>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86
<표 134>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87
<표 135>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87
<표 136>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87
<표 137>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88
<표 13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88
<표 139>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88
<표 140>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89
<표 141> 공장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89
<표 142>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89
<표 143>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90
<표 144> 관광휴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90
<표 145> 기숙사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90
<표 146>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91
<표 147> 공원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91
<표 148>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91
<표 149>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92
<표 150>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93
<표 151>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93
<표 15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93
<표 153>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94
<표 154>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94
<표 155>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94
<표 156>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95
<표 157>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96
<표 158>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96
<표 159>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96
<표 16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97
<표 161>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97
<표 162>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97
<표 163>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98
<표 164> 기숙사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98
<표 165>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98
<표 166>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욕실	99
<표 16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욕실	100
<표 168>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샤워실·탈의실	100
<표 169>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샤워실·탈의실	101

<표 170>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101
<표 171>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102
<표 172>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103
<표 173>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103
<표 174>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104
<표 17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104
<표 176>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104
<표 177>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105
<표 178> 공원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105
<표 179>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유도 및 안내설비	105
<표 180>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유도 및 안내설비	106
<표 18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유도 및 안내설비	107
<표 182>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유도 및 안내설비	107
<표 183>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	107
<표 184>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	108
<표 18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	109
<표 186>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	109
<표 187>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객실·침실	109
<표 188>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객실·침실	111
<표 189>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객실·침실	111
<표 190>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객실·침실	111
<표 191> 기숙사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객실·침실	112
<표 192>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관람석·열람석	112
<표 193>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관람석·열람석	113
<표 194>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관람석·열람석	114
<표 195>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관람석·열람석	114
<표 19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관람석·열람석	114
<표 197>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기타시설 중 접수대·작업대	115
<표 198>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접수대·작업대	116
<표 199>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접수대·작업대	116
<표 2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접수대·작업대	116
<표 201>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접수대·작업대	117
<표 202>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기타시설 중 매표소·판매기·음료대	117
<표 20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매표소·판매기·음료대	118
<표 204> 전체 건물군 편의시설 설치율	118
<표 205>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19
<표 206> 근린생활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120
<표 207> 소매점, 이용원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21
<표 208> 읍·면·동사무소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23
<표 209> 공공도서관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27
<표 210> 의원, 한의원 등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30
<표 211> 문화 및 집회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132
<표 212> 전시장, 동·식물원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32

<표 213> 의료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135
<표 214> 병원 등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35
<표 21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137
<표 216> 학교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38
<표 217> 특수학교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40
<표 218> 장애인복지시설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42
<표 219> 업무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148
<표 220> 공공업무시설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48
<표 221> 숙박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152
<표 222> 일반숙박시설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53
<표 223> 공장군 편의시설 설치율	155
<표 224> 자동차관련 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156
<표 225> 주차장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56
<표 226> 관광휴게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157
<표 227> 휴게소 등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58
<표 228> 기숙사군 편의시설 설치율	159
<표 229> 공동주택군 편의시설 설치율	161
<표 230>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61
<표 231> 연립주택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63
<표 232> 공원군 편의시설 설치율	164
<표 233> 자연공원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165
<표 234> 공공관련시설과 민간관련시설의 설치율 비교	166
<표 235> 공공관련시설과 민간관련시설의 편의시설종류별 설치율 비교	167
<표 236>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한	168
<표 237> 정비대상시설 편의시설 설치율	169
<표 238> 정비대상시설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170
<표 239> 건축행위별 편의시설 설치율	171
<표 240> 편의시설종류별 - 건축행위별 편의시설 설치율	172
<표 241> 매개시설의 건축행위별 설치율	172
<표 242> 복도·계단의 건축행위별 설치율	173
<표 243> 대변기항목의 건축행위별 설치율	173
<표 244> 안내시설의 건축행위별 설치율	174
<표 245> 기타시설의 건축행위별 설치율	174
<표 246> 연도별-건축행위별 설치율	175
<표 247>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176
<표 248> 편의시설 시·도별 적정설치율 비교	178
<표 249> 건물유형별 설치수준 배점표	180
<표 250> 건물유형별 편의시설(대분류) 설치수준	183
<표 251> 건물유형별 편의시설(중분류) 설치수준	187

- 그림 목 차 -

(그림 1) 1998년도 전수조사표	12
(그림 2) 2003년도 전수조사표	13
(그림 3) 편의시설 요소의 예	26
(그림 4) 설치율 산정 항목	33
(그림 5) 편의시설 종류별(대분류) 설치율 비교	35
(그림 6) 주출입구 접근로 현황사진	37
(그림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황사진	45
(그림 8)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현황사진	51
(그림 9) 출입구(문) 현황사진	58
(그림 10) 복도 현황사진	65
(그림 11) 계단 현황사진	70
(그림 12) 승강기 현황사진	80
(그림 13) 대변기 현황사진	86
(그림 14) 소변기 현황사진	92
(그림 15) 세면대 현황사진	95
(그림 16) 욕실 현황사진	99
(그림 17) 샤워실·탈의실 현황사진	101
(그림 18) 점자블록 현황사진	102
(그림 19) 유도 및 안내설비 현황사진	106
(그림 20) 경보 및 피난설비 현황사진	108
(그림 21) 객실·침실 현황사진	110
(그림 22) 관람석·열람석 현황사진	113
(그림 23) 접수대·작업대 현황사진	115
(그림 24) 건물군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119
(그림 25) 건축행위별 편의시설 설치율 비교	171
(그림 26) 편의시설종류별 - 건축행위별 편의시설 설치율 비교	172
(그림 27) 가중치 산정의 예시 (1.1항목과 3.3항목)	179
(그림 28) B유형(특수학교)의 배점 방법의 예	180
(그림 29) 소분류항목의 배점방법	182
(그림 30) 세분류항목의 배점방법 예시	182
(그림 31) 설치수준분석 평균의 예시	183

1. 서론

1-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1-1. 조사의 필요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1997년 4월 10일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이후 1년 후인 1998년 4월1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편의증진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설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8년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2회(1998년,2003년)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실시된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와 감독 책임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담당자가 조사업무를 병행하도록 함에 따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조사를 위한 조사표가 편의시설의 설치 유무만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설치 유무가 판단됨에 따라 조사자에 따른 조사결과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에 의하면 편의시설 설치실태 평가조사에는 반드시 사회인식 제고와 편의증진 체감도 등을 평가지표로 포함하여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체감도를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08 전수조사는 과거 실시한 전수조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한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사방법론의 개선을 요구받게 되어 조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그리고 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지표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사방법론으로 편의시설이 어느 단계의 수준에서 설치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실제 설치된 편의시설이 이용자의 편의성에 대한 체감 정도를 적정설치율과 같은 척도에서 파악함으로써 추후 편의증진 관련 정책 입안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필요가 있다.

1-1-2. 조사의 목적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의 일차적 목적은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분화된 전수조사 데이터를 확보하여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편의시설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표 작성 및 조사방법론에서 편의증진법 이행여부에 기초하여 이용자 중심의 체감수준을 반영한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차이의 발생원인을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위한 자료 제공 및 향후 편의시설 정책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제공을 통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자체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대응하는 편의시설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산출된 결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편의시설 현황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언제든지 최신의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분야 사회물리적환경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있도록 세분화 하여 조사원의 주관에 따른 편차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전수조사표에 관하여는 제2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

2) 편의시설 설치실태 평가조사 실시

편의증진법 제7조(대상시설)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에 의거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총107,730개소였으며, 조사요원 교육을 받은 1,941명의 조사요원들이 대상건축물에 직접 방문해 각 편의시설별로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에 평가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기간 : 2008. 05 ~ 2009. 4
 - 조사준비 : 2008. 5월
 - 조사 대상시설 선정 : 2008. 5 ~ 6월말
 - 대상시설 선정 완료 : 2008. 6월말
 - 조사팀 구성 및 교육 : 2008. 7월~ 8월
 - 현장 조사 실시 : 2008년 9월 ~ 12월
 - 결과 취합 : 2008년 11월 ~ 12월
 - 결과 정리/검토 : 2009년 1월
 - DB프로그램 업로드 : 2009년 1월
 - DB프로그램 추가입력 : 2009년 1월~ 2월 12일
 - 추가조사 : 2009년 3월 12일 ~ 4월 2일
 - 보고 및 추가입력 : 2009년 4월

○ 현장조사원

시설을 주관하는 기관에 의해서 전수조사가 수행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이전 전수조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8년 전수조사에서는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 외부 조사원을 선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총 1,941명의 조사원 중 장애인 425명(22%)이 직접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당사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었다.

<표 2> 전수조사원 현황

구분	총조사원	장애인조사원	비율
서울	291	83	29%
부산	54	9	17%
대구	33	3	9%
인천	54	8	15%
광주	35	11	31%
대전	68	15	22%
울산	28	5	18%
경기	219	102	47%
강원	191	6	3%
충북	50	8	16%
충남	216	31	14%
전북	60	15	25%
전남	157	50	32%
경북	168	72	43%
경남	270	5	2%
제주	47	2	4%
총인원	1,941	425	22%

○ 최종 대상시설의 수

조사대상 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전국적으로 총 107,730개소를 조사하였다. 건물유형별 조사대상건물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 건물유형별 조사대상 건물수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근린생활 시설	29,708	2,461	1,563	984	1,230	1,254	905	1,101	1,263	6,787	956	2,256	1,439	1,594	3,166	1,950	799
문화 및 집회시설	4,684	930	130	135	434	159	108	107	165	789	167	390	279	250	324	214	103
판매및영업시설	1,323	174	54	48	42	26	31	29	43	478	25	65	53	36	119	83	17
의료시설	1,716	241	122	107	58	86	32	67	55	253	84	96	108	128	120	145	14
교육연구복지시설	26,219	2,932	1,118	1,004	1,295	760	898	871	1,006	5,012	1,845	2,035	1,787	1,123	2,302	1,659	572
운동시설	873	73	21	27	25	24	15	27	77	232	35	59	44	47	96	45	26
업무시설	7,512	1,951	523	204	448	524	147	162	253	1,235	179	513	204	339	361	394	75
숙박시설	3,619	343	267	162	197	193	155	95	191	544	161	239	140	233	280	172	247
공장	5,011	154	229	146	389	135	170	238	41	1,471	279	317	144	78	767	341	112
자동차관련시설	1,464	251	58	52	22	154	33	48	73	217	28	109	64	50	69	135	101
공공용 시설	245	29	12	8	18	14	14	7	14	30	12	10	10	20	27	19	1
관광휴게 시설	213	3	1	3	2	2	1	3	19	32	28	28	15	19	38	18	1
기숙사	337	19	7	7	1	26	10	5	6	86	11	70	10	13	32	18	16
공동주택	23,151	5,344	2,356	762	3,497	407	403	710	584	4,951	421	353	785	368	949	1,037	224
공원	1,655	531	71	40	127	47	113	44	11	384	17	55	47	9	20	138	1
계	107,730	15,436	6,532	3,689	7,785	3,811	3,035	3,514	3,801	22,501	4,248	6,595	5,129	4,307	8,670	6,368	2,309

라. 조사결과 및 연차별 비교

1) 2003년도 및 2008년도 조사

2008년 전수조사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로 2003년 전수조사의 설치율 72.3%와 비교하여 5.2%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 2003년도 및 2008년도 전수조사 결과비교표 (도로 제외)

대상시설별	2003년 조사			2008년 조사			증감
	법정의무 편의시설수 ¹⁾ (a)	실제설치수 (b)	설치율 ²⁾ (b/a)	법정의무 편의시설수(A)	실제설치수 (B)	설치율 (B/A)	
공동주택	138,533	91,484	66.0%	563,445	468,813	83.2%	17.2%
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	538,453	399,854	74.3%	3,160,937	2,422,520	76.6%	2.3%
공원	14,652	8,665	59.1%	36,410	24,036	66.0%	6.9%
계	691,638	500,003	72.3%	3,760,792 ³⁾	2,915,369	77.5%	5.2%

2003년 전수조사의 조사대상 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227,655개소였으며 2008년 전수조사의 조사대상시설은 총 107,730개소로 2003년도에 비하여 119,925개소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시설의 수가 감소한 원인은 2003년 전수조사의 대상시설 중에 횡단보도(82,664개소), 지하도·육교(2,835개소), 여객터미널(739개소) 등의 시설유형이 2006년도부터 편의증진법 대상시설에서 삭제되어 2008년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1998년과 2003년 전수조사 대상시설 선정 당시 여러 개의 건축용도가 하나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우 이를 각각의 시설로 간주하여 선정함으로써 실제 건물시설 수 보다 초과하여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03년 전수조사 결과 설치율을 도로를 포함한 종합적 설치율로 볼 경우에는 75.8%(도로포함)이며 도로 등을 포함한 설치율을 2008년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2003년도 및 2008년도 전수조사 결과비교표

대상시설별	2003년 조사				2008년 조사				증감
	조사대상 건물수	법정의무 편의시설수(a)	실제설치수 (b)	설치율 (b/a)	조사대상 건물수	법정의무 편의시설수(A)	실제설치수 (B)	설치율 (B/A)	
도로	85,499	185,619	165,290	89.0%	-	-	-	-	-
공동주택	37,981	138,533	91,484	66.0%	23,151	563,445	468,813	83.2%	17.2%
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	100,170	538,453	399,854	74.3%	82,924	3,160,937	2,422,520	76.6%	2.3%
공원	4,005	14,652	8,665	59.1%	1,655	36,410	24,036	66.0%	6.9%
계	227,655	877,257	665,293	75.8%	107,730	3,760,792	2,915,369	77.5%	

1) 법정의무편의시설수는 편의증진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개수로써 전수조사 전체조사항목의 수를 의미하며, 장애인복지시설 건물유형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최대 89개의 조사항목이 있을 수 있음.

2) 설치율은 전체조사항목(법정의무설치수) 대비 편의시설 설치항목의 비율임.

3) 법정의무편의시설수가 2003년 대비 2008년 조사시에 5배이상 많아진 것은 편의시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조사항목이 세분화되고 항목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2) 1998년도 및 2003년도 조사

<표 6> 1998년도 및 2003년도 전수조사 결과비교표

대상시설별	1998년 조사			2003년 조사			증감
	법정의무 편의시설수(a)	실제설치수 (b)	설치율 (b/a)	법정의무 편의시설수(A)	실제설치수 (b)	설치율 (b/a)	
도로	105,414	55,343	52.5%	185,619	165,290	89.0%	36.5%
공동주택	47,490	28,992	61.0%	138,533	91,484	66.0%	5.0%
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	501,758	227,910	45.4%	538,453	399,854	74.3%	28.8%
공원	2,809	4,369	34.1%	14,652	8,665	59.1%	25.0%
계	667,471	316,614	47.4%	877,257	665,293	75.8%	28.4%

편의증진법이 시행되고 난 후 첫째인 1998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편의증진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전체항목수 중 설치된 편의시설 수의 비율인 설치율이 47.4%로 조사되었으며, 2003년 전수조사 결과 설치율이 75.8%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28.4%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2.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시설 선정 및 담당공무원 교육

○ 대상시설 선정 원칙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범위의 법적 근거는 편의증진법 제7조(대상시설)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와 편의증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관련 별표4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이며, 위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을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비대상시설이란 시설의 규모나 신축시기에 관계없이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후 2년 내에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시설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 정비대상시설

대 상 시 설	기타
읍·면·동사무소, 경찰관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보건지소는 보건소로 분류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을 말함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것	

정비대상시설 이외의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이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구분 될 수 있다.

- 공원 :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 도시공원조성계획에 의해 조성된 공원(생활권 공원, 주계공원 등)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동일 대지 안에 10세대이상인 것에 한함), 기숙사(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그리고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 30인이상이 기숙하는 것)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표 8>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구분	대상시설	바닥면적	
기숙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공장에 부설된 시설	30인 이상 기숙	· 1998.4.11이후 신축 · 주요 부분변경 (이하“상동”)
근린 생활시설	수퍼마켓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이용원, 미용원	300 ~ 1,000㎡	· 상동 · 이용원, 미용원은 2005.7.1 이후 신축 · 주요 부분변경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300㎡ 이상	· 상동 · 제과점은 2005.7.28 이후 신축 또는 주요 부분변경
	일반목욕장	500㎡ 이상	· 상동
	안마시술소	500㎡ 이상	· 상동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1,000㎡ 미만	· 정비대상
	대피소	모든시설	· 상동
	공중화장실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한 공중화장실	· 정비대상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500㎡ 이상	· 2005.7.1 이후 신축 · 주요 부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교회 · 성당 · 사찰 · 기도원)	500㎡ 이상	· 상동
	공연장(극장 · 영화관 · 연예장 · 음악당 · 서커스장)	300㎡ 이상 (관람석 면적)	· 상동
	집회장(예식장 · 공회장 · 회의장)	500㎡ 이상	· 상동
	관람장(경마장 · 자동차경주장)	모든시설	· 상동
	전시장(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기념관 · 산업전시장 · 박람회장)	500㎡ 이상	· 상동
	동 · 식물원(동물원 · 식물원 · 수족관)	300㎡ 이상	· 상동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1,000㎡ 이상	· 상동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정신병원 · 요양소)	모든시설	· 상동 · 종합병원-정비대상
	격리병원(전염병원 · 마약진료소 등)	모든시설	· 상동
	장례식장	500㎡ 이상	· 상동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각종 학교)	모든시설	· 상동 · 장애인특수학교-정비대상시설임
	교육원(연수원 등)· 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500㎡ 이상	· 상동
	도서관	1,000㎡ 이상	· 상동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모든시설	· 상동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제외)-정비대상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유스호스텔)	모든시설	· 상동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 집·청소년야영장)	모든시설	· 상동
운동시설	체육관	500㎡ 이상	· 상동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500㎡ 이상	· 상동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 제외)	1,000㎡ 이상	· 상동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500㎡ 이상	· 상동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30실 이상 객실	· 상동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	모든시설	· 상동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령에 따라 (50인이상)	· 상동
자 동 차 관련시설	주차장	모든시설	· 상동
	운전학원	모든시설	· 상동
공공용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모든시설	· 상동
	방송국·전신전화국	1,000㎡ 이상	· 상동
관 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1,000㎡ 이상	· 상동
	휴게소	300㎡ 이상	· 상동
공동주택	아파트	모든 아파트	· 상동
	연립주택	10세대 이상	· 상동
	다세대주택	10세대 이상	· 상동

(※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또한 용도의 구분 적용에 있어서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에 의거 분류된 용도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동일 시점 용도에 의해 적용하면 된다.)

○ 대상시설 선정 기준일 적용 방법

정비대상시설은 신축 또는 증개축 시기와 관계없이 편의증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관련 별표4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정비대상시설 이외의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은 선정기준일이 아래와 같다.

-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건축적 행위를 한 면적에 한한다.
- 다만, 다음시설은 해당시설별로 선정 기준일에 따라 적용한다.

<표 9> 대상시설 선정 기준일

구 분		선정기준일	기타
근린생활 시설	300 ~ 1,000㎡ 이용원, 미용원	· 2005년 7월 1일 이후 신축된 시설 · 2005년 7월 1일 이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된 시설	2005년 7월 이후의 건축행위에 따른 면적만 합산하여야 함
	300㎡ 이상의 제과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용도에 합산하여 적용)	· 2005년 7월 28일 이후 신축된 시설 · 2005년 7월 28일 이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된 시설	· 상동
	500㎡ 이상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2005년 7월 1일 이후 신축된 시설 · 2005년 7월 1일 이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된 시설	· 상동
판매 및 영업시설	1,000㎡ 이상의 상점 (도·소매점 용도에 합산하여 적용)	· 2005년 7월 1일 이후 신축된 시설 · 2005년 7월 1일 이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된 시설	· 상동
공공용 시설	교도소·구치소	· 2005년 7월 1일 이후 신축된 시설 · 2005년 7월 1일 이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된 시설	· 상동

○ 대상시설 선정 방법 예시

- 동일한 대지에 2가지 이상의 용도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용도로 적용하여 분류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와 같이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대지인 경우에는 학교의 용도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 동일한 대지에 2가지 이상의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이 동일한 사업대지 내에 2동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동의 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1998년 법 시행 이후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로 포함된 용

도로 적용하되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많은 용도로 적용하여 1가지의 용도로만 분류한다. 예를 들어 1998년 법 시행 이전 신축되어 있던 기존건물이 1998년 법 시행이후에 용도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용도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에 해당되는 용도로 적용하여 분류한다. 다만, 2개 용도로 적용되면 적용되는 용도 중에서 의무사항이 많은 용도로 적용한다.

-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1998년 법 시행 이후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로 포함된 용도로 적용하되 의원 등의 용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의원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로 적용되는 시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분류한다. 예를 들어 1998년 법 시행 이전 신축되어 있던 기존건물이 1998년 법 시행이후에 기존의 용도 중에서 일부분이 용도변경된 경우라면 용도변경된 용도와 면적이 대상시설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용도로 적용하여 분류한다. 만약 의원이 포함된 경우라면 의원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된 시점인 2005년 7월 1일 이후의 건축적 행위에 해당되는 면적만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대상시설 선정 교육

대상시설 선정 교육은 대상시설 선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전수조사의 대상시설 선정 방법과 전수조사표 작성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하였으며, 서울권과 충청권에서 총 3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교육일시 및 교육수료 인원

<표 10> 대상시설 선정 교육 일정

구분	기 간	장 소	교육 대상자
1회	2008.5.28. 14:00~17:00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대강당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회	2008.5.29. 14:00~17:00	충남도청 대강당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추가 교육	2008.6.12. 10:00~13:00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교육실	서울특별시 25개구청 전수조사 담당공무원 및 현장조사자
			교육수료 총인원

나.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조사원 선발

조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원을 선발하였으며, 편의시설 관련 실태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원을 포함하여 총 1,941명의 조사원을 선발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전체 조사원의 22%에 해당하는 425명의 장애인을 조사원으로 선발하여 당사자의 입장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사원 교육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한 현장조사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표 작성방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세부 교육일시 및 인원 그리고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1> 조사원 교육 일정

회수	권역	기간	장소	해당지역
1회	강원권	2008. 7. 14. 13:00 ~ 17:00	강원도청 별관4층 회의실	강원도
2회	충청권	2008. 7. 16. 13:00 ~ 17:00	대전시청 3층 대강당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3회	전라권	2008. 7. 17. 13:00 ~ 17:00	전라북도청 4층 대회의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4회	경기권	2008. 7. 18. 13:00 ~ 17:00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대강당	경기도
5회	경상권	2008. 7. 21. 13:00 ~ 17:00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 1층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6회	경기권	2008. 7. 24. 13:00 ~ 17:00	경기도 제2청사 대강당	경기도
7회	제주권	2008. 7. 25. 13:00 ~ 17:00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	제주도
8회	인천권	2008. 7. 28. 13:00 ~ 17:00	인천시 여성의 광장 3층 대강당	인천광역시
추가교육	대구, 울산	2008. 8. 7 13:00 ~ 17:00	대구시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표 12> 조사원 교육 내용

구분	소요시간	과 목	내 용
기본 교육	13:00 ~ 14:00	편의시설의 기본이해 (한국장애인개발원)	·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의 정의와 각 시설별 세부시설의 구성에 대한 개요
	14:00 ~ 15:00	전수조사표 수준평가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	· 각 편의시설별 전수조사표 수준평가방법 · 현장조사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건물용도사례에 대응 하는 조사표 작성방법
	15:00 ~ 15:30	전수조사표 점수표기 방법 (편의시설지원센터)	· 용도 및 편의시설 종류별 조사표 입력 방법
현장 교육	15:30 ~ 16:30	전수조사표 작성실습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시설지원센터)	· 교육장 또는 교육장 인근 시설 현장에서 전수조사표 를 실제 작성하는 실습
	16:30 ~ 17:00	질의응답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시설지원센터)	· 조사요원의 현장조사 및 전수조사표 작성관련 문의 사항 청취 및 답변

다. 현장실태조사 실시

○ 현장 실태조사

조사원들에게 조사원증과 줄자 등의 조사도구를 배분한 후 조사원들이 직접 조사대상 건물 현장을 방문하여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사항은 조사용 기록지에 직접 항목별 평가점수를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현장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를 보고용 기록지 컴퓨터 엑셀파일 양식에 맞추어 입력하여 저장하였다.

○ 조사 결과의 취합

입력하여 저장한 보고용 기록지 엑셀파일을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편의시설지원센터로 발송하였으며, 조사관리원은 수집한 보고용 기록지 파일을 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한 후 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로 발송하였다. 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에서는 전국에서 취합된 파일을 정리·검토한 후 웹상의 전수조사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업로드)하였다.

2. 조사표 개발

2-1. 조사표 개발의 목표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 시행되었던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편의시설이 법적으로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설치율 위주의 조사’였으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 또는 ×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음으로 인해, 세부적인 규정적용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전수조사표는 설치여부만 묻는 기존의 조사방법 및 내용을 탈피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 어느정도 이용가능한지에 대한 세부항목을 개발함으로써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쉽게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을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편의시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건물유형별 조사표는 조사자가 조사대상건물별 유형의 조사 양식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이후 대상건물유형별로 세부적인 분석과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본 전수조사표는 다음 세가지 관점에서 개발되었다.

1) 현장조사의 객관성

편의시설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로 단순하게 판단하던 기존 조사표의 단점을 보완하여,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4단계 형식의 조사항목을 작성하여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현장조사의 정확성

편의시설의 설치율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의 이용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기준을 달리하여 조사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현장조사의 편의성

조사표작성 교육을 받은 후 비전문가도 쉽게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치상황에 대한 설명 형식의 4단계 항목으로 자세하게 작성하였다.

2-2. 조사표 개발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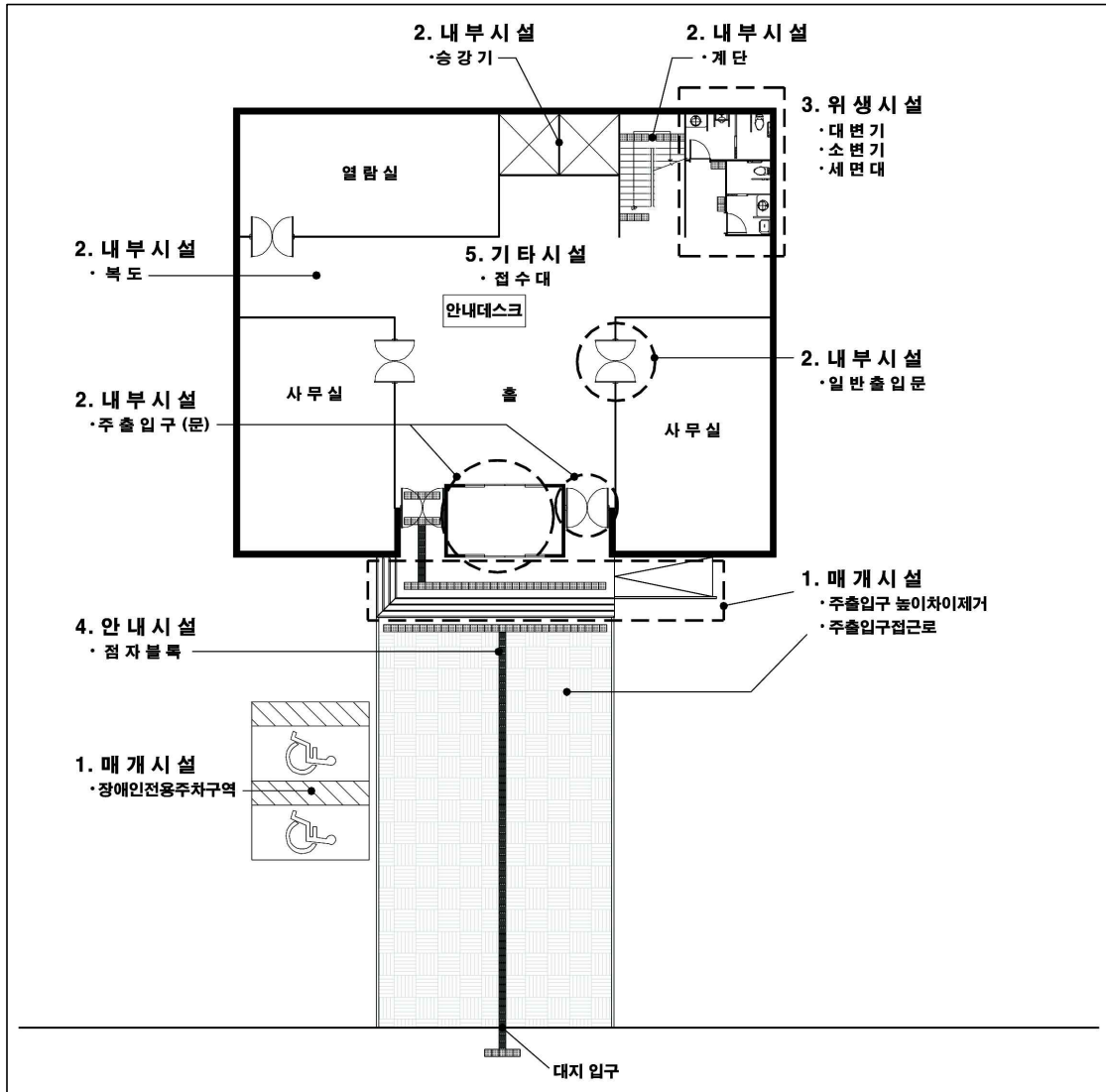
2-2-1. 편의시설의 분류

조사대상 장애인편의시설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의하여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종류로 대분류하고, 각 종류별 세부 항목은 총 18종류로 소분류하였다. 각 편의시설별 세부 분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3> 편의시설의 분류표

대분류 (5종류)	중분류 (18종류)	
1. 매개시설	1.1 주출입구 접근로	
	1.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1.3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2. 내부시설	2.1 출입구(문)	
	2.2 복 도	
	2.3 계단 또는 승강기	
3. 위생시설	화장실	3.1 대변기
		3.2 소변기
		3.3 세면대
	3.4 욕 실	
	3.5 샤워실 및 탈의실	
4. 안내시설	4.1 점자블록	
	4.2 유도 및 안내설비	
	4.3 경보 및 피난설비	
5. 기타시설	5.1 객실 · 침실	
	5.2 관람석 · 열람석	
	5.3 접수대 · 작업대	
	5.4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앞장의 표에 해당하는 각 편의시설 요소들에 관한 도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30) 편의시설 요소의 예

2-2-2 조사표의 개요

08'전수조사표는 기존의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로 단순하게 평가할 수 밖에 없었던 단점을 보완하고, 해당 시설에서 설치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물 환경을 고려하여 4단계로 세분화된 항목을 조사자가 선택하게 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편의증진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편의시설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의 네가지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적정)은 편의증진법의 법적 기준에 적정한 수준을 의미하며, 3(보통)은 편의시설 설치수준이

법적 기준에 약간 부족한 수준을, 그리고 편의시설이 설치되긴 하였으나 법적 기준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2(미흡)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1(미설치)는 편의시설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이용자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는 수준이거나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전의 전수조사표와 비교한 '08전수조사표의 특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4> 전수조사표의 특징 비교표

	○×형 조사표 (‘98, ‘03전수조사표)	4지선다형 (‘08전수조사표)
특징	·편의시설의 설치유무를 ○또는 ×로 단순 평가	·각 조사항목마다 4개의 세분화된 평가내용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적 의무사항의 평가항목만을 수록
장점	·조사항목이 적어 설치율 파악이 용이함	·전수조사에서 요구되는 법적규정 준수여부의 정확한 파악이 용이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평가가 가능함
단점	·다양한 현장상황에 대해 평가가 어려움 예)편의시설이 설치는 되어있으나 부적절하게 설치된 경우 ·세부적인 설치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움	·조사의 내용이 많고 복잡할 수 있음

장애인편의시설의 조사세부항목은 각 세부편의시설 항목마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2)에 의거하여 작성한 세부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전수조사표의 조사세부항목들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5> 전수조사표의 조사세부항목

구분		내용	
1. 매개시설	1.1 주출입구 접근로	1.1.1.1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
		1.1.1.2	보도블록 등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
		1.1.1.3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며,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2cm이하
		1.1.2.1	대지내를 연결하는 모든 보도 및 접근로에 단차(段差)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높이차이는 2cm이하
		1.1.3.1	휠체어사용자가通行 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이상 확보
		1.1.3.2	보도 등의 진행방향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
		1.1.4.1	차도와 경계부분에 경계석·울타리·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설치.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과 색상을 구분 설치
	1.1.4.2	접근보행통로가 차량, 안내판, 가로수, 화분 등의 보행 장애물이 제거되도록 설치	
	1.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1.2.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1.2.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확보 주차면수
		1.2.1.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평행주차인 경우 폭 2m이상, 길이 6m 이상)의 규정에 적합한 주차공간의 확보
		1.2.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에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1.2.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안전통행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m 이상
	1.3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1.3.1.1	해당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는 2cm이하가 되고 주출입문까지의 휠체어 등의 접근 가능여부
1.3.1.2		경사로 또는 출입구의 폭 1.2m이상 (경사로의 경우, 기울기 1/12이하, 손잡이 높이 0.8~0.9m이하이고 굵기가 3.2~3.8cm이하) 으로 설치	

2. 내부 시설	2.1 출입구(문)	2.1.1.1	주출입문턱의 높이 차이 및 점형블록 설치 여부(단, 부출입문을 주출입문과 동일 인정시에는 부출입문도 동일하게 봄)
		2.1.1.2	주출입문 통과유효폭의 0.8m이상 확보 여부
		2.1.1.3	주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1.2m이상 확보
		2.1.1.4	주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위치하여 설치
		2.1.2.1	출입문턱의 높이 차이
		2.1.2.2	출입문 통과유효폭의 0.8m이상 확보 여부
		2.1.2.3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1.2m이상 확보
		2.1.2.4	공중의 이용을 주 목적으로하는 실의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위치하며 출입문 옆의 벽면에 점자표지판 부착
	2.2 복도	2.2.1.1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2.2.1.2	복도 바닥면의 단차는 2cm 이하로 확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2.2.1.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였는지 그리고 2.1m이내 장애물 있는 경우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여부
	2.3 계단 또는 승강기	2.3.1.1.1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2.3.1.1.2	계단에는 썰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디딤판의 너비는 0.28m이상, 썰면의 높이는 0.18m이하로 설치되어 있으며, 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목발이나 발끝이 걸리지 않도록 설치
		2.3.1.1.3	계단측면에 굵기 3.2~3.8cm, 높이 0.8~0.9m에 손잡이가 연속되게 설치 또한, 손잡이 끝부분에 0.3m이상 수평손잡이를 연장설치
		2.3.1.1.4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중간 참 포함) 0.3m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손잡이에 점자표기
		2.3.1.2.1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한 경우 0.9m까지 완화)
		2.3.1.2.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2.3.1.2.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설치
		2.3.1.2.4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음.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3.1.2.5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15cm이상인 경우에 양측면에 손잡이의 연속 설치 및 손잡이의 높이와 굵기의 적정여부
		2.3.1.3.1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3.1.3.2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
		2.3.1.3.3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내외로 설치. 또한 일반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부착
		3. 위생 시설	3.1 대변기
3.1.1.2	일반화장실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적설비 유무		
3.1.1.3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3.1.1.4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의 바닥과 화장실의 바닥 단차가 2cm이하이면서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3.1.1.5	화장실 입구에 시각장애인이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및 남·여구분용 점자표지판 설치		
3.1.2.1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형태		
3.1.2.2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3.1.2.3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 확보		
3.1.3.1	대변기는 양변기형태이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로 설치		
3.1.3.2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6m~0.7m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설치)		
3.1.3.3	대변기의 한쪽옆에는 수직손잡이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3.1.3.4	대변기세정장치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3.2 소변기	3.2.1.1		
	3.2.1.2		장애이용소변기의 수직손잡이는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1.2m이며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로 설치
3.3 세면대	3.3.1.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이하이고 하단높이가 0.65m이상이며 휠체어 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확보

		3.3.1.2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설치 및 점자표시
	3.4 욕실	3.4.1.1	장애인을 위한 욕실 또는 침실에 설치된 욕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3.4.1.2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으며 욕조의 전면에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 또한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3.4.1.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이내로 설치 (욕조에는 보조용 손잡이 설치)
		3.4.2.1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3.4.2.2	욕실에는 비상용 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용 벨은 욕조로부터 사용가능한 위치
		3.4.2.3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설치
	3.5 샤워실 및 탈의실	3.5.1.1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3.5.1.2	샤워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 또한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3.5.1.3	샤워용 접이식 의자 또는 이동식 의자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이내
		3.5.1.4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3.5.1.5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3.5.1.6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1.2m에 설치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 발판 공간 확보
4. 안내 시설	4.1 점자블록	4.1.1.1	시각장애인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접근로로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
		4.1.1.2	표준형 점자블록의 사용
	4.2 유도 및 안내설비	4.2.1.1	시각장애인이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4.2.1.2	시각장애인이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4.3 경보 및 피난설비	4.3.1.1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
		4.3.1.2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
5. 기타 시설	5.1 객실 또는 침실	5.1.1.1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5.1.1.2	장애인을 위한 객실 또는 침실 및 식당, 로비 등 공용공간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
		5.1.1.3	장애인을 위한 객실 또는 침실의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8m 이상 확보
		5.1.1.4	장애인을 위한 객실 또는 침실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1.2m 이상 확보
		5.1.1.5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
		5.1.2.1	화장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확보 및 2cm 이하의 단차
		5.1.2.2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 확보
		5.1.2.3	대변기에는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5.1.3.1	장애인을 위한 객실 또는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1.2m로 설치
	5.1.3.2	장애인을 위한 객실 또는 침실 및 화장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을 위한 초인종이 설치 장애인을 위한 객실에는 건축물 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설비 설치	
	5.2 관람석 또는 열람석	5.2.1.1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5.2.1.2	휠체어사용자용 관람석인 경우에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이 0.9m 이상, 깊이 1.3m 이상으로 설치. 휠체어사용자용 열람석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이며, 하단은 높이가 0.65m 이하이며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5.3 접수대 또는 작업대	5.3.1.1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5.3.1.2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이며, 하단은 높이가 0.65m 이하이며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5.4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5.4.1.1	매표소의 경우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매표소의 높이는 0.7~0.9m 이하에 설치하며 하부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5.4.1.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인 경우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등은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 등이 0.4~1.2m의 범위에 설치 또한 조작버튼은 시각장애인이 알기 쉽도록 점자가 표시되어 있으며, 누름버튼식 등으로 설치
		5.4.1.3	음료대인 경우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0.8m로 설치.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으로 설치

각 세부항목마다 다수의 평가항목이 있으며, 이를 적정, 보통, 미흡, 미설치의 4단계로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16> 전수조사표 양식의 예시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2.2.1.1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모든 복도의 유효폭이 1.2m이상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음	유효폭이 1.2m이상, 바닥은 마른 상태에서만 미끄럽지 않음	유효폭이 1.2m이상, 바닥은 미끄러움	유효폭이 1.2m미만
▶ 2.2.1.2 복도 바닥면의 단차는 2cm 이하로 확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2cm이하 단차, 또는 경사로를 1/12이하 설치(또는 리프트설치)	2cm이하 단차, 또는 그 이상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8이하 설치	2cm이하 단차, 또는 그 이상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8초과 설치	2cm초과의 단차만 있음 (계단 등)
▶ 2.2.1.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였는가? 2.1m이내 장애물이 있는 경우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여부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6m이하에 보호벽 설치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6m이하에 난간 설치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바닥면에 재질을 달리하여 접근을 경고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으나 아무런 접근방지 장치가 없음

편의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편의시설 설치규정이 새로 적용되는 경우, 적용시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을 구분하여 두 가지 중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17>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점에 따른 조사표 양식의 예시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m이상, 깊이 1.8m이상 확보, (대변기 전면에 1.4m×1.4m 크기의 활동공간 확보)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m이상, 깊이 1.8m이상으로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가능함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m이상, 깊이 1.8m이상, 내부설치물로 인해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불가능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m이상이나 깊이는 1.8m미만, 또는 내부 설치물로 인해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불가능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m미만으로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불가능함
※2005년 12월 30일 이후 허가신청된 건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항목으로 적용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 확보, (대변기 전면에 1.4m×1.4m 크기의 활동공간 확보)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으로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가능함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 내부설치물로 인해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불가능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이나 깊이는 1.8m미만, 또는 내부 설치물로 인해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불가능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미만

2-2-3. 조사대상시설의 유형분류

전수조사표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 및 제4조관련 별표2의 제2항으로부터 제4항에서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45개 유형의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45개 유형의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의무’항목의 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44종류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44종의 유형으로 분류된 조사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8> 조사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개수	조사 표유형	용도구분		매개 시설			내부 시설			위생 시설			안내 시설			기타 시설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시설	경보및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전수대·차입대	대표소 판매기 음료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대분류	소분류	11	12	13	21	22	23	31	32	33	34	35	41	42	43	51	52	53	54
1	A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2	B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특수학교	●	●	●	●	●	●	●	●	●			●	●	●		●	●	
3	C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	●	●	●	●	●	●	●	●			●	●	●			●	
4	D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	●	●	●	●	●	●	●	●			●			●			
5	E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	●	●	●	●	●	●	●	●			●						
	F	해당없음																			
6	G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	●	●	●	●	●	●	●	●								●	
7	H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생활권수련시설 등	●	●	●	●	●	●	●	●	●						●			
8	I	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	●	●	●	●	●	●	●	●	●			●				●		
9	J	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	●	●	●	●	●	●	●	●			●					●	
10	K	문화·집회시설	공연장,관람장	●	●	●	●	●	●	●	●	●								●	
11	L	문화·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	●	●	●	●	●	●	●	●			●						
12	M	공공용시설	교도소,구치소	●	●	●	●	●	●	●	●	●									
13	N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	●	●	●	●	●	●	●									
14	N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특수학교 제외)	●	●	●	●	●	●	●	●	●									
15	N3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	●	●	●	●	●	●	●	●									
16	N4	공공용시설	방송국 등	●	●	●	●	●	●	●	●	●									
17	N51	문화·집회시설	집회장	●	●	●	●	●	●	●	●	●									
18	N52	의료시설	장례식장	●	●	●	●	●	●	●	●	●									
19	N61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	●	●	●	●	●	●	●	●	●									
20	N62	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등	●	●	●	●	●	●	●	●	●									
21	N6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교육원 등	●	●	●	●	●	●	●	●	●									
22	N7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등	●	●	●	●	●	●	●	●	●									
23	O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		●	●			●	●	●			●						
24	P	기숙사	기숙사	●		●	●			●		●							●		
25	Q1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등	●	●	●	●			●		●									
26	Q2	공공용시설	전신전화국 등	●	●	●	●			●		●									
27	Q3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	●	●	●			●		●									
28	Q4	공장	공장	●	●	●	●			●		●									
29	R	숙박시설	여관	●		●	●			●		●							●		
30	S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타사회복지시설 등	●		●	●	●	●												
31	T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	●	●	●	●														
32	U1	운동시설	운동시설	●		●	●														
33	U2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		●	●														
34	U31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등	●		●	●														
35	U32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등	●		●	●														
36	U33	근린생활시설	일반목욕장	●		●	●														
37	U4	근린생활시설	대피소	●		●	●														
38	V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	●	●															
	W	해당없음																			
	X	해당없음																			
39	Y1	공동주택	아파트	●	●	●	●		●												
40	Y11	공동주택	아파트 부대복지시설	●		●	●	●	●	●	●	●									
41	Y2	공동주택	연립주택	●		●	●														
42	Y3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	●														
43	Z1	공원	도시공원	●						●					●						
44	Z2	공원	자연공원	●						●					●						

3. 편의시설 설치현황 분석

3장에서는 전체 편의시설 조사항목 대비 설치된 항목의 수를 비율로 나타낸 편의시설 설치율을 분석한다.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편의시설의 설치유무를 수치 및 비율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1998년과 2003년 전수조사시에도 적용하였던 분석 방법이다.

또한 3-7에서는 편의시설의 이용성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편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수준 분석을 하였다.

3-1. 설치현황 분석의 개요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한 건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전체 편의시설 항목수 중 조사를 통해 그 건물에 편의시설이 설치된 항목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전의 ○×형 전수조사표를 보완하여 2008년 전수조사표는 편의증진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편의시설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1(미설치), 2(미흡), 3(보통), 4(적정)의 네가지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때 아래의 그림과 같이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되었으나 그 적정설치여부에 따라서 미흡한 수준으로 설치되었을 때는 2점을 부여하고 편의증진법 규정에 적합한 수준으로 설치되었을 때는 4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2~4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된 항목은 편의시설 단순설치항목으로 간주하고, 1점으로 평가된 항목은 편의시설 미설치항목으로 간주한다. 이 중 4점으로 평가된 항목은 적정설치 항목이므로 적정설치항목수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A장애인복지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수(조사평가항목수)는 총 89개이며 이 중 1점 평가항목이 14개, 2점 평가항목이 20개, 3점 평가항목이 30개, 4점 평가항목이 25개라면, 설치수는 2~4점까지 평가된 항목수인 75개이며 설치율은 84.3%(75÷89×100)로 산정된다. 또한 적정설치수는 4점 평가된 항목수인 25개이며 적정설치율은 28.1%(25÷89×100)로 산정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율을 산정하여 크게 5가지 유형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편의시설 종류별 분석
- 2) 건물유형별 분석
- 3) 연도별 분석
- 4) 건축행위별 분석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3.1.3.	대변기의 형태 및 보조손잡이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3.6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평가세부내용	<p>▶ 3.1.3.1. 대변기는 양변기형태이고 좌대의 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로 설치.</p> <p>▶ 3.1.3.2.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6m~0.7m의 높이에 설치하고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이내, 좌측 손잡이는 좌측으로 설치.</p> <p>▶ 3.1.3.3. 대변기의 한쪽옆에는 수직손잡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p> <p>▶ 3.1.3.4. 대변기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또는 비접촉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를 설치.</p>	<p>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p> <p>설치높이는 0.6~0.7m, 벽측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이내, 좌측손잡이는 좌측으로</p> <p>수평손잡이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시각 높이는 0.6m이내이며 길이는 0.9m이상</p> <p>광감지식 또는 바닥 및 벽누름버튼식 설치.</p>	<p>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미만</p> <p>설치높이는 0.6~0.7m, 벽측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이내, 좌측손잡이는 고정식</p> <p>수평손잡이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시각 높이는 0.6m이내이며 길이는 0.9m미만</p> <p>바닥 또는 벽누름버튼식 설치.</p>	<p>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5m초과</p> <p>설치높이는 0.6m미만, 0.7m초과, 벽측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5m초과, 좌측손잡이는 고정식</p> <p>바닥면에서 부터 고정되어 설치, 이용자의 발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음.</p> <p>측면 레버식 설치 (수조형)</p>	<p>양변기가 아님.</p> <p>수평 손잡이가 없음.</p> <p>수직 손잡이가 없음.</p> <p>후면 레버식 또는 버튼식 설치.</p>
	적정설치로 간주 ('적정설치수'에 포함)	설치로 간주 ('설치수'에 포함)	미설치로 간주 ('미설치수'에 포함)		

(그림 38) 설치율 산정 항목

5) 지역별 분석

3-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분석

전국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수는 107,730개이며 대상편의시설 수는 3,760,792개이다. 이 모든 대상편의시설수로 볼 때 설치율의 전체 평균은 77.5%이며 적정설치율은 55.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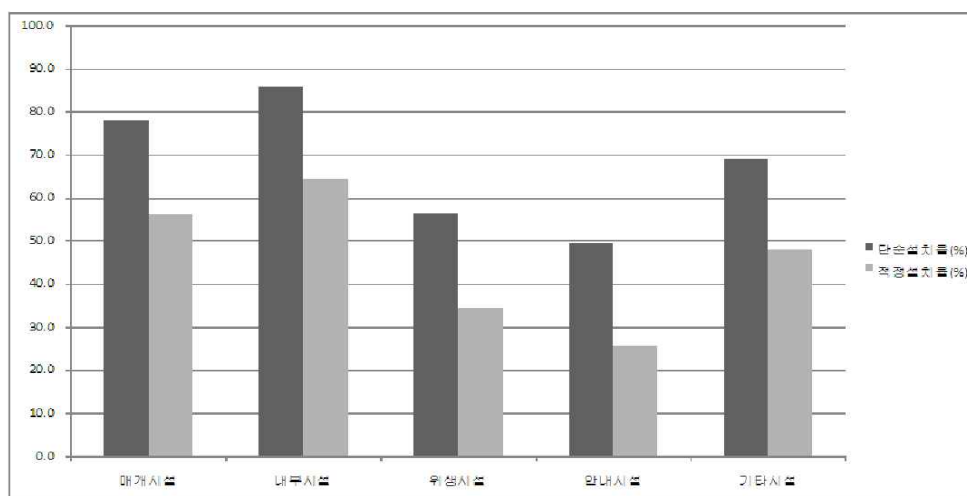
편의시설 종류를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5개로 대분류하여 다시 매개시설을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로 중분류하며, 내부시설을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로, 위생시설을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로, 안내시설을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고 및 피난설비로, 기타시설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로 중분류하였다.

각 항목별로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정설치율이라는 것은 4점으로 평가된 것을 나타내며 설치율은 2점이상 즉, 2점 3점 4점으로 평가된 것을 합한 설치율을 의미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시설이용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한다면 4점 즉 적정설치로 평가된 수준이어야만 법적 최소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3장 분석에서는 적정설치율을 중심으로 분석함을 밝혀둔다.

우선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대분류하여 도표로 나타낸 다음 도표를 참고하면, 대분류에서는 내부시설이 가장 높은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은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내시설의 적정설치율은 2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 정도의 설치율은 편의시설이 거의 설치되지 않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9> 편의시설 종류별(대분류) 설치율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1,342,840	1,047,843	754,353	78.0%	56.2%
내부시설	1,682,872	1,446,698	1,083,686	86.0%	64.4%
위생시설	608,810	342,769	209,918	56.3%	34.5%
안내시설	46,876	23,248	12,120	49.6%	25.9%
기타시설	79,394	54,811	38,173	69.0%	48.1%
계	3,760,792	2,915,369	2,098,250	77.5%	55.8%



(그림 41) 편의시설 종류별(대분류) 설치율 비교

<표 20> 편의시설 종류별(중분류) 설치율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접근로	861,707	714,499	524,533	82.9%	60.9%
	주차구역	269,025	181,360	136,664	67.4%	50.8%
	높이차이제거	212,108	151,984	93,156	71.7%	43.9%
내부시설	출입구(문)	838,083	723,171	473,625	86.3%	56.5%
	복도	149,652	134,599	106,962	89.9%	71.5%
	계단	231,734	183,205	133,198	79.1%	57.5%
	승강기	289,640	253,551	231,049	87.5%	79.8%
	경사로	173,763	152,172	138,852	87.6%	79.9%
위생시설	대변기	564,878	311,730	191,040	55.2%	33.8%
	소변기	16,504	9,342	7,068	56.6%	42.8%
	세면대	17,228	13,723	5,767	79.7%	33.5%
	욕실	5,100	3,992	3,107	78.3%	60.9%
	샤워실	5,100	3,982	2,936	78.1%	57.6%
안내시설	점자블록	35,652	18,035	9,885	50.6%	27.7%
	유도·안내설비	5,612	1,389	896	24.8%	16.0%
	경보·피난설비	5,612	3,824	1,339	68.1%	23.9%
기타시설	객실침실	51,096	32,197	22,823	63.0%	44.7%
	관람열람석	3,402	2,743	2,267	80.6%	66.6%

	접수작업대	22,346	17,801	11,255	79.7%	50.4%
	매표소등	2,550	2,070	1,828	81.2%	71.7%
계		3,760,792	2,915,369	2,098,250	77.5%	55.8%

<표 21> 2003년도 및 2008년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비교표

편의시설별	2003년 조사			2008년 조사			증감
	법정의무설치수 (a)	실제설치수 (b)	설치율 (b/a)	법정의무설치수 (A)	실제설치수 (B)	설치율 (B/A)	
매개시설	327,327	230,153	70.3%	1,342,840	1,047,843	78.0%	7.7%
내부시설	253,338	204,968	80.9%	1,682,872	1,446,698	86.0%	5.1%
위생시설	62,890	32,226	51.2%	608,810	342,769	56.3%	5.1%
안내시설	25,628	17,146	66.9%	46,876	23,248	49.6%	-17.3%
기타시설	22,455	15,510	69.1%	79,394	54,811	69.0%	-0.1%
계	691,638	500,003	72.3%	3,760,792	2,915,369	77.5%	5.2%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등 세 가지 시설은 2003년 전수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2008년도 조사시에 약 5%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안내시설은 17.3%의 설치율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2003년 조사 당시의 조사내용과 2008년 조사내용 및 방법의 차이로 인해 설치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안내시설의 세가지 항목 중 점자블록 항목의 경우, 2003년도 전수조사지침에 의하면 건축물의 외부(주출입구접근로)와 내부(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계단 등)의 점자블록을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조사하여 조사원들이 내부 점자블록 중 일부분이 설치되어도 점자블록 항목에 설치된 것으로 표기함으로써 2003년 당시 점자블록 설치율이 81.1%의 높은 설치율로 조사되었으나, 2008년도 전수조사에서는 외부 주출입구접근로 점자블록의 연속설치와 표준형점자블록의 사용여부 등 세부적인 항목을 조사함으로써 점자블록의 설치율이 50.6%의 낮은 설치율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1.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로 구성된 매개시설의 설치율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60.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2.9%로 평가되었다.

<표 22>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1111	미끄럽지않은 재질마감	107,715	101,652	80,615	94.4%	74.8%
1112	이음새 틈, 평탄 마감	107,714	99,956	73,863	92.8%	68.6%
1113	덮개 높이, 격자구멍 간격	107,714	98,477	71,691	91.4%	66.6%
1121	접근로 단차	107,714	92,994	67,538	86.3%	62.7%
1131	접근로 유효폭	107,713	98,925	82,404	91.8%	76.5%
1132	기울기	107,713	93,989	63,329	87.3%	58.8%
1141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107,713	63,268	40,768	58.7%	37.8%

1142	보행장애물 제거	107,711	65,238	44,325	60.6%	41.2%
	계	861,707	714,499	524,533	82.9%	60.9%

주출입구 접근로에는 8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주요내용은 접근로의 바닥재질과 마감상태, 단차, 유효폭과 기울기, 보행안전통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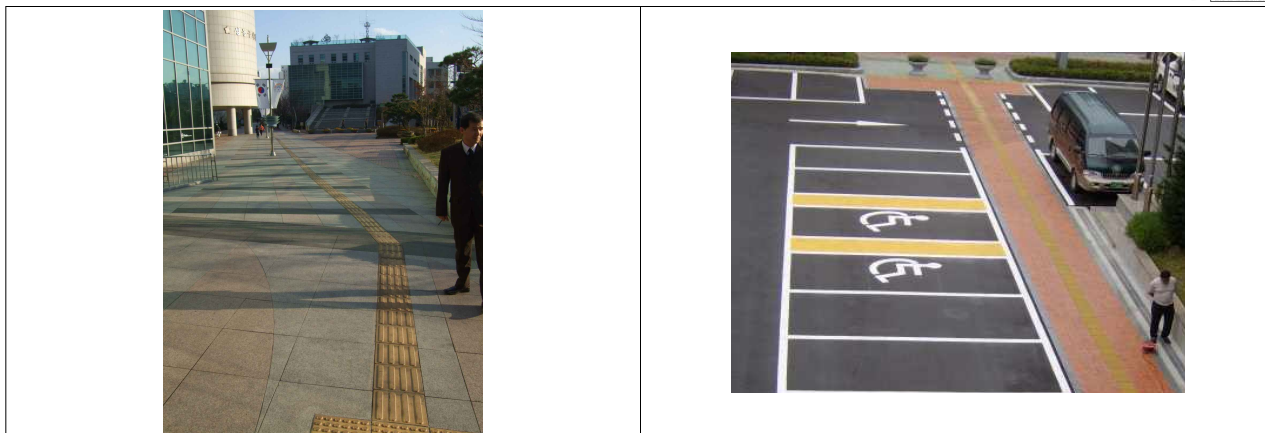
이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37.8%의 보행안전통로의 차도와 보도의 경계 공작물 설치와 41.2%의 보행장애물 제거항목이다. 휠체어사용자나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건물 이용자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보행안전통로는 거의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지경계선에서 건물출입구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먼 공장이나 학교 등의 단지형 건물유형에서는 이와같은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보행통로 설치는 더욱 잘 안되고 있으며 오히려 바로 보도에 붙여 설치하고 있는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보도에서 바로 건물로 접근할 수 있어 아주 유리하다.

그 외에도 접근로의 기울기는 적정하게 설치되는 정도가 58.8%에 불과해 우리나라와 같이 경사지에 건물을 많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분리하여 보행자는 가능한 수평이동 동선을 통해 접근한 후 수직이동 동선인 승강기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

반면, 접근로의 바닥재질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끄럽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율이 94.4%로 가장 높지만 물이 묻었을 때에는 약간 미끄러울 수 있는 바닥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소 있어 적정설치율은 오히려 접근로 유효폭보다 약간 낮은 74.8%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주출입구 접근로가 긴 경우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접근로가 서로 분리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접근로 상에 공작물을 많이 설치하지 않는 것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건물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방법이다. 또한 기존 건물에서 이미 동선이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보행안전통로를 색상이나 재질 등을 달리하여 설치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그림 6 참조)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완전 분리한 접근로1	보행자우선 안전보행통로를 설치한 접근로1
---------------------------	------------------------



(그림 44) 주출입구 접근로 현황사진

주출입구 접근로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3>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구분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237,664	194,777	143,052	82.0%	60.2%
문화 및 집회시설	37,464	31,151	23,033	83.1%	61.5%
판매 및 영업시설	10,576	9,454	6,351	89.4%	60.1%
의료시설	13,721	12,155	9,770	88.6%	71.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09,716	174,008	126,549	83.0%	60.3%
운동시설	6,984	5,801	4,482	83.1%	64.2%
업무시설	60,096	52,473	40,909	87.3%	68.1%
숙박시설	28,944	24,112	18,673	83.3%	64.5%
공장	40,088	30,288	21,728	75.6%	54.2%
자동차관련시설	11,704	9,780	7,592	83.6%	64.9%
공공유희시설	1,960	1,724	1,355	88.0%	69.1%
관광휴게시설	1,704	1,524	1,218	89.4%	71.5%
기숙사	2,680	2,122	1,669	79.2%	62.3%
공동주택	185,166	154,110	110,485	83.2%	59.7%
공원	13,240	11,020	7,667	83.2%	57.9%
계	861,707	714,499	524,533	82.9%	60.9%

15개 건물군으로 볼 때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군은 휴게소등이 포함되는 관광휴게시설군이며, 44개 건물 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79.8%로 평가된 대피소이며 7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 유형은 의원·한의원, 공연장·관람장, 병원, 특수학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청사), 방송국, 교도소, 휴게소, 아파트 부대복지시설로 나타났다.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치율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15개의 건물 유형군으로 분류하였다.

1) 근린생활시설

<표 24>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	---------	-----	-------	-----	-------

소매점, 이음원	72,472	58,613	40,612	80.9%	56.0%
일반음식점	60,672	50,136	35,889	82.6%	59.2%
일반목욕장	8,200	6,726	4,790	82.0%	58.4%
안마시술소	744	648	520	87.1%	69.9%
읍면동사무소	66,936	54,585	42,973	81.5%	64.2%
공공도서관	992	842	639	84.9%	64.4%
대피소	808	744	645	92.1%	79.8%
공중화장실	13,696	10,550	7,470	77.0%	54.5%
의원, 한의원 등	13,144	11,933	9,514	90.8%	72.4%
계	237,664	194,777	143,052	82.0%	60.2%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출입구 접근로의 적정설치율은 60.2%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2.0%로 평가되었다.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대피소의 적정설치율이 79.8%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전국에 101개 건물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게 평가된 건물 유형은 공중화장실이다. 하지만 설치율이 높아야 할 공공시설인 읍·면·동사무소는 의원·한의원 보다 8% 정도 적정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읍·면·동사무소의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율이 낮은 것은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건물은 의원과 같은 개인건물보다 대지경계가 넓고 접근로 구간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보통 이 구간에는 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설치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표 25>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종교집회장	29,136	23,872	17,307	81.9%	59.4%
공연장,관람장	3,024	2,744	2,247	90.7%	74.3%
집회장	2,680	2,293	1,774	85.6%	66.2%
전시장 등	2,624	2,242	1,705	85.4%	65.0%
계	37,464	31,151	23,033	83.1%	61.5%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주출입구 접근로의 적정설치율은 61.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3.1%로 평가되었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는 공연장·관람장이 가장 높은 적정설치율인 74.3%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교집회장이 59.4%로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다른 용도의 건물수보다 종교집회장의 건물수가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많은 건물이 균등하게 잘 설치되지 않아 나타내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공연장이나 관람장의 경우에는 비교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량동선을 비교적 잘 분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판매 및 영업시설

<표 26>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도소매시장	10,576	9,454	6,351	89.4%	60.1%
계	10,576	9,454	6,351	89.4%	60.1%

판매 및 영업시설의 도소매시장은 적정설치율이 60.1%이며 설치율은 89.4%로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4) 의료시설

<표 27>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병원 등	11,737	10,615	8,489	90.4%	72.3%
장례식장	1,984	1,540	1,281	77.6%	64.6%
계	13,721	12,155	9,770	88.6%	71.2%

의료시설의 적정설치율은 71.2%이며 설치율은 88.6%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건물유형군으로 볼 때 관광휴게시설군 다음으로 적정설치율이 높은 유형군이다. 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의료시설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적정설치율은 아주 높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자동차 등의 차량 이용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주출입구 접근로의 적정설치율 향상은 건물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정설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2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학교	49,536	42,327	31,002	85.4%	62.6%
특수학교	692	611	497	88.3%	71.8%
교육원, 학원 등	23,096	20,707	15,890	89.7%	68.8%
도서관	2,104	1,891	1,531	89.9%	72.8%
아동관련시설	113,048	91,177	64,540	80.7%	57.1%
노인복지시설	11,952	9,670	7,288	80.9%	61.0%
장애인복지시설	6,800	5,639	4,330	82.9%	63.7%
생활권수련시설	2,488	1,986	1,471	79.8%	59.1%
계	209,716	174,008	126,549	83.0%	60.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특수학교, 학교 등 다양한 건물유형이 포함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58.1%이며 설치율은 79.3%로 적정설치율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복지관련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적정설치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아동관련시설과 학교, 노인복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높지 않아 적정설치율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주출입구

접근로의 적정설치율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같이 시설이용약자들의 이용이 많은 복지관련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이 낮다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체감율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으므로 추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한 특별한 행정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6) 운동시설

<표 29> 운동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운동시설	6,984	5,801	4,482	83.1%	64.2%
계	6,984	5,801	4,482	83.1%	64.2%

운동시설의 적정설치율은 64.2%이며 설치율은 83.1%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주출입구 접근로의 전체 평균 적정설치율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점차적으로 운동시설의 장애인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인 설치율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업무시설

<표 30>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업무시설(청사)	14,960	12,698	10,512	84.9%	70.3%
사무소 등	45,136	39,775	30,397	88.1%	67.3%
계	60,096	52,473	40,909	87.3%	68.1%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68.1%이며 설치율은 87.3%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적정설치율은 공공업무시설이 일반업무시설보다 3% 정도 높으나, 설치율은 일반업무시설이 공공업무시설보다 3%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포함되는 일반업무시설의 설치율이 88.1%라는 것은 대부분의 민간 건물도 편의증진법에 의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적정하게 설치하는 데는 아직도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규모가 다소 큰 일반업무시설 등에서는 차량동선과 보행자 접근 동선이 분리되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공공업무시설에서는 기존의 시설이 많아 차량동선과의 분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청사와 같은 건물 접근로를 안전보행통로 등의 설치로 보완하여 좀 더 보행자 위주의 시설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숙박시설

<표 31>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일반숙박시설	10,984	9,035	6,809	82.3%	62.0%
여관	17,960	15,077	11,864	83.9%	66.1%
계	28,944	24,112	18,673	83.3%	64.5%

숙박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64.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3.3%로 평가되어 설치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9) 공장

<표 32> 공장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장	40,088	30,288	21,728	75.6%	54.2%
계	40,088	30,288	21,728	75.6%	54.2%

공장의 적정설치율은 54.2%이며 설치율은 75.6%로 평가되었다. 공장 대부분의 주출입구 접근로는 차량의 이용에만 중점을 둔 경우가 많아 이와같이 낮은 설치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한 이용을 함께 고려한 주출입구 접근로의 설치에 대한 대안 제시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자동차 관련시설

<표 33>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주차장	10,336	8,741	6,876	84.6%	66.5%
운전학원	1,368	1,039	716	76.0%	52.3%
계	11,704	9,780	7,592	83.6%	64.9%

주차장이나 운전학원으로 구성된 자동차관련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64.9%이며 설치율은 83.6%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주차장이나 운전학원의 특성상 보행자의 안전한 이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나, 자동차관련시설군 대부분이 이와같은 부분의 고려사항이 부족하다.

11) 공공용시설

<표 34>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방송국 등	440	386	308	87.7%	70.0%
전신전화국등	1,296	1,144	884	88.3%	68.2%
교도소 등	224	194	163	86.6%	72.8%
계	1,960	1,724	1,355	88.0%	69.1%

방송국, 전신전화국, 교도소가 포함되는 공공용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69.1%이며 설치율은 88.0%로 평가되었다. 공공용시설군 중에서 현실적으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설인 전신전화국의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더욱 높을 수 밖에 없다.

12) 관광휴게시설

<표 35> 관광휴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야외음악당 등	224	191	152	85.3%	67.9%
휴게소 등	1,480	1,333	1,066	90.1%	72.0%
계	1,704	1,524	1,218	89.4%	71.5%

야외음악당 및 휴게소가 포함되어 있는 관광휴게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71.5%이며 설치율은 89.4%로 나타났다. 건물 유형을 15개 군으로 분류한 것중에서 가장 설치율이 높은 군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설치율을 90.1%나타내어 비교적 설치율이 높은 건물 유형에 속하는 휴게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3) 기숙사

<표 36> 기숙사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기숙사	2,680	2,122	1,669	79.2%	62.3%
계	2,680	2,122	1,669	79.2%	62.3%

기숙사의 적정설치율은 62.3%이며 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 등을 고려한다면 기숙사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기숙사의 주출입구 접근로 부분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14) 공동주택

<표 37>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아파트	64,408	57,734	44,530	89.6%	69.1%
부대복리시설	2,576	2,457	1,988	95.4%	77.2%
연립주택	17,456	13,139	8,723	75.3%	50.0%
다세대주택	100,726	80,780	55,244	80.2%	54.8%
계	185,166	154,110	110,485	83.2%	59.7%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되는 공동주택군의 적정설치율

은 59.7%이며 설치율은 83.2%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주출입구 접근로는 각 동별로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설치율을 높게 평가받기 매우 어렵다. 하지만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출입구 접근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적정설치율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적정설치율이 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규모의 공동주택에서도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시 보행자 우선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5) 공원

<표 38> 공원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도시공원	12,856	10,722	7,493	83.4%	58.3%
자연공원	384	298	174	77.6%	45.3%
계	13,240	11,020	7,667	83.2%	57.9%

도시공원뿐 아니라 자연공원까지 포함되는 공원의 적정설치율은 57.9%이며 설치율은 83.2%이다.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주출입구 접근로가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적정설치율이 58.3%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도시공원에서도 장애인 등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자연공원에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접근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50.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7.4%로 평가되었다.

<표 39>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1211	승강설비와 가까운장소	53,805	39,129	28,617	72.7%	53.2%
1212	주차면수 확보	53,805	38,414	32,556	71.4%	60.5%
1213	주차구역 크기	53,805	35,167	30,825	65.4%	57.3%
1221	바닥 및 입식안내표지	53,805	37,680	21,438	70.0%	39.8%
1222	안전통행로	53,805	30,970	23,228	57.6%	43.2%
계		269,025	181,360	136,664	67.4%	50.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5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주요내용은 주차장의 설치위치, 크기 및 주차대수와 주차구역의 안내표시 및 안전통행로이다.

이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39.8%의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이며 그 다음으로 낮은 것은 안전통행로로 43.2%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법정

주차대수만큼 설치되고 있으나 안내표시는 바닥에 휠체어표시와 입식 안내표시를 함께 하여야 하나 바닥에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같이 안내표시의 설치율이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차후에 건물의 출입구나 승강기 홀 등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단차가 없어야 하고 통행로의 폭도 1.2미터이상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나 통행로가 있기는 하되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통로 상에 단차는 물론 차량을 포함한 각종 장애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비해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면수 확보는 60.5%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세부항목 중에서는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대해 적정한 비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설치된 주차구역에 대한 안내표시의 확충과 주차후에 건물의 출입구 등으로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통행로 설치에 대해 지금보다 좀 더 명확한 법적 규제를 한다면 본 세부항목에 대한 적정설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그림 7 참조)



(그림 5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황사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0>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50,670	37,222	30,970	73.5%	61.1%
문화 및 집회시설	23,415	14,969	11,006	63.9%	47.0%
판매 및 영업시설	6,610	4,641	3,005	70.2%	45.5%
의료시설	8,575	6,438	4,407	75.1%	51.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60,415	41,046	29,446	67.9%	48.7%
업무시설	37,560	26,290	20,459	70.0%	54.5%
숙박시설	6,865	3,712	2,760	54.1%	40.2%
공장	25,055	12,046	8,641	48.1%	34.5%
자동차관련시설	7,315	4,271	3,170	58.4%	43.3%
공공용시설	1,225	979	661	79.9%	54.0%
관광휴게시설	1,065	867	678	81.4%	63.7%
공동주택	40,255	28,879	21,461	71.7%	53.3%
계	269,025	181,360	136,664	67.4%	50.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5개 건물군중에서 12개 건물군만 해당되면 건물군 중에서는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군은 휴게소등이 포함되는 관광휴게시설군이다.

또한 44개 건물 유형중에서 29개 유형만이 의무 설치이며 해당 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65.4%로 평가된 휴게소이며 6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 유형은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공공업무시설(청사)에 불과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치율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15개의 건물 유형군으로 분류하였으며 15개 건물 유형군 중에서 운동시설, 기숙사, 공원군은 해당이 없어 제외한다.

1) 근린생활시설

<표 41>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읍면동사무소	41,835	31,380	26,223	75.0 %	62.7%
공공도서관	620	453	341	73.1 %	55.0%
의원, 한의원 등	8,215	5,389	4,406	65.6 %	53.6%
계	50,670	37,222	30,970	73.5 %	61.1%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설치율은 61.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3.5%로 평가되었다.

근린생활시설군에서는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의원·한의원이 대상 건물유형이며 대부분의 적정설치율이 50~60%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의원·한의원의 경우와 같이 차량의 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시설의 적정설치율이 53.6%이면서 설치율도 65.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근린생활시설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설치율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표 42>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종교집회장	18,210	11,232	8,457	61.7%	46.4%
공연장·관람장	1,890	1,527	1,080	80.8%	57.1%
집회장	1,675	1,068	679	63.8%	40.5%
전시장 등	1,640	1,142	790	69.6%	48.2%
계	23,415	14,969	11,006	63.9%	47.0%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설치율은 47.0%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3.9%로 평가되었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대부분 건물 유형의 적정설치율이 40~50%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설치율에서는 공연장·관람장이 80.8%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건물유형 대부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하되 안내표시 등의 설치가 매우 미비하거나 규격 및 설치위치 등 전반적인 설치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3) 판매 및 영업시설

<표 43>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도소매시장	6,610	4,641	3,005	70.2%	45.5%
계	6,610	4,641	3,005	70.2%	45.5%

판매 및 영업시설인 도·소매점의 경우에도 적정설치율은 45.4%이며 설치율은 70.3%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소매점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에도 주차구역이 설치되는 되어 있으나 안내표시 등의 미설치 등으로 설치수준이 높지 않은 결과로 나타내고 있다.

4) 의료시설

<표 44>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병원 등	7,335	5,530	3,795	75.4%	51.7%
장례식장	1,240	908	612	73.2%	49.4%
계	8,575	6,438	4,407	75.1%	51.4%

병원, 장례식장이 포함되는 의료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정설치율은 다른 시설보다 약간 높은 51.4%이며 설치율은 75.1%이다. 장애인이나 환자가 많은 의료시설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율이 낮은 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행히도 병원이 장례식장보다 적정설치율이 약간 높게 평가되고 있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4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학교	30,960	20,649	13,779	66.7%	44.5%
특수학교	430	307	198	71.4%	46.0%
교육원, 학원등	14,435	9,652	7,401	66.9%	51.3%
도서관	1,315	1,143	822	86.9%	62.5%
노인복지시설	7,470	5,167	4,080	69.2%	54.6%
장애인복지시설	4,250	3,118	2,455	73.4%	57.8%
생활권수련시설	1,555	1,010	711	65.0%	45.7%
계	60,415	41,046	29,446	67.9%	48.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서는 아동관련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 유형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설치 하여야 하는데 적정설치율은 48.7%이며 설치율은 67.9%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학교의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은 40%대이며 노인 및 장애인관련 복지시설의 적정설치율도 50%대로 매우 비교적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도서관의 경우에는 적정설치율이 62.5%로 높지는 않지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서는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6) 업무시설

<표 46>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업무시설(청사)	9,350	7,739	5,641	82.8%	60.3%
사무소 등	28,210	18,551	14,818	65.8%	52.5%
계	37,560	26,290	20,459	70.0%	54.5%

공공업무시설(청사 등) 및 사무소 등의 일반업무시설이 포함되는 업무시설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정설치율은 54.5%이며 설치율은 70.0%이다.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은 일반업무시설보다는 약간 높은 60.3%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다지 높은 설치율로 볼 수 없다. 공공업무시설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잘 설치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입식 안내설치나 안전보행통로의 미설치 혹은 부적정 설치는 여전한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7) 숙박시설

<표 47>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일반숙박시설	6,865	3,712	2,760	54.1%	40.2%
계	6,865	3,712	2,760	54.1%	40.2%

숙박시설중에서 여관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이 해당되며 적정설치율은 40.2%이며 설치율은 54.1%의 낮은 설치율을 보여주고 있다. 호텔과 같은 관광숙박시설에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은 설치되고 있으나 안전보행통로와 같은 주차후 건물 이용자의 안전접근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8) 공장

<표 48> 공장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장	25,055	12,046	8,641	48.1%	34.5%
계	25,055	12,046	8,641	48.1%	34.5%

공장은 모든 유형의 건물중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34.5%로 평가되었고 설치율도 48.1%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장애인이 근무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거의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9) 자동차관련시설

<표 49> 자동차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주차장	6,460	3,769	2,801	58.3%	43.4%
운전학원	855	502	369	58.7%	43.2%
계	7,315	4,271	3,170	58.4%	43.3%

주차장과 운전학원이 포함된 자동차관련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정설치율은 43.3%이며 설치율은 58.4%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요즘과 같이 주차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유료로라도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거나 아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매우 불편할 수 있다.

10) 공공용시설

<표 50>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방송국 등	275	231	146	84.0%	53.1%
전신전화국등	810	636	439	78.5%	54.2%
교도소 등	140	112	76	80.0%	54.3%
계	1,225	979	661	79.9%	54.0%

방송국, 전신전화국, 교도소 등이 포함된 공공용시설의 적정설치율은 54.0%이며 설치율은 79.9%이다. 공공용시설은 대부분의 건물유형에서 적정설치율과 설치율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는 많이 되고 있으나 안내표시 등의 설치가 미비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11) 관광휴게시설

<표 51> 관광휴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야외음악당 등	140	96	73	68.6%	52.1%
휴게소 등	925	771	605	83.4%	65.4%
계	1,065	867	678	81.4%	63.7%

야외음악당 및 휴게소 등이 포함되는 관광휴게시설의 적정설치율은 63.7%이며 설치율은 81.4%이다. 관광휴게시설군에는 적정설치율이 65.4%로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인 휴게소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도 휴게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수준은 매우 높은 편으로, 설치된 위치나 규격 안내표시 등 대부분이 잘 설치되어 있어 휴게소 이용 휠체어사용고객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2) 공동주택

<표 52>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아파트	40,255	28,879	21,461	71.7%	53.3%
계	40,255	28,879	21,461	71.7%	53.3%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의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이며 아파트의 적정설치율은 53.3%이며 설치율은 71.7%이다. 아파트 단지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는 많이 되어 있으나 적절한 크기로 설치되거나 입식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적정설치율은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43.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1.7%로 평가되었다.

<표 53>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1311	높이차이제거	106,054	71,920	42,903	67.8%	40.5%
1312	경사로	106,054	80,064	50,253	75.5%	47.4%
계		212,108	151,984	93,156	71.7%	43.9%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에는 2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주요내용은 휠체어사용자의 주출입구 접근 가능성을 위한 높이차이제거와 경사로 설치이다.

두 세부항목의 적정설치율은 비슷하게 40%대이지만 2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차이제거 항목이 조금 더 낮은 40.5%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사로의 폭 설치기준도 47.4%로 적정설치율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출입구에 계단을 설치하는 건물이 아직도 많아 계단을 설치한 후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경사로의 기울기를 1/12이하로 적정하게 설치하지 못하고 1/8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1미터 이하의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울기를 1/8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그 이전에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물에서는 1/8로 설치된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사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폭이 1.2미터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대부분 경사로가 핸드레일을 포함한 폭을 1.2미터로 설치하고 있어 설치율은 75.5%이나 적정설치율이 47.4%밖에 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항목의 적정설치율 향상은 처음부터 건물의 입구에 높이차이를 만드는 계단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건물입구에 계단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자연배수 정도의 기울기로 출입구를 구성한다면 높이차이제거의 적정설치율 향상은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그림 8 참조)



(그림 60)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현황사진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54>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59,416	40,792	22,380	68.7	37.7
문화 및 집회시설	9,366	7,135	4,459	76.2	47.6
판매 및 영업시설	2,644	2,090	1,544	79.0	58.4
의료시설	3,430	3,149	2,125	91.8	62.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2,426	37,115	21,672	70.8	41.3
운동시설	1,746	1,258	892	72.1	51.1
업무시설	15,024	12,361	7,920	82.3	52.7
숙박시설	7,236	5,279	3,729	73.0	51.5
공장	10,022	6,052	3,683	60.4	36.7
자동차관련시설	2,926	2,110	1,487	72.1	50.8
공공용시설	490	421	258	85.9	52.7
관광휴게시설	426	369	257	86.6	60.3
기숙사	670	368	242	54.9	36.1
공동주택	46,286	33,485	22,508	72.3	48.6
계	212,108	151,984	93,156	71.7%	43.9%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는 15개 건물군으로 볼 때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군은 휴게소 등이 포함되는 관광휴게시설군이다. 또한 공원을 제외한 모든 건물 유형에서 의무 설치이며 해당 건물 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71.5%로 평가된 특수학교이며 60% 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 유형은 공연장·관람장, 병원, 도서관,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아파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유형이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치율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15개의 건물군으로 분류하였으며 15개 건물군 중에서 공원군은 해당이 없어 제외한다.

1) 근린생활시설

<표 55>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소매점, 이용원	18,118	11,515	7,134	63.6%	39.4%
일반음식점	15,168	8,800	5,180	58.0%	34.2%
일반목욕장	2,050	1,216	701	59.3%	34.2%
안마시술소	186	115	78	61.8%	41.9%
읍면동사무소	16,734	13,957	5,963	83.4%	35.6%
공공도서관	248	223	135	89.9%	54.4%
대피소	202	149	120	73.8%	59.4%
공중화장실	3,424	2,334	1,391	68.2%	40.6%
의원, 한의원 등	3,286	2,483	1,678	75.6%	51.1%
계	59,416	40,792	22,380	68.7%	37.7%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항목의 적정설치율은 37.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8.7%로 평가되어 공장 및 기숙사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건물군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읍·면·동사무소 및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80~90% 설치율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의 수준이 30~50%대로 낮은 것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 설치되는 경사로의 설치 기울기 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에 맞지 않은 편의시설 설치 는 설치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실제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시설이용약자들의 건물 이용에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표 56>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	---------	-----	-------	-----	-------

종교집회장	7,284	5,387	3,262	74.0%	44.8%
공연장·관람장	756	687	508	90.9%	67.2%
집회장	670	512	323	76.4%	48.2%
전시장 등	656	549	366	83.7%	55.8%
계	9,366	7,135	4,459	76.2%	47.6%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적정설치율은 47.6%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6.2%로 평가되었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는 공연장·관람장이 가장 높은 적정설치율인 67.2%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교집회장이 44.8%로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종교집회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건물 출입구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계단과 함께 규정에 잘 맞추어 설치되어야 하는 경사도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적정설치율에서 높은 설치율로 평가받은 공연장·관람장의 설치율도 90.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연장·관람장은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해 다소의 보완으로 적정설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판매 및 영업시설

<표 57>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도·소매시장	2,644	2,090	1,544	79.0%	58.4%
계	2,644	2,090	1,544	79.0%	58.4%

판매 및 영업시설의 도·소매시장은 적정설치율이 58.4%이며 설치율은 79.0%로 높지 않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도·소매시장의 경우에는 기존 건물들이 많아 대부분 증·개축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건물의 경우 출입구에 계단 등의 단차 제거가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4) 의료시설

<표 58>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병원 등	2,934	2,726	1,867	92.9%	63.6%
장례식장	496	423	258	85.3%	52.0%
계	3,430	3,149	2,125	91.8%	62.0%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의료시설 적정설치율은 62.0%이며 설치율은 91.8%로 나타났다.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공연장·관람장 다음으로 적정설치율이 높은 병원 건물유형이 포함된 건물군이지만 설치율은 63.6%로 높지 않다. 사실상 병원의 경우에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적정설치율이 90%이상은 되어야만 장애인이나 노인, 환자 등 시설이용약자들이 건물을 이용

하는데 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90%대의 설치율을 보완하여 적정설치율로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59>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학교	12,384	9,844	5,979	79.5%	48.3%
특수학교	172	161	123	93.6%	71.5%
교육원, 학원 등	5,774	4,306	2,854	74.6%	49.4%
도서관	526	506	335	96.2%	63.7%
아동관련시설	28,260	17,749	9,394	62.8%	33.2%
노인복지시설	2,988	2,598	1,669	86.9%	55.9%
장애인복지시설	1,700	1,478	1,040	86.9%	61.2%
생활권수련시설	622	473	278	76.0%	44.7%
계	52,426	37,115	21,672	70.8%	41.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특수학교, 학교 등 다양한 건물유형이 포함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41.3%이며 설치율은 70.8%로 적정설치율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설치율도 높지 않은 편이다. 특수학교는 적정설치율이 71.5%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건물유형에서 가장 높다. 또한 복지관련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적정설치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61.3%를 나타내고 있고 도서관의 적정설치율이 63.7%를 나타내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적정설치율이 55.9%로 높지 않다.

6) 운동시설

<표 60> 운동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운동시설	1,746	1,258	892	72.1%	51.1%
계	1,746	1,258	892	72.1%	51.1%

운동시설의 적정설치율은 51.1%이며 설치율은 72.1%로 높지 않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운동장뿐만 아니라 체육관 등의 건물 유형이 포함되어 있어 주출입구에 계단 등의 단차가 있는 경우로 인해 설치되는 경사로의 기울기 등이 적정하지 않게 설치되고 있어 적정설치율이 저하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7) 업무시설

<표 61>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업무시설(청사)	3,740	3,592	1,977	96.0%	52.9%
사무소 등	11,284	8,769	5,943	77.7%	52.7%

계	15,024	12,361	7,920	82.3%	52.7%
---	--------	--------	-------	-------	-------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52.7%이며 설치율은 82.3%로 높지 않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공공업무와 일반업무시설 모두 적정설치율은 52%대로 비슷하게 평가되었으나 설치율에서는 공공업무시설이 96.0%로 아주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공공업무시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비대상시설이 법 시행이전의 시설로써 계단 등의 출입구 단차가 있는 건물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8) 숙박시설

<표 62>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일반숙박시설	2,746	1,981	1,319	72.1%	48.0%
여관	4,490	3,298	2,410	73.5%	53.7%
계	7,236	5,279	3,729	73.0%	51.5%

숙박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51.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3.0%로 평가되어 높지 않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9) 공장

<표 63> 공장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장	10,022	6,052	3,683	60.4%	36.7%
계	10,022	6,052	3,683	60.4%	36.7%

공장의 적정설치율은 36.7%이며 설치율은 60.4%로 평가되었다. 적정설치율은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운전학원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공장 건물에서 출입구 높이차이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자동차 관련시설

<표 64>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주차장	2,584	1,907	1,382	73.8%	53.5%
운전학원	342	203	105	59.4%	30.7%
계	2,926	2,110	1,487	72.1%	50.8%

주차장이나 운전학원으로 구성된 자동차관련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50.8%이며 설치율은 72.1%로 대부분의 건물군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11) 공공용시설

<표 65>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방송국 등	110	93	65	84.5%	59.1%
전신전화국등	324	277	165	85.5%	50.9%
교도소 등	56	51	28	91.1%	50.0%
계	490	421	258	85.9%	52.7%

방송국, 전신전화국, 교도소가 포함되는 공공용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52.7%이며 설치율은 85.9%로 평가되었다. 공공용시설군 대부분의 적정설치율이 50%대에 머물러 주출입구 높이차이가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다른 시설군에 비해 설치율이 다소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일정 수준의 보완을 통해 다소나마 적정설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2) 관광휴게시설

<표 66> 관광휴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야외음악당 등	56	45	33	80.4%	58.9%
휴게소 등	370	324	224	87.6%	60.5%
계	426	369	257	86.6%	60.3%

야외음악당 및 휴게소가 포함되어 있는 관광휴게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60.3%이며 설치율은 86.6%로 나타났다. 휴게소 등의 건물 유형에서 적정설치율이 60.5%를 나타냄으로써 다른 건물 유형에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13) 기숙사

<표 67> 기숙사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기숙사	670	368	242	54.9%	36.1%
계	670	368	242	54.9%	36.1%

기숙사의 적정설치율은 36.1%이며 설치율은 54.9%로 나타났다. 모든 건물 유형중에서 적정 및 설치율 모두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기숙사를 설치하면서 대부분 건물 출입구에 계단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14) 공동주택

<표 68>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매개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아파트	16,102	14,329	9,947	89.0%	61.8%
부대복리시설	644	534	424	82.9%	65.8%
연립주택	4,364	2,607	1,523	59.7%	34.9%
다세대주택	25,176	16,015	10,614	63.6%	42.2%
계	46,286	33,485	22,508	72.3%	48.6%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되는 공동주택군의 적정설치율은 48.6%이며 설치율은 72.3%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은 적정설치율이 60%이상으로 다른 건물유형에 비해 다소 높으며 적정설치율도 80%대로 다른 시설에 비해 다소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아파트는 용도변경 등의 건축적 행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법 시행이후 신축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유형에 비해 적정 및 설치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2-2.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로 구성된 내부시설의 설치율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구(문)

출입구(문)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56.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6.3%로 평가되었다.

<표 69>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2111	문턱높이차이, 점형블록	104,761	75,734	25,260	72.3%	24.1%
2112	통과 유효폭	104,761	99,423	84,221	94.9%	80.4%
2113	전·후면 유효거리	104,761	92,570	68,537	88.4%	65.4%
2114	손잡이 높이	104,760	97,208	60,946	92.8%	58.2%
2121	문턱 높이차이	104,760	91,340	66,920	87.2%	63.9%
2122	통과유효폭	104,760	99,478	79,638	95.0%	76.0%
2123	전·후면 유효거리	104,760	95,725	69,846	91.4%	66.7%
2124	손잡이 높이	104,760	71,693	18,257	68.4%	17.4%
계		838,083	723,171	473,625	86.3%	56.5%

출입구(문)에는 8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주요내용은 주출입구(문)의 점자블록 설치, 유효폭, 전후면 유효거리, 손잡이 설치높이 등이며, 내부출입문의 문턱 높이차이 제거, 유효폭, 전후면 유효거리, 손잡이 설치높이 및 점자표지판 부착이다.

이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17.4%의 내부 주요실의 출입문 손잡이 설치 높이 및 점자표지판 부착여부 항목이다. 점자표지판 부착여부는 내부시설 전체 세부항목중에서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적정설치율이 낮은 항목이 주출입구(문)의 문턱제거와 점자블록 설치항목이다.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내부 주요실의 출입문 손잡이 설치높이와 점자표지판 미부착은 대부분의 건물 내부에서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 주요실 입구에 부착되어야 할 점자표지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엇으로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각장애인 관련기관이 아니면 점자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점자표지판이 기성품으로 판매되지 않는 것이 또한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주출입구(문) 앞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의 경우에는 블록 제품도 매우 다양하고 설치도 비교적 많이 되고 있지만 0.3x0.3미터의 표준블록을 사용하기 보다는 일반 매트 등을 설치하거나 돌출점만을 바닥에 볼팅하여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출입구 통과 유효폭의 경우에는 주출입구(문)은 80.4%의 매우 높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 주요실의 출입문 유효폭은 76.0%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출입구(문)이 보통 양여단이 문이 설치되지만 내부 실의 출입문은 보통 외여단이문이 설치되므로 적정한 문폭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 중 주출입구(문)의 점형블록 설치에 대해서는 건물에서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하더라도 방풍실과 같은 경우에는 매트를 설치하여 바닥의 질감차이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 주요실의 출입문에 설치되는 점자표지판은 스티커형의 대중적인 제품을 만들어 보급한다면 적정설치율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참조)



(그림 68) 출입구(문) 현황사진

출입구(문)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70>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237,664	201,688	131,522	84.9%	55.3%
문화 및 집회시설	37,459	33,142	22,790	88.5%	60.8%
판매 및 영업시설	10,576	9,573	6,386	90.5%	60.4%
의료시설	13,720	12,965	10,031	94.5%	73.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09,696	178,718	110,815	85.2%	52.8%
운동시설	6,984	6,213	4,476	89.0%	64.1%
업무시설	60,096	55,285	40,222	92.0%	66.9%
숙박시설	28,944	25,489	17,135	88.1%	59.2%
공장	40,088	32,784	20,802	81.8%	51.9%
자동차관련시설	1,368	1,113	677	81.4%	49.5%
공공용시설	1,960	1,841	1,385	93.9%	70.7%
관광휴게시설	1,704	1,597	1,255	93.7%	73.7%
기숙사	2,680	2,180	1,422	81.3%	53.1%
공동주택	185,144	160,583	104,707	86.7%	56.6%
계	838,083	723,171	473,625	86.3%	56.5%

내부시설이 없어 출입구(문)이 해당없는 공원(도시, 자연)을 제외한 14개 건물군중에서 야외 음악당이 포함된 관광휴게시설군이다. 또한 출입구(문)이 해당되는 42개 건물 유형중에서 적정 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81.3%로 평가된 야외음악당이며 7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 유형은 공공도서관, 공연장·관람장, 병원, 특수학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청사), 방송국, 전신전화국, 휴게소로 나타났다.

출입구(문)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치율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내부시설이 없는 공원을 제외한 14개의 건물군으로 분류하였다.

1) 근린생활시설

<표 71>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소매점, 이용원	72,472	59,685	36,945	82.4%	51.0%
일반음식점	60,672	49,495	31,206	81.6%	51.4%
일반목욕장	8,200	6,343	3,962	77.4%	48.3%
안마시술소	744	642	408	86.3%	54.8%
읍면동사무소	66,936	60,943	41,533	91.0%	62.0%
공공도서관	992	940	733	94.8%	73.9%
대피소	808	698	520	86.4%	64.4%
공중화장실	13,696	10,881	7,557	79.4%	55.2%
의원, 한의원 등	13,144	12,061	8,658	91.8%	65.9%
계	237,664	201,688	131,522	84.9%	55.3%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출입구(문)의 적정설치율은 55.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4.9%로 평가되었다.

근린생활시설군에서 공공도서관 유형의 적정설치율이 73.9%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전국에 124개 시설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많은 도서의 이동을 고려하여 출입문턱을 낮추고 도서의 반·출입을 위해 출입구(문)의 유효폭 및 전·후면 유효거리

가 넓게 설치되어 적정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반면,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게 평가된 건물유형은 일반목욕장인데 대부분의 일반목욕장이 소형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가장 이용이 많은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건물유형의 경우에도 적정설치율이 50% 초반대로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일반목욕장을 포함하여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의 출입문(문) 설치율이 낮은 것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경우 대지이용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보통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건물을 시공하면서 우수의 유입 등을 막기 위해 건물 출입구에 계단을 설치하면서 이로 인한 단차가 생긴 기존 건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표 72>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종교집회장	29,136	25,441	17,018	87.3%	58.4%
공연장,관람장	3,024	2,828	2,188	93.5%	72.4%
집회장	2,680	2,487	1,778	92.8%	66.3%
전시장 등	2,619	2,386	1,806	91.1%	69.0%
계	37,459	33,142	22,790	88.5%	60.8%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출입구(문)의 적정설치율은 60.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8.5%로 평가되었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공연장, 관람장 유형의 적정설치율이 72.4%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상시나 혹은 평상시 출입문을 이용할 때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반면, 종교집회장 유형의 적정설치율이 58.4%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는데 많은 수의 불교 사찰은 건축물의 특성상 고건축이 많기 때문에 이의 영향으로 종교집회장 용도의 설치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3) 판매 및 영업시설

<표 73>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도소매시장	10,576	9,573	6,386	90.5%	60.4%
계	10,576	9,573	6,386	90.5%	60.4%

*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의 계는 각 건물군별 설치율의 평균이 아님

판매 및 영업시설군에서 출입구(문)의 적정설치율은 60.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0.5%로

평가되었다.

4) 의료시설

<표 74>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병원 등	11,736	11,153	8,710	95.0%	74.2%
장례식장	1,984	1,812	1,321	91.3%	66.6%
계	13,720	12,965	10,031	94.5%	73.1%

의료시설군에서 출입구(문)의 적정설치율은 73.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4.5%로 평가되어 설치율이 높은 군에 속한다.

의료시설군에서 병원 유형 등의 시설 적정설치율이 74.2%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시설의 특성상 이동형 침대, 휠체어 등을 많이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입구(문)의 단차를 최소화하고, 통과 유효폭 및 전·후면 유효거리가 넓게 설치되어 적정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7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학교	49,536	44,909	30,839	90.7%	62.3%
특수학교	688	648	501	94.2%	72.8%
교육원, 학원 등	23,096	20,875	14,497	90.4%	62.8%
도서관	2,104	2,041	1,643	97.0%	78.1%
아동관련시설	113,040	91,050	49,950	80.5%	44.2%
노인복지시설	11,944	10,795	7,495	90.4%	62.8%
장애인복지시설	6,800	6,206	4,388	91.3%	64.5%
생활권수련시설	2,488	2,194	1,502	88.2%	60.4%
계	209,696	178,718	110,815	85.2%	52.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서 출입구(문)의 적정설치율은 52.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5.2%로 평가되었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서 도서관 유형의 적정설치율이 78.1%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도서의 이동을 고려하여 출입문턱을 낮추고 도서의 반·출입을 위해 출입구(문)의 유효폭 및 전·후면 유효거리가 넓게 설치되어 적정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아동관련시설 유형의 적정설치율이 44.2%로 전체 조사시설군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는데 다수의 아동관련시설의 경우 일반 주택을 아동관련시설로 용도변경하기 때문에 바닥 온돌 등으로 인한 단차가 발생하여 적정설치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6) 운동시설

<표 76> 운동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	---------	-----	-------	-----	-------

운동시설	6,984	6,213	4,476	89.0%	64.1%
계	6,984	6,213	4,476	89.0%	64.1%

운동시설군에서 출입구(문)의 적정설치율은 64.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9%로 평가되었다.

7) 업무시설

<표 77>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업무시설(청사)	14,960	14,353	11,076	95.9%	74.0%
사무소 등	45,136	40,932	29,146	90.7%	64.6%
계	60,096	55,285	40,222	92.0%	66.9%

업무시설군에서 출입구(문)의 적정설치율은 66.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2%로 평가되었다.

업무시설군에서 공공업무시설(청사) 유형과 사무소 유형의 설치율은 95.9%, 90.7%로 높게 평가되어 있으며 적정설치율은 각각 74%, 64.6%로 평가되어 있다. 설치율만 보면 편의증진법에 의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적정설치율과 설치율의 차이가 각각 21.4%, 26.1%로 큰 것으로 볼 때 적정 설치에 대한 인식과 정보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본다. 특히 사무소의 경우는 기존 미비한 시설들이 많아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시설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무소 유형의 출입구(문)을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8) 숙박시설

<표 78>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일반숙박시설	10,984	9,643	6,520	87.8%	59.4%
여관	17,960	15,846	10,615	88.2%	59.1%
계	28,944	25,489	17,135	88.1%	59.2%

숙박시설군은 일반숙박시설과 여관 유형으로 구분되며 출입구(문)의 적정설치율은 59.2%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8.1%로 평가되었다.

9) 공장

<표 79> 공장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장	40,088	32,784	20,802	81.8%	51.9%
계	40,088	32,784	20,802	81.8%	51.9%

공장에서 출입구(문)의 적정설치율은 51.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1.8%로 평가되었다. 공장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점자표지판등의 미설치가 대부분이어서 적정설치율이 낮게 평가되었다.

10) 자동차 관련시설

<표 80>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운전학원	1,368	1,113	677	81.4%	49.5%
계	1,368	1,113	677	81.4%	49.5%

실내공간이 없는 주차장을 제외한 자동차관련시설군 중 운전학원 용도의 적정설치율은 49.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1.4%로 평가되었다.

운전학원의 경우 시각장애이용 편의시설은 권장사항이라 점자블록이나 점자표지판으로 인하여 적정설치율이 낮게 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

11) 공공용시설

<표 81>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방송국 등	440	416	327	94.5%	74.3%
전신전화국등	1,296	1,219	913	94.1%	70.4%
교도소 등	224	206	145	92.0%	64.7%
계	1,960	1,841	1,385	93.9%	70.7%

방송국, 전신전화국, 교도소가 포함되는 공공용시설군 출입구(문)의 적정설치율은 70.7%이며 설치율은 93.9%로 평가되었다.

공공용시설군에서 방송국, 전신전화국 용도의 적정설치율은 74.3%, 70.4%로 70%이상으로 평가되었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교도소 용도의 적정설치율이 64.7%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교도소라는 시설상의 특성으로 출입구(문)에 시각장애인 관련시설 등을 거의 설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 관광휴게시설

<표 82> 관광휴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야외음악당 등	224	210	182	93.8%	81.3%
휴게소 등	1,480	1,387	1,073	93.7%	72.5%
계	1,704	1,597	1,255	93.7%	73.7%

야외음악당 및 휴게소가 포함되어 있는 관광휴게시설군 출입구(문)의 적정설치율은 73.7%이며 설치율은 93.7%로 나타났다.

건물 유형을 14개 군으로 분류한 것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군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시설군에 비해 실의 수가 적고 유동인구가 많아 문의 유효폭이 크고 전·후면 유효거리 충분히 확보하여 적정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13) 기숙사

<표 83> 기숙사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기숙사	2,680	2,180	1,422	81.3%	53.1%
계	2,680	2,180	1,422	81.3%	53.1%

기숙사 출입구(문)의 적정설치율은 53.1%이며 적정설치율은 81.3%로 나타났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장애학생의 진학을 등을 고려한다면 기숙사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기숙사의 출입구(문) 부분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14) 공동주택

<표 84>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아파트	64,408	60,220	44,280	93.5%	68.7%
부대복리시설	2,576	2,329	1,730	90.4%	67.2%
연립주택	17,456	13,905	8,585	79.7%	49.2%
다세대주택	100,704	84,129	50,112	83.5%	49.8%
계	185,144	160,583	104,707	86.7%	56.6%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되는 공동주택군 출입구(문)의 적정설치율은 56.6%이며 설치율은 86.7%로 나타났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적정설치율이 49.2%, 49.8% 로 매우 취약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건물 출입구에 1단 정도의 단을 설치하면서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나타나는 결과라고 본다.

나. 복도

복도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71.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9.9%로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표 85 >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2211	미끄럽지 않은 바닥	49,884	46,875	30,150	94.0%	60.4%
2212	복도바닥 단차	49,884	44,795	39,366	89.8%	78.9%
2213	상부 유효높이	49,884	42,929	37,446	86.1%	75.1%
계		149,652	134,599	106,962	89.9%	71.5%

복도에는 3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주요내용은 복도의 유효폭과 미끄럽지 않은 바

닥재질, 복도의 단차, 장애물없는 상부 유효높이이다.

이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60.4%의 복도 유효폭과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질 항목이다. 그 외 복도의 단차나 상부 유효높이의 경우에는 75%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양호하다.

복도의 유효폭과 바닥재질이 복도 중에서 설치율이 94.0%로 가장 높으면서 적정설치율은 60.4%로 가장 낮다. 이는 복도 유효폭은 비교적 법적 규정을 잘 지켜 설치되고 있으나 바닥재질은 대부분 석재로 마감된 후 물갈기 처리를 함으로써 물이 묻었을 때 매우 미끄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도에는 계단을 설치한 건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복도바닥 단차는 78.9%로 비교적 높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복도의 전반적인 적정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끄럽게 설치되는 모든 바닥면 중에서 일부 주요동선을 따라 바닥재의 일부분이라도 거칠게 마감하거나 카펫 등을 일부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그림 10 참조) 이와같은 방법을 적용한다면 실질적으로 목발사용자 등과 같이 미끄러운 바닥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는 이용자들에게는 이용 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6) 복도 현황사진

복도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86>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30,402	28,252	23,492	92.9	77.3
문화 및 집회시설	3,120	2,819	2,156	90.4	69.1
판매 및 영업시설	3,966	3,412	2,386	86.0	60.2
의료시설	5,145	4,864	3,812	94.5	74.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8,636	69,601	55,016	88.5	70.0
업무시설	22,536	20,477	16,121	90.9	71.5
숙박시설	4,119	3,640	2,802	88.4	68.0
자동차관련시설	513	423	310	82.5	60.4
공공용시설	249	229	188	92.0	75.5
공동주택	966	882	679	91.3	70.3

계	149,652	134,599	106,962	89.9%	71.5%
---	---------	---------	---------	-------	-------

복도는 15개 건물군 중에서 10개 건물군이 해당되는데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군은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군이다. 또한 44개 건물 유형중에서 29개 유형만이 의무 설치이며 해당 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81.2%로 평가된 방송국이며 7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 유형은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공연장·관람장, 병원, 장례식장, 특수학교,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청사), 방송국, 아파트부대복리시설로 나타났다.

복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치율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15개의 건물 유형군으로 분류하였으며 15개 건물 유형군 중에서 운동시설, 공장, 관광휴게시설, 기숙사, 공원군은 해당이 없어 제외한다.

1) 근린생활시설

<표 87>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읍면동사무소	25,101	23,420	19,781	93.3%	78.8%
공공도서관	372	345	267	92.7%	71.8%
의원, 한의원 등	4,929	4,487	3,444	91.0%	69.9%
계	30,402	28,252	23,492	92.9%	77.3%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복도의 적정설치율은 77.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2.9%로 평가되었다.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의원, 한의원 복도의 적정설치율이 70%대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설치율도 90%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바닥 마감재의 경우 돌로 마감한 후에 물갈기를 한 경우가 많아 매우 미끄러워 설치율과 적정설치율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돌바닥의 물갈기 처리 등은 건물의 유지관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물갈기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건물이용자의 주동선인 입구에서 엘리베이터홀 및 화장실 등과 같은 구간 일부분은 잔다듬 등의 처리를 하도록 하여 목발이용자나 높은 굽의 구두를 신은 여성이용자 등의 안전한 건물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표 88>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연장,관람장	1,134	1,052	817	92.8%	72.0%
집회장	1,005	916	683	91.1%	68.0%

전시장 등	981	851	656	86.7%	66.9%
계	3,120	2,819	2,156	90.4%	69.1%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복도의 적정설치율은 69.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0.4%로 평가되었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의 경우 적정설치율이 복도의 전체 적정설치율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내부 홀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설치된 계단 혹은 에스컬레이터 하부는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계단 혹은 에스컬레이터 하부공간에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하여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핸드레일 등의 설비 혹은 소파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적정설치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회장이나 전시장 등의 바닥은 물갈기 등의 방식으로 바닥마감을 미끄럽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목발사용자 등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복도바닥의 일부분이라도 미끄럽지 않게 마감하는 방법 등을 적용한 사례를 널리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판매 및 영업시설

<표 89>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도소매시장	3,966	3,412	2,386	86.0%	60.2%
계	3,966	3,412	2,386	86.0%	60.2%

판매 및 영업시설군에서 복도의 적정설치율은 60.2%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6%로 평가되어 29개의 유형 중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소매시장의 중 재래시장의 경우 가판대로 인하여 통로 유효폭을 확보하기 힘들며, 대형마트의 경우 무빙워크 하부공간 등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위험공간으로 노출되어 있어 적정설치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4) 의료시설

<표 90>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병원 등	4,401	4,176	3,275	94.9%	74.4%
장례식장	744	688	537	92.5%	72.2%
계	5,145	4,864	3,812	94.5%	74.1%

의료시설군에서 복도의 적정설치율은 74.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4.5%로 평가되어 설치율이 높은 군에 속한다.

의료시설군의 경우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시설이용약자이므로 복도의 재질은 최대한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9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학교	18,576	16,809	12,820	90.5%	69.0%
특수학교	258	238	194	92.2%	75.2%
교육원, 학원등	8,661	7,911	5,880	91.3%	67.9%
도서관	789	758	598	96.1%	75.8%
아동관련시설	42,390	36,587	29,686	86.3%	70.0%
노인복지시설	4,479	4,116	3,361	91.9%	75.0%
장애인복지시설	2,550	2,385	1,901	93.5%	74.5%
생활권수련시설	933	797	576	85.4%	61.7%
계	78,636	69,601	55,016	88.5%	7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서 복도의 적정설치율은 70%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8.5%로 평가되었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서 아동관련시설용도와 교육원, 학원용도의 경우 소규모 시설이 상당수이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및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복도의 경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이 낮게 평가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6) 업무시설

<표 92>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업무시설(청사)	5,610	5,414	4,457	96.5%	79.4%
사무소 등	16,926	15,063	11,664	89.0%	68.9%
계	22,536	20,477	16,121	90.9%	71.5%

업무시설군에서 복도의 적정설치율은 71.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0.9%로 평가되었다. 업무시설군에서 사무소의 경우 설치율은 89%, 적정설치율은 68.9% 평가된 것을 볼 수 있다. 내부 복도 사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바닥이 미끄럽거나 시각장애인 보행상의 장애물 등 안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개선되어야만 적정설치율과 설치율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7) 숙박시설

<표 93>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일반숙박시설	4,119	3,640	2,802	88.4%	68.0%
계	4,119	3,640	2,802	88.4%	68.0%

숙박시설군의 일반숙박시설유형 복도의 적정설치율은 6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8.4%로 평가되었다.

8) 자동차 관련시설

<표 94>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운전학원	513	423	310	82.5%	60.4%
계	513	423	310	82.5%	60.4%

자동차관련시설군 중 운전학원 복도의 적정설치율은 60.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2.5%로 평가되었다.

9) 공공용시설

<표 95>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방송국 등	165	158	134	95.8%	81.2%
교도소 등	84	71	54	84.5%	64.3%
계	249	229	188	92.0%	75.5%

방송국, 교도소가 포함되는 공공용시설군 복도의 적정설치율은 75.5%이며 설치율은 92%로 평가되었다.

공공용시설군에서 방송국 용도의 적정설치율은 81.2%로 29개의 유형 중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다른 건물유형에 비해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사이의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은 것은 적정설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10) 공동주택

<표 96>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복도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부대복리시설	966	882	679	91.3%	70.3%
계	966	882	679	91.3%	70.3%

공동주택군 중 아파트부대복리시설 복도의 적정설치율은 70.3%이며 설치율은 91.3%로 나타났다.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등의 시설로 구성되는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에 복도의 적정설치율이 다소 높은 것은 대부분 간단한 부대복리시설의 구조 등으로 복도가 복잡하게 구성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다. 계단

계단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57.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9.1%로 시설유형 면적에 따라 권장인 곳도 많으며 장애인을 위한 실을 1층에 설치하면 권장인 유형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낮게 평가되었다.

<표 97>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23111	유효폭	57,935	54,377	44,079	93.9%	76.1%
23112	디딤판·철퍀면	57,935	53,366	42,898	92.1%	74.0%
23113	손잡이 굽기	57,932	47,524	25,332	82.0%	43.7%
23114	점형블록, 점자표기	57,932	27,938	20,889	48.2%	36.1%
계		231,734	183,205	133,198	79.1%	57.5%

계단에는 4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주요내용은 계단의 유효폭과 디딤판의 높이 및 너비, 손잡이, 점형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이다.

이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36.1%의 점형블록 설치이며 그 다음으로 적정설치율이 낮은 항목은 계단 손잡이 설치로 43.7%이다. 특히 계단 손잡이 설치의 설치율은 82.0%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적정설치율이 40%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계단에 설치되는 손잡이가 손잡이라기 보다는 난간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계단에는 난간을 설치하는데 난간은 손잡이처럼 가는 것으로 설치하게 되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50mm이상의 굽고 튼튼한 난간으로 설치하여야 하지만 그 난간을 손잡이로 이용하는 것은 높이나 굽기 모두 부적절하기 때문에 난간옆에 L자 형으로 38mm굽기의 손잡이를 다시 적절한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그림 11 참조)

또한 계단의 단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서는 반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황색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보통 계단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이라고 하면 층간으로만 구분하거나 전층기준으로 시작과 끝나는 지점으로 여겨 중간 계단참 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점자표지판을 동시에 붙여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단의 전반적인 적정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단옆의 난간에 설치되는 손잡이를 누구나 잡기 편리한 32~38mm의 손잡이를 잘 설치해주고 손잡이와 함께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계단폭만큼 설치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특히 시각장애인 중에서 약시인의 경우에는 노출된 계단의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승강기보다 더 빈번하게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계단의 부분 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과 점자표지판을 적절히 설치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전수조사시에 층간 이동을 위해 한 건물에 설치된 계단·승강기·경사로의 경우, 설치된 모든 수직이동 수단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한 승강기의 점수와 편의시설을 적용·설치하지 않은 계단의 점수도 동시에 조사하여 설치율을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계단의 전체 설치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음을 언급한다.

손잡이가 잘 설치된 계단 난간1	손잡이가 잘 설치된 계단 난간2
-------------------	-------------------



정형블록이 잘 설치된 계단

점자표지판이 잘 설치된 계단

(그림 82) 계단 현황사진

계단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98>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40,536	33,540	26,362	82.7	65.0
문화 및 집회시설	4,160	3,177	2,251	76.4	54.1
판매 및 영업시설	5,288	3,810	2,602	72.0	49.2
의료시설	6,860	5,551	3,880	80.9	56.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04,842	82,528	61,793	78.7	58.9
업무시설	30,048	23,413	15,843	77.9	52.7
숙박시설	5,492	3,765	2,384	68.6	43.4
자동차관련시설	684	463	362	67.7	52.9
공공용시설	332	256	189	77.1	56.9
공동주택	33,492	26,702	17,532	79.7	52.3
계	231,734	183,205	133,198	79.1%	57.5

계단은 10개 건물군에서 해당되며 해당 건물군 중에서 가장 적정설치율이 높은 건물군은 읍·면·동사무소가 포함된 근린생활시설군이다. 또한 44개 건물 유형중에서 30개 건물유형만이 의무 설치이며 해당 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69.5%로 평가된 특수학교이며 6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 유형은 읍·면·동사무소, 특수학교,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불과하다. 읍·면·동사무소나 도서관 혹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은 저층으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승강기 등의 수직이동수단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들이 많은 편이므로 비교적 계단의 적정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본다.

1) 근린생활시설

<표 99>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읍면동사무소	33,468	28,158	22,698	84.1%	67.8%
공공도서관	496	402	286	81.0%	57.7%
의원, 한의원 등	6,572	4,980	3,378	75.8%	51.4%
계	40,536	33,540	26,362	82.7%	65.0%

근린생활시설군에서 계단의 적정설치율은 6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2.7%로 평가되었다.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읍·면·동사무소의 적정설치율이 67.8%, 설치율 84.1%로 30개의 유형 중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저층이면서 오래된 건물이 많은 읍·면·동사무소는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단의 설치율이 높게 평가된 것이지만 향후에는 가능한 승강기 등이 적극적으로 설치되어 휠체어사용자 등의 공공건물 수직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표 100>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연장, 관람장	1,512	1,211	881	80.1%	58.3%
집회장	1,340	970	657	72.4%	49.0%
전시장 등	1,308	996	713	76.1%	54.5%
계	4,160	3,177	2,251	76.4%	54.1%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계단의 적정설치율은 54.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6.4%로 평가되었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는 건축의 디자인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면서 계단에 시각장애인용 표준형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 실내 조명등의 빛반사나 물청소로 인한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러운 재질의 점자블록 보다는 표준형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 및 집회시설군 중 공연장, 관람장 용도 및 집회장 용도의 경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계단의 경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이 낮게 평가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3) 판매 및 영업시설

<표 101>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도소매시장	5,288	3,810	2,602	72.0%	49.2%
계	5,288	3,810	2,602	72.0%	49.2%

판매 및 영업시설군에서 계단의 적정설치율은 49.2%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2%로 평가되어 적정설치율이 낮은 시설군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도소매시장 중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이 많아 계단의 구조를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적정설치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단의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는 승강기를 건물외부로 붙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의료시설

<표 102>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병원 등	5,868	4,809	3,362	82.0%	57.3%
장례식장	992	742	518	74.8%	52.2%
계	6,860	5,551	3,880	80.9%	56.6%

의료시설군에서 계단의 적정설치율은 56.6%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0.9%로 평가되었다. 몸이 불편한 이용자들이 많은 의료시설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적정설치율은 아주 낮은 평가이다. 따라서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계단에 설치된 손잡이의 경우 계단의 난간과는 구분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양방향 이용자를 위해 계단 양쪽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적정설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시설군 중 장례식장 용도의 경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계단의 경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이 낮게 평가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10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학교	24,766	18,162	12,499	73.3%	50.5%
특수학교	344	303	239	88.1%	69.5%
교육원, 학원등	11,548	8,706	5,767	75.4%	49.9%
도서관	1,052	907	657	86.2%	62.5%
아동관련시설	56,520	45,690	36,041	80.8%	63.8%
노인복지시설	5,968	4,982	3,804	83.5%	63.7%
장애인복지시설	3,400	2,875	2,181	84.6%	64.1%
생활권수련시설	1,244	903	605	72.6%	48.6%
계	104,842	82,528	61,793	78.7%	58.9%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서 계단의 적정설치율은 58.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8.7%로 평가되었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서 특수학교의 경우 30개의 유형중 가장 높은 69.5%의 적정설치율로 평가된 것을 볼 수 있으나 특수학교의 특성상 이 수치의 설치율은 낮은 평가이다.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2008년 개정되기 전의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 항의 장애유형별로 완화 받을 수 있는 완화규정에 의하여 시각장애인 관련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완화를 받았기 때문에 설치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학교의 경우 50.5%의 적정설치율 및 73.3%의 설치율로 다른 건물유형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도 장애인학생을 위한 교실·화장실을 1층에 배치한 경우 계단은 권장사항으로 완화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원, 학원 용도의 경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1,0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계단의 경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이 낮게 평가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6) 업무시설

<표 104>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업무시설(청사)	7,480	6,435	4,331	86.0%	57.9%
사무소 등	22,568	16,978	11,512	75.2%	51.0%
계	30,048	23,413	15,843	77.9%	52.7%

업무시설군에서 계단의 적정설치율은 52.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7.9%로 평가되었다.

업무시설군에서 공공업무시설(청사)의 경우 설치율은 86%, 적정설치율은 57.9% 평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이 많은 시설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적정설치율은 아주 낮은 평가이며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은 더욱 높을 수 밖에 없다. 기존 청사 계단의 경우 디딤판의 너비, 쉼면의 높이 등은 구조적인 문제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계단 양쪽 손잡이를 적정한 높이 및 굽기로 설치한다면 사용자들의 안전 및 편리함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무시설군 중 사무소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계단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적정설치율(51%) 및 설치율(75.2%)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7) 숙박시설

<표 105>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일반숙박시설	5,492	3,765	2,384	68.6%	43.4%
계	5,492	3,765	2,384	68.6%	43.4%

숙박시설군의 일반숙박시설유형의 계단 적정설치율은 43.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8.6%

로 평가되었다.

8) 자동차 관련시설

<표 106>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운전학원	684	463	362	67.7%	52.9%
계	684	463	362	67.7%	52.9%

자동차관련시설군 중 운전학원 계단의 적정설치율은 52.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7.7%로 평가되었다.

운전학원의 경우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이 권장사항이며, 또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계단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이 낮게 평가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9) 공공용시설

<표 107>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방송국 등	220	176	131	80.0%	59.5%
교도소 등	112	80	58	71.4%	51.8%
계	332	256	189	77.1%	56.9%

방송국, 교도소가 포함되는 공공용시설군에서 계단의 적정설치율은 56.9%이며 설치율은 77.1%로 평가되었다.

교도소의 경우 장애인수용자 거실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적정설치율(51.8%) 및 설치율(71.4%)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10) 공동주택

<표 108>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계단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아파트	32,204	25,684	16,814	79.8%	52.2%
부대복리시설	1,288	1,018	718	79.0%	55.7%
계	33,492	26,702	17,532	79.7%	52.3%

공동주택군 계단의 적정설치율은 52.3%이며 설치율은 79.7%로 나타났다.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노인 등의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계단에 설치된 손잡이의 경우 계단의 난간과는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적정설치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목발사용자의 경우에는 계단의 손잡이를 이용하여 승강기 없이도 수직이동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대복리시설과 같이 저층인 경우에는 계단의 구조를 법적 기준에 맞추어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파트는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다른 유형건물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법적 기준에 맞추어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경사로

경사로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79.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7.5%로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표 109>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23121	경사로 유효폭	57,932	51,212	47,122	88.4%	81.3%
23122	휴식장	57,932	50,305	46,634	86.8%	80.5%
23123	경사로 기울기	57,932	51,059	46,246	88.1%	79.8%
23124	미끄럽지 않은 바닥	57,923	51,416	46,381	88.8%	80.1%
23125	손잡이 설치	57,921	49,559	44,666	85.6%	77.1%
계		289,640	253,551	231,049	87.5%	79.8%

경사로는 4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주요내용은 경사로의 유효폭과 휴식장, 기울기, 바닥재질, 손잡이의 설치이다.

이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77.1%의 손잡이 설치이며 그 다음으로 적정설치율이 낮은 항목은 경사로 기울기 설치로 79.8%이다.

계단에 설치되는 손잡이가 비교적 굵게 설치되는 것처럼 경사도에 설치되는 손잡이도 보통 굵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경사로 기울기는 보통 건물 내부에 설치하면서 1/12의 적정 기울기를 완전하게 맞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과 같이 특별한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수직이동용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복지시설과 같이 휠체어사용자가 많은 경우에 비상대피용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경사로를 내부로 설치하기보다는 외부로 설치하게 되면 비상대피용으로도 좋으며 내부공간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좋다.

경사로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0>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50,670	46,429	44,612	91.6	88.0
문화 및 집회시설	5,195	4,337	3,828	83.5	73.7
판매 및 영업시설	6,610	5,268	4,435	79.7	67.1
의료시설	8,571	7,544	6,837	88.0	79.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31,037	112,261	101,072	85.7	77.1
업무시설	37,560	33,554	30,971	89.3	82.5
숙박시설	6,863	5,222	4,704	76.1	68.5
자동차관련시설	855	670	594	78.4	69.5
공공용시설	414	340	315	82.1	76.1
공동주택	41,865	37,926	33,681	90.6	80.5
계	289,640	253,551	231,049	87.5%	79.8%

여기서 말하는 경사로의 경우 층간 이동을 위한 경사로인데 이번 전수조사 때 층간 이동을

위한 경사로는 대부분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층간 이동을 위한 경사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되어 적정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설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사로는 10개 건물군에서 해당되며 해당 건물군 중에서 가장 적정설치율이 높은 건물군은 근린생활시설군이다. 또한 44개 건물 유형중에서 30개 건물유형만이 의무 설치이며 해당 건물유형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90.9%로 평가된 공공업무시설(청사)이며 8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 유형은 읍·면·동사무소, 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청사), 아파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로 나타났다.

경사로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치율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15개의 건물 유형군으로 분류하였으며 15개 건물 유형군 중에서 운동시설, 공장, 관광휴게시설, 기숙사, 공원군은 해당이 없어 제외한다.

1) 근린생활시설

<표 111>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읍면동사무소	41,835	38,859	37,619	92.9%	89.9%
공공도서관	620	531	480	85.6%	77.4%
의원, 한의원 등	8,215	7,039	6,513	85.7%	79.3%
계	50,670	46,429	44,612	91.6%	88.0%

근린생활시설군에서 경사로의 적정설치율은 8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1.6%로 높게 평가되었다. 읍·면·동사무소와 공공도서관 등의 적정설치율이 높은 이유로 근린생활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이 높아질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표 112>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연장,관람장	1,890	1,670	1,464	88.4%	77.5%
집회장	1,675	1,361	1,216	81.3%	72.6%
전시장 등	1,630	1,306	1,148	80.1%	70.4%
계	5,195	4,337	3,828	83.5%	73.7%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경사로의 적정설치율은 73.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3.5%로 평가되었다.

문화 및 집회시설중에서는 공연장·관람장의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77.5%를 나타내고 있으며 설치율은 88.4%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3) 판매 및 영업시설

<표 113>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도소매시장	6,610	5,268	4,435	79.7%	67.1%
계	6,610	5,268	4,435	79.7%	67.1%

판매 및 영업시설군에서 경사로의 적정설치율은 67.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9.7%로 평가되어 30개의 유형 중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경우 카트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이동하기 때문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안전하도록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질과 경사기울기 등을 맞추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물건 이동에 주로 사용하는 경사로의 경우 기울기를 적정하지 않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4) 의료시설

<표 114>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병원 등	7,333	6,526	5,881	89.0%	80.2%
장례식장	1,238	1,018	956	82.2%	77.2%
계	8,571	7,544	6,837	88.0%	79.8%

의료시설군에서 경사로의 적정설치율은 79.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8%로 평가되었다. 의료시설군 중 기존 병원의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높이 0.75m 이내 마다 휴식참을 설치하여 적정설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11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학교	30,953	26,352	23,408	85.1%	75.6%
특수학교	430	369	312	85.8%	72.6%
교육원, 학원등	14,435	12,179	10,991	84.4%	76.1%
도서관	1,315	1,184	1,059	90.0%	80.5%
아동관련시설	70,646	60,545	55,175	85.7%	78.1%
노인복지시설	7,453	6,541	5,825	87.8%	78.2%
장애인복지시설	4,250	3,830	3,240	90.1%	76.2%
생활권수련시설	1,555	1,261	1,062	81.1%	68.3%
계	131,037	112,261	101,072	85.7%	77.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서 경사로의 적정설치율은 77.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5.7%로 평가되었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편인데 적정설치율이 76.2% 정도에 불과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건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설치되는 경사로의 기울기 등을 잘 맞추어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6) 업무시설

<표 116>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업무시설(청사)	9,350	8,802	8,499	94.1%	90.9%
사무소 등	28,210	24,752	22,472	87.7%	79.7%
계	37,560	33,554	30,971	89.3%	82.5%

업무시설군에서 경사로의 적정설치율은 82.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9.3%로 평가되었다. 업무시설군에서 공공업무시설(청사)의 경우 설치율은 94.1%, 적정설치율은 90.9%로 전체 유형중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경사로가 설치된 건물인 경우에는 적정하게 설치되었고 그 외 해당없는 건물들이 많아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7) 숙박시설

<표 117>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일반숙박시설	6,863	5,222	4,704	76.1%	68.5%
계	6,863	5,222	4,704	76.1%	68.5%

숙박시설군의 일반숙박시설유형 경사로의 적정설치율은 68.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6.1%로 평가되었다. 특히 숙박시설 중에서 커피숍이나 식당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이 가능한 용도가 숙박시설 건물내에 설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복도 등에 단차가 생길 경우에는 규정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해야만 적정설치율을 높일 수 있다.

8) 자동차 관련시설

<표 118>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운전학원	855	670	594	78.4%	69.5%
계	855	670	594	78.4%	69.5%

자동차관련시설군 중 운전학원 경사로의 적정설치율은 69.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8.4%로 평가되었다.

9) 공공용시설

<표 119>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방송국 등	275	227	209	82.5%	76.0%
교도소 등	139	113	106	81.3%	76.3%
계	414	340	315	82.1%	76.1%

방송국, 교도소가 포함되는 공공용시설군 경사로의 적정설치율은 76.1%이며 설치율은 82.1%로 평가되었다. 경사로가 거의 설치될 가능성이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이 낮게 평가된 것은 설치된 경사로의 기울기 등 법적 기준을 맞추지 않고 설치된 경사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10) 공동주택

<표 120>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경사로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아파트	40,255	36,503	32,367	90.7%	80.4%
부대복리시설	1,610	1,423	1,314	88.4%	81.6%
계	41,865	37,926	33,681	90.6%	80.5%

공동주택군 경사로의 적정설치율은 80.5%이며 설치율은 90.6%로 나타났다.

마. 승강기

승강기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79.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7.6%로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표 121>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23131	전면 활동공간	57,921	51,811	48,614	89.5%	83.9%
23132	내부 유효바닥면적	57,921	51,864	48,165	89.5%	83.2%
23133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	57,921	48,497	42,073	83.7%	72.6%
계		173,763	152,172	138,852	87.6%	79.9%

승강기에는 3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주요내용은 승강기의 전면활동공간, 내부 유효바닥면적, 휠체어사용자용 수평조작반이다.

이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72.6%의 휠체어사용자용 수평조작반 설치이다. 그 외 두 세부항목은 8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여 비교적 양호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내부에 설치되는 휠체어사용자용 수평조작반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에는 비교적 잘 설치되고 있으나 기존의 승강기를 장애인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승강기 내부에 수평조작반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치높이를 잘 맞추지 못하거나 아예 수평조작반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또한 기존의 승강기에 수직 조작버튼만 있는 경우에는 수평조작반을 설치하면서 점자표지를 함께 설치하여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인지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수직조작반에는 점자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승강기의 적정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 승강기를 설치할 때부터 1대 정도는 장애인용승강기로 설치함으로써 추후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도 대처가 가능하다.



(그림 93) 승강기 현황사진

승강기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22>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30,402	27,882	26,908	91.7	88.5
문화 및 집회시설	3,111	2,648	2,365	85.1	76.0
판매 및 영업시설	3,966	3,347	2,834	84.4	71.5
의료시설	5,139	4,749	4,154	92.4	80.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8,615	66,455	62,421	84.5	79.4
업무시설	22,536	19,633	17,249	87.1	76.5
숙박시설	4,116	3,316	2,322	80.6	56.4
자동차관련시설	513	397	383	77.4	74.7
공공용시설	246	193	179	78.5	72.8
공동주택	25,119	23,552	20,037	93.8	79.8
계	173,763	152,172	138,852	87.6%	79.9%

적정설치율과 설치율의 차이를 보면 7.7%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건축물에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는 대부분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층간 이동을 위한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조사되어 ‘적정’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설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같이 적정설치율이 높다는 것은 설치된 승강기의 대부분이 적정하게 잘 설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승강기는 10개 건물군에서 해당되며 해당 건물군 중에서 가장 적정설치율이 높은 건물군은 읍·면·동사무소가 포함된 근린생활시설군이다. 또한 44개 건물 유형중에서 30개 유형만이 의무 설치이며 해당 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91.3%로 평가된 읍·면·동사무소이며 8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 유형은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병원,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청사),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건물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적정설치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일반승강기를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많아 수평

조작버튼 등이 미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가장 설치율이 낮은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승강기를 비교적 작은 규모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율은 높은 반면 적정설치율은 작게 나타나고 있다.

승강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치율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15개의 건물 유형군으로 분류하였으며 15개 건물 유형군 중에서 운동시설, 공장, 관광휴게시설, 기숙사, 공원군은 해당이 없어 제외한다.

1) 근린생활시설

<표 123>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읍면동사무소	25,101	23,211	22,915	92.5%	91.3%
공공도서관	372	328	322	88.2%	86.6%
의원, 한의원 등	4,929	4,343	3,671	88.1%	74.5%
계	30,402	27,882	26,908	91.7%	88.5%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승강기의 적정설치율은 88.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1.7%로 높게 평가되었다.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읍·면·동사무소 유형의 적정설치율이 91.3%로 30개의 유형중 가장 높이 평가 되었으며 승강기 이용율이 높은 의원, 한의원 유형의 경우 적정설치율이 74.5%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의원, 한의원 유형의 승강기는 내부 조작반의 적정설치율이 낮게 평가되어 도우미 없는 휠체어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에 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표 124>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연장, 관람장	1,134	996	894	87.8%	78.8%
집회장	1,005	838	754	83.4%	75.0%
전시장 등	972	814	717	83.7%	73.8%
계	3,111	2,648	2,365	85.1%	76.0%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승강기의 적정설치율은 76%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5.1%로 평가 되었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 중에서 공연장·관람장의 적정설치율이 7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판매 및 영업시설

<표 125>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도소매시장	3,966	3,347	2,834	84.4%	71.5%
계	3,966	3,347	2,834	84.4%	71.5%

판매 및 영업시설군에서 승강기의 적정설치율은 71.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4.4%로 평가되었다.

4) 의료시설

<표 126>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병원 등	4,398	4,122	3,578	93.7%	81.4%
장례식장	741	627	576	84.6%	77.7%
계	5,139	4,749	4,154	92.4%	80.8%

의료시설군에서 계단의 적정설치율은 80.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2.4%로 평가되었다. 휠체어사용자 등이 많은 병원 유형의 경우 내부 가로형 조작반을 휠체어사용자가 사용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를 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일반 조작반에 점자표지를 부착한다면 적정설치율은 높일 수 있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12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학교	18,570	15,199	14,313	81.8%	77.1%
특수학교	258	225	202	87.2%	78.3%
교육원, 학원 등	8,661	7,383	6,135	85.2%	70.8%
도서관	789	742	670	94.0%	84.9%
아동관련시설	42,384	36,016	34,817	85.0%	82.1%
노인복지시설	4,470	3,933	3,571	88.0%	79.9%
장애인복지시설	2,550	2,220	2,040	87.1%	80.0%
생활권수련시설	933	737	673	79.0%	72.1%
계	78,615	66,455	62,421	84.5%	79.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서 승강기의 적정설치율은 79.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4.5%로 평가되었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에서는 도서관이 84.9%의 적정설치율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아동관련시설유형에서 그 다음의 높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개 건물유형 모두 적정설치율과의 차이는 다소 있어 이 차이를 없앨 수 있도록 승강기 규정을 잘 맞추어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업무시설

<표 128>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업무시설(청사)	5,610	5,265	4,995	93.9%	89.0%
사무소 등	16,926	14,368	12,254	84.9%	72.4%
계	22,536	19,633	17,249	87.1%	76.5%

업무시설군에서 승강기의 적정설치율은 76.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7.1%로 평가되었다. 업무시설군에서 공공업무시설(청사)의 경우 설치율은 93.9%, 적정설치율은 89% 높게 평가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무소용도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계단과 같이 설치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권장 설치건물이 전체 설치율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

7) 숙박시설

<표 129>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일반숙박시설	4,116	3,316	2,322	80.6%	56.4%
계	4,116	3,316	2,322	80.6%	56.4%

숙박시설군의 일반숙박시설용도 승강기의 적정설치율은 56.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0.6%로 평가되었다. 일반숙박시설유형의 경우 30개의 유형중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로 평가되었으며,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1층에서 다른층으로 이동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반숙박시설은 국내 이용자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이용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8) 자동차 관련시설

<표 130>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운전학원	513	397	383	77.4%	74.7%
계	513	397	383	77.4%	74.7%

자동차관련시설군 중 운전학원 승강기의 적정설치율은 74.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7.7%로 평가되었다.

9) 공공용시설

<표 131>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방송국 등	165	132	118	80.0%	71.5%
교도소 등	81	61	61	75.3%	75.3%
계	246	193	179	78.5%	72.8%

방송국, 교도소가 포함되는 공공용시설군 승강기의 적정설치율은 72.8%이며 설치율은 78.5%로 평가되었다.

10) 공동주택

<표 132>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내부시설 중 승강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아파트	24,153	22,701	19,230	94.0%	79.6%
부대복리시설	966	851	807	88.1%	83.5%
계	25,119	23,552	20,037	93.8%	79.8%

공동주택군 승강기의 적정설치율은 79.8%이며 설치율은 93.8%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군 중 아파트 승강기의 적정설치율은 79.6%이며 설치율은 94%로 설치율은 매우 높은 반면 적정설치율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는 대부분 승강기가 설치되는데 적정설치율이 낮은 것은 승강기를 설치할 때 소규모의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승강기 내부의 연속손잡이 등의 설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3-2-3. 위생시설

가. 대변기

대변기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33.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5.2%로 평가되어 적정 및 설치율 모두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표 132 참조).

<표 133>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3111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47,074	26,383	13,204	56.0%	28.0%
3112	시각적 설비	47,074	17,174	10,318	36.5%	21.9%
3113	통로 연결	47,073	28,063	18,249	59.6%	38.8%
3114	미끄럽지 않은 재질	47,073	30,837	17,706	65.5%	37.6%
3115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47,073	16,240	8,161	34.5%	17.3%
3121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	47,073	27,115	19,638	57.6%	41.7%
3122	통과 유효폭	47,073	31,218	22,324	66.3%	47.4%
3123	유효바닥면 크기	47,073	26,218	17,054	55.7%	36.2%
3131	좌대 높이	47,073	34,664	28,876	73.6%	61.3%
3132	수평손잡이 높이(회전식)	47,073	26,184	12,459	55.6%	26.5%
3133	수직손잡이	47,073	24,424	13,694	51.9%	29.1%

3134	세정장치	47,073	23,210	9,357	49.3%	19.9%
	계	564,878	311,730	191,040	55.2%	33.8%

대변기에는 12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주요내용은 화장실의 남·녀구분설치, 사용여부 시각적 표시, 휠체어사용자 접근 통로, 바닥재질, 점형블록 및 점자표지판, 출입문의 형태, 유효폭, 변기높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세정장치이다.

이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17.3%의 점형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이며 그 다음으로 적정설치율이 낮은 항목은 세정장치로 19.9%이다. 그 외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 사용여부의 시각안내표시 등이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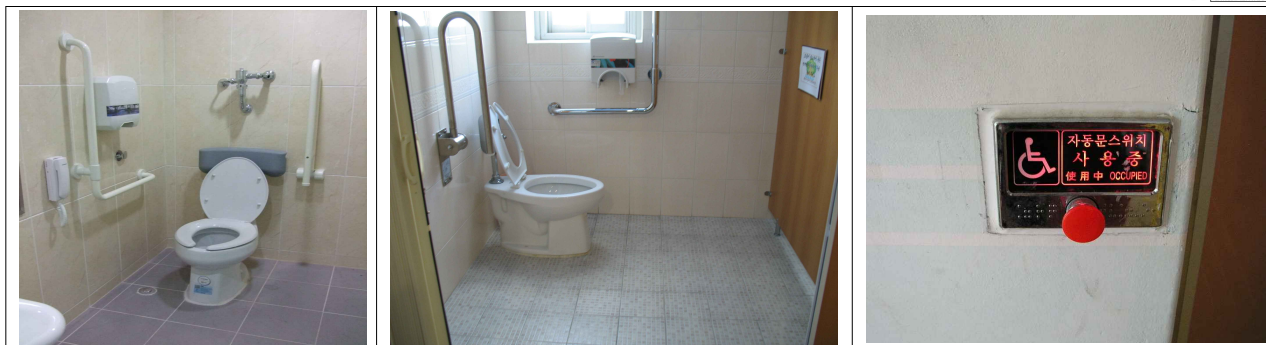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점형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의 편의증진법 초기부터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점자표지판의 경우에는 2005년 12월 30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바닥으로부터 1.5미터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조사에서 적정설치율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설치높이에 상관없이 설치하여야 했던 시점에도 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보다 훨씬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적정설치율이 19.9%로 점자표지판 만큼이나 낮은 항목인 세정장치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변기 후면의 레버식 수전을 설치하고 있어 휠체어사용자는 물론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손을 돌려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그 외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설비의 적정설치율도 20%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대변기 남·녀구분의 적정설치율이 28.0%로 현저히 낮은 평가결과는 아직도 휠체어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화장실을 장애인전용화장실로 인식하여 남·녀구분없이 설치하고 있는 건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대변기 칸막이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이 1.4x1.8미터가 되어야만 휠체어사용자가 화장실 칸막이 내부에서 겨우 회전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최소 바닥면적확보에 대한 적정설치율도 36.2%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사용자가 함께 사용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에 대한 세부항목은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휠체어사용자도 사용 가능한 화장실이 일반화장실로 가능한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비장애인들이 휠체어사용자용 화장실을 평소에 사용하면서 휠체어사용자용 화장실에 대한 편의성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인식개선이라고 본다. 휠체어사용자가 화장실내부에서 편리하게 회전하고 수평 및 수직손잡이뿐만 아니라 세정밸브까지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모두에게 편리한 화장실(그림 13 참조)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손잡이가 잘 설치된 화장실	휠체어회전공간이 확보된 화장실	출입문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안내표시가 잘 설치된 화장실
----------------	------------------	------------------------------------



(그림 100) 대변기 현황사진

화장실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34>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142,152	75,864	40,692	53.4	28.6
문화 및 집회시설	12,444	8,427	5,282	67.7	42.4
판매 및 영업시설	15,864	9,293	5,685	58.6	35.8
의료시설	20,556	14,684	8,999	71.4	43.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44,914	88,991	53,964	61.4	37.2
업무시설	90,144	52,955	33,673	58.7	37.4
숙박시설	43,404	22,306	16,358	51.4	37.7
공장	60,132	18,672	10,463	31.1	17.4
자동차관련시설	2,052	756	404	36.8	19.7
공공용시설	2,916	1,987	1,308	68.1	44.9
관광휴게시설	2,556	2,014	1,502	78.8	58.8
기숙사	4,020	1,817	1,116	45.2	27.8
공동주택	3,864	2,030	1,373	52.5	35.5
공원	19,860	11,934	10,221	60.1	51.5
계	564,878	311,730	191,040	55.2%	33.8%

대변기가 의무사항인 14개 건물군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군은 58.8%의 야외음악당이 포함된 관광휴게시설군이며, 30개 건물 유형중에서도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61.9%로 평가된 야외음악당이므로 나타났고, 5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 유형은 공연장·관람장, 특수학교, 도서관, 교도소, 휴게소, 도시공원으로 조사되었다.

대변기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치율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이 없는 건물군인 운동시설을 제외한 14개의 건물군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근린생활시설

<표 135>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읍면동사무소	100,404	53,212	26,943	53.0%	26.8%
공공도서관	1,488	1,104	712	74.2%	47.8%
공중화장실	20,544	12,132	7,333	59.1%	35.7%
의원, 한의원 등	19,716	9,416	5,704	47.8%	28.9%

계	142,152	75,864	40,692	53.4%	28.6%
---	---------	--------	--------	-------	-------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대변기의 적정설치율은 28.6%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3.4%로 평가되었다.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대변기 설치가 의무사항인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의원·한의원 건물유형 모두 적정설치율이 20~40%대로 평가되어 설치되고 있는 대변기 중에서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대변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중요 공공시설의 대변기 적정설치율이 26.8%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표 136>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연장·관람장	4,536	3,508	2,288	77.3%	50.4%
집회장	4,020	2,231	1,305	55.5%	32.5%
전시장 등	3,888	2,688	1,689	69.1%	43.4%
계	12,444	8,427	5,282	67.7%	42.4%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대변기의 적정설치율은 42.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7.7%로 평가되었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는 공연장·관람장이 가장 높은 적정설치율인 50.4%를 나타내고 있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건물 유형에서도 비교적 높은 건물 유형에 속한다. 영화관 등의 건물유형이 포함된 공연장·관람장의 대변기 적정설치수준은 50%대에 그치고 있지만 장애인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적정설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점적인 건물 유형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 판매 및 영업시설

<표 137> 판매 및 영업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도소매시장	15,864	9,293	5,685	58.6%	35.8%
계	15,864	9,293	5,685	58.6%	35.8%

판매 및 영업시설의 도소매시장은 적정설치율이 35.8%이며 설치율은 58.6%로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오래된 시장 등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설치율도 높지 않으며 적정하게 설치되는 사례는 더욱 적어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4) 의료시설

<표 138>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	---------	-----	-------	-----	-------

병원 등	17,592	12,867	7,929	73.1%	45.1%
장례식장	2,964	1,817	1,070	61.3%	36.1%
계	20,556	14,684	8,999	71.4%	43.8%

의료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43.8%이며 설치율은 71.4%로 휠체어사용자 등이 많은 병원 등의 건물유형 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른 건물 유형과 달리 환자 등이 휠체어나 링거트레이, 보행보조기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의료시설의 적정설치율 향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139>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학교	74,280	46,348	27,857	62.4%	37.5%
특수학교	1,032	832	538	80.6%	52.1%
교육원, 학원등	34,644	17,384	10,226	50.2%	29.5%
도서관	3,156	2,577	1,694	81.7%	53.7%
노인복지시설	17,870	12,183	7,501	68.2%	42.0%
장애인복지시설	10,200	7,288	4,621	71.5%	45.3%
생활권수련시설	3,732	2,379	1,527	63.7%	40.9%
계	144,914	88,991	53,964	61.4%	37.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는 아동관련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 유형이 대변기 설치가 의무이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37.2%이며 설치율은 61.4%로 설치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복지관련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적정설치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적정설치율은 40~50% 정도에 불과하며 교육원·학원등의 건물유형은 29.5%로 매우 심각한 정도이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적정설치율이 45.3%에 그치며 설치율이 71.5%에 그쳐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6) 업무시설

<표 140>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업무시설(청사)	22,440	17,603	10,403	78.4%	46.4%
사무소 등	67,704	35,352	23,270	52.2%	34.4%
계	90,144	52,955	33,673	58.7%	37.4%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37.4%이며 설치율은 58.7%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또한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의 경우에도 적정설치율이 46.4%이며 설치율이 78.4%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장 대표적으로 잘 설치되어 있어야 할 공공업무시설의 대변기 설치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 숙박시설

<표 141>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일반숙박시설	16,464	8,078	5,349	49.1%	32.5%
여관	26,940	14,228	11,009	52.8%	40.9%
계	43,404	22,306	16,358	51.4%	37.7%

숙박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37.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1.4%로 평가되어 설치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숙박시설 중에서 여관과 같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숙박시설외에 커피숍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용화장실이 설치되지 않거나 여관 관리자용으로만 남녀 구분없이 1개 정도만 설치되는 사례가 많다. 이와같이 숙박시설 중에서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는 대변기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8) 공장

<표 142> 공장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장	60,132	18,672	10,463	31.1%	17.4%
계	60,132	18,672	10,463	31.1%	17.4%

공장의 적정설치율은 17.4%이며 설치율은 31.1%로 평가되어 적정 및 설치율 모두 가장 낮은 건물유형군에 속한다. 대부분의 공장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공장을 운영하는 측에서 근무자 중 장애인이 없으면 대변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9) 자동차 관련시설

<표 143> 자동차 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운전학원	2,052	756	404	36.8%	19.7%
계	2,052	756	404	36.8%	19.7%

자동차관련시설군 중에서 운전학원만 대변기의 의무 설치 건물유형이며 적정설치율은 19.7%이며 설치율은 36.8%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공장 다음으로 설치율이 낮다. 최근 들어 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 등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운전학원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변기의 설치는 확충되어야 한다.

10) 공공용시설

<표 144>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방송국 등	660	472	328	71.5%	49.7%
전신전화국등	1,932	1,269	799	65.7%	41.4%
교도소 등	324	246	181	75.9%	55.9%
계	2,916	1,987	1,308	68.1%	44.9%

방송국, 전신전화국, 교도소가 포함되는 공공용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44.9%이며 설치율은 68.1%로 나타나 다른 건물군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정설치율이 높은 편이다.

11) 관광휴게시설

<표 145> 관광휴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야외음악당 등	336	253	208	75.3%	61.9%
휴게소 등	2,220	1,761	1,294	79.3%	58.3%
계	2,556	2,014	1,502	78.8%	58.8%

야외음악당 및 휴게소가 포함되어 있는 관광휴게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58.8%이며 설치율은 78.8%로 평가되었다. 모든 대상 건물유형 중에서 가장 설치율이 높은 건물유형이다. 휴게소나 야외음악당 등 에 설치되는 대변기는 의료시설보다 더 높은 적정설치율을 보임으로써 휴게소 등을 이용하는 휠체어사용자 등에게 보다 편리한 시설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12) 기숙사

<표 146> 기숙사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기숙사	4,020	1,817	1,116	45.2%	27.8%
계	4,020	1,817	1,116	45.2%	27.8%

기숙사의 적정설치율은 27.8%이며 설치율은 45.2%로 나타나 비교적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용화장실이 설치되는 기숙사의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객실 내 화장실이 아닌 공용화장실의 대변기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율을 높여야할 건물유형이다.

13) 공동주택

<표 147>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	---------	-----	-------	-----	-------

부대복리시설	3,864	2,030	1,373	52.5%	35.5%
계	3,864	2,030	1,373	52.5%	35.5%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만이 해당되는 공동주택군의 적정설치율은 35.5%이며 설치율은 52.5%로 나타났다.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설치율로는 시설이용약자에게 쾌적한 이용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14) 공원

<표 148> 공원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대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도시공원	19,284	11,632	10,022	60.3%	52.0%
자연공원	576	302	199	52.4%	34.5%
계	19,860	11,934	10,221	60.1%	51.5%

도시공원뿐 아니라 자연공원까지 포함되는 공원의 적정설치율은 51.5%이며 설치율은 60.1%이다. 특히 자연공원의 대변기 적정설치율이 34.5%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자연공원이 지역 특성상 산지 등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해 이러한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대변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휠체어사용자들의 자연공원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대변기 중에서 남녀구분하여 1개 이상씩은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변기

소변기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42.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6.5%로 평가되어 적정 및 설치율 모두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표 149>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3211	수평손잡이	8,252	4,675	3,564	56.7%	43.2%
3212	수직손잡이	8,252	4,667	3,504	56.6%	42.5%
계		16,504	9,342	7,068	56.6%	42.8%

소변기에는 2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 설치이다. 두 개 세부항목 모두 적정설치율이 40%대로 매우 비슷하며 보통 수직과 수평손잡이가 일체형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비슷한 설치율을 보일 수 밖에 없으나 손잡이별 설치 높이 등의 차이에 의해 적정설치율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변기의 경우에는 손잡이만을 설치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이 40%대로 매우 낮다는 것은 그만큼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교적 설치가 간단한 소변기는 어린이나 키작은 이용자들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바닥 부착형으로 설치하면서 목발사용자 등의 편의를 위한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잘 설치해주면 누

구나 편리하게 손잡이를 잡고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그림 14 참조)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08) 소변기 현황사진

소변기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50>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3,424	1,625	1,207	47.5	35.3
의료시설	2,932	1,919	1,404	65.5	47.9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020	1,974	1,473	65.4	48.8
업무시설	3,740	2,476	1,923	66.2	51.4
숙박시설	2,744	1,132	868	41.3	31.6
공동주택	644	216	193	33.5	30.0
계	16,504	9,342	7,068	56.6%	42.8%

소변기가 의무사항인 6개 건물군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군은 51.4%의 업무시설군이며, 소변기가 의무사항인 8개 건물 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다른 건물 유형과는 확실한 설치율 차이를 보이고 있는 73.3%의 특수학교이며 5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 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청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변기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치율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이 있는 건물군인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군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근린생활시설

<표 151>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중화장실	3,424	1,625	1,207	47.5%	35.3%
계	3,424	1,625	1,207	47.5%	35.3%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소변기 설치의무인 건물유형은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은 35.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47.5%로 평가되어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공중화장실의 특성상 많은 이용자를 고려한다면 간단한 소변기용 손잡이의 설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다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의료시설

<표 152>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병원 등	2,932	1,919	1,404	65.5%	47.9%
계	2,932	1,919	1,404	65.5%	47.9%

의료시설군에서 소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유형은 병원으로 적정설치율은 47.9%이며 설치율은 65.5%로 평가되어 여전히 높지 않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병원에는 특히 목발을 사용하는 환자 등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조치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15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특수학교	172	141	126	82.0%	73.3%
도서관	526	347	258	66.0%	49.0%
장애인복지시설	1,700	1,176	853	69.2%	50.2%
생활권수련시설	622	310	236	49.8%	37.9%
계	3,020	1,974	1,473	65.4%	48.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 소변기 설치가 의무인 건물유형은 특수학교, 도서관, 장애인복지시설, 생활권수련시설이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48.8%이며 설치율은 64.5%로 대변기보다는 약간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역시 낮은 설치율에 그치고 있다. 이 중에서 특수학교만 적정설치율을 73.3%이고 설치율이 8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장애인복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50.2%일뿐 다른 건물유형의 적정설치율은 40%대에 불과하다.

4) 업무시설

<표 154>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업무시설(청사)	3,740	2,476	1,923	66.2%	51.4%
계	3,740	2,476	1,923	66.2%	51.4%

업무시설군중에서 소변기 설치가 의무인 건물유형은 공공업무시설(청사)이며 적정설치율은 51.4%, 설치율은 66.2%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이면서 소변기의 설치율이 이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은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5) 숙박시설

<표 155>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일반숙박시설	2,744	1,132	868	41.3%	31.6%
계	2,744	1,132	868	41.3%	31.6%

숙박시설군중에서 소변기 설치가 의무인 건물유형은 관광 및 일반숙박시설이며 적정설치율은 31.6%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41.3%로 평가되어 설치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숙박시설 중에서 여관과 같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숙박시설외에 커피숍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용화장실이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여관 관리자용으로만 남녀 구분없이 1개 정도만 설치되는 사례가 많다.

이와같이 숙박시설 중에서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는 소변기 설치를 대변기 설치와 같이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6) 공동주택

<표 156>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소변기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부대복리시설	644	216	193	33.5%	30.0%
계	644	216	193	33.5%	30.0%

소변기 설치의무인 건물유형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며 적정설치율은 30.3%이며 설치율은 33.5%로 나타났다.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 등과 같이 보행이 불편한 이용약자들을 위해 소변기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 세면대

세면대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33.5%로 평가되었으나 설치율은 79.7%로 평가되어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는 세면대가 대부분 일반세면대로 설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 적정 설치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세면대의 설치율 향상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57>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3311	상단 및 하단높이	8,614	6,904	4,158	80.1%	48.3%
3312	수도꼭지	8,614	6,819	1,609	79.2%	18.7%
계		17,228	13,723	5,767	79.7%	33.5%

두 개 세부항목 중에서 휠체어사용자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세면대 하부공간의 적정설치율은 48.3%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며 세면대의 수도꼭지 또한 적정설치율이 18.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세면대의 설치높이와 수도꼭지 설치에 대한 설치율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일반 세면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수도꼭지는 손사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레버형 혹은 센서형을 설치하여야 하나 누름버튼식 혹은 다이얼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 손사용이 용이하지 않는 건물이용자는 세면대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면대를 적절한 높이에 잘 맞추어 설치하게 되면 휠체어사용자도 좀 더 편리하게 세면대를 이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레버식이나 광감지식 수도꼭지를 설치함으로써 모든 시설이용자들에게 편리할 수 있다(그림 15 참조)는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12) 세면대 현황사진

세면대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58>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3,424	2,509	1,092	73.3	31.9
의료시설	2,932	2,474	1,010	84.4	34.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020	2,592	1,108	85.8	36.7
업무시설	3,740	3,314	1,236	88.6	33.0
숙박시설	2,744	1,829	791	66.7	28.8
공공용시설	54	50	37	92.6	68.5
기숙사	670	507	293	75.7	43.7
공동주택	644	448	200	69.6	31.1
계	17,228	13,723	5,767	79.7%	33.5%

세면대가 의무사항인 8개 건물군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군은 68.5%의 공공용 시설군으로 조사되었다. 세면대가 의무사항이 10개 건물 유형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다른 건물 유형과는 확실한 설치율 차이를 보이고 있는 68.5%의 교도소이며 그 외 대부분 건물유형은 30%정도의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세면대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치율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이 있는 건물군인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공용시설, 기숙사, 공동주택군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근린생활시설

<표 159>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중화장실	3,424	2,509	1,092	73.3%	31.9%
계	3,424	2,509	1,092	73.3%	31.9%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세면대 설치의무인 건물유형은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은 31.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3.3%로 평가되어 적정설치율은 매우 낮으나 설치율은 높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적정설치율이 낮다는 것은 세면대가 일반세면대로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사용자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면대 하부공간 등의 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 의료시설

<표 160>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병원 등	2,932	2,474	1,010	84.4%	34.4%
계	2,932	2,474	1,010	84.4%	34.4%

의료시설군에서 세면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유형은 병원으로 적정설치율은

34.4%이며 설치율은 84.4%로 평가되어 여전히 적정설치율은 매우 낮으나 설치율은 높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병원에는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환자 등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조치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16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특수학교	172	152	68	88.4%	39.5%
도서관	526	473	209	89.9%	39.7%
장애인복지시설	1,700	1,482	634	87.2%	37.3%
생활권수련시설	622	485	197	78.0%	31.7%
계	3,020	2,592	1,108	85.8%	36.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 세면대 설치가 의무인 건물유형은 특수학교, 도서관, 장애인복지시설, 생활권수련시설이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36.7%이며 설치율은 85.8%로 적정설치율은 매우 낮으나 설치율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면대 설치에 있어 설치율이 높은 것은 휠체어사용자와 같은 시설이용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으므로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세면대의 설치가 요구된다.

4) 업무시설

<표 162>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업무시설(청사)	3,740	3,314	1,236	88.6%	33.0%
계	3,740	3,314	1,236	88.6%	33.0%

업무시설군중에서 세면대 설치가 의무인 건물유형은 공공업무시설(청사)로 적정설치율은 33.0%이며 설치율은 88.6%로 적정설치율은 매우 낮으나 설치율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른 시설과 거의 동일하게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에서도 세면대 설치에 있어 설치율이 높은 것은 휠체어사용자와 같은 시설이용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으므로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세면대의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좀 더 적극적인 적정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숙박시설

<표 163>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일반숙박시설	2,744	1,829	791	66.7%	28.8%
계	2,744	1,829	791	66.7%	28.8%

숙박시설군중에서 세면대 설치가 의무인 건물유형은 관광 및 일반숙박시설이며 적정설치율은

28.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6.7%로 평가되어 적정설치율은 모든 건물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 설치율도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숙박시설 중에서 여관과 같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숙박시설외에 커피숍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용화장실이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여관 관리자용으로만 남녀 구분없이 1개 정도만 설치되는 사례가 많다.

이와같이 숙박시설 중에서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는 세면대 설치를 대변기 설치와 같이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6) 공공용시설

<표 164> 공공용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교도소 등	54	50	37	92.6%	68.5%
계	54	50	37	92.6%	68.5%

교도소가 포함되는 공공용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은 68.5%이며 설치율은 92.6%로 나타나 모든 건물유형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국의 교도소 중에서 28개의 교도소를 대상으로 평가된 것이며 교도소의 면회실이 있는 곳에는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설치가 비교적 잘 되고 있어 대변기 적정설치율도 높은 편에 속했던 것처럼 세면대의 적정설치율도 다른 건물 유형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기숙사

<표 165> 기숙사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기숙사	670	507	293	75.7%	43.7%
계	670	507	293	75.7%	43.7%

기숙사의 적정설치율은 43.7%이며 설치율은 75.7%로 나타나 비교적 적정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용화장실이 설치되는 기숙사의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객실 내 화장실이 아닌 공용화장실의 세면대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율을 높여야할 건물유형이다.

8) 공동주택

<표 166>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세면대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부대복리시설	644	448	200	69.6%	31.1%
계	644	448	200	69.6%	31.1%

세면대 설치의무인 건물유형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만이며 적정설치율은 31.1%이며 설치율은 69.6%로 나타났다.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휠체어사용자 등과 같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용약자들이 세면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설치율을 높이는 것은 모든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라. 욕실, 샤워실·탈의실

욕실은 44개 건물유형중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 포함되는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되며 적정설치율은 60.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8.3%로 평가되어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모두 높지 않은 수준이다.

<표 167>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욕실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3411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850	708	572	83.3%	67.3%
3412	미끄럽지 않은 바닥	850	727	536	85.5%	63.1%
3413	욕조 높이	850	663	513	78.0%	60.4%
3421	샤워기 위치	850	743	548	87.4%	64.5%
3422	비상용 벨	850	456	374	53.6%	44.0%
3423	수도꼭지	850	695	564	81.8%	66.4%
계		5,100	3,992	3,107	78.3%	60.9%

욕실에는 6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장애인용 객실내의 휠체어사용자 욕실 접근가능 유효폭, 출입문의 형태 및 바닥재질, 욕조 높이, 샤워기 설치위치, 비상벨 설치, 수도꼭지이다.

욕실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비상용 벨의 설치에 대한 항목으로 44.0%밖에 되지 않으며 설치율도 비교적 낮은 53.6%이다. 그 외 대부분의 세부항목은 60%대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용 욕실내부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욕실내부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므로 욕실내부에 비상벨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이다.(그림 16 참조)

따라서 이용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시설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비상벨의 설치에 장애인편의시설로써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17) 욕실 현황사진

욕실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6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욕실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100	3,992	3,107	78.3	60.9
계	5,100	3,992	3,107	78.3	60.9

최근들어 장애인복지시설에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설치되는 욕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노인과 휠체어사용자 혹은 목발 사용자 등이다.

이와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욕실이용자들은 대부분 시설이용약자임을 감안하여 욕실 내부 접근에 문제가 없도록 단차제거를 하고 내부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적정규격의 손잡이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복지시설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샤워실·탈의실도 44개 건물유형중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 포함되는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되며 적정설치율은 57.6%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8.1%로 평가되어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모두 높지 않은 수준이다.

<표 169>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샤워실·탈의실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3511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	850	694	553	81.6%	65.1%
3512	유효바닥면적	850	754	594	88.7%	69.9%
3513	접이식 의자	850	531	393	62.5%	46.2%
3514	샤워기 위치	850	729	513	85.8%	60.4%
3515	수도꼭지	850	693	462	81.5%	54.4%
3516	수납공간	850	581	421	68.4%	49.5%
계		5,100	3,982	2,936	78.1%	57.6%

샤워실·탈의실에는 6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휠체어 출입가능 유효폭, 유효바닥면적, 접이식 의자, 샤워기 위치, 수도꼭지, 수납공간이다.

샤워실·탈의실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46.2%의 샤워용 의자 설치이다. 그 다음으로 수납공간이 49.5%밖에 되지 않아 낮은 적정설치율을 나타냈다.

샤워용 의자 설치에 반드시 고정식이 아니더라도 이동식의자를 설치함으로써 가름될 수 있으며 보통 휠체어사용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휠체어를 타고 샤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옮겨앉을 수 있는 샤워용 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샤워용 의자를 접이식 의자로 설치하게 되면 노인과 같은 시설이용약자에게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 17 참조)

또한 휠체어사용자가 옷장을 사용하게 되면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1.2미터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나 장애인용 객실에 설치된 옷장이라도 대부분의 옷장이 휠체어사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반 옷장으로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객실 내부에 설치되는 옷장의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사용가능하도록 옷장의 하부공간은 비워두면서 높이는 너무 높지 않게 낮추어 설치하거나 높게 설치된 옷장은 높이를 낮추는 설비 등을 갖추어 주어(그림 37 참조) 휠체어사용자뿐 아니라 키가 작은 시설이용자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20) 샤워실·탈의실 현황사진

샤워실·탈의실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7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위생시설 중 샤워실·탈의실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100	3,982	2,936	78.1	57.6
계	5,100	3,982	2,936	78.1	57.6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샤워실 등이 필요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휠체어사용자가 샤워실 및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턱을 제거하고 샤워공간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회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샤워용 접이의자나 샤워수전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3-2-4. 안내시설

가. 점자블록

점자블록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27.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0.6%로 평가되어 적정 및 설치율 모두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표 171>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4111	점자블록 연속 설치	17,826	8,858	4,602	49.7%	25.8%
4112	표준형 점자블록	17,826	9,177	5,283	51.5%	29.6%
계		35,652	18,035	9,885	50.6%	27.7%

점자블록에는 2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점자블록의 연속설치와 표준형 점자블록의 사용여부이다.

점자블록의 두 항목 모두 20%대의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건물 이용상 안전한 접근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만 주출입구 접근로에 점자블록을 유도하도록 한 점자블록 항목이 이와같이 적정설치율이 낮은 것은 매우 심각하다.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항목도 적정설치율이 25.8%에 설치율도 49.7%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표준형 점자블록을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도 적정설치율을 29.6%밖에 되지 않아 건물접근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의 점자블록 설치는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건물 유도를 위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자블록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준형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입구까지 유도하는 것도 매우 안정적인 유도방법이지만 안전보행통로의 다양한 확충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안전하게 건물까지 유도하는 것에 대한 활발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그림 122) 점자블록 현황사진

점자블록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72> 전체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20,406	10,915	5,461	53.5	26.8
문화 및 집회시설	648	296	163	45.7	25.2
의료시설	2,932	1,484	814	50.6	27.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872	900	601	48.1	32.1
업무시설	3,740	2,688	1,496	71.9	40.0
숙박시설	2,744	670	458	24.4	16.7
공원	3,310	1,082	892	32.7	26.9
계	35,652	18,035	9,885	50.6%	27.7%

점자블록이 의무사항인 7개 건물군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군은 40%인 업무시설군이다. 해당 건물군에 속하는 11개 건물 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45.2%로 평가된 공공도서관이며 그 다음은 40.0%로 평가된 공공업무시설(청사)로 조사되었다. 그 외 건물 유형은 대부분이 10~30%대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점자블록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치율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이 있는 건물군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원으로 7개 건물 유형군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근린생활시설

<표 173>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읍면동사무소	16,734	9,545	4,520	57.0%	27.0%
공공도서관	248	180	112	72.6%	45.2%
공중화장실	3,424	1,190	829	34.8%	24.2%
계	20,406	10,915	5,461	53.5%	26.8%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점자블록의 적정설치율은 26.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3.6%로 평가되었다.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사항인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중에서 공공도서관은 적정설치율이 45.2%로 다른 건물 유형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평가되었으나 그 외 읍·면·동사무소와 공중화장실에는 모두 적정설치율이 20%대로 평가되어 설치율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설치율도 공공도서관의 72.6%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실제 설치되고 있는 점자블록이 거의 없거나 설치되더라도 적정하게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낮은 점자블록 설치율은 주출입구 접근로가 복잡하게 만들어진 읍·면·동사무소나 공공도서관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이 찾아가는데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낼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있는 건물유형에서는 더욱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표 174>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전시장 등	648	296	163	45.7%	25.2%
계	648	296	163	45.7%	25.2%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는 전시장만이 점자블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유형으로 적정설치율은 25.2%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45.7%로 평가되었다. 적정 및 설치율 모두 매

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규모가 큰 전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행이 없는 시각장애인은 전시장 출입구까지 찾아가기도 힘든 상황이다.

3) 의료시설

<표 175>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병원 등	2,932	1,484	814	50.6%	27.8%
계	2,932	1,484	814	50.6%	27.8%

의료시설군 중에서 점자블록이 의무인 건물유형은 병원이며 적정설치율은 27.8%이며 설치율은 50.6%로 전시장과 유사한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종합병원과 같이 대지가 넓은 경우에는 건물 출입구까지 찾아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점자블록 적정 설치에 대한 인식개선과 행정조치 등을 통해 적정설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17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특수학교	172	88	49	51.2%	28.5%
장애인복지시설	1,700	812	552	47.8%	32.5%
계	1,872	900	601	48.1%	32.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는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시설만이 점자블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유형이며 적정설치율은 32.1%, 설치율은 48.1%로 설치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2008년 개정되기 전의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항의 장애유형별로 완화 받을 수 있는 완화규정에 의하여 시각장애인 관련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완화를 받았기 때문에 설치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5) 업무시설

<표 177>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업무시설(청사)	3,740	2,688	1,496	71.9%	40.0%
계	3,740	2,688	1,496	71.9%	40.0%

업무시설군에서는 공공업무시설(청사)만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적정설치율은 40.0%이며 설치율은 71.9%로 높은 설치율이 아니지만 다른 건물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설치율이 다소 높는데 비해 적정설치율이 30%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하지만 안전보행통로상에 설치하거나 연속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거나 표준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발생하는 결과이다. 청사와 같은 공공업무시설에서는 가장 우선적

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

<표 178>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일반숙박시설	2,744	670	458	24.4%	16.7%
계	2,744	670	458	24.4%	16.7%

숙박시설군에서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인 건물유형은 관광 및 일반숙박시설이며 적정설치율은 16.7%로 평가되었고 설치율은 24.4%로 평가되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7) 공원

<표 179> 공원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도시공원	3,214	1,059	876	32.9%	27.3%
자연공원	96	23	16	24.0%	16.7%
계	3,310	1,082	892	32.7%	26.9%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은 점자블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써 적정설치율은 26.9%이며 설치율은 32.7%로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시공원보다 자연공원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16.7%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자연공원인 경우 지역 특성상 점자블록 설치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지만 도시공원의 경우에도 적정설치율이 27.3%인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나. 유도 및 안내설비

유도 및 안내시설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16.0%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24.8%로 평가되어 거의 유도 및 안내설비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0>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4211	촉지도식 안내판	2,806	815	526	29.0%	18.7%
4212	음성안내장치	2,806	574	370	20.5%	13.2%
계		5,612	1,389	896	24.8%	16.0%

유도 및 안내시설에는 2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안내장치이다. 두 항목 모두 10%대의 매우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건물 이용상 최소

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안내장치는 모두 적정설치율 뿐만 아니라 설치율도 20%대로 매우 낮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촉지도식 안내판의 경우는 별도의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사용율도 비교적 낮은 편이면서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하는데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점자를 읽기 어려운 촉지도식 안내판도 많이 설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인 촉지안내판의 설치가 고려되어야만 적정설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고려할 때 음성안내장치는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편리한 건물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아직 설치율이 매우 낮아 시각장애인의 건물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촉지도식 안내판을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일반 안내판에 간단한 촉지판을 붙여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홍보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림 127) 유도 및 안내설비 현황사진

유도 및 안내시설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81>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유도 및 안내설비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872	520	374	27.8	20.0
업무시설	3,740	869	522	23.2	14.0
계	5,612	1,389	896	24.8%	16.0%

유도 및 안내설비가 의무사항인 건물군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과 업무시설군이다.

유도 및 안내설비는 시각장애인에게는 건물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촉지나 음성으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설비이며 청각장애인에게는 건물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문자 등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설비이다.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18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유도 및 안내설비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특수학교	172	46	27	26.7%	15.7%
장애인복지시설	1,700	474	347	27.9%	20.4%
계	1,872	520	374	27.8%	2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가 의무인 건물유형은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시설이며 적정설치율은 20.0%이며 설치율은 27.8%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두 건물 유형 모두 장애인관련시설인 점을 감안한다면 유도 및 안내설비는 매우 낮은 설치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2) 업무시설

<표 183>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유도 및 안내설비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업무시설(청사)	3,740	869	522	23.2%	14.0%
계	3,740	869	522	23.2%	14.0%

업무시설군 중에서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가 의무인 건물유형은 공공업무시설(청사)로 적정설치율은 14.0%이며 설치율은 23.2%로 매우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적으로 대중의 이용이 많은 시설인 공공업무시설의 설치율 확대를 위해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경보 및 피난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23.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8.1%로 평가되어 경보 및 피난설비의 적정설치율은 매우 낮으나 설치율은 평균보다 약간 떨어지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84>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4311	시각장애인 설비	2,806	2,116	737	75.4%	26.3%
4312	청각장애인 설비	2,806	1,708	602	60.9%	21.5%
계		5,612	3,824	1,339	68.1%	23.9%

경보 및 피난설비에는 2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경보기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이다.

두 항목 모두 20%대의 매우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비상시 빠른 대피를 위한 청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세부항목이 적정설치율이 26.3%밖에 되지 않으나 설치율은 75.4%인 것은 소리를 내는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연속적인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 비상시 소리가 나면 어느쪽으로 피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한 실

정이다.

또한 청각장애인도 비상시 혼자 있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시각적으로 경광등이 켜져야만 비상상황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안내시스템이 매우 부족한 21.5%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07년 4월 개정 및 시행)에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 경광등 설치가 확충되고 있으나 연속설치에 대한 미비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경보시스템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법의 지속적인 강화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통해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130) 경보 및 피난설비 현황사진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85>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872	1,135	559	60.6	29.9
업무시설	3,740	2,689	780	71.9	20.9
계	5,612	3,824	1,339	68.1%	23.9%

경보 및 피난설비가 의무사항인 건물군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과 업무시설군이다.

이는 경보 및 피난설비가 소방시설 설치 관련 규정에 의해 기본적인 설치만 되고 있기 때문이다.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18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특수학교	172	116	59	67.4%	34.3%
장애인복지시설	1,700	1,019	500	59.9%	29.4%
계	1,872	1,135	559	60.6%	29.9%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가 의무인 건물유형은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시설로 적정설치율은 29.9%이며 설치율은 60.6%로 적정설치율은 매우 낮으나 설치율은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건물 유형 모두 장애인관련시설인 점을 감안한다면 경보 및 피난설비의 현재 설치수준은 심각하다고 본다.

2) 업무시설

<표 187>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업무시설(청사)	3,740	2,689	780	71.9%	20.9%
계	3,740	2,689	780	71.9%	20.9%

업무시설군 중에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가 의무인 건물유형은 공공업무시설(청사)로 적정설치율은 20.9%이며 설치율은 71.9%로 장애인관련시설과 동일하게 적정설치율은 매우 낮고 설치율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와 같은 공공업무시설에서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가 소방시설 설치 관련 규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설치율은 높은 편이나, 연계하여 설치하는 규정에 적절하게 설치되지 못함으로써 적정설치율은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3-2-5. 기타시설

가. 객실·침실

객실·침실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44.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3.0%로 평가되어 적정 및 설치율 모두 비교적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표 188>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객실·침실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5111	장애인용 객실수	5,110	2,886	2,082	56.5%	40.7%
5112	객실 위치	5,110	3,540	2,375	69.3%	46.5%
5113	통과 유효폭	5,110	3,985	3,115	78.0%	61.0%
5114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5,110	3,754	2,965	73.5%	58.0%
5115	침대 높이	5,110	3,551	2,589	69.5%	50.7%
5121	통과 유효폭	5,110	3,295	2,033	64.5%	39.8%
5122	유효 바닥면 크기	5,109	3,414	2,464	66.8%	48.2%

5123	대변기 손잡이	5,109	2,449	1,679	47.9%	32.9%
5131	콘센트 등의 높이	5,109	3,345	2,101	65.5%	41.1%
5132	초인등	5,109	1,978	1,420	38.7%	27.8%
계		51,096	32,197	22,823	63.0%	44.7%

객실·침실에는 10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장애인용 객실수, 장애인용 객실의 설치위치, 출입구 유효폭,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침대높이, 객실내부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객실내부 화장실 유효바닥면적, 객실내 화장실 대변기의 손잡이, 콘센트 등의 설치높이,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이다. 객실·침실의 세부항목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초인등으로 27.8%의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객실내의 화장실 대변기 손잡이 적정설치율이 32.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용 객실내에서 설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설치에 아직 어떤 편의 시설인지조차 인식이 되지 않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각장애인이 혼자 객실내부에 있을 때 외부에서 벨을 아무리 눌러도 내부의 청각장애인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의 청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이와같은 청각장애인 호출 초인등의 설치에 노인과 같이 청각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 바람직한 방법이다.

또한 객실내부의 화장실에 손잡이 적정설치율이 낮은 것은 휠체어사용자가 혼자 객실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일 수 있으므로 화장실 내부의 접근뿐 아니라 손잡이 등의 적정설치도 매우 중요한 세부항목이다.

따라서 휠체어사용자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누구나 사용하더라도 편리한 객실 혹은 침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휠체어사용자용 객실은 휠체어의 회전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용 객실에 반드시 분리하여 설치하기 보다는 일반객실의 규모로 설치된 객실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비만을 갖추어 줌으로써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림 133) 객실·침실 현황사진

객실·침실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89>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객실·침실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1,610	8,962	7,416	77.2	63.9
숙박시설	36,136	21,356	13,974	59.1	38.7
기숙사	3,350	1,879	1,433	56.1	42.8
계	51,096	32,197	22,823	63.0%	44.7%

객실·침실이 의무사항인 3개 건물군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군은 63.9%로 평가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으로 조사되었다.

객실·침실이 의무사항인 5개 건물 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70.5%로 평가된 장애인복지시설이며 그 다음은 45.9%로 평가된 생활권수련시설이다. 그 외 건물 유형은 대부분이 30~40%대로 적정설치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객실·침실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치율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이 있는 건물군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숙박시설, 기숙사로 3개 건물 유형군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19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객실·침실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장애인복지시설	8,500	7,033	5,989	82.7%	70.55
생활권수련시설	3,110	1,929	1,427	62.0%	45.9%
계	11,610	8,962	7,416	77.2%	63.9%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생활권수련시설 만이 객실·침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유형으로 적정설치율은 63.9%이며 설치율은 77.2%로 다소 높은 편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적정설치율은 70.5%로 생활권수련시설보다 많이 높는데 이는 객실·침실이 필요없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많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 본다. 하지만 객실·침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생활권수련시설에서는 적정설치율이 45.9%에 지나지 않아 수련시설을 이용할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시 매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숙박시설

<표 191>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객실·침실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일반숙박시설	13,720	8,570	5,642	62.5%	41.1%
여관	22,416	12,786	8,332	57.0%	37.2%
계	36,136	21,356	13,974	59.1%	38.7%

숙박시설군은 모두 객실·침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적정설치율은 38.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9.1%로 평가되어 매우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관광숙박 및 일반숙박 시설 모두 휠체어사용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이 규정에 맞추어 설치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숙박을 하는데 큰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주5일제 근무와 같이 사회 여건은 점점 여행 등의 여가생활을 확대하여야 하나 이와같은 숙박시설의 열악한 환경은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

3) 기숙사

<표 192> 기숙사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객실·침실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기숙사	3,350	1,879	1,433	56.1%	42.8%
계	3,350	1,879	1,433	56.1%	42.8%

기숙사의 객실·침실 적정설치율은 42.8%이며 설치율은 56.1%로 나타나 비교적 적정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점점 높아지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학교 기숙사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한 침실의 설치가 필수적이다.(그림 00 참조)

나. 관람석·열람석

관람석·열람석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66.6%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0.6%로 평가되어 적정설치율은 비교적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표 193>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관람석·열람석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5211	관람석 위치	1,701	1,408	1,176	82.8%	69.1%
5212	유효바닥면적, 열람석 높이	1,701	1,335	1,091	78.5%	64.1%
계		3,402	2,743	2,267	80.6%	66.6%

관람석·열람석에는 2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관람석의 설치위치, 관람석 유효바닥면적 혹은 열람석의 높이이다.

관람석·열람석의 세부항목 모두 60%대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면서 설치율과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 비교적 잘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의 적정설치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므로 적정설치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관람석의 설치위치에 대해서는 69.1%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설치위치가 통로와는 가깝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나치게 출입 통로와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 오히려 휠체어사용자 관람석이 맨 뒷좌석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관람석의 유효바닥을 완전히 구분하지 않고 통로에 휠체어표시만을 하기보다는 휠체어사용자용 관람석이라는 표시와 함께 가변석 등을 설치함으로써 비장애인 동반자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설치율을 향상시키

면서도 휠체어사용자가 고립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열람석의 적정 설치높이는 휠체어사용자용 열람석을 별도의 열람석으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휠체어사용자의 발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65센티미터 정도 하부공간을 확보하고 9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인 열람석을 설치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다.(그림 22 참조) 이때 휠체어사용자용 열람석임을 표시하여 휠체어사용자에게 우선배려 하는 것으로도 적정설치율 향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람석이나 열람석의 경우에는 별도의 휠체어관람석을 설치하여 비워두는 상황보다는 모두 사용가능한 관람석이나 열람석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설치율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137) 관람석·열람석 현황사진

관람석·열람석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94>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관람석·열람석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248	192	143	77.4	57.7
문화 및 집회시설	756	578	427	76.5	56.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398	1,973	1,697	82.3	70.8
계	3,402	2,743	2,267	80.6%	66.6%

관람석·열람석이 의무사항인 3개 건물군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군은 근린생활시설군과 문화 및 집회시설군 그리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이며 이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적정설치율이 70.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관람석·열람석이 의무사항인 5개 건물 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74.4%로 평가된 장애인복지시설이며 그 다음은 68.0%로 평가된 특수학교이다. 그 외 건물 유형은 대부분이 50%대로 적정설치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람석·열람석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치율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이 있는 건물군인 근린생활시

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3개 건물 유형군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근린생활시설

<표 195>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관람석·열람석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도서관	248	192	143	77.4%	57.7%
계	248	192	143	77.4%	57.7%

근린생활시설군에서는 공공도서관만이 관람석·열람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유형으로 적정설치율은 57.7%이며 설치율은 77.4로 평가되어 설치율이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반드시 열람석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열람석을 특별히 장애인석으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휠체어사용자가 사용 가능하도록 일반 열람석의 하부공간을 규정에 맞추어 비워주고 상부 높이만 높지 않게 설치함으로써 적정설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간단한 개선을 실시하지 못하여 설치율을 낮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관심과 인식 부족의 결과이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표 196>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관람석·열람석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연장·관람장	756	578	427	76.5%	56.5%
계	756	578	427	76.5%	56.5%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는 공연장·관람장만이 관람석·열람석 설치가 의무이며 적정설치율은 56.5%이며 설치율은 76.5%로 평가되어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장·관람장은 반드시 휠체어사용자가 관람 가능한 관람석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적정설치율이 이와 같이 낮은 것은 휠체어사용자가 공연이나 영화관람을 위한 시설이용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19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관람석·열람석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특수학교	172	133	117	77.3%	68.0%
도서관	526	426	316	81.0%	60.1%
장애인복지시설	1,700	1,414	1,264	83.2%	74.4%
계	2,398	1,973	1,697	82.3%	70.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는 특수학교, 도서관, 장애인복지시설이 관람석·열람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유형으로 적정설치율은 70.8%이며 설치율은 82.3%로 다소 높은 편이다.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적정설치율이 74.4%이다. 관람석·열람석 설치가 필수적인 근린생활시설군의 공공도서관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 도서관의 적정설치율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적정설치율보다 낮은 60%정도이다. 이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관람석·열람석이 해당없는 경우가 다수 있어 나온 결과라고 본다.

다. 접수대·작업대

접수대·작업대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50.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9.7%로 평가되어 적정설치율은 비교적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표 198>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기타시설 중 접수대·작업대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5311	접근, 이용가능 여부	11,173	9,587	8,374	85.8%	74.9%
5312	작업대 높이	11,173	8,214	2,881	73.5%	25.8%
계		22,346	17,801	11,255	79.7%	50.4%

접수대·작업대에는 2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접수대 혹은 작업대의 접근용이성 여부, 접수대 혹은 작업대의 높이이다.

접수대·작업대의 세부항목 중에서 작업대의 높이는 적정설치율이 25.8%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에 반해 설치율은 73.5%에 달한다. 설치율이 높으면서 적정설치율이 낮다는 것은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접수대 혹은 작업대가 설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휠체어사용자가 접수대나 작업대의 높이가 적정하지 않아 작업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작업의 효율 증대를 위해서는 작업대의 적정설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시간 접수를 하는 접수대의 경우에는 하부공간을 비워두고 높이를 적절하게 맞춘 접수대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그림 23 참조), 장시간 작업을 하여야 하는 작업대는 가능한 높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 안정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40) 접수대·작업대 현황사진

접수대·작업대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99> 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접수대·작업대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16,734	13,000	7,981	77.7	47.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872	1,538	1,326	82.2	70.8
업무시설	3,740	3,263	1,948	87.2	52.1
계	22,346	17,801	11,255	79.7%	50.4%

접수대·작업대가 의무사항인 3개 건물군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70.8%로 평가된 특수학교로 조사되었다.

접수대·작업대가 의무사항인 4개 건물 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 유형은 72.1%로 평가된 특수학교이며 그 다음은 70.7%로 평가된 장애인복지시설이다. 그 외 건물 유형은 대부분이 50%정도로 적정설치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접수대·작업대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치율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이 있는 건물군인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의 3개 건물 유형군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근린생활시설

<표 200>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접수대·작업대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읍면동사무소	16,734	13,000	7,981	77.7%	47.7%
계	16,734	13,000	7,981	77.7%	47.7%

근린생활시설군에서는 읍·면·동사무소만이 접수대·작업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유형으로 적정설치율은 47.7%이며 설치율은 77.7%로 평가되어 적정설치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접수대·작업대가 민원인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이므로 적정설치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특별한 접수대나 작업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반 접수대를 휠체어사용자가 함께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부공간을 잘 설치하고 높이를 잘 설치하면 적정설치율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표 20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접수대·작업대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특수학교	172	140	124	81.4%	72.1%
장애인복지시설	1,700	1,398	1,202	82.2%	70.7%
계	1,872	1,538	1,326	82.2%	70.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에는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시설이 접수대·작업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유형으로 적정설치율은 70.8%이며 설치율은 82.2%로 다소 높은 편이다. 적정설치율이 높은 건물유형은 특수학교로 적정설치율이 72.1%이며 장애인복지시설도 70.7%로 높은 편이다.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시설 모두 접수대나 작업대의 설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휠체어사용자 등도 작업대를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업무시설

<표 202>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접수대·작업대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업무시설(청사)	3,740	3,263	1,948	87.2%	52.1%
계	3,740	3,263	1,948	87.2%	52.1%

업무시설군에서는 공공업무시설(청사)만이 접수대·작업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유형으로 적정설치율은 52.1%이며 설치율은 87.2%로 평가되어 적정설치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사도 읍·면·동사무소와 같이 공공시설로써 접수대·작업대가 민원인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이므로 적정설치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 접수대를 휠체어사용자가 함께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부공간을 잘 설치하고 높이를 잘 설치하면 적정설치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라.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가 의무사항인 건물 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적정설치율은 71.7%이며 설치율은 81.2%로 평가되어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03> 평가세부항목별 설치율 : 기타시설 중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설치항목	평가세부내용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5411	매표소 높이	850	692	640	81.4%	75.3%
5412	버튼·상품출구 높이	850	680	591	80.0%	69.5%
5413	음료대 분출구 높이	850	698	597	82.1%	70.2%
계		2,550	2,070	1,828	81.2%	71.7%

매표소·판매기·음료대에는 3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매표소의 높이, 판매기의 상품버튼 높이,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이다.

매표소·판매기 등의 세부항목 모두 적정설치율이 70%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 판매기의 버튼 혹은 상품 출구의 높이가 69.5%로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70.2%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판매기의 버튼 혹은 상품 출구의 높이가 0.4~1.2미터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보통 사용되고 있는 판매기의 높이 중에서 상품 출구가 낮게 설치된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정설치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

따라서 판매기의 적정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자동판매기 등의 제작과정에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자동판매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표소·판매기·음료대의 세부항목을 고려한 전체건물군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0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 설치율 : 기타시설 중 매표소·판매기·음료대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550	2,070	1,828	81.2%	71.7%
계	2,550	2,070	1,828	81.2%	71.7%

매표소·판매기·음료대가 의무시설인 건물군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이며, 이에 해당하는 건물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로써 71.7%의 적정설치율로 조사되었다.

3-3. 건물유형별 설치율 분석

15개 건물군으로 분류되고 44개의 건물유형으로 분류된 것에 맞추어 건물유형별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대분류되고 그 아래에 20개 편의시설로 중분류된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본다.

적정설치율이라는 것은 4점으로 평가된 것을 말하며 설치율은 2점이상 즉, 2점·3점·4점으로 평가된 것을 합한 설치율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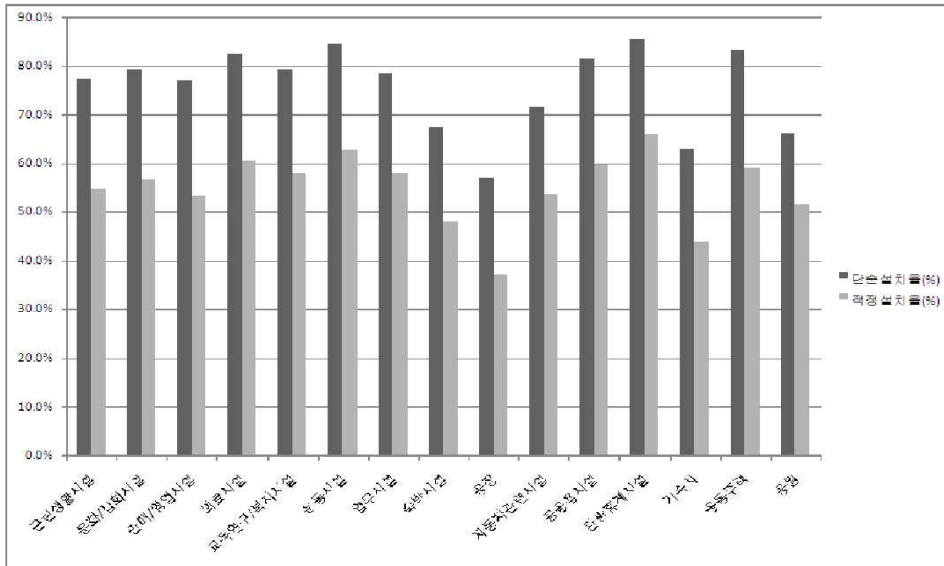
건물군을 볼 때 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군은 관광휴게시설군으로 적정설치율은 65.9%이며 설치율은 8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적정설치율이 60%이상 수준으로 평가된 건물군은 의료시설군과 운동시설군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건물유형은 44개인데 건물유형을 대분류하여 15개의 건물군으로 볼 경우 다음 <표 204>와 같으며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관광휴게시설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설치율로 조사된 관광휴게시설군의 설치율은 85.5%이며 적정설치율은 65.9%로 조사되었다.

<표 205> 전체 건물군 편의시설 설치율

건물군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923,812	714,687	505,874	77.4%	54.8%
문화 및 집회시설	137,138	108,679	77,760	79.2%	56.7%
판매 및 영업시설	66,100	50,888	35,228	77.0%	53.3%
의료시설	94,513	77,976	57,243	82.5%	60.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110,583	880,361	645,173	79.3%	58.1%
운동시설	15,714	13,272	9,850	84.5%	62.7%
업무시설	398,040	311,740	231,272	78.3%	58.1%

숙박시설	180,351	121,828	86,958	67.6%	48.2%
공장	175,385	99,842	65,317	56.9%	37.2%
자동차관련시설	27,930	19,983	14,979	71.5%	53.6%
공공용시설	9,846	8,020	5,875	81.5%	59.7%
관광휴게시설	7,455	6,371	4,910	85.5%	65.9%
기숙사	14,070	8,873	6,175	63.1%	43.9%
공동주택	563,445	468,813	332,856	83.2%	59.1%
공원	36,410	24,036	18,780	66.0%	51.6%
계	3,760,792	2,915,369	2,098,250	77.5%	55.8%



(그림 145) 건물군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대상 44개 건물유형별 설치율은 다음 <표 205>와 같다.

<표 206>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건물군	건물유형	대상건물수	대상 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근린생활시설	U31 소매점,이용원	9,059	163,062	129,813	84,691	79.6%	51.9%
	U32 일반음식점	7,584	136,512	108,431	2,275	79.4%	52.9%
	U33 일반목욕장	1,025	18,450	14,285	9,453	77.4%	51.2%
	U2 안마시술소	93	1,674	1,405	1,006	83.9%	60.1%
	J 읍면동사무소	8,367	451,818	350,270	259,149	77.5%	57.4%
	I 공공도서관	124	6,696	5,540	4,170	82.7%	62.3%
	U4 대피소	101	1,818	1,591	1,285	87.5%	70.7%
	O 공중화장실	1,712	61,632	41,221	26,879	66.9%	43.6%
N7 의원,한의원등	1,643	82,150	62,131	46,966	75.6%	57.2%	
문화 및 집회시설	T 종교집회장	3,642	83,766	65,932	46,044	78.7%	55.0%
	K 공연장,관람장	378	19,656	16,801	12,794	85.5%	65.1%
	N51 집회장	336	16,750	12,676	9,169	75.7%	54.7%
	L 전시장등	328	16,966	13,270	9,753	78.2%	57.5%
판매 및 영업시설	N3 도소매시장	1,323	66,100	50,888	35,228	77.0%	53.3%
의료시설	E 병원등	1,468	82,130	68,401	50,114	83.3%	61.0%
	N52 장례식장	248	12,383	9,575	7,129	77.3%	57.6%
교육연구	N2 학교	6,193	309,561	240,599	172,496	77.7%	55.7%

및 복지시설	B	특수학교	87	5,508	4,510	3,374	81.9%	61.3%
	N63	교육원, 학원등	2,888	144,350	109,103	79,641	75.6%	55.2%
	G	도서관	264	14,728	12,995	9,792	88.2%	66.5%
	S	아동관련시설	14,131	466,288	378,814	279,603	81.2%	60.0%
	N1	노인복지시설	1,495	74,594	59,985	44,594	80.4%	59.8%
	A	장애인복지시설	850	75,650	59,891	45,408	79.2%	60.0%
H	생활권수련시설	311	19,904	14,464	10,265	72.7%	51.6%	
운동시설	U1	운동시설	873	15,714	13,272	9,850	84.5%	62.7%
업무시설	C	공공업무시설(청사)	1,870	115,940	97,200	69,796	83.8%	60.2%
	N62	금융업소,사무소등	5,642	282,100	214,540	161,476	76.1%	57.2%
숙박시설	D	일반숙박시설	1,373	90,585	60,593	42,728	66.9%	47.2%
	R	여관	2,246	89,766	61,235	44,230	68.2%	49.3%
공장	Q4	공장	5,011	175,385	99,842	65,317	56.9%	37.2%
자동차관련시설	V	주차장	1,293	19,380	14,417	11,059	74.4%	57.1%
	N61	운전학원	171	8,550	5,566	3,920	65.1%	45.8%
공공용시설	N4	방송국등	55	2,750	2,291	1,766	83.3%	64.2%
	Q2	전신전화국등	162	5,658	4,545	3,200	80.3%	56.6%
	M	교도소등	28	1,438	1,184	909	82.3%	63.2%
관광휴게시설	Q1	야외음악당등	28	980	795	648	81.1%	66.1%
	Q3	휴게소등	185	6,475	5,576	4,262	86.1%	65.8%
기숙사	P	기숙사	337	14,070	8,873	6,175	63.1%	43.9%
공동주택	Y1	아파트	8,053	281,785	246,050	188,629	87.3%	66.9%
	Y11	부대복지시설	322	15,778	12,188	9,426	77.2%	59.7%
	Y2	연립주택	2,183	39,276	29,651	18,831	75.5%	47.9%
	Y3	다세대주택	12,593	226,606	180,924	115,970	79.8%	51.2%
공원	Z1	도시공원	1,607	35,354	23,413	18,391	66.2%	52.0%
	Z2	자연공원	48	1,056	623	389	59.0%	36.8%
계			107,730	3,760,792	2,915,369	2,098,250	77.5%	55.8%

3-3-1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별 전체 설치율은 다음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내부시설의 승강기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88.5%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도 91.7%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을 나타낸 편의시설은 26.8%로 나타난 안내시설의 점자블록이다.

근린생활시설군에서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에서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차이제거는 모든 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이며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은 건물유형 중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이 설치대상이다. 그리고 기타시설 중 관람석·열람석은 공공도서관, 접수대·작업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설치하여야하는 편의시설이다.

<표 207> 근린생활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237,664	194,777	143,052	82.0%	60.2%
	주차구역	50,670	37,222	30,970	73.5%	61.1%
	높이차이제거	59,416	40,792	22,380	68.7%	37.7%
내부	출입구(문)	237,664	201,688	131,522	84.9%	55.3%
	복도	30,402	28,252	23,492	92.9%	77.3%
	계단	40,536	33,540	26,362	82.7%	65.0%
	경사로	50,670	46,429	44,612	91.6%	88.0%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위생	승강기	30,402	27,882	26,908	91.7%	88.5%
	대변기	142,152	75,864	40,692	53.4%	28.6%
	소변기	3,424	1,625	1,207	47.5%	35.3%
	세면대	3,424	2,509	1,092	73.3%	31.9%
안내	점자블록	20,406	10,915	5,461	53.5%	26.8%
기타	관람·열람석	248	192	143	74.4%	57.7%
	접수·작업대	16,734	13,000	7,981	77.7%	47.7%
계		923,812	714,687	505,874	77.4%	54.8%

이러한 건물군에 속하는 유형 중에서 읍·면·동사무소와 공공도서관이 편의시설 설치 수가 많으며, 소매점, 이용원,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의원 등에 관한 건물유형의 설치율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가. 소매점, 이용원(U31)

<표 208> 소매점, 이용원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72,472	58,613	40,612	80.9%	56.0%
	높이차이제거	18,118	11,515	7,134	63.6%	39.4%
내부	출입구(문)	72,472	59,685	36,945	82.4%	51.0%
계		163,062	129,813	84,691	79.6%	51.9%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9,059개로서 가장 주거지에서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횟수가 빈번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및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만이 설치의무사항이다. 조사된 전국 소매점 및 이용원의 대상편의시설 수는 163,062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51.9%로 84,691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79.6%로 129,813개의 편의시설이다.

1) 매개시설

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는 적정설치율이 56%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0.9%로 평가되었다. 주출입구 접근로 중에서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된 항목이 7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을 뿐 대부분의 항목이 50~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전보행통로 항목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설치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건물유형군인 근린생활시설에서 건물유형인 소매점과 이용원은 대지경계선에 인접하게 건축된 소규모 건축물에 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소규모 건축물에 안전보행통로 설치를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는 적정설치율이 39.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3.6%로 평가되었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중에서 출입구에 계단 등의 단차가 있는 대상건물에서 설치하게 되는 경사로 설치항목이 적정설치율은 매우 낮은 34.3%를 보이고 있고 설치율 또한 57.7%로 평가되어 경사로 중에서 많은 경사도가 적정치 못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소매점과 이용원이 주거지에서 인접한 곳에 대부분 설치되는 것과 대지의 형태 및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건축물 등으로 인해 주출입구의 높이차이제거 및 법적 경사로 설치율을 낮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접근성이 편리해야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대지의 형태 및 건축물 규모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내부시설

가) 출입구(문)

출입구(문)은 적정설치율이 5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2.4%로 평가되어 적정하게 설치된 출입구보다 그렇지 못한 출입구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출입구(문)의 경우에는 ‘주출입구 문턱의 높이차이 및 점형블록 설치여부’ 항목과 ‘공중의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실의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위치하여 출입문 옆의 벽면에 점자표지판부착’이 적정설치율과 설치율의 차이가 50%에 가까워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주출입구 문턱의 높이차이 및 점형블록 설치에서 적정설치율과 설치율사이 수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기존 건축물의 입지적 형태와 점형블록의 미설치에 있다. 비록 건축물의 입지적 조건이 평탄하고 일정규모 이상으로 인해 점형블록 설치가 높다하더라도 소매점과 이용원의 경우 영세한 경우가 많아 설치율이 더 낮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의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위치하여 출입문 옆의 벽면에 점자표지판부착의 경우는 문을 만드는 제작자와 시설주의 인식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축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반제품은 기성품이 많으므로 이러한 제품을 제작 할 때부터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기준이 적용되고 점자표지판부착은 출입문 설치와 동시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체화 된다면 더더욱 설치율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읍·면·동사무소(J)

<표 209> 읍·면·동사무소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66,936	54,585	42,973	81.5%	64.2%
	주차구역	41,835	31,380	26,223	75.0%	62.7%
	높이차이제거	16,734	13,957	5,963	83.4%	35.6%
내부	출입구(문)	66,936	60,943	41,533	91.0%	62.0%
	복도	25,101	23,420	19,781	93.3%	78.8%
	계단	33,468	28,158	22,698	84.1%	67.8%
	경사로	41,835	38,859	37,619	92.9%	89.9%
	승강기	25,101	23,211	22,915	92.5%	91.3%
위생	대변기	100,404	53,212	26,943	53.0%	26.8%
안내	점자블록	6,734	9,545	4,520	57.0%	27.0%
기타	접수·작업대	16,734	13,000	7,981	77.7%	47.7%
'계		451,818	350,270	259,149	77.5%	57.4%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8,367개로서 건축유형이 국민의 행정을 취급하는 곳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나 노인 등 노약자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다. 대부분이 소규모인 6층미만인 건축물인 관계로 내부시설 중 승강기설치보다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생시설에서는 화장실규모가 협소하여 대변기만 의무사항이다. 조사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수는 451,818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57.4%로 259,149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77.5%로 350,270개의 편의시설이다.

1) 매개시설

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는 적정설치율이 64.2%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1.5%로 평가되었다. 주출입구 접근로 중에서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된 항목이 80%이상이고 접근로의 유효폭 항목이 80%에 근접한 79.8%로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항목이 60~70%대로 이중 60%대는 접근로의 기울기에 대한 것으로 국민의 행정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가 아직도 설치에만 급급할 뿐 적정한 기울기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안전보행통로 항목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설치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대부분이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지않아 안전보행통로 항목에 대해서는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차도와 인도에 대한 인식과 안전불감증에 가까운 국민의 인식 등으로 인해 건축물을 강조하는 조경 즉 화단은 설치하면서도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구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로 잡아 안전보행통로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시키게 하고 건축설계에 있어서도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적정설치율이 62.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5%로 평가되었다. 세부항목에서는 주차면수 확보 항목이 적정설치율이 71.7%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항목 대부분은 54~66%로 나타났다.

이 중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54%인 항목은 주출입구접근로와 같이 안전보행통로로서 더욱 놀라운 결과는 1점에 해당하는 ‘모든 구간에 별도의 안전보행통로 없이 차량과 같은 레벨에서 접근함’이 미 설치율로서 34.9%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안전보행통로가 없으면 옆 차량과의 이격간격이 없음으로 인해 이동수단인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안전보행통로가 있다고 해도 차량과 같은 레벨이 아닌 높낮이가 있다던가 경사가 있을 경우 휠체어 사용이 어려워 이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시설이 미 설치율이 34.9%라는 것은 휠체어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적정설치율이 35.6%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3.4%로 평가되었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중에서 출입구에 계단 등의 단차가 있는 대상건물에서 설치하게 되는 경사로 설치항목이 적정설치율은 매우 낮은 35.6%를 보이고 있고 설치율 또한 84.1%로 평가되어 경사로 중에서 많은 경사료가 적정치 못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사무소 중 동사무소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 있으므로 건물유형 중 소매점과 이용원과 같이 주거지에서 인접한 곳에 대부분 설치되고 대지의 형태 및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건축물 등으로 인해 주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및 법적 경사로 설치율을 낮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읍면사무소의 경우 동사무소에 비해 건축면적이 크고 대지경계선과 인접한 경우가 드물어 경사로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경사로 설치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휠체어사용자나 노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모른다고 할 수 있으므로 건축설계자나 건축주에게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2) 내부시설

가) 출입구(문)

출입구(문)의 적정설치율이 62%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1%로 평가되어 적정하게 설치된 출입구보다 그렇지 못한 출입구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출입구(문)의 항목 중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의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위치하여 출입문 옆의 벽면에 점자표지판부착’의 경우 적정설치율은 12%이고 설치율은 70.9%로 그 차이가 60%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주출입구 문턱의 높이차이 및 점형블록 설치여부’ 항목의 경우 적정설치율은 47.7%이고 설치율은 88.3%로 그 차이가 40%에 가까운 차이를 보여 보임으로써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출입구 문턱의 높이차이 및 점형블록 설치에서 적정설치율과 설치율사이 수치가 차이나는 이유는 주로 점형블록의 미설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동사무소보다 읍면사무소가 미설치되거나 설치되었으나 표준형 점형블록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실의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위치하여 출입문 옆의 벽면에 점자표지판부착의 경우는 점자표지판 부착에서 민원실의 경우 문이 없고 읍면동장실이나 상담실 정도에 문이 설치되어있어 점자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축물에 비해 현저하게 그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읍면동사무소의 건물의 특징의 하나로 공중이 이용하는 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 복도

복도의 적정설치율이 78.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3.3%로 평가되었다.

본 건물유형에서는 가장 설치율이 높은 편의시설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복도의 바닥마감이 미끄럽지 않아야만 평가를 적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복도 항목에서 적정설치율은 65.8%, 설치율은 94.8%로서 그 차이가 30% 가까이 나타냄으로써 바닥마감이 미끄럽게 설치된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복도의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목발을 사용하여야 하는 건물이용자들이 바닥에 물이 묻어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는 애초에 바닥재에 대한 획일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복도 바닥 일부분이라도 미끄럽지 않게 마감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계단 또는 승강기(내부 경사로 포함)

계단은 적정설치율이 67.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4.1%로 평가되었다. 계단의 항목 중 손잡이 설치 항목이 설치율은 83.6%, 적정설치율이 56%로 설치율 차이가 나며, 계단 쉼면 및 디딤판은 설치율이 93.2%, 적정설치율이 78.9%로 나타나 두 항목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간의 차이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사로는 적정설치율이 89.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2.9%로 평가되어 설치되는 경사로의 많은 경우가 적정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승강기는 적정설치율이 91.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2.5%로 설치된 승강기 대부분이 적정하게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강기 설치가 적고 내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또한 적어 조사대상 중에 설치된 곳에는 대부분이 적정한 수준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로 계단이 많이 설치되어 원활한 수직이동은 불가하여 주로 1층에 민원실이 있으며 2층의 경우 문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근래에는 주민들의 문화나 컴퓨터 교실 등에 관심이 많아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노약자를 위해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위생시설

가. 대변기

대변기의 적정설치율이 26.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3%로 평가되어 적정하지 않게 설치된 대변기가 너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변기 중에서도 휠체어사용자도 사용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구분 설치에 대한 적정설치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58.7%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소리를 듣는데 매우 제한적인 청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화장실 사용유무에 대한 시각설비 및 일반화장실 앞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도움을 주는 점형블록의 설치가 더욱 낮은 수준인 적정설치율 10%대이고 설치율도 30%에 지나지 않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시설 이용상의 제약 여건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지체장애인 위주로 설치된 것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 안내시설

가) 점자블록

점자블록의 적정설치율이 2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7%로 평가되어 의무설치임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 중 연속적인 점자블록설치의 경우 미 설치율이 44.5%로 적정설치율보다 높아 읍면동 사무소의 점자블록이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의 적정설치율은 30.3%, 설치율은 58.6%로서 점자블록이 설치되는 되어 있으나 표준형 미설치로 특히 내부보다 외부의 경우 바닥재가 주로 고강도블록인 관계로 시공적인 면에서 더욱 표준형 설치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5) 기타시설

가) 접수대·작업대

접수대·작업대의 적정설치율이 47.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7.7%로 평가되었다.

세부항목에서 접수대·작업대의 높이 및 하부공간 설치의 적정설치율은 21.8%, 설치율은 70.8%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하부공간의 높이 및 깊이에 대한 설치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대(필경대)의 경우는 가구의 한 종류라서 대부분이 하부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접수대의 경우 일체화되어 설치됨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래에는 민원인을 위한 접수대를 설치하는 관계로 이에 대한 적정설치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다. 공공도서관(I)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124개로서 건축면적이 1,000㎡이하의 규모로서 시설주가 시, 군, 구로서 인근 지역 주민 이외에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은 접근로가 긴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조사된 전국 공공도서관의 대상 편의시설 수는 6,696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62.3%로 4,170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82.7%로 5,540개의 편의시설이다.

<표 210> 공공도서관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 개	접근로	992	842	639	84.9%	64.4%
	주차구역	620	453	341	73.1%	55.0%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높이차이제거	248	223	135	89.9%	54.4%
내부	출입구(문)	992	940	733	94.8%	73.9%
	복도	372	345	267	92.7%	71.8%
	계단	496	402	286	81.0%	57.7%
	경사로	620	531	480	85.6%	77.4%
	승강기	372	328	322	88.2%	86.6%
위생	대변기	1,488	1,104	712	74.2%	47.8%
안내	점자블록	248	180	112	72.6%	45.2%
기타	관람·열람석	248	192	143	77.4%	57.7%
계		6,696	5,540	4,170	82.7%	62.3%

1) 매개시설

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는 적정설치율이 64.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4.9%로 평가되었다. 주출입구 접근로 중에서 안전보행통로 항목의 적정설치율이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를 위한 안전보행통로의 설치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출입으로 인해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간의 구분이 없을 경우 안전보장이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접근로가 긴 경우이거나 관리사무소가 없을 경우 공공의 시야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고, 접근로의 형태가 직선의 경우도 있지만 꺾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행통로에 대한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내부시설

가) 출입구(문)

출입구(문)은 적정설치율이 73.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4.8%로 평가되었다. 내부 각실 출입문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손잡이 설치와 출입문 점자표지판 부착하는 항목에서 적정설치율이 27.4%로 나타남으로써 점자표지판 부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주출입구 문에 설치하여야 하는 점형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고 내부 주요실의 출입구에 점자표지판 부착이 거의 되지 않는 대상건물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특정 도서관 즉 점자도서관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 점자도서관의 경우 글을 소리로 들려주는 시설을 위해 방음이 가능한 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자로 만들어진 책이 구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이유로 점자표지판 부착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시각장애인 중에는 약시인이 있기 때문이다. 약시인의 경우 일반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쉽게 공공이 이용하는 실을 찾을 수 있도록하는 점자표지판이나 점형블록 설치는 당연히 설치되어야 한다.

각 실에 문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점자표지판도 함께 설치되어야 함을 시설주들에게 알려 주어야 된다고 본다.

3) 위생시설

가) 대변기

대변기는 적정설치율이 47.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4.2%로 평가되어 적정하지 않게 설치된 대변기가 매우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변기 중에서도 휠체어사용자도 사용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구분 설치에 대한 적정설치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34.7%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소리를 듣는데 매우 제한적인 청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화장실 사용유무에 대한 시각설비 및 일반화장실 앞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도움을 주는 점형블록의 설치가 더욱 낮은 수준인 적정설치율 20%대이고 설치율도 40%~50%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변기 세정장치의 경우 적정설치율 23.4%대이고 설치율도 62.9%로 휠체어 사용자 중 뇌병변장애가 있을 경우 대변기 사용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4) 기타시설

가) 관람석·열람석

관람석·열람석의 적정설치율은 57.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7.4%로 평가되었다. 관람석·열람석의 경우는 주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항목으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확보공간에 관한 것으로 설치하는데 시공이 어렵거나 공간 확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물유형에 비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이는 관심 및 배려 부족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사(死)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경우 비장애인도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을 우선 배려하는 자리로 이해하면 좀 더 설치율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 의원, 한의원 등(N7)

<표 211> 의원, 한의원 등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13,144	11,933	9,514	90.8%	72.4%
	주차구역	8,215	5,389	4,406	65.6%	53.6%
	높이차이제거	3,286	2,483	1,678	75.6%	51.1%
내부	출입구(문)	13,144	12,061	8,658	91.8%	65.9%
	복도	4,929	4,487	3,444	91.0%	69.9%
	계단	6,572	4,980	3,378	75.8%	51.4%
	경사로	8,215	7,039	6,513	85.7%	79.3%
	승강기	4,929	4,343	3,671	88.1%	74.5%
위생	대변기	19,716	9,416	5,704	47.8%	28.9%
계		82,150	62,131	46,966	75.6%	57.2%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1,643개로서 건축유형이 병원 중 작은 규모의 시설로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나 노인 등 노약자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다. 대부분이 소규모 건축물이거나 상가가 밀집된 곳에 위치함으로 인해 편리한 수직이동이 어렵고 화장실규모가 협소하거나 대상시설과는 동일 층이 아닌 곳에 위생시설인 대변기가 설치된 경우가 많다. 조사된 전국의 의원 및 한의원 등의 수는 82,150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57.2%로 46,966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75.6%로 62,131개의 편의시설이다.

1) 내부시설

가) 출입구(문)

출입구(문)은 적정설치율이 65.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1.8%로 평가되어 적정하게 설치된 출입구보다 그렇지 못한 출입구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출입구(문)의 경우에는 출입구 문턱의 높이차이 및 점형블록 설치여부 항목의 적정설치율이 28.5%, 설치율이 80.2%로 그 차이가 50% 이상으로 설치가 심각할 정도로 되지 못하고 있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부 각실 출입문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손잡이 설치와 출입문 점자표지판 부착하는 항목에서 적정설치율이 18.4%로 나타남으로써 점자표지판 부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건물유형의 주출입구(문)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일부 분양 또는 임대자가 대부분임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건축주가 이러한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라면 신축시에 이미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98년 이후 용도변경이 있었을 경우라도 비용이나 시공상의 이유로도 설치가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나) 계단 또는 승강기(경사로 포함)

계단은 적정설치율이 51.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5.8%로 평가되었다. 계단에서는 손잡이 설치 항목이 설치율은 89.5%로 매우 높으나 적정설치율이 55.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사로는 적정설치율이 79.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5.7%로 평가되어 설치되는 경사로의 많은 경우가 적정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승강기는 적정설치율이 74.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8.1%로 설치된 승강기 대부분이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원, 한의원의 경우 서비스를 포함한 시설로서 되도록 수직이동이 가능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 승강기의 경우 적정한 수준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승강기가 있을 경우 계단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가 고려되지 않으므로 승강기에 비해 계단의 적정설치율은 낮다. 그리고 경사로는 설치된 경우만 조사되므로 건물의 편의상 설치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적정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2) 위생시설

가) 대변기

대변기는 적정설치율이 28.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47.8%로 평가되어 적정하지 않게 설치된 대변기가 매우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변기 중에서도 휠체어사용자도 사용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구분 설치에 대한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24.2%로 평가되었다. 대부분 항목 중 대변기의 형태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적정설치율 20%~30%대로서 설치율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사건물유형이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일부 분양 또는 임대자가 대부분이고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1개 이상의 남녀구분하여 대변기 설치가 의무임을 감안하여 1층에 주로 화장실이 형성되어 있어 의원·한의원 설치된 해당층에는 제대로 편의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미 설치율이 대부분의 항목에 40%~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다.

본 조사대상시설은 서비스를 포함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3-3-2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별 전체 설치율은 다음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내부시설의 승

장기 적정설치율이 76%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복도가 90.4%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을 나타낸 편의시설은 26.8%로 근린생활시설군과 같이 안내시설의 점자블록이다.

건물유형 중에서 점자블록이 설치대상인 것은 전시장, 동·식물원만이 의무 편의시설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연장 및 관람장의 경우 건물유형의 특이성에 의해 기타시설 중 관람석·열람석이 의무사항으로 적정설치율이 56.5% 설치율은 76.5%로 평가되었다.

<표 212> 문화 및 집회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37,464	31,151	23,033	83.1%	61.5%
	주차구역	23,415	14,969	11,006	63.9%	47.0%
	높이차이제거	9,366	7,135	4,459	76.2%	47.6%
내부	출입구(문)	37,459	33,142	22,790	88.5%	60.8%
	복도	3,120	2,819	2,156	90.4%	69.1%
	계단	4,160	3,177	2,251	76.4%	54.1%
	경사로	5,195	4,337	3,828	83.5%	73.7%
	승강기	3,111	2,648	2,365	85.1%	76.0%
위생	대변기	12,444	8,427	5,282	67.7%	42.4%
안내	점자블록	648	296	163	45.7%	25.2%
기타	관람·열람석	756	578	427	76.5%	56.5%
계		137,138	108,679	77,760	79.2%	56.7%

건물군에 속하는 유형 중에서 가장 편의시설 수가 많은 전시장, 동·식물원에 관한 설치율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가. 전시장, 동·식물원(L)

<표 213> 전시장, 동·식물원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2,624	2,242	1,705	85.4%	65.0%
	주차구역	1,640	1,142	790	69.6%	48.2%
	높이차이제거	656	549	366	83.7%	55.8%
내부	출입구(문)	2,619	2,386	1,806	91.1%	69.0%
	복도	981	851	656	86.7%	66.9%
	계단	1,308	996	713	76.1%	54.5%
	경사로	1,630	1,306	1,148	80.1%	70.4%
	승강기	972	814	717	83.7%	73.8%
위생	대변기	3,888	2,688	1,689	69.1%	43.4%
안내	점자블록	648	296	163	45.7%	25.2%
계		16,966	13,270	9,753	78.2%	57.5%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328개로서 건물의 위치가 전시물의 종류에 따라 번잡한 곳에 있거나 교외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전시장의 특징으로 인해 장애유형에 따라 안정

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조사된 전국 전시장 등의 대상편의시설 수는 16,966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57.5%로 9,753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78.2%로 13,270개의 편의시설이다.

1) 매개시설

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는 적정설치율이 6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5.4%로 평가되었다. 주출입구 접근로 중에서 접근로의 유효폭 항목이 8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을 뿐 대부분의 항목이 60%~7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로 기울기 및 안전보행통로 항목은 50%대로 나타났다.

대지유형이 경사지에 설치된 경우 접근로의 기울기가 1/18이하로 설치되어 수동형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전시장 접근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안전보행통로의 경우 적정설치율이 50%대로서 다른 건물유형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은 대지 및 건물규모가 크고 전시장이라는 용도의 특징인 동시간대에 많은 관람객의 이동이 필요함으로 인해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의 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본다.

2) 내부시설

가) 계단 또는 승강기(경사로 포함)

계단은 적정설치율이 54.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6.1%로 평가되었다. 세부항목 중 손잡이 설치의 적정설치율이 40.7%, 설치율은 75.2%로 평가 되었으며, 점자블록 설치의 적정설치율은 33.3%, 설치율 53.8%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단 또는 승강기가 의무로서 편의시설이 승강기 위주로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이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사로는 적정설치율이 70.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0.1%로 평가되어 설치되는 경사로의 많은 경우가 적정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시장의 특징상 건물의 구조가 전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경사로 설치가 되어 있어 적절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승강기는 적정설치율이 73.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3.7%로 설치된 승강기 대부분이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시설에 비해 수직이동 시설이 안정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위생시설

가) 대변기

대변기는 적정설치율이 43.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9.1%로 평가되어 적정하지 않게 설치된 대변기가 너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변기 중에서도 휠체어사용자도 사용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구분 설치에 대한 적정설치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32.4%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소리를 듣는데 매우 제한적인 청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화장실 사용유무에 대한 시각설비 및 일반화장실 앞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도움을 주는 점형블록의 설치가 더욱 낮은 수준인 적정설치율 20.4%이고 설치율도 46.3%에 지나지 않아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안내시설

가) 점자블록

점자블록은 적정설치율이 25.2%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45.7%로 평가되어 전시장 등의 건물유형에서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점자블록의 설치율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본다. 전맹인과 약시인 모두를 위한 시설이 점자블록임을 설치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전시장의 경우 점자블록만 의무사항이나 경고 및 피난시설을 의무화하고 또한 비상시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피난설비의 추가적인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3-3-3 의료시설

의료시설군의 편의시설별 전체 설치율은 다음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으며 매개시설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항목이 71.2%로 관광휴게시설군의 71.5% 다음으로 적정하게 설치된 건물시설군이다. 의료시설군에는 접근로의 적정설치율이 64.6%인 장례식장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적정설치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시설 중 승강기의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80.8%로 평가되었지만 의료시설의 건물 특성으로 본다면 높은 적정설치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환자용 침상이동에 있어서 수직이동은 필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을 나타낸 편의시설은 타 건물군과 같이 27.8%로 나타난 안내시설의 점자블록

이다.

<표 214> 의료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13,721	12,155	9,770	88.6%	71.2%
	주차구역	8,575	6,438	4,407	75.1%	51.4%
	높이차이제거	3,430	3,149	2,125	91.8%	62.0%
내부	출입구(문)	13,720	12,965	10,031	94.5%	73.1%
	복도	5,145	4,864	3,812	94.5%	74.1%
	계단	6,860	5,551	3,880	80.9%	56.6%
	경사로	8,571	7,544	6,837	88.0%	79.8%
	승강기	5,139	4,749	4,154	92.4%	80.8%
위생	대변기	20,556	14,684	8,999	71.4%	43.8%
	소변기	2,932	1,919	1,404	65.5%	47.9%
	세면대	2,932	2,474	1,010	84.4%	34.4%
안내	점자블록	2,932	1,484	814	50.6%	27.8%
계		94,513	77,976	57,243	82.5%	60.6%

이러한 건물군에 속하는 유형 중에서 병원에 관한 설치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가. 병원 등(E)

<표 215> 병원 등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11,737	10,615	8,489	90.4%	72.3%
	주차구역	7,335	5,530	3,795	75.4%	51.7%
	높이차이제거	2,934	2,726	1,867	92.9%	63.6%
내부	출입구(문)	11,736	11,153	8,710	95.0%	74.2%
	복도	4,401	4,176	3,275	94.9%	74.4%
	계단	5,868	4,809	3,362	82.0%	57.3%
	경사로	7,333	6,526	5,881	89.0%	80.2%
	승강기	4,398	4,122	3,578	93.7%	81.4%
위생	대변기	17,592	12,867	7,929	73.1%	45.1%
	소변기	2,932	1,919	1,404	65.5%	47.9%
	세면대	2,932	2,474	1,010	84.4%	34.4%
안내	점자블록	2,932	1,484	814	50.6%	27.8%
계		82,130	68,401	50,114	83.3%	61.0%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1,468개로서 가장 주거지에서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횟수가 빈번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및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만이 설치의무사항이다. 조사된 전국 병원 등의 대상편의시설 수는 82,130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61.0%로 50,114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83.3%로 68,401개의 편의시설이다.

1) 내부시설

가) 계단 또는 승강기(경사로 포함)

계단은 적정설치율이 57.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2%로 평가되었다. 계단에서 적정설치율이 낮아진 이유로는 세부항목 중 점자블록 설치의 적정설치율이 40.6%로 매우 낮은 설치율 때문이다. 이는 계단 또는 승강기가 의무로서 편의시설이 승강기 위주로 설치되어서 이다.

병원의 특성상 경사로의 설치에 대한 여러 기능 중 환자용 침대 및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적정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승강기는 적정설치율이 81.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3.7%로 설치된 승강기 대부분이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시설에 비해 수직이동 시설이 안정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위생시설

가) 대변기

대변기는 적정설치율이 45.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3.5%로 평가되어 적정하지 않게 설치된 대변기가 너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변기 중에서도 휠체어사용자도 사용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구분 설치에 대한 적정설치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43.6%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소리를 듣는데 매우 제한적인 청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화장실 사용유무에 대한 시각설비 및 일반화장실 앞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도움을 주는 점형블록의 설치가 더욱 낮은 수준인 적정설치율 20%대이고 설치율도 40%에 지나지 않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뇌병변 장애나 지체장애 중에서 절단장애가 있을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대변기 세정장치 설치의 적정설치율 또한 22.6%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보호자가 있거나 간호사 등 인적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다소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소변기

소변기는 적정설치율이 47.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5.5%로 평가되었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변기를 설치하는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같이 소변기 설치율이 낮은 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병원의 특성상 보호자 및 간호사 등 인적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변기의 손잡이 설치에 대해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세면대

세면대는 적정설치율이 34.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4.4%로 평가되어 병원시설에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가장 많은 편의시설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세면대의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세면기에 설치되어야 하는 냉·온수 점자표지가 거의 설치되지 않은 이유와 세면대 하부공간에 휠체어사용자의 발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활동공간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안내시설

가) 점자블록

점자블록은 적정설치율이 27.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0.6%로 평가되어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나 연속적으로 설치 및 표준형 미설치로 특히 내부보다 외부의 경우 바닥재가 주로 고강도블록인 관계로 시공적인 면에서 더욱 표준형 설치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3-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의 편의시설별 전체 설치율은 다음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으며, 건물유형이 학교, 복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의 적정설치율이 80%이상이 되는 항목이 없다. 내부시설의 승강기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79.4%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복도인 88.5%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을 나타낸 편의시설은 타 시설의 점자블록과는 달리 20.0%로 나타난 안내시설의 유도시설이다. 이는 앞서 서술한 건물군의 경우는 안내시설의 유도시설이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편의시설에서 안내시설 3개의 항목이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1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209,716	174,008	126,549	83.0%	60.3%
	주차구역	60,415	41,046	29,446	67.9%	48.7%
	높이차이제거	52,426	37,115	21,672	70.8%	41.3%
내부	출입구(문)	209,696	178,718	110,815	85.2%	52.8%
	복도	78,636	69,601	55,016	88.5%	70.0%
	계단	104,842	82,528	61,793	78.7%	58.9%
	경사로	131,037	112,261	101,072	85.7%	77.1%
	승강기	78,615	66,455	62,421	84.5%	79.4%
위생	대변기	144,914	88,991	53,964	61.4%	37.2%
	소변기	3,020	1,974	1,473	65.4%	48.8%
	세면대	3,020	2,592	1,108	85.8%	36.7%
	욕실	5,100	3,992	3,107	78.3%	60.9%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안 내	샤워실	5,100	3,982	2,936	78.1%	57.6%
	점자블록	1,872	900	601	48.1%	32.1%
	유도설비	1,872	520	374	27.8%	20.0%
	피난설비	1,872	1,135	559	60.6%	29.9%
기 타	객실·침실	11,610	8,962	7,416	77.2%	63.9%
	관람·열람석	2,398	1,973	1,697	82.3%	70.8%
	접수·작업대	1,872	1,538	1,326	82.2%	70.8%
	매표소 등	2,550	2,070	1,828	81.2%	71.7%
계		1,110,583	880,361	645,173	79.3%	58.1%

이러한 건물군에 속하는 유형 중에서 학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건물유형의 설치율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가. 학교 (N2)

<표 217> 학교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 개	접근로	49,536	42,327	31,002	85.4%	62.6%
	주차구역	30,960	20,649	13,779	66.7%	44.5%
	높이차이제거	12,384	9,844	5,979	79.5%	48.3%
내 부	출입구(문)	49,536	44,909	30,839	90.7%	62.3%
	복도	18,576	16,809	12,820	90.5%	69.0%
	계단	24,766	18,162	12,499	73.3%	50.5%
	경사로	30,953	26,352	23,408	85.1%	75.6%
	승강기	18,570	15,199	14,313	81.8%	77.1%
위 생	대변기	74,280	46,348	27,857	62.4%	37.5%
계		309,561	240,599	172,496	77.7%	55.7%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6,193개로서 일반 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장애유형이 지체장애인이다. 그래서 편의증진법 설치기준 중 특이 사항으로 ‘장애인학생을 위한 교실·화장실을 1층에 모두 배치한 경우에는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 학생이 학년이 바뀔 때 마다 1층에 둔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조사된 전국 학교시설의 대상편의시설 수는 309,561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55.7%로 172,496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77.7%로 240,599개의 편의시설이다.

1) 매개시설

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는 적정설치율이 62.6%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5.4%로 평가되었다. 주출입구 접근로 유효폭 항목만이 80.8%, 접근로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마감 항목이 80%에 근접한

77.7%로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항목이 60~70%대이며 안전보행통로 항목의 경우는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보행통로에 보행장애물이 있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적정설치율이 48.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9.5%로 평가되었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중에서 출입구에 계단 등의 단차가 있는 대상건물에서 설치하게 되는 경사로 설치항목이 적정설치율은 매우 낮은 44.6%를 보이고 있고 설치율 또한 77.8%로 평가되어 경사로 중에서 많은 경사도가 적정치 못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경우 지역의 대지형태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고학년 일수록 학교의 위치가 높은 대지 위에 위치하게 되어 적정 규정인 1/12로 설치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건축면적이 크고 대지경계선과 인접하지 않아 접근로 기울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토목작업에서 배려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설치가 힘든 경우도 있다. 이는 편의증진법이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토목분야 까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이로 인해 추가비용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내부시설

가) 출입구(문)

출입구(문)은 적정설치율이 62.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0.7%로 평가되어 적정하게 설치된 출입구보다 그렇지 못한 출입구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출입구(문)의 경우에는 출입구 문턱의 높이차이 및 점형블록 설치여부 항목의 적정설치율이 24.7%, 설치율이 79.2%로 그 차이가 50% 이상으로 설치가 심각할 정도로 되지 못하고 있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부 각실 출입문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손잡이 설치와 출입문 점자표지판 부착하는 항목에서 적정설치율이 13.4%로 나타남으로써 점자표지판 부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건물유형의 주출입구(문)의 경우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로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한 필요성 저하로 설치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나) 계단 또는 승강기(경사로 포함)

계단은 적정설치율이 50.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3.3%로 평가되었다. 계단에서는 점형블록 설치 항목이 적정설치율이 14.2%, 설치율은 26.9%로 둘 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학교의 경우로 시각장애인 학생 보다 휠체어 장애인 학생이 입학 하는 사례가 많으며 저학년일수록 계단에 설치된 점형블록이 다소 보행이 어려운 점으로 인해 설치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승강기는 적정설치율이 77.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1.8%로 설치된 승강기 대부분이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승강기의 경우 초·중·고 보다 대학의 경우가 많으며 설치된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인해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중 일반 초·중·고의 경우 승강기 설치가 건축법상 승강기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수직이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 일반 학교에서 지체장애인 즉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수직이동이 가능한 승강설비가 설치되도록 고려되었으면 한다.

2) 위생시설

가. 대변기

대변기는 적정설치율이 37.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2.4%로 평가되어 적정하지 않게 설치된 대변기가 매우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변기 중에서도 휠체어사용자도 사용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구분 설치에 대한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28.8%로 평가되었다. 대부분 항목 중 대변기의 형태에 대한 항목만이 60% 이상으로 평가되어 화장실 중 기성품인 대변기 형태가 편의증진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특수학교 (B)

<표 218> 특수학교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692	611	497	88.3%	71.8%
	주차구역	430	307	198	71.4%	46.0%
	높이차이제거	172	161	123	93.6%	71.5%
내부	출입구(문)	688	648	501	94.2%	72.8%
	복도	258	238	194	92.2%	75.2%
	계단	344	303	239	88.1%	69.5%
	경사로	430	369	312	85.8%	72.6%
	승강기	258	225	202	87.2%	78.3%
위생	대변기	1,032	832	538	80.6%	52.1%
	소변기	172	141	126	82.0%	73.3%
	세면대	172	152	68	88.4%	39.5%
안내	점자블록	172	88	49	51.2%	28.5%
	유도설비	172	46	27	26.7%	15.7%
	피난설비	172	116	59	67.4%	34.3%
기타	관람·열람석	172	133	117	77.3%	68.0%
	접수·작업대	172	140	124	81.4%	72.1%
계		5,508	4,510	3,374	81.9%	61.3%

설치현황을 조사한 대상건물 수는 87개로서 조사된 전국 특수학교의 편의시설 수는 5,508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61.3%로 3,374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81.9%로 4,510개의 편의시설이다.

1) 안내시설

가) 점자블록

점자블록은 적정설치율이 28.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1.2%로 평가되어 특수학교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이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2007년까지 장애인시설의 경우에 장애유형별로 완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 관련 장애인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점자블록 설치를 완화 받으면서 전체 설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유도 및 안내설비

유도 및 안내설비의 적정설치율은 15.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26.7%로 평가되어 특수학교에서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2008년 개정되기 전의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 항의 장애유형별로 완화 받을 수 있는 완화규정에 의하여 시각장애인 관련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완화를 받았기 때문에 설치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 경고 및 피난설비

경고 및 피난설비의 적정설치율은 34.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7.4%로 평가되어 비교적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이후 시각경보기의 설치 의무가 확대되기 전까지는 시각경보기의 설치율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설 이용에 있어 비상시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피난설비의 추가적인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 장애인복지시설(A)

<표 219> 장애인복지시설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6,800	5,639	4,330	82.9%	63.7%
	주차구역	4,250	3,118	2,455	73.4%	57.8%
	높이차이제거	1,700	1,478	1,040	86.9%	61.2%
내부	출입구(문)	6,800	6,206	4,388	91.3%	64.5%
	복도	2,550	2,385	1,901	93.5%	74.5%
	계단	3,400	2,875	2,181	84.6%	64.1%
	경사로	4,250	3,830	3,240	90.1%	76.2%
	승강기	2,550	2,220	2,040	87.1%	80.0%
위생	대변기	10,200	7,288	4,621	71.5%	45.3%
	소변기	1,700	1,176	853	69.2%	50.2%
	세면대	1,700	1,482	634	87.2%	37.3%
	욕실	5,100	3,992	3,107	78.3%	60.9%
	샤워실	5,100	3,982	2,936	78.1%	57.6%
안전	점자블록	1,700	812	552	47.8%	32.5%
	유도설비	1,700	474	347	27.9%	20.4%
	피난설비	1,700	1,019	500	59.9%	29.4%
기타	객실침실	8,500	7,033	5,989	82.7%	70.5%
	관람·열람석	1,700	1,414	1,264	83.2%	74.4%
	접수·작업대	1,700	1,398	1,202	82.2%	70.7%
	매표소 등	2,550	2,070	1,828	81.2%	71.7%
	계	75,650	59,891	45,408	79.2%	60.0%

조사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수는 850개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은 모든 시설이 의무사항이므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수로 볼 경우에는 세분류로 분류된 89개 종류의 편의시설 모두가 포함되는 유형이다. 이에의해 조사된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의 대상편의시설 수는 75,650개이며 이 중에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60%로 45,408개 시설에 불과하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79.2%로 59,891개의 편의시설이다.

1) 매개시설

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는 적정설치율이 63.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2.9%로 평가되었다. 주출입구 접근로 중에서 접근로의 유효폭 항목이 8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을 뿐 대부분의 항목이 7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전보행통로 항목은 30~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보행통로의 설치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안전보행통로가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시설이용자가 대부분인 시설에서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추후 접근로의 안전보행통로에 대한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적정설치율이 57.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3.4%로 평가되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적정설치율에서는 60%에 불과하며 특히 주차구역 표시의 경우에는 44.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주차장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의 안전보행통로 또한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은 53.1%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같은 주차구역 표시의 낮은 설치율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했으며 바닥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를 설치하고 입식 표지판은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입식 주차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주차된 후에는 바닥의 휠체어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 그 곳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지에 대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식 안내표시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입식 주차표지판을 무료 설치 보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이와같은 주차안내표지판 설치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는 적정설치율이 61.2%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6.9%로 평가되었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중에서 출입구에 계단 등의 단차가 있는 대상건물에서 설치하게 되는 경사로 설치항목이 적정설치율은 매우 낮은 62.5%를 보이고 있으나 설치율이 88.5%로 평가되어 설치되고 있는 경사로 중에서 많은 경사도가 적정치 못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적정치 못한 경사로 설치가 실제 시설 이용자의 체감율을 낮추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출입구 혹은 부출입구의 계단과 함께 설치되는 경사로의 경우에는 더욱 더 정확한 기준에 맞추어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내부시설

가. 출입구(문)

출입구(문)은 적정설치율이 64.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1.3%로 평가되어 적정하게 설치된 출입구보다 그렇지 못한 출입구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입구(문)의 경우에는 출입구 문턱의 높이차이 및 점형블록 설치여부 항목이 가장 적정 설치와 설치율 사이에서 40%에 가까운 차이를 보임으로써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부 각실 출입문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손잡이 설치와 출입문 점자표지판 부착하는 항목에서 적정설치율이 24.1%로 나타남으로써 점자표지판 부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주출입구 문에 설치하여야 하는 점형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고 내부 주요실의 출입구에 점자표지판 부착이 거의 되지 않는 대상건물이 많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추후에는 주출입구 문 및 내부 실의 출입문 등에 설치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 복도

복도는 적정설치율이 74.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3.5%로 평가되어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에서는 가장 설치율이 높은 편의시설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복도의 바닥마감이 미끄럽지 않아야만 평가를 적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복도 항목에서 적정 설치와 설치율 사이의 차이를 30%이상 나타냄으로써 바닥마감이 미끄럽게 설치된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복도의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목발을 사용하여야 하는 건물이용자들이 비오는 날과 같은 경우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는 바닥재 전체를 미끄럽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주요동선의 복도 바닥 일부분이라도 미끄럽지 않게 마감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다. 계단 또는 승강기(경사로 포함)

계단은 적정설치율이 64.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4.6%로 평가되었다. 계단에서는 손잡이 설치 항목이 설치율은 89.5%로 매우 높으나 적정설치율이 55.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사로는 적정설치율이 76.2%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0.1%로 평가되어 설치되는 경사로의 많은 경우가 적정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승강기는 적정설치율이 80.0%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7.1%로 설치된 승강기 대부분이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내부에 승강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적정한 수준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수직이동 시설의 설치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복지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 수직이동 시설이 안정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위생시설

가) 대변기

대변기는 적정설치율이 45.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1.5%로 평가되어 적정하지 않게 설치된 대변기가 너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변기 중에서도 휠체어사용자도 사용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구분 설치에 대한 적정설치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47.3%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소리를 듣는데 매우 제한적인 청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화장실 사용유무에 대한 시각설비 및 일반화장실 앞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도움을 주는 점형블록의 설치가 더욱 낮은 수준인 적정설치율 20%대이고 설치율도 40%에 지나지 않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시설 이용상의 제약 여건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지체장애인 위주로 설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소변기

소변기는 적정설치율이 50.2%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9.2%로 평가되었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변기를 설치하는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같이 소변기 설치율이 낮은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특성상 중증장애인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소변기의 손잡이 설치에 대해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세면대

세면대는 적정설치율이 37.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7.2%로 평가되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가장 많은 편의시설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세면대의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세면기에 설치되어야 하는 냉·온수 점자표지가 거의 설치되지 않은 이유와 세면대 하부공간에 휠체어사용자의 발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활동공간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라) 욕실

욕실은 적정설치율이 60.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8.3%로 평가되었다. 욕실에서는 비상용 호출벨이나 인터폰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욕실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시 대처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시설 이용상의 있어서 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호출벨과 같은 안전관련 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지도·감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마)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적정설치율이 57.6%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4.3%로 평가되었다. 샤워실에서는 샤워용 접이의자 등의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안내시설

가) 점자블록

점자블록은 적정설치율이 32.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47.8%로 평가되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점자블록의 설치율이 이와같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2007년까지 장애인시설의 경우에 장애유형별로 완화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 관련 장애인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점자블록 설치를 완화 받으면서 전체 설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유도 및 안내설비

유도 및 안내설비의 적정설치율은 20.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27.9%로 평가되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유도 및 안내설비의 설치율이 이와같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2007년까지 장애인시설의 경우에 장애유형별로 완화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 관련 장애인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촉지판식 안내판 및 음성안내기 등 설치를 완화 받으면서 전체 설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경고 및 피난설비

경고 및 피난설비의 적정설치율은 29.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9.9%로 평가되어 비교적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 적정설치율이 19.6%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2006년 이후 시각경보기의 설치 의무가 확대되기 전까지는 시각경보기의 설치율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시설 이용에 있어 비상시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피난설비의 추가적인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5) 기타시설

기타시설은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네가지 시설을 조사하였으며 모두 적정설치율이 70%이상, 설치율은 80%이상으로 평가되었다.

가) 객실·침실

객실·침실의 적정설치율은 70.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2.7%로 평가되었다. 객실·침실 중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초인등의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관람석·열람석

관람석·열람석의 적정설치율은 74.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3.2%로 평가되었다.

다) 접수대·작업대

접수대·작업대의 적정설치율은 70.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2.2%로 평가되었다. 접수대·작업대의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의 하부공간 설치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적정설치율은 71.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1.2%로 평가되었다. 판매기 또는 음료대 항목중에서 조작버튼 설치위치 및 점자표지의 설치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3-5 업무시설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별 전체 설치율은 다음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으며, 건물유형이 공공업무 시설인 청사와 바닥면적인 500㎡이상인 사무소 등이 포함된다. 업무시설군 중 사무소의 시설 수가 민간인으로 인해 편의시설의 적정설치율이 낮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업무 시설에만 조사되는 편의시설로서 안내시설의 전반적인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가장 빈번하게 출입하며 국가를 대신하여 업무를 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대처를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타시설에서 서류업무를 보기위한 작업대, 국민을 맞이하는 접수대의 적정설치율이 52.1%란 결과는

청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20> 업무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60,096	52,473	40,909	87.3%	68.1%
	주차구역	37,560	26,290	20,459	70.0%	54.5%
	높이차이제거	15,024	12,361	7,920	82.3%	52.7%
내부	출입구(문)	60,096	55,285	40,222	92.0%	66.9%
	복도	22,536	20,477	16,121	90.9%	71.5%
	계단	30,048	23,413	15,843	77.9%	52.7%
	경사로	37,560	33,554	30,971	89.3%	82.5%
	승강기	22,536	19,633	17,249	87.1%	76.5%
위생	대변기	90,144	52,955	33,673	58.7%	37.4%
	소변기	3,740	2,476	1,923	66.2%	51.4%
	세면대	3,740	3,314	1,236	88.6%	33.0%
안전	점자블록	3,740	2,688	1,496	71.9%	40.0%
	유도설비	3,740	869	522	23.2%	14.0%
	피난설비	3,740	2,689	780	71.9%	20.9%
기타	접수-작업대	3,740	3,263	1,948	87.2%	52.1%
계		398,040	311,740	231,272	78.3%	58.1%

이러한 건물군에 속하는 유형 중에서 공공업무시설인 청사를 위주로 설치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공공업무시설 (C)

<표 221> 공공업무시설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14,960	12,698	10,512	84.9%	70.3%
	주차구역	9,350	7,739	5,641	82.8%	60.3%
	높이차이제거	3,740	3,592	1,977	96.0%	52.9%
내부	출입구(문)	14,960	14,353	11,076	95.9%	74.0%
	복도	5,610	5,414	4,457	96.5%	79.4%
	계단	7,480	6,435	4,331	86.0%	57.9%
	경사로	9,350	8,802	8,499	94.1%	90.9%
	승강기	5,610	5,265	4,995	93.9%	89.0%
위생	대변기	22,440	17,603	10,403	78.4%	46.4%
	소변기	3,740	2,476	1,923	66.2%	51.4%
	세면대	3,740	3,314	1,236	88.6%	33.0%
안전	점자블록	3,740	2,688	1,496	71.9%	40.0%
	유도설비	3,740	869	522	23.2%	14.0%
	피난설비	3,740	2,689	780	71.9%	20.9%
기타	접수-작업대	3,740	3,263	1,948	87.2%	52.1%
계		115,940	97,200	69,796	83.8%	60.2%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1,870개로서 공공업무시설은 주로 청사로서 국가의 위임업무와 자치단체에 자치권이 있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과 노약자가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편의시설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할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된 전국 공공업무시설의 대상편의시설 수는

115,940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60.2%로 69,796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83.8%로 97,200개의 편의시설이다.

1) 매개시설

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는 적정설치율이 70.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4.9%로 평가되었다. 세부 항목 중 안전보행통로 항목의 적정설치율은 40%대, 설치율은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둘 다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도 국가를 대신하는 청사에서 국민 즉 보행자를 위한 안전보행통로의 설치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지역적 대지형태에 있을 수도 있으나 보행자에 대한 세심한 관심 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안전보행통로에 대한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적정설치율이 60.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2.8%로 평가되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에서 접근로와 마찬가지로 안전보행통로의 적정설치율이 37.1%, 설치율이 57.7%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어디에 설치해야 그들의 이동이 편리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차량에서 건물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간의 간섭없는 안전보행통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닌 항목인데 비해 설치율이 낮다는 것은 교육 등으로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는 적정설치율이 52.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6%로 평가되었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중에서 출입구에 계단 등의 단차가 있는 대상건물에서 설치하게 되는 경사로 설치항목이 적정설치율은 매우 낮은 51.8%를 보이고 있으나 설치율이 90%로 평가되어 설치되고 있는 경사로 중에서 많은 경사도가 적정치 못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치 못한 경사로 설치가 실제 시설 이용자의 체감율을 낮추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밖에 없으므로 더욱 더 정확한 기준에 맞추어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내부시설

가) 계단 또는 승강기(경사로 포함)

계단은 적정설치율이 57.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6%로 평가되었다. 계단에서는 손잡이 설치 항목이 설치율은 83.8%로 매우 높으나 적정설치율이 2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자블록 설치의 적정설치율은 30.9%, 설치율은 64.1%로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강기 위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단에서 점자블록은 계단실이 없을 경우에는 비록 승강기가 있다하더라도 점자블록 설치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경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승강기는 적정설치율이 8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93.9%로 설치된 승강기 대부분이 다른 시설에 비해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사의 경우 수직이동 시설의 설치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시설에 비해 수직이동 시설이 안정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위생시설

가) 대변기

대변기는 적정설치율이 46.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8.4%로 평가되어 적정하지 않게 설치된 대변기가 너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변기 중에서도 휠체어사용자도 사용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구분 설치에 대한 적정설치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41.2%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소리를 듣는데 매우 제한적인 청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화장실 사용유무에 대한 시각설비 및 일반화장실 앞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도움을 주는 점형블록의 설치가 더욱 낮은 수준인 적정설치율 20.5%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시설 이용상의 제약 여건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지체장애인 위주로 설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소변기

소변기는 적정설치율이 51.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6.2%로 평가되었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변기를 설치하는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다.

다) 세면대

세면대는 적정설치율이 3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8.6%로 평가되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많은 편의시설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세면기에 설치되어야 하는 냉·온수 점자표지가 거의 설치되지 않은 이유 때문라고 볼 수 있다.

3) 안내시설

가) 점자블록

공공업무시설유형에서 점자블록은 적정설치율이 40%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1.9%로 평가되어 적정설치율과 설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의 경우 공중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써 시각장애인의 출입도 많을 수 있으므로 표준형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유도 및 안내설비

유도 및 안내설비의 적정설치율은 1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23.2%로 평가되어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지체장애인에 비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충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경고 및 피난설비

경고 및 피난설비의 적정설치율은 20.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1.9%로 평가되어 비교적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 적정설치율이 17.8%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2006년 이후 시각경보기의 설치 의무가 확대되기 전까지는 시각경보기의 설치율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시설 이용에 있어 비상시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피난설비의 추가적인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5) 기타시설

가) 접수대·작업대

접수대·작업대의 적정설치율은 52.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7.2%로 평가되었다. 접수대·작업대의 경우에는 민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휠체어사용자의 하부공간 설치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3-6 숙박시설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별 전체 설치율은 다음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으며, 건물유형이 일반숙박시설, 여관 등은 30실 이상인 시설이며 그 외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숙박시설이라 함은 기타시설 중 객실·침실이 가장 중점이 되는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적정설치율이 38.7%로 조사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숙박시설에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숙박시설 및 피난설비, 유도설비 등을 설치하고 있다. 비록 국내 전체가 관광지라고 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적정설치율이 낮다는 것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장애인을 위한 객실·침실의 경우 모든 시설이 비장애인용과 다르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되지 않으며 설치가 불가하므로 건축관계자에게 인식교육 및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외 편의시설 중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인 것이 안내시설의 점자블록으로 16.7%를 나타내고 있다.

<표 222> 숙박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28,944	24,112	18,673	83.3%	64.5%
	주차구역	6,865	3,712	2,760	54.1%	40.2%
	높이차이제거	7,236	5,279	3,729	73.0%	51.5%
내부	출입구(문)	28,944	25,489	17,135	88.1%	59.2%
	복도	4,119	3,640	2,802	88.4%	68.0%
	계단	5,492	3,765	2,384	68.6%	43.4%
	경사로	6,863	5,222	4,704	76.1%	68.5%
	승강기	4,116	3,316	2,322	80.6%	56.4%
위생	대변기	43,404	22,306	16,358	51.4%	37.7%
	소변기	2,744	1,132	868	41.3%	31.6%
	세면대	2,744	1,829	791	66.7%	28.8%
안내	점자블록	2,744	670	458	24.4%	16.7%
기타	객실·침실	36,136	21,356	13,974	59.1%	38.7%
계		180,351	121,828	86,958	67.6%	48.2%

이러한 건물군에 속하는 유형 중에서 일반숙박시설(여관제외)등 에 등에 관한 건물유형의 설치율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가. 일반숙박시설 (D)

<표 223> 일반숙박시설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10,984	9,035	6,809	82.3%	62.0%
	주차구역	6,865	3,712	2,760	54.1%	40.2%
	높이차이제거	2,746	1,981	1,319	72.1%	48.0%
내부	출입구(문)	10,984	9,643	6,520	87.8%	59.4%
	복도	4,119	3,640	2,802	88.4%	68.0%
	계단	5,492	3,765	2,384	68.6%	43.4%
	경사로	6,863	5,222	4,704	76.1%	68.5%
위생	승강기	4,116	3,316	2,322	80.6%	56.4%
	대변기	16,464	8,078	5,349	49.1%	32.5%
	소변기	2,744	1,132	868	41.3%	31.6%
안내	세면대	2,744	1,829	791	66.7%	28.8%
	점자블록	2,744	670	458	24.4%	16.7%
기타	객실·침실	13,720	8,570	5,642	62.5%	41.1%
계		90,585	60,593	42,728	66.9%	47.2%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1,373개로서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약자가 가족 등 함께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로서 객실·침실이 다른 편의시설에 비해 적정설치율이 높아야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된 전국 일반숙박시설의 대상편의시설은 90,585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47.2%로 42,728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66.9%로 60,593개의 편의시설이다.

1) 매개시설

가)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적정설치율이 40.2%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4.1%로 둘 다 설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적정설치율에서는 40%에 불과하며 특히 주차구역 표시의 경우에는 29.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주차장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의 안전보행통로 또한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은 34.7%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차구역 표시의 낮은 설치율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했으며 바닥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를 설치하고 입식 표지판은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입식 주차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주차된 후에는 바닥의 휠체어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 그곳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지에 대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식 안내표시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위생시설

일반 숙박시설에서 세부항목 중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가 대체적으로 적정설치율과 설치율이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위생시설 대부분이 객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에 따라 대중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인한 공용화장실의 설치 유무에 따라 설치율이 다른 시설에 비해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가) 대변기

대변기는 적정설치율이 32.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49.1%로 평가되어 적정하지 않게 설치된 대변기가 너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 소변기

소변기는 적정설치율이 31.6%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41.3%로 평가되었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변기를 설치하는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 세면대

세면대는 적정설치율이 28.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6.7%로 평가되어 일반숙박시설에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가장 많은 편의시설로 나타났다. 이는 세면기에 설치되어야 하는 냉·온수 점자표지가 거의 설치되지 않은 이유와 세면대 하부공간에 휠체어사용자의 발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활동공간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안내시설

가) 점자블록

점자블록은 적정설치율이 16.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24.4%로 평가되어 본 시설에서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블록의 설치율이 이와같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앞서말한바와 같이 가족동반의 경우가 많은 관계로 설치의 필요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낮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여 설치율을 안정적으로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기타시설

일반숙박시설에서 다른 편의시설에 비해 숙박시설의 기본이 되는 객실·침실 항목은 매우 높은 적정설치율을 보여야 할 것이나 조사결과는 평균이하를 밀도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객실·침실을 설치할 경우 비장애인 투숙객이 이용한다 할지라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올바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가) 객실·침실

일반숙박시설은 객실과 침실이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다른 편의시설에 비해 적정설치율이 높아야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실·침실의 적정설치율은 41.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2.5%로 평가되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0.5%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는 소규모라도 1실 정도는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매우 낮다. 객실·침실 중에서는 대변기의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및 청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초인등의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3-7 공장(Q4)

공장시설군은 건물유형이 공장뿐인 군으로서 편의시설별 전체 설치율은 다음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이에 관한 특징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24> 공장군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 개	접근로	40,088	30,288	21,728	75.6%	54.2%
	주차구역	25,055	12,046	8,641	48.1%	34.5%
	높이차이제거	10,022	6,052	3,683	60.4%	36.7%
내 부	출입구(문)	40,088	32,784	20,802	81.8%	51.9%
위 생	대변기	60,132	18,672	10,463	31.1%	17.4%
계		175,385	99,842	65,317	56.9%	37.2%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5,011개로서 공장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인원기준으로 하는 2개의 건물유형 중 하나이다. 그로 인해 다소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이 다른 건물유형에 비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장에서 많은 편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특히 위생시설의 대변기가 적정설치율이 건물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사된 전국 공장의 대상편의시설은 175,385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37.2%로 65,317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56.9%로 99,842개의 편의시설이다.

1) 위생시설

가) 대변기

대변기는 적정설치율이 17.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31.1%로 평가되어 적정하지 않게 설치된 대변기가 건물유형에서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공장은 많은 인원이 동시간대에 일을 하는 곳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낮다. 이는 시급하게 사업주에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생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3-3-8 자동차관련 시설

자동차관련시설군의 전체 설치율은 다음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으며, 건물유형이 주차장과 운전학원으로 나뉜다. 운전학원의 경우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제63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관련) 9. 교육용 자동차 가.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의 공통기준 (3) 전문학원의 경우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 엑셀레이터, 우측의 방향지시기,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장애인 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각각 1대 이상 확보할 것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기준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매개시설도 중요하나 위생시설의 대변기 설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생시설의 대변기 적정설치율이 19.7%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편의시설 설치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표 225> 자동차관련 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11,704	9,780	7,592	83.6%	64.9%
	주차구역	7,315	4,271	3,170	58.4%	43.3%
	높이차이제거	2,926	2,110	1,487	72.1%	50.8%
내부	출입구(문)	1,368	1,113	677	81.4%	49.5%
	복도	513	423	310	82.5%	60.4%
	계단	684	463	362	67.7%	52.9%
	경사로	855	670	594	78.4%	69.5%
	승강기	513	397	383	77.4%	74.7%
위생	대변기	2,052	756	404	36.8%	19.7%
계		27,930	19,983	14,979	71.5%	53.6%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다.

가. 주차장(V)

<표 226> 주차장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10,336	8,741	6,876	84.6%	66.5%
	주차구역	6,460	3,769	2,801	58.3%	43.4%
	높이차이제거	2,584	1,907	1,382	73.8%	53.5%
계		19,380	14,417	11,059	74.4%	57.1%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1,293개로서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이 주 업무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적정설치율이 높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기계식 또는 타워식 주차장이 많아 장애인 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조사된 전국 주차장의 대상편의시설은 19,380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57.1%로 11,059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74.4%로 14,417개의 편의시설이다.

1) 매개시설

가)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적정설치율이 43.4%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8.3%로 둘 다 주 시설이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시급하게 사업주에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기계식이나 타워식인 경우에도 인적자원보다는 비장애인과 구별되지 않도록 주차할 수 있도록 좀 더 강제적인 방법으로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3-9 관광휴게시설

관광휴게시설군의 전체 설치율은 다음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으며, 건물유형이 야외음악당 등과 휴게소 등으로 나뉜다. 야외음악당의 경우 휴양림, 전망대, 수변 등 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매개시설에 있어서 접근로나 높이차이제거 등의 적정설치율이 낮아 전체 적정율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227> 관광휴게시설군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1,704	1,524	1,218	89.4%	71.5%
	주차구역	1,065	867	678	81.4%	63.7%
	높이차이제거	426	369	257	86.6%	60.3%
내부	출입구(문)	1,704	1,597	1,255	93.7%	73.7%
위생	대변기	2,556	2,014	1,502	78.8%	58.8%
계		7,455	6,371	4,910	85.5%	65.9%

관광휴게시설 중 불특정다수가 주로 이용하는 휴게소 등의 편의시설 설치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다.

가. 휴게소 등(Q3)

<표 228> 휴게소 등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1,480	1,333	1,066	90.1%	72.0%
	주차구역	925	771	605	83.4%	65.4%
	높이차이제거	370	324	224	87.6%	60.5%
내부	출입구(문)	1,480	1,387	1,073	93.7%	72.5%
위생	대변기	2,220	1,761	1,294	79.3%	58.3%
계		6,475	5,576	4,262	86.1%	65.8%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185개로서 휴게소의 경우 고속도로에 위치한 주차장이 조사대상에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는 주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특히 식사와 화장실 사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으로 인해 위생시설에서 대변기 적정설치율이 다른 건물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건물유형이다. 조사된 전국 휴게소 등의 대상편의시설은 6,475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65.8%로 4,262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86.1%로 5,576개의 편의시설이다.

1) 위생시설

가) 대변기

대변기는 적정설치율이 53.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9.3%로 평가되어 비록 적정설치율이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다른 건물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아직도 남·녀구분하여 설치하는 항목의 미 설치율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부항목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녀구분이 미 설치라함은 인권적인 부분이 먼저 작용하는 것으로 이는 시급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가족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위생시설 공간에 비해 넓게 조성되고 가족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3-3-10 기숙사(P)

기숙사시설군은 건물유형이 기숙사 뿐인 군으로서 학교나 기업에 설치된 기숙사를 말하며 이에 대한 편의시설별 전체 설치율은 다음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이에 관한 특징적인 내용

은 아래와 같다.

<표 229> 기숙사군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2,680	2,122	1,669	79.2%	62.3%
	높이차이제거	670	368	242	54.9%	36.1%
내부	출입구(문)	2,680	2,180	1,422	81.3%	53.1%
위생	대변기	4,020	1,817	1,116	45.2%	27.8%
	세면대	670	507	293	75.7%	43.7%
기타	객실·침실	3,350	1,879	1,433	56.1%	42.8%
계		14,070	8,873	6,175	63.1%	43.9%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337개로서 기숙사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인원기준으로 하는 2개의 건물유형 중 하나이다. 본 조사대상은 주로 일반기업에 속한 기숙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된 전국 기숙사의 대상편의시설은 14,070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 수는 43.9%로 6,175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63.1%로 8,873개의 편의시설이다.

체어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 그곳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지에 대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식 안내표시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입식 주차표지판을 무료 설치 보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이와같은 주차안내표지판 설치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매개시설

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는 적정설치율이 36.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4.9%로 둘 다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중에서 출입구에 계단 등의 단차가 있는 대상건물에서 설치하게 되는 경사로 설치항목이 적정설치율은 매우 낮은 34.3%를 보이고, 주출입 폭 또한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은 37.9%로 평가 되었다. 이는 기업에 소속된 기숙사로 편의시설보다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더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업에서 기숙사를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별없이 편리하게 제공된다면 기업의 이미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내부시설

가) 출입구(문)

출입구(문)은 적정설치율이 53.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81.3%로 평가되어 적정하게 설치된 출입구보다 그렇지 못한 출입구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입구(문)의 경우에는 출입구 문턱의 높이차이 및 점형블록 설치여부 항목이 가장 적정 설치와 설치율 사이에서 40%에 가까운 차이를 보임으로써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부 각실 출입문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손잡이 설치와 출입문 점자표지판 부착하는 항목에서 적정설치율이 20%로 나타남으로써 점자표지판 부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주출입구 문에 설치하여야 하는 점형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고 내부 주요실의 출입구에 점자표지판 부착이 거의 되지 않는 대상건물이 많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3) 위생시설

가) 대변기

대변기는 적정설치율이 27.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45.2%로 평가되어 둘 다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위생시설 대부분이 객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에 따라 대중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인한 공용화장실의 설치 유무에 따라 설치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4) 안내시설

기숙사의 경우 안내시설이 권장사항이다. 그러나 그 중 경고 및 피난설비는 설치가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숙사의 경우 많은 인원이 숙박하는 곳이므로 비상시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피난설비 사항보다 확충하여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5) 기타시설

가) 객실·침실

객실·침실의 적정설치율은 42.8%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6.1%로 평가되었다. 객실·침실 중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초인등의 적정설치율이 27.2%로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본 건물유형은 일반숙박시설과는 달리 가족 등 보호자와 함께 하는 형태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다. 본 조사대상 시설이 학교에 설치된 기숙사 보다 기업에 설치된 기숙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업에서 아직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미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후천적 장애인 발생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바른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이에 장차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3-3-11 공동주택

공동주택시설군은 건물유형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러한 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산지가 많은 지역은 매개시설에 관한 항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정설치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전체 적정설치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가장 기본인 주거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아파트보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매개시설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30> 공동주택군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185,166	154,110	110,485	83.2%	59.7%
	주차구역	40,255	28,879	21,461	71.7%	53.3%
	높이차이제거	46,286	33,485	22,508	72.3%	48.6%
내부	출입구(문)	185,144	160,583	104,707	86.7%	56.6%
	복도	966	882	679	91.3%	70.3%
	계단	33,492	26,702	17,532	79.7%	52.3%
	경사로	41,865	37,926	33,681	90.6%	80.5%
	승강기	25,119	23,552	20,037	93.8%	79.8%
위생	대변기	3,864	2,030	1,373	52.5%	35.5%
	소변기	644	216	193	33.5%	30.0%
	세면대	644	448	200	69.6%	31.1%
계		563,445	468,813	332,856	83.2%	59.1%

이러한 건물군에 속하는 유형 중에서 여러 시설군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물유형인 부대복리시설과 매개시설의 적정설치율에 영향을 준 연립주택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Y11)

<표 231>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2,576	2,457	1,988	95.4%	77.2%
	높이차이제거	644	534	424	82.9%	65.8%
내부	출입구(문)	2,576	2,329	1,730	90.4%	67.2%
	복도	966	882	679	91.3%	70.3%
	계단	1,288	1,018	718	79.0%	55.7%
	경사로	1,610	1,423	1,314	88.4%	81.6%
	승강기	966	851	807	88.1%	83.5%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위생	대변기	3,864	2,030	1,373	52.5%	35.5%
	소변기	644	216	193	33.5%	30.0%
	세면대	644	448	200	69.6%	31.1%
계		15,778	12,188	9,426	77.2%	59.7%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322개로서 아파트의 부대복리 시설은 그 규모 및 대지 형태에 따라 평가의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부대복리 시설이므로 입주자가 다른 건물유형보다 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입주자들에게 편리함을 위해 부대복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조사된 전국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대상편의시설 수는 15,778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59.7%로 9,426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77.2%로 12,188개의 편의시설이다.

1) 위생시설

아파트 부대복리 시설은 상가, 관리사무소, 노인정, 체육시설 등 매우 다양하고 주거지와 매우 인접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되는 위생시설의 적정설치율 및 설치율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주거지가 인접하므로 위생시설에 대한 배려가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와 같은 목적과 입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편의시설은 더욱 잘 설치되어야 함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가) 대변기

대변기는 적정설치율이 35.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2.5%로 평가되어 적정하지 않게 설치된 대변기가 너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 소변기

소변기는 적정설치율이 30.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33.5%로 평가되었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변기를 설치하는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 세면대

세면대는 적정설치율이 31.1%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69.6%로 평가되어 일반숙박시설에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가장 많은 편의시설로 나타났다. 이는 세면기에 설치되어야 하는 냉·온수 점자표지가 거의 설치되지 않은 이유와 세면대 하부공간에 휠체어사용자의 발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활동공간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 연립주택(Y2)

<표 232> 연립주택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17,456	13,139	8,723	75.3%	50.0%
	높이차이제거	4,364	2,607	1,523	59.7%	34.9%
내부	출입구(문)	17,456	13,905	8,585	79.7%	49.2%
계		39,276	29,651	18,831	75.5%	47.9%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2,183개로서 연립주택의 경우 편의증진법 의무사항이 매개시설 중 접근로, 높이차이제거와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매우 낮다. 조사된 전국 연립주택의 대상편의시설 수는 39,276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47.9%로 18,831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75.5%로 29,651개의 편의시설이다.

1) 매개시설

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는 적정설치율이 50%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5.3%로 평가되었다. 주출입구 접근로 중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50%~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전보행통로 항목은 20~30%대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연립주택의 경우 대지조건 중 고지이거나 대지경계선과 인접하게 설치됨으로 인해 더욱 보행자를 위한 안전보행통로의 설치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지대에 연립주택이 설치되고 대지경계선에 인접하게 설치될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항목 중에서 안전보행통로가 가장 낮게 조사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더더욱 대지 활용도를 높이는데 있기도 하다.

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는 적정설치율이 34.9%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9.7%로 평가되었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중에서 출입구에 계단 등의 단차가 있는 대상건물에서 설치하게

되는 경사로 설치항목이 적정설치율은 매우 낮은 29.5%를 보이고 있으나 설치율이 52.5%로 평가되어 설치되고 있는 경사로 중에서 많은 경사로가 적정치 못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내부시설

가) 출입구(문)

출입구(문)은 적정설치율이 49.2%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9.7%로 평가되어 적정하게 설치된 출입구보다 그렇지 못한 출입구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입구(문)의 경우에는 출입구 문턱의 높이차이 및 점형블록 설치여부 항목의 적정설치율은 17%, 설치율 58.6%로 40% 이상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내부 각실 출입문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손잡이 설치와 출입문 점자표지판 부착하는 항목에서 적정설치율이 18.8%로 나타남으로써 점자표지판 부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3-12 공원

공원시설군은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매개시설 중 접근로의 적정설치율이 57.9%로 가장 낮게 나타난 시설군으로 공원의 특이사항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편의시설 중 역시 안내시설의 점자블록의 적정설치율이 26.9%로 편의시설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표 233> 공원군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13,240	11,020	7,667	83.2%	57.9%
위생	대변기	19,860	11,934	10,221	60.1%	51.5%
안내	점자블록	3,310	1,082	892	32.7%	26.9%
계		36,410	24,036	18,780	66.0%	51.6%

이러한 공원시설군 중에 자연공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자연공원(Z2)

<표 234> 자연공원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의시설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384	298	174	77.6%	45.3%
위생	대변기	576	302	199	52.4%	34.5%
안내	점자블록	96	23	16	24.0%	16.7%
계		1,056	623	389	59.0%	36.8%

설치현황을 위해 조사된 대상시설 수는 48개로서 자연공원의 경우 건물유형 중 의무사항이 편의시설 설치가 매개시설에서 접근로, 위생시설에서 대변기, 안내시설에서 점자블록인 3가지 사항 뿐이다. 그 이유는 공원 내에 형성되는 건축물은 각각의 대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중화장실, 상가 등은 건물군 중에 근린생활시설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조사된 전국 자연공원의 대상편의시설 수는 1,056개로 적정설치율을 보인 시설수는 36.8%로 389개 시설이며, 2점 이상으로 평가된 설치율은 59%로 623개의 편의시설이다.

1) 매개시설

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는 적정설치율이 45.3%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77.6%로 평가되었다. 주출입구 접근로 항목에서 모든 건물유형 중에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였다. 그리고 주출입구 접근로 항목 중에서 다른 건물유형의 안전보행통로가 아닌 기울기 항목이 적정설치율 2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연공원의 특징으로 인해진 입지적 조건 때문에 낮은 설치율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2) 위생시설

가) 대변기

대변기는 적정설치율이 34.5%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52.4%로 평가되어 적정하지 않게 설치된 대변기가 너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변기 중에서도 휠체어사용자도 사용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구분 설치에 대한 적정설치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31.3%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소리를 듣는데 매우 제한적인 청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화장실 사용유무에 대한 시각설비 및 일반화장실 앞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도움을 주는 점형블록의 설치가 더욱 낮은 수준인 적정설치율 10%대이고 설치율도 30%에 지나지 않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원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아닌 공원내 부설화장실을 조사한 것으로 인해 적정 및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3) 안내시설

가) 점자블록

점자블록은 적정설치율이 16.7%로 평가되었으며 설치율은 24%로 평가되어 적정설치율과 설치율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건물유형에서 점자블록의 설치율이 이와같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연공원의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바닥재질이 자연적인 소재로 인해 표준형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바닥재질이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는 곳 중에서도 규모가 방대하거나 입구가 여러 곳인 경우,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치 관리사무소 유무 등 여러 요소로 인해 설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최대한 시각장애인이 산책할 수 있도록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대지의 레벨차가 있는 곳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등 융통성 있는 점자블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된다고 본다.

3-3-13. 공공 및 민간관련시설 설치율 분석

공공관련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본 보고서의 J 유형)’이 해당되며, 또한 업무시설의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본 보고서의 C 유형)’이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시설유형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민간관련시설이라 할 수 있다.

공공관련시설과 민간관련시설의 설치율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으며, 공공관련시설의 설치율이 민간관련시설보다 1.5% 높은 것으로 조사되긴 하였지만 설치율상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향후 공공관련시설의 정비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235> 공공관련시설과 민간관련시설의 설치율 비교

	대상건물수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공공관련시설	10,237	567,758	447,470	328,945	78.8%	57.9%
민간관련시설	97,493	3,193,034	2,467,899	1,769,305	77.3%	55.4%
계	107,730	3,760,792	2,915,369	2,098,250	77.5%	55.8%

이를 편의시설 종류별로 세부적으로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편의시설에서 공공관련시설의 설치율이 민간관련시설의 설치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매개시설의 ‘주출입구접근로’,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 그리고 기타시설의 ‘접수대 및 작업대’ 항목에서는 공공관련시설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우선적으로 이들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36> 공공관련시설과 민간관련시설의 편의시설종류별 설치율 비교

편의시설	건물구분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	접근로	공공관련시설	81,896	67,283	53,485	82.2%	65.3%
		민간관련시설	779,811	647,216	471,048	83.0%	60.4%
	주차구역	공공관련시설	51,185	39,119	31,864	76.4%	62.3%
		민간관련시설	217,840	142,241	104,800	65.3%	48.1%
	높이차이제거	공공관련시설	20,474	17,549	7,940	85.7%	38.8%
		민간관련시설	191,634	134,435	85,216	70.2%	44.5%
내부	출입구(문)	공공관련시설	81,896	75,296	52,609	91.9%	64.2%
		민간관련시설	756,187	647,875	421,016	85.7%	55.7%
	복도	공공관련시설	30,711	28,834	24,238	93.9%	78.9%
		민간관련시설	118,941	105,765	82,724	88.9%	69.6%
	계단	공공관련시설	40,948	34,593	27,029	84.5%	66.0%
		민간관련시설	190,786	148,612	106,169	77.9%	55.6%
	경사로	공공관련시설	51,185	47,661	46,118	93.1%	90.1%
		민간관련시설	238,455	205,890	184,931	86.3%	77.6%
	승강기	공공관련시설	30,711	28,476	27,910	92.7%	90.9%
		민간관련시설	143,052	123,696	110,942	86.5%	77.6%
위생	대변기	공공관련시설	122,844	70,815	37,346	57.6%	30.4%
		민간관련시설	442,034	240,915	153,694	54.5%	34.8%
	소변기	공공관련시설	3,740	2,476	1,923	66.2%	51.4%
		민간관련시설	12,764	6,866	5,145	53.8%	40.3%
	세면대	공공관련시설	3,740	3,314	1,236	88.6%	33.0%
		민간관련시설	13,488	10,409	4,531	77.2%	33.6%
	욕실	공공관련시설	-	-	-	-	-
		민간관련시설	5,100	3,992	3,107	78.3%	60.9%
	샤워실	공공관련시설	-	-	-	-	-
		민간관련시설	5,100	3,982	2,936	78.1%	57.6%
안내	점자블록	공공관련시설	20,474	12,233	6,016	59.7%	29.4%
		민간관련시설	15,178	5,802	3,869	38.2%	25.5%
	유도·안내설비	공공관련시설	3,740	869	522	23.2%	14.0%
		민간관련시설	1,872	520	374	27.8%	20.0%
	경보·피난설비	공공관련시설	3,740	2,689	780	71.9%	20.9%
		민간관련시설	1,872	1,135	559	60.6%	29.9%
기타	객실·침실	공공관련시설	-	-	-	-	-
		민간관련시설	51,096	32,197	22,823	63.0%	44.7%
	관람·열람석	공공관련시설	-	-	-	-	-
		민간관련시설	3,402	2,743	2,267	80.6%	66.6%
	접수·작업대	공공관련시설	20,474	16,263	9,929	79.4%	48.5%
		민간관련시설	1,872	1,538	1,326	82.2%	70.8%
	매표소 등	공공관련시설	-	-	-	-	-
		민간관련시설	2,550	2,070	1,828	81.2%	71.7%
계	107,730	3,760,792	2,915,369	2,098,250	77.5%	55.8%	

3-3-14. 정비대상시설 적정설치율 분석

정비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시행령 [별표 4]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정비대상시설과 정비기한

<표 237>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한

정비대상시설	정비기한	
	법 시행 후 2년이내	법 시행 후 7년이내
횡단보도	○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5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	
종합병원	○	
장애인특수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및 종합여객시설	○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시철도역사		○

2.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장애인의 통행 또는 이용에 편리한 접근로·출입구(문)·복도·계단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 중 유효폭·기울기 및 유효바닥면적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도시철도역사에는 해당편의시설의 설치에 갈음하여 계단을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주출입구로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등의 확보가 지형상 곤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출입구(문)·복도·계단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유효폭 또는 유효바닥면적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다.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이 정비대상시설은 정비기한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표와 같이 설치율은 79%, 적정설치율의 평균이 57.6%에 불과하다. 이는 법시행 후 2년 이내에 편의시설 정비가 제대로 되어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표 238> 정비대상시설 편의시설 설치율

구분	건물유형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정비대상시설	읍면동사무소	451,818	350,270	259,149	77.5%	57.4%
	공중화장실	61,632	41,221	26,879	66.9%	43.6%
	특수학교	5,508	4,510	3,374	81.9%	61.3%
	병원 (종합병원의 시설포함)	82,130	68,401	50,114	83.3%	61.0%
	노인복지시설	74,594	59,985	44,594	80.4%	59.8%
	장애인복지시설	75,650	59,891	45,408	79.2%	60.0%
	공공업무시설(청사)	115,940	97,200	69,796	83.8%	60.2%
계		867,272	681,478	499,314	78.6%	57.6%

정비대상시설에서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적정설치율이 비교적 낮게 평가된 항목은 매개시설에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로써 36.6%로 조사되었다. 이는 읍면동 사무소 중 동사무소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 있으므로 주거지에서 인접한 곳에 대부분 설치되고 대지의 형태 및 대지 경계선에 인접한 건축물 등으로 인해 주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및 법적 경사로 설치율을 낮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읍면사무소는 지역 따라 대지의 형태가 고지 대일 경우 적정한 기울기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읍면사무소의 경우 동사무소에 비해 건축면적이 크고 대지경계선과 인접한 경우가 드물어 경사로 설치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경사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위생시설의 대변기의 경우 적정율이 26.8%와 안내시설의 점자블록 적정설치율은 27.7%로 매우 낮은 이유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인 점자블록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변기 사용여부에 관한 문자표시에 관한 설치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비록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에 관한 문자 서비스는 비용적 차원이 아닌 관심의 차원이므로 관련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접수대·작업대의 적정설치율은 47.7%로 비록 전체 적정설치율인 50.4%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나 읍면동사무소의 건물유형의 특성상 이는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내에 정비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시급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다른 시설에 비해 안내시설에서 점자블록 적정설치율이 40%로 가장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유도안내설비 및 경보피난설비의 적정설치율은 전체 적정설치율과는 차이가 나지 않으나 10~20%대에 머물고 있어 해당 시설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동 사무소와 같이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2008년 개정되기 전의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항의 장애유형별로 완화 받을 수 있는 완화규정에 의하여 시각장애인 관련 특수학교나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완화를 받았기 때문에 설치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관련 장애인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점자블록 설치를 완화 받았을 수 있다.

<표 239> 정비대상시설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구분		건물유형별 적정설치율 (%)							
		전체시설의 적정설치율	읍면동 사무소	공중 화장실	특수 학교	병원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공공업무 시설(청사)
매개 시설	주출입구접근로	60.9	64.2	54.5	71.8	72.3	61.0	63.7	70.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0.8	62.7	-	46.0	51.7	54.6	57.8	60.3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43.9	35.6	40.6	71.5	63.6	55.9	61.2	52.9
내부 시설	출입구(문)	56.5	62.0	55.2	72.8	74.2	62.8	64.5	74.0
	복도	71.5	78.8	-	75.2	74.4	75.0	74.5	79.4
	계단	57.5	67.8	-	69.5	57.3	63.7	64.1	57.9
	경사로	79.8	89.9	-	72.6	80.2	78.2	76.2	90.9
	승강기	79.9	91.3	-	78.3	81.4	79.9	80.0	89.0
위생 시설	대변기	33.8	26.8	35.7	52.1	45.1	42.0	45.3	46.4
	소변기	42.8	-	35.3	73.3	47.9	--	50.2	51.4
	세면대	33.5	-	31.9	39.5	34.4	-	37.3	33.0
	욕실	60.9	-	-	-	-	-	60.9	-
	샤워실	57.6	-	-	-	-	-	57.6	-
안내 시설	점자블록	27.7	27.0	24.2	28.5	27.8	-	32.5	40.0
	유도안내설비	16.0	-	-	15.7	-	-	20.4	14.0
	경보피난설비	23.9	-	-	34.3	-	-	29.4	20.9
기타 시설	객실, 침실	44.7	-	-	-	-	-	70.5	-
	관람석, 열람석	66.6	-	-	68.0	-	-	74.4	-
	접수대, 작업대	50.4	47.7	-	72.1	-	-	70.7	52.1
	매표소, 음료대, 자판기	71.7	-	-	-	-	-	71.7	-

3-4. 건축행위별 설치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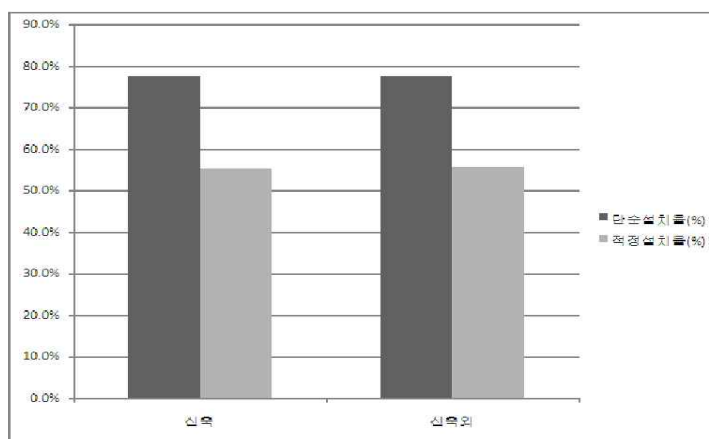
건축행위별 설치율 비교는 ‘신축’과 ‘신축외’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는데 이는 조사된 건축물의 최종건축행위별 구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80년에 ‘신축’하여 2007년에 ‘용도변경’을 실시한 건축물의 경우 최종 건축행위인 ‘신축외(용도변경)’건축물로 분류됨을 밝혀둔다.

‘신축’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 번째는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시점인 1998년 이후에 신축된 건축물(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신축한 건축물)이 있으며, 두번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된 정비대상시설로써 이 경우 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에 신축되어 이후 아무런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최초 건축행위인 ‘신축’건축물로 분류하게 된다.

‘신축외’는 신축 이외의 건축행위인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을 실시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표 240> 건축행위별 편의시설 설치율

	대상건물수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신축	34,917	1,162,352	901,917	645,705	77.6%	55.6%
신축외	72,813	2,598,440	2,013,452	1,452,545	77.5%	55.9%
계	107,730	3,760,792	2,915,369	2,098,250	77.5%	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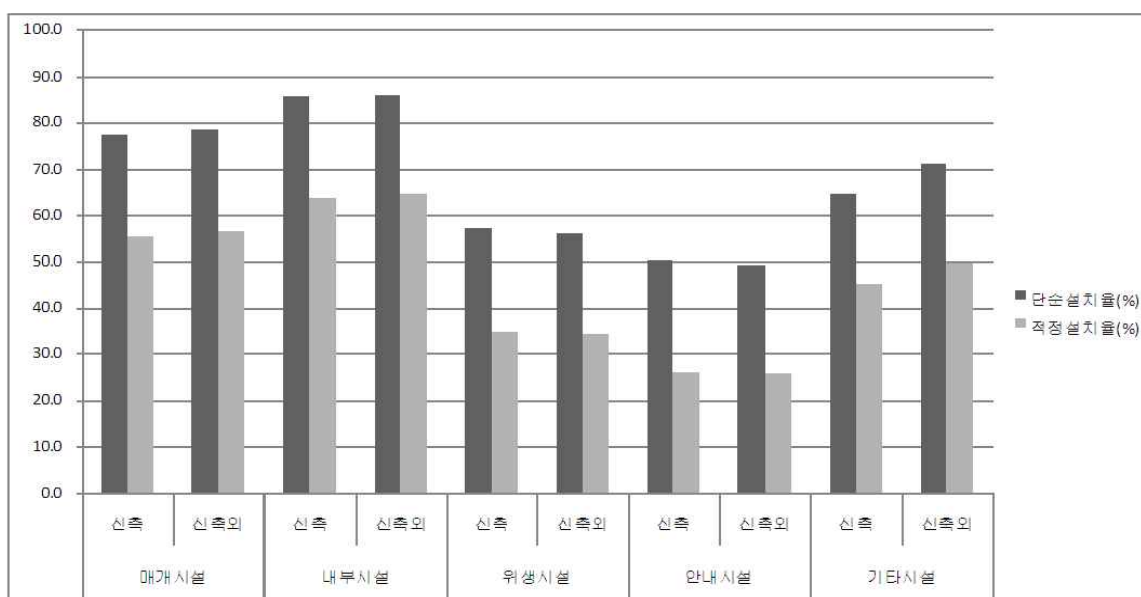


(그림 198) 건축행위별 편의시설 설치율 비교

신축 건물인 경우의 설치율은 77.6%로 조사되었으며 적정설치율은 55.6%를 나타내고 있다. 건축행위가 미상인 11개 건물을 포함한 신축외 건물의 설치율은 77.5%이며, 적정설치율은 55.9%를 나타내고 있음으로써 신축된 건물과 신축외 건축적행위를 실시한 건물의 설치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241> 편의시설종류별 - 건축행위별 편의시설 설치율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신축	425,619	328,610	235,537	77.2%	55.3%
	신축외	917,221	719,233	518,816	78.4%	56.6%
내부시설	신축	525,441	451,085	334,851	85.8%	63.7%
	신축외	1,157,431	995,613	748,835	86.0%	64.7%
위생시설	신축	170,356	97,675	59,407	57.3%	34.9%
	신축외	438,454	245,094	150,511	55.9%	34.3%
안내시설	신축	13,510	6,792	3,520	50.3%	26.1%
	신축외	33,366	16,456	8,600	49.3%	25.8%
기타시설	신축	27,426	17,755	12,390	64.7%	45.2%
	신축외	51,968	37,056	25,783	71.3%	49.6%
계		107,730	3,760,792	2,915,369	2,098,250	77.5%



(그림 200) 편의시설종류별 - 건축행위별 편의시설 설치율 비교

각 편의시설별로 건축행위별 설치율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4-1. 매개시설

매개시설의 경우에는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신축건물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축 건물에서 주출입구 접근도가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적정설치율은 60.4%이며 신축외 건물에서는 61.1%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는 신축외 건물이 약간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2> 매개시설의 건축행위별 설치율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주출입구접근로	신축	279,299	229,509	168,806	82.2%	60.4%
	신축외	582,320	484,907	355,652	83.3%	6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축	77,500	51,052	37,503	65.9%	48.4%
	신축외	191,525	130,308	99,161	68.0%	51.8%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신축	68,820	48,049	29,228	69.8%	42.5%
	신축외	143,288	103,935	63,928	72.5%	44.6%

3-4-2. 내부시설

내부시설의 경우에는 복도와 계단에서 신축건물이 각각 적정설치율을 90.1%와 79.9%로 나타나고 신축외 건물이 각각 적정설치율을 89.9%와 78.7%를 타나냄으로써 약간씩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복도와 계단의 유효폭이 건축법보다 편의증진법에서 좀 더 강화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이후에 신축되는 건물에서는 이와같은 사항이 반영될 수 밖에 없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표 243> 복도·계단의 건축행위별 설치율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복도	신축	43,335	39,044	31,246	90.1 %	72.1 %
	신축외	106,317	95,555	75,716	89.9 %	71.2 %
계단	신축	70,200	56,120	40,886	79.9 %	58.2 %
	신축외	161,534	127,085	92,312	78.7 %	57.1 %

3-4-3. 위생시설

위생시설의 경우에는 대변기를 제외하고 소변기 등 다른 편의시설은 모두 신축외 건물에서 다소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변기칸막이의 유효바닥면의 치수가 1.4m×1.8m를 설치하도록 개정된 시점인 2005.12.30이후에 신축이나 기타 건축행위를 실시한 건물에서는 신축건물이 신축외 건물보다 해당항목(3.1.2.3)에서 5%이상의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장애인용화장실 규정크기보다 개정된 화장실의 규정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서는 이 개정사항에 적정하게 설치하는데 그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1.3.2항목(대변기 수평손잡이)도 신축 건물이 신축외 건물보다 4% 높게 나타나며 위와 같은 사유로 해석될 수 있겠다.

소변기나 세면대는 기존의 시설에 손잡이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높이를 조절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적정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든 아니든 건축행위와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표 244> 대변기항목의 건축행위별 설치율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3.1.3.2	신축	1,839	1,209	856	65.7%	46.5%
	신축외	7,214	4,385	2,933	60.8%	40.7%
3.1.2.3	신축	1,839	1,181	601	64.2%	32.7%
	신축외	7,214	4,396	2,067	60.9%	28.7%

3-4-4. 안내시설

안내시설의 경우에는 점자블록이 신축건물에서 적정 및 설치율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도·안내설비는 신축건물에서 적정설치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축지도 등의 설치가 신축건물이 훨씬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으나 경보·피난설비는 오히려 신축외 건물에서 적정설치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소방 설비 설치기준에 의해 설치하도록 하면서 연계성있게 설치되는 것은 좀 더 강화하고 있는 편의증진법의 영향은 건축행위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5> 안내시설의 건축행위별 설치율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점자블록	신축	10,178	5,254	2,851	51.6%	28.0%
	신축외	25,474	12,781	7,034	50.2%	27.6%
유도·안내설비	신축	1,666	418	252	25.1%	15.1%
	신축외	3,946	971	644	24.6%	16.3%
경보·피난설비	신축	1,666	1,120	417	67.2%	25.0%
	신축외	3,946	2,704	922	68.5%	23.4%

3-4-5. 기타시설

기타시설의 경우에는 신축외 건물에서 적정 및 설치율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객실·침실은 물론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모든 경우 기존 건물인 신축외 건물이 신축건물보다 적정설치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객실·침실과 같이 기존의 건물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도 오히려 신축보다 좀 더 잘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6> 기타시설의 건축행위별 설치율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객실·침실	신축	19,236	11,253	8,080	58.5%	42.0%
	신축외	31,860	20,944	14,743	65.7%	46.3%
관람석·열람석	신축	1,078	869	701	80.6%	65.0%
	신축외	2,324	1,874	1,566	80.6%	67.4%
접수대·작업대	신축	6,284	4,998	3,063	79.5%	48.7%
	신축외	16,062	12,803	8,192	79.7%	51.0%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신축	828	635	546	76.7%	65.9%
	신축외	1,722	1,435	1,282	83.3%	74.4%

또한 건축행위별 설치율 특성을 년도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표 247> 연도별-건축행위별 설치율

		대상편의시설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98 ~ '05	신축	816,538	632,060	450,025	77.4%	55.1%
	신축외	1,048,318	817,296	588,286	78.0%	56.1%
'06 ~ '08	신축	163,823	130,572	94,705	79.7%	57.8%
	신축외	516,562	410,077	298,843	79.4%	57.9%
계	신축	980,361	762,632	544,730	77.8%	55.6%
	신축외	1,564,880	1,227,373	887,129	78.4%	56.7%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인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내에 신축과 신축외 건축행위를 실시한 건물들의 설치율은 각각 55.1%, 56.1%로 신축외 건물이 1% 높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축건물에서 적정설치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계단과 대변기,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신축 이나 그 외 건축행위가 편의시설 설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이후에 신축과 신축외 건축행위를 실시한 건물들의 설치율도 각각 57.8%와 57.9%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998년부터 2005년 기간에서는 신축건물에서 적정설치율이 높게 보이는 것이 계단과 대변기,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에 그쳤으나 2006년 이후에는 신축건물에서 설치율을 높게 보이고 있는 것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복도, 계단, 승강기, 대변기, 경보·피난설비로 2개 정도의 편의시설이 추가되었다.

2006년 이후 설치율이 조금이나마 상승하고 있고 신축이 신축외의 건축행위보다 좀 더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2005년 7월 18일 건축법 시행규칙의 별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개정으로 신축건물을 사용승인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적합 혹은 부적합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 본다.

3-5. 지역별 설치율 분석

3-5-1. 16개 시·도별

<표 248>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지역	대상건물수	대상편의시설 수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서울	15,436	527,801	440,513	330,565	83.5%	62.6%
부산	6,532	226,497	185,834	147,820	82.0%	65.3%
대구	3,689	134,089	107,081	81,625	79.9%	60.9%
인천	7,785	234,402	189,265	143,154	80.7%	61.1%
광주	3,811	135,171	105,694	79,229	78.2%	58.6%
대전	3,035	107,789	80,260	48,002	74.5%	44.5%
울산	3,514	117,097	96,887	72,071	82.7%	61.5%
경기	22,501	719,927	538,893	331,768	74.9%	46.1%
강원	3,801	138,975	112,292	80,725	80.8%	58.1%
충북	4,248	161,432	122,293	95,992	75.8%	59.5%
충남	6,595	248,991	194,555	138,792	78.1%	55.7%
전북	5,129	191,880	146,831	106,776	76.5%	55.6%
전남	4,307	183,267	130,997	94,249	71.5%	51.4%
경북	8,670	314,522	218,487	161,291	69.5%	51.3%
경남	6,368	236,895	183,837	136,915	77.6%	57.8%
제주	2,309	82,057	61,650	49,276	75.1%	60.1%
총계	107,730	3,760,792	2,915,369	2,098,250	77.5%	55.8%

16개 시·도 설치율 중에 편의시설 20개 항목에 대한 적정설치율에 대해 비교하였으며, 광역시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인 내용 중 편의시설 20개 항목 중 매개시설 중 접근로 적정설치율이 60.9%이하인 시도는 5곳, 주차구역은 적정설치율 50.8% 이하가 4곳, 높이차이제거의 적정설치율 43.9% 이하가 9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개시설에서 주차구역의 적정설치율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내부시설의 경우 출입구(문)의 적정설치율 56.5% 이하는 7곳, 복도의 적정설치율 71.5% 이하는 3곳, 계단의 적정설치율 57.5%이하는 5곳, 경사로는 79.8%보다 낮은 곳이 7곳, 승강기의 적정설치율 79.9% 이하는 8곳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매개시설의 경우 대지의 형태나 조건에 따라 다소 적정설치율 이하가 발생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 내부에 관한 것으로 다소 건축주와 건축관계자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이는 좀더 정책적인 강화가 필요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을 교육등의 방법으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위생시설의 경우 대변기의 적정설치율 33.8% 이하인 곳이 10곳, 소변기의 적정설치율 42.8% 이하인 곳이 9곳, 세면대의 적정설치율 33.5% 이하인 곳이 10곳, 욕실의 적정설치율 60.9% 이하인 곳이 7곳, 샤워실 적정설치율 57.6% 이하인 곳이 7곳으로 나타났다. 욕실과 샤워실의 경우 건물의 특징에 따라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위생시설 전체 항목에서 전체 적정설치율 이하의 시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우 낮은 적정설치율의 원인은 주로 지체장애인 위주로 형성된 화장실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비가 부족하기 때

문이다.

안내시설의 경우 점자블록의 적정설치율 27.7% 이하인 곳이 8곳, 유도설비의 적정설치율 16.0% 이하인 곳이 7곳, 피난설비의 적정설치율 23.9%이하인 곳이 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또한 위생설비와 같이 시각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부족으로 설치율이 낮다고 볼 수있다. 점자블록의 적정설치율이 대구는 37.98%, 충북 37.35%로 2곳이 다소 전체 적정설치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타시설의 경우 객실·침실의 적정설치율 44.7% 이하인 곳이 11곳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 중에서 가장 적정 설치가 낮은 항목이다. 적정설치율이 높은 곳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66.3%, 광주시는 67.8%로 2곳 만이 60%이상을 보이고 있다. 객실 침실의 경우 숙박시설과 기숙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기숙사 중 학교보다 기업에 속한 기숙사를 조사한 경우가 많을 경우 객실침실의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관람석·열람석은 적정설치율이 66.6%로 이보다 낮은 곳은 8곳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시가 88.8%로 가장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부산 77.7%, 서울 77%로 측정되었다.

접수대 및 작업대의 경우 적정설치율이 50.4%로 이하로 설치된 곳이 8곳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접수대 및 작업대는 적은 시공비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낮다는 것은 인식부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접수대 및 작업대는 제주시가 72.9%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표소·판매기·음료대로서 적정설치율이 71.7%로 그 이하의 설치율을 보이는 곳이 7곳으로 나타났다. 이항목은 부산이 89.9%로 나타나 매우 높은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각 시도별 세부분석 내용은 시도별 보고서에서 나타내고 있다.

3-5-2. 광역시 및 도별

건물유형별로 조사하여 광역시와 도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우선 전체 시설수에서 나타난 적정설치율과 광역시 및 도의 시설수의 적정설치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광역시의 경우 전체시설수에서 나타난 적정설치율 평균보다 내부시설의 계단을 제외하고는 평균보다 3.8%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도의 적정설치율은 내부시설의 계단을 제외하고는 평균보다 2.21%낮게 나타났다.

매개시설의 경우 광역시는 적정설치율 평균보다 6.2%높게 나타났고 도는 적정설치율 평균보다 4.2% 낮게 나타났다. 매개시설에서 광역시에 비해 도의 평균이 낮게 나타난 원인은 지형적인 고저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시설의 경우 광역시는 적정설치율 평균보다 2.9% 높으며 도의 경우는 1.9% 낮게 나타났다. 내부시설의 경우도 지형적인 고저차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광역시과 도간이 적정설치율 비교에서 유일하게 도가 높게 차지한 항목인 계단설치율의 경우 건축의 규모가 저층이 많

아 승강설비보다 계단위주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생시설의 경우 광역시는 적정설치율 평균보다 3.6% 높게 나타났고, 도의 경우는 1.9% 낮게 나타났다. 이는 광역시보다 도의 건물이 면적 부분에서 소규모가 많아 대변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

안내시설의 경우 전체적정평균을 자체가 다른 편의시설에 비해 매우 낮게 측정되어 전반적으로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광역시 및 도의 설치비교는 무의미하며 전국적으로 안내시설은 시정하여야 할 편의시설이라고 본다.

기타시설의 경우는 광역시는 적정설치율 평균보다 4.1% 높게 나타났고, 도의 경우는 -2.0% 낮게 나타났다. 건물유형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건축용도의 특이성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매표소·음료대·자판기는 도에 비해 광역시가 전체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9> 편의시설 시·도별 적정설치율 비교 (단위 %)

구분	편의시설설치	전체		광역시			도		
		설치율	적정설치율 (A)	설치율	적정설치율 (B)	적정설치율 비교 (B-A)	설치율	적정설치율 (C)	적정설치율 비교 (C-A)
매개 시설	주출입구접근로	82.9%	60.9%	87.0%	67.1%	6.2%	80.1%	56.6%	-4.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67.4%	50.8%	70.1%	55.8%	5.0%	65.6%	47.3%	-3.5%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71.7%	43.9%	75.9%	51.2%	7.3%	68.8%	39.0%	-4.9%
내부 시설	출입구(문)	86.3%	56.5%	89.8%	62.1%	5.6%	83.9%	52.8%	-3.7%
	복도	89.9%	71.5%	92.5%	74.9%	3.4%	88.5%	69.5%	-2.0%
	계단	79.1%	57.5%	80.2%	57.3%	-0.2%	78.3%	57.6%	0.1%
	경사로	87.5%	79.8%	92.0%	84.5%	4.7%	84.6%	76.7%	-3.1%
	승강기	87.6%	79.9%	90.4%	80.9%	1.0%	85.7%	79.2%	-0.7%
위생 시설	대변기	55.2%	33.8%	59.1%	38.7%	4.9%	52.8%	30.8%	-3.0%
	소변기	56.6%	42.8%	58.3%	44.9%	2.1%	55.7%	41.7%	-1.1%
	세면대	79.7%	33.5%	75.6%	33.7%	0.2%	81.8%	33.3%	-0.2%
	욕실	78.3%	60.9%	79.0%	66.6%	5.7%	77.9%	58.3%	-2.6%
안내 시설	샤워실	78.1%	57.6%	77.8%	62.8%	5.2%	78.2%	55.2%	-2.4%
	점자블록	50.6%	27.7%	57.6%	31.6%	3.9%	47.1%	25.8%	-1.9%
	유도안내설비	24.8%	16.0%	27.3%	18.3%	2.3%	23.6%	15.0%	-1.0%
	경보피난설비	68.1%	23.9%	67.8%	24.8%	0.9%	68.3%	23.5%	-0.4%
기타 시설	객실, 침실	63.0%	44.7%	68.7%	49.6%	4.9%	60.0%	42.0%	-2.7%
	관람석, 열람석	80.6%	66.6%	83.7%	73%	6.4%	79.2%	63.6%	-3.0%
	접수대, 작업대	79.7%	50.4%	86.5%	52.2%	1.8%	77.2%	49.7%	-0.7%
	매표소, 음료대, 자판기	81.2%	71.7%	81.6%	74.9%	3.2%	81.0%	70.2%	-1.5%

3-6. 편의시설 설치수준 분석

3-6-1. 설치수준 분석의 개요

앞장에서는 편의시설 전체조사항목 대비 설치된 항목의 수를 비율로 나타낸 편의시설 설치율을 분석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단순히 편의시설의 설치유무만을 수치 및 비율로 판단하는 반면, 편의시설 설치수준이란 편의시설의 실제 이용자의 이용수준을 반영한 전반적인 편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편의시설 설치수준은 편의시설의 종류별 항목마다 동일한 비중을 부여하지 않고 편의증진법에 의한 설치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이용적 측면에서 절대 필수시설의 중요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중치 등으로 인해 각각 다른 배점을 부여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점수산정과정이 필요하며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다음은 편의시설 설치수준 산정을 위한 방법이다.

가. 편의시설 종류별 가중치 산정

편의시설의 종류별 세부항목(총18개 항목) 중에서 각각의 세부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가중치)을 산정한다.

먼저 편의증진법에서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44개 유형 중에서 의무로 규정된 유형의 개수를 도출한다. 이 때, 의무시설의 항목당 가중치는 1로 계산하여 편의시설 종류 세부항목별 가중치의 값을 합산한다.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모두 합산한 가중치의 합계에 대한 세부항목별 가중치의 비율을 도출한다. 편의시설의 종류별 가중치 산정에 관한 예시는 다음의 표와 같다.

① 44개의 시설유형 중 44개 시설유형 모두가 해당 편의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하는 시설임

조사표 유형	1. 매개시설			2. 내부시설			3. 위생시설					4. 안내시설			5. 기타시설				계
	1.1	1.2	1.3	2.1	2.2	2.3	3.1	3.2	3.3	3.4	3.5	4.1	4.2	4.3	5.1	5.2	5.3	5.4	
A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D	●	●	●	●	●	●	●	●	●	●	●	●	●	●	●	●	●	●	●
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Y2	●	●	●	●	●	●	●	●	●	●	●	●	●	●	●	●	●	●	●
Y3	●	●	●	●	●	●	●	●	●	●	●	●	●	●	●	●	●	●	●
Z1	●	●	●	●	●	●	●	●	●	●	●	●	●	●	●	●	●	●	●
Z2	●	●	●	●	●	●	●	●	●	●	●	●	●	●	●	●	●	●	●
의무항목수	44	29	42	41	24	25	32	9	11	1	1	11	3	3	5	5	4	1	291
가중치 (%)	15.1	10.0	14.4	14.1	8.2	8.6	11.0	3.1	3.8	0.3	0.3	3.8	1.0	1.0	1.7	1.7	1.4	0.3	100

② 44개의 시설유형 중 11개 시설유형이 해당 편의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하는 시설임

(15.1 = 44 X 100 / 291)

(3.8 = 11 X 100 / 291)

(그림 208) 가중치 산정의 예시 (1.1항목과 3.3항목)

- ①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면, 총 44개의 대상시설 유형 중 의무시설로 규정된 시설 유형이 44개 모두 이므로 가중치가 44로 도출되며, 각 가중치들의 총합계가 291 이므로 1.1항목의 가중치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15.1(=44 \times 100 \div 291)$ 이다.
- ② 3.3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면, 총 44개의 대상시설 유형 중 의무시설로 규정된 시설 유형이 11개 모두 이므로 가중치가 11로 도출되며, 각 가중치들의 총합계가 291 이므로 3.3항목의 가중치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3.8(=11 \times 100 \div 291)$ 이다.

나. 대상시설 유형별 점수 배점 방법

○ A유형(장애인복지시설)의 배점방법

- A유형은 모든 편의시설이 의무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의 '세부항목별 배점 비율'을 그대로 배점에 반영하여 점수화 하였다.

○ B유형(특수학교)의 배점방법

- A유형은 모든 편의시설이 의무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B~Z유형은 법규상 미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으므로 배점에서 제외되는 세부항목이 발생하게 된다. 각 유형의 조사표마다 항목배점의 합이 100점이 되어야 하므로, 세부항목의 배점이 제외되는 점수를 합산하여, 나머지 세부항목의 점수에 균일하게 나누어 가산하였다.

B유형(특수학교)의 배점 방법의 예시는 다음의 표와 같다.

조사표 유형	1. 매개시설			2. 내부시설			3. 위생시설					4. 안내시설			5. 기타시설				계
	1.1	1.2	1.3	2.1	2.2	2.3	3.1	3.2	3.3	3.4	3.5	4.1	4.2	4.3	5.1	5.2	5.3	5.4	
A유형 의무항목수	44	29	42	41	24	25	32	9	11	1	1	11	3	3	5	5	4	1	291
A유형 가중치 (%)	15.1	10.0	14.4	14.1	8.2	8.6	11.0	3.1	3.8	0.3	0.3	3.8	1.0	1.0	1.7	1.7	1.4	0.3	100
B유형 의무항목수	44	29	42	41	24	25	32	9	11	○	○	11	3	3	○	5	4	○	283
B유형 가중치 (%)	15.5	10.2	14.8	14.5	8.5	8.8	11.3	3.2	3.9	○	○	3.9	1.1	1.1	○	1.8	1.4	○	100

$(15.5 = 44 \times 100 / 283)$
 $(3.9 = 11 \times 100 / 283)$

B유형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항목임(배점없음)

(그림 210) B유형(특수학교)의 배점 방법의 예

3.4항목과 3.5항목의 편의시설은 법규상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이므로 그 항목에 해당하는 배점은 없으며, 따라서 B유형의 편의시설별 가중치의 합은 283이 되므로, 각 세부항목별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가중치를 산정해 이를 점수화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산정한 모든 건물유형의 배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50> 건물유형별 설치수준 배점표

조사표 유형	건물유형	1. 매개시설			2. 내부시설			3. 위생시설					4. 안내시설			5. 기타시설				계
		1.1	1.2	1.3	2.1	2.2	2.3	3.1	3.2	3.3	3.4	3.5	4.1	4.2	4.3	5.1	5.2	5.3	5.4	
A-type	장애인복지시설	15.1	10.0	14.4	14.1	8.2	8.6	11.0	3.1	3.8	0.3	0.3	3.8	1.0	1.0	1.7	1.7	1.4	0.3	100
B-type	특수학교	15.5	10.2	14.8	14.5	8.5	8.8	11.3	3.2	3.9	-	-	3.9	1.1	1.1	-	1.8	1.4	-	100
C-type	청사	15.8	10.4	15.1	14.7	8.6	9.0	11.5	3.2	4.0	-	-	4.0	1.1	1.1	-	-	1.4	-	100
D-type	일반숙박시설 등	16.1	10.6	15.4	15.0	8.8	9.2	11.7	3.3	4.0	-	-	4.0	-	-	1.8	-	-	-	100
E-type	병원, 격리병원	16.4	10.8	15.7	15.3	9.0	9.3	11.9	3.4	4.1	-	-	4.1	-	-	-	-	-	-	100
G-type	도서관	16.8	11.1	16.0	15.6	9.2	9.6	12.2	3.4	4.2	-	-	-	-	-	-	1.9	-	-	100
H-type	생활권수련시설 등	16.8	11.1	16.0	15.6	9.2	9.6	12.2	3.4	4.2	-	-	-	-	-	1.9	-	-	-	100
I-type	공공도서관	17.4	11.5	16.6	16.2	9.5	9.9	12.6	-	-	-	-	4.3	-	-	-	2.0	-	-	100
J-type	읍·면·동사무소 등	17.5	11.5	16.7	16.3	9.5	9.9	12.7	-	-	-	-	4.4	-	-	-	-	1.6	-	100
K-type	공연장,관람장	18.2	12.0	17.4	16.9	9.9	10.3	13.2	-	-	-	-	-	-	-	-	2.1	-	-	100
L-type	전시장, 동·식물원	17.7	11.7	16.9	16.5	9.7	10.1	12.9	-	-	-	-	4.4	-	-	-	-	-	-	100
M-type	교도소,구치소	17.7	11.7	16.9	16.5	9.7	10.1	12.9	-	4.4	-	-	-	-	-	-	-	-	-	100
N1-type	노인복지시설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2-type	학교(특수학교 제외)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3-type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4-type	방송국 등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51-type	집회장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52-type	장례식장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61-type	운전학원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62-type	금융업소, 사무소 등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63-type	교육원 등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7-type	의원, 치과의원 등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O-type	공중화장실	23.2	-	22.1	21.6	-	0.0	16.8	4.7	5.8	-	-	5.8	-	-	-	-	-	-	100
P-type	기숙사	25.1	-	24.0	23.4	-	0.0	18.3	-	6.3	-	-	-	-	-	2.9	-	-	-	100
Q1-type	아외음악당 등	23.4	15.4	22.3	21.8	-	0.0	17.0	-	-	-	-	-	-	-	-	-	-	-	100
Q2-type	전선전화국 등	23.4	15.4	22.3	21.8	-	0.0	17.0	-	-	-	-	-	-	-	-	-	-	-	100
Q3-type	휴게소	23.4	15.4	22.3	21.8	-	0.0	17.0	-	-	-	-	-	-	-	-	-	-	-	100
Q4-type	공장	23.4	15.4	22.3	21.8	-	0.0	17.0	-	-	-	-	-	-	-	-	-	-	-	100
R-type	여관	26.8	-	25.6	25.0	-	0.0	19.5	-	-	-	-	-	-	-	3.0	-	-	-	100
S-type	기타사회복지시설 등	25.0	-	23.9	23.3	13.6	14.2	-	-	-	-	-	-	-	-	-	-	-	-	100
T-type	종교집회장	28.2	18.6	26.9	26.3	-	0.0	-	-	-	-	-	-	-	-	-	-	-	-	100
U1-type	운동시설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U2-type	안마시술소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U31-type	소매점 등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U32-type	일반음식점 등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U33-type	일반목욕장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U4-type	대피소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V-type	주차장	38.3	25.2	36.5	-	-	0.0	-	-	-	-	-	-	-	-	-	-	-	-	100
Y1-type	아파트	24.3	16.0	23.2	22.7	-	13.8	-	-	-	-	-	-	-	-	-	-	-	-	100
Y11-type	아파트 부대복지시설	19.3	-	18.4	18.0	10.5	11.0	14.0	3.9	4.8	-	-	-	-	-	-	-	-	-	100
Y2-type	연립주택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Y3-type	다세대주택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Z1-type	도시공원	50.6	-	-	-	-	0.0	36.8	-	-	-	-	12.6	-	-	-	-	-	-	100
Z2-type	자연공원	50.6	-	-	-	-	0.0	36.8	-	-	-	-	12.6	-	-	-	-	-	-	100

다. 소분류항목의 배점

예를들어 중분류항목인 1.1항목에서 배점된 점수 15.1점을 항목내의 '평가세부내용'의 개수비율로 나누어 소분류항목의 배점을 배정하였다.

소분류항목의 배점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다

중분류 항목	1.1 주출입구 접근로				
배점	15.1				
소분류항목	1.1.1	1.1.2	1.1.3	1.1.4	계
소분류항목내의 평가세부내용의 갯수	3	1	2	2	8
배점	5.6	1.9	3.8	3.8	15.1

중분류항목의 배점(15.1)을 평가세부내용의 갯수(3) 비율로 배분
 $(5.6 = 3 \times 15.1 / 8)$

(그림 212) 소분류항목의 배점방법

라. 세분류항목의 배점 방법

아래 2.1.2 소분류항목의 배점이 6.84점인 경우 2.1.2.1 세분류항목의 배점은 1.7(=6.8/4)이며, 편의시설의 설치수준이 4(적정)에 해당할 경우 100%인 1.7점, 3(보통)에 해당할 경우 66.7%인 1.1점, 2(미흡)에 해당할 경우 33.3%인 0.6점, 그리고 1점(미설치)에 해당할 경우 0점으로 평가점수를 받게 된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2.1.2	해당시설 일반출입문의 활동공간, 유효폭, 구조, 턱낮추기, 손잡이 형태 등이 적절한가?	6.8

평가세부내용	정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2.1.2.1 출입문턱의 높이 차이		모든 문턱의 높이가 2cm이하 1.7	모든 문턱의 높이가 3cm이하 1.1	모든 문턱의 높이가 4cm이하 0.6	모든 문턱의 높이가 4cm이하 0
▶ 2.1.2.2 출입문 통과유효폭의 0.8m이상 확보 여부		모든 문의 유효폭이 0.8m이상 1.7	일부 문의 유효폭이 0.8~0.9m사이이며 나머지는 0.65m이상 1.1	모든 문의 유효폭이 0.65m이상 0.6	모든 문의 유효폭이 0.65m미만 0
▶ 2.1.2.3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1.2m 이상 확보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가 1.2m이상 1.7	일부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가 0.8~0.9m사이이며 나머지는 0.8m이상 1.1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가 0.8m이상 0.6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가 0.8m미만 0
▶ 2.1.2.4 공중의 이용을 주 목적으로하는 실의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위치하며, 출입문 옆의 벽면에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는 점자표지판 규정에 적합 1.7	손잡이 높이는 0.8~0.9m사이에 위치, 점자표지판 미부착 1.1	손잡이 높이는 0.8m미만 또는 0.9m미만 점자표지판 부착 0.6	손잡이 높이는 0.9m미만 또는 점자표지판 미부착 0

모두 4(적정)일 경우 2.1.2항목 배점의 100%인 6.8점 평가

모두 3(보통)일 경우 2.1.2항목 배점의 66.7%인 4.5점 평가 (소수점아래 두째자리반올림)

모두 2(미흡)일 경우 2.1.2항목 배점의 33.3%인 2.3점 평가 (소수점아래 두째자리반올림)

모두 1(미설치)일 경우 0점 평가

(그림 214) 세분류항목의 배점방법 예시

편의시설별 수준분석표의 제일 하단에는 각 편의시설별 평균이 기입되어 있는데, 이 평균들은

해당되는 편의시설의 각각 다른 시설수로 나누어 산정된 것이므로 이 평균들의 합은 전체합계의 평균과 같지 않음을 전제한다.



(그림 216) 설치수준분석 평균의 예시

3-6-2. 건물유형별 분석

가. 건물유형별 설치수준(대분류) 분석

44개 건물유형별로 분류된 편의시설 설치수준을 편의시설 대분류인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나누어 대분류별 평균 점수로 나타냄으로써 조사된 전체 대상시설의 평균 설치수준을 알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건물유형별 설치수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건물유형별로 나타내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수준은 항목별 평점을 배점기준으로 볼 때 몇% 수준인지를 파악하게 되면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수준을 알 수 있다. 건물유형별 설치수준 평가는 3-7-1의 나<표224>의 건물유형별 설치수준 배점표를 기준하여 평가된다. 다시 말해 이 배점표의 점수에 대해 다음 표에서 각 건물유형별로 나타내고 있는 시설별 점수가 몇% 수준인지를 파악하게 되면 각 유형별로 설치된 수준을 알 수 있으며 수준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적정수준인 100%를 기준하여 보통이 66% 이상이며 33% 이하는 미흡 혹은 미설치수준임
- 또한 상위 설치 수준인 적정과 보통사이를 3단계 정도로 다시 보아 88% 이상은 적정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하며 77%이하는 보통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함.

이를 다시 정리하면 88%이상은 적정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 87%에서 77%까지는 보통으로 평가, 76%에서 66%까지는 보통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 66%미만은 보통이하로 평가하며, 33%이하의 미흡 혹은 미설치로 평가함

<표 251> 건물유형별 편의시설(대분류) 설치수준

건물군(건물유형)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평균
근린 생활 시설	U31	소매점, 이용원	배점	67.7	32.3	-	-	-	100.0
			평점	38.9	21.7	-	-	-	60.1
	U32	일반음식점	배점	67.7	32.3	-	-	-	100.0
			평점	36.3	22.0	-	-	-	57.5
	U33	일반목욕장	배점	67.7	32.3	-	-	-	100.0
			평점	37.8	20.8	-	-	-	58.4
	U2	안마시설소	배점	67.7	32.3	-	-	-	100.0
			평점	39.9	24.9	0	0	0	63.5
	J	읍·면·동사무소	배점	45.6	35.7	12.7	4.4	1.6	100.0
			평점	28.5	28.6	4.9	1.7	1	64.4
I	공공도서관	배점	45.5	35.6	12.6	4.3	2.0	100.0	
		평점	32.5	30.1	7.5	2.3	1.1	72.8	
U4	대피소	배점	67.7	32.3	-	-	-	100.0	
		평점	47.6	24.7	0	0	0	71.1	
O	공중화장실	배점	45.3	21.6	27.4	5.8	-	100.0	
		평점	27.9	13.5	12.4	1	0	52.4	
N7	의원, 한의원 등	배점	48.5	38.0	13.5	-	-	100.0	
		평점	31.1	30.9	4.3	0	0	65.7	
문화 및 집회 시설	T	종교집회장	배점	73.7	26.3	-	-	-	100.0
			평점	43.1	19.5	0	0	0	62.2
	K	공연장, 관람장	배점	47.5	37.2	13.2	-	2.1	100.0
			평점	36.5	31.2	8.5	0	1.2	77
N51	집회장	배점	48.5	38.0	13.5	-	-	100.0	
		평점	30.3	30.3	5.6	0	0	65.8	
L	전시장 등	배점	46.4	36.3	12.9	4.4	-	100.0	
		평점	31.9	28.7	7	1.4	0	68.2	
판매 및 영업시설	N3	도·소매시장	배점	48.5	38.0	13.5	-	-	100.0
			평점	32.7	28.5	5.6	0	0	66.2
의료 시설	E	병원 등	배점	42.9	33.6	19.4	4.1	-	100.0
			평점	32.5	29.3	11.3	1.4	0	74.1
	N52	장례식장	배점	48.5	38.0	13.5	-	-	100.0
			평점	32.4	30.7	6.3	0	0	69.3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N2	학교	배점	48.5	38.0	13.5	-	-	100.0
			평점	31.5	29.9	6.5	0	0	67.6
	B	특수학교	배점	40.6	31.8	18.4	6.0	3.2	100.0
			평점	31.7	27.4	12.6	2.2	1.9	74.5
	N63	교육원, 학원 등	배점	48.5	38.0	13.5	-	-	100.0
			평점	31.2	30.1	4.7	0	0	65.3
	G	도서관	배점	43.9	34.4	19.8	-	1.9	100.0
			평점	35.3	30.7	13.1	0	1.2	79.7
	S	아동관련시설	배점	48.9	51.1	-	-	-	100.0
			평점	26.8	33.2	0	0	0	59.8
N1	노인복지시설	배점	48.5	38.0	13.5	-	-	100.0	
		평점	32.3	30.3	7.2	0	0	69.4	
A	장애인복지시설	배점	39.5	30.9	18.6	5.8	5.2	100.0	
		평점	28.1	25.3	10.9	1.8	2.9	67.8	
H	생활권수련시설	배점	43.9	34.4	19.8	-	1.9	100.0	
		평점	27	25.9	9.1	0	0.6	61.6	
운동 시설	U1	운동시설	배점	67.7	32.3	-	-	-	100.0
			평점	45.3	25.1	0	0	0	69.4
업무 시설	C	공공업무시설(청사)	배점	41.4	32.4	18.7	6.1	1.4	100.0
			평점	31.1	28.5	11.7	2.8	1	74.9
	N62	사무소 등	배점	48.5	38.0	13.5	-	-	100.0
			평점	32.1	30.1	4.8	0	0	66.3
숙박 시설	D	일반숙박시설 등	배점	42.1	33.0	19.0	4.0	1.8	100.0
			평점	25.5	25.7	6	0.4	0.8	57.1
	R	여관	배점	52.4	25.0	19.5	-	3.0	100.0
			평점	36.9	20.1	4.6	0	1.3	61.2
공장	Q4	공장	배점	61.2	21.8	17.0	-	-	100.0
			평점	30.7	15	3.1	0	0	48.6
자동차 관련시설	V	주차장	배점	100.0	-	-	-	-	100.0
			평점	61.4	0	0	0	0	61.1
	N61	운전학원	배점	48.5	38.0	13.5	-	-	100.0

건물군(건물유형)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평균
공공용 시설	N4	방송국 등	평점	23.7	24.3	2.8	0	0	50.2
			배점	48.5	38.0	13.5	-	-	100.0
	Q2	전신전화국 등	평점	35.7	32.2	7.7	0	0	74
			배점	61.2	21.8	17.0	-	-	100.0
	M	교도소 등	평점	44	18.5	8.9	0	0	71.2
			배점	46.4	36.3	17.3	-	-	100.0
관광 휴게 시설	Q1	야외음악당 등	평점	35.2	27.2	8.9	0	0	69.4
			배점	61.2	21.8	17.0	-	-	100.0
	Q3	휴게소 등	평점	44.7	19.2	10.7	0	0	69.9
			배점	61.2	21.8	17.0	-	-	100.0
	P	기숙사	평점	47.1	18.5	11.8	0	0	76.8
			배점	49.1	23.4	24.6	-	2.9	100.0
공동 주택	Y1	아파트	평점	29.3	16.4	8.1	0	0.9	53.2
			배점	63.5	36.5	0.0	-	-	100.0
	Y11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평점	45.9	30.1	0	0	0	75.8
			배점	37.7	39.5	22.8	-	-	100.0
	Y2	연립주택	평점	30.4	31.5	8.9	0	0	70.3
			배점	67.7	32.3	-	-	-	100.0
Y3	다세대주택	평점	36.2	20.4	0	0	0	55.8	
		배점	67.7	32.3	-	-	-	100.0	
공원	Z1	도시공원	평점	39	21.7	0	0	0	60.5
			배점	50.6	-	36.8	12.6	-	100.0
	Z2	자연공원	평점	46.5	0	9.9	1.5	0	52.5
			배점	50.6	-	36.8	12.6	-	100.0
	평균		평점	34	0	12.4	1.3	0	45.8
			배점	53.8	30.9	13.0	1.6	1.9	100
			평점	35.4	23.9	5.9	0.4	0.3	65.0

※ 전체평균 점수는 각 편의시설의 평균 합산이 아닌 해당 유형별 대상건축물 전체의 평균 점수임
 또한 편의시설별로 0점 표기된 항목은 건물유형별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해당이 없는 항목임

첫째, 44개 건물유형별 매개시설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정에 가깝거나 적정인 수준인 88%이상인 건물유형은 도시공원 1개인 것으로 평가됨
- 보통 수준인 87%에서 77% 범위의 건물유형은 특수학교, 도서관, 휴게소, 부대복리시설인 것으로 평가됨
- 보통에 가까운 수준인 76%에서 66% 범위의 건물유형은 19개로 장애인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병원, 공연장·관람장, 전시장, 교도소, 노인복지시설, 도·소매시장, 방송국, 장례식장, 사무소 등, 야외음악당, 전신전화국, 여관, 운동시설, 대피소, 아파트, 자연공원이며 대부분이 이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건물유형은 보통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둘째, 44개 건물유형별 내부시설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정에 가깝거나 적정인 수준인 88%이상인 건물유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도서관, 야외음악당으로 3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남
- 적정에 가까운 수준에서 다소 떨어져 보통이상 수준인 87%에서 77% 범위의 건물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일반숙박시설, 병원, 공공도서관, 읍·면·동사무소, 공연장·관람장, 전시장, 노인복지시설, 학교, 방송국, 집회장, 장례식장, 사무소등, 직업훈련소등, 의원등, 전신전화국, 휴게소, 여관, 운동시설, 안마시술소,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로 대부분이 이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건물유형은 보통에 가까운 수준에서 보통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주차장, 도시공원, 자연공원의 건물유형에서 내부시설 항목이 해당이 없어 0점으로 나타남

셋째, 44개 건물유형별 위생시설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정에 가깝거나 적정인 수준인 88%이상인 건물유형은 전혀 없으며 보통 수준인 87%에서 77% 범위에 포함되는 건물유형도 전혀 없음
- 76%에서 66% 범위로 보통에 가까운 수준에 포함되는 건물유형도 특수학교, 도서관, 휴게소로 3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대부분의 건물유형은 65%이하로 보통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위생시설의 설치수준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심각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아동관련시설, 종교집회장, 운동시설, 안마시술소,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등, 일반목욕장, 대피소, 주차장,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건물유형에서는 해당이 없음

넷째, 44개 건물유형별 안내시설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내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건물유형이 33개 유형이나 되어 해당되는 건물유형은 11개 밖에 되지 않음
- 그러나 11개 건물유형 모두 65%이하로 보통이하의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이중에서 특히 7개 유형 즉, 장애인복지시설, 일반숙박시설, 병원, 전시장, 공중화장실, 도시공원, 자연공원은 33%이하로 미흡 혹은 미설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다섯째, 44개 건물유형별 기타시설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건물유형이 33개 유형으로 해당되는 건물유형은 11개 밖에 되지 않음
- 11개 건물유형 중에서도 안내시설과 비슷한 설치수준을 보임으로써 65%이하로 보통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되는 건물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일반숙박시설, 도서관, 공공도서관, 읍·면·동사무소, 공연장·관람장, 여관이며 생활권수련시설, 기숙사는 최하 수준인 33%이하로 나타남

44개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대분류에 대한 종합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수준을 분석해 보면 전체 평균은 65점으로 조사되어 아직도 설치수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도서관이 79.7점으로 가장 우수하게 조사되었고, 자연공원이 45.8점으로 가장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도서관, 공연장, 휴게소, 아파트의 설치수준이 75점 이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공장, 자연공원이 48점 이하로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나. 건물유형별 설치수준(중분류) 분석

44개 건물유형별로 분류된 편의시설 설치수준을 중분류별 평균 점수로 나타냄으로써 조사된 전체 대상시설의 평균 설치수준을 매개시설에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로 내부시설에서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로 위생시설에서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로 안내시설에서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고 및 피난설비로 기타시설에서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로 18개 시설로 나누어 알아볼 수 있다.

다만, 편의시설 중분류별로 평균 점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설치현황 분석에서 각 시설별로만 비교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건물유형별 설치수준 평가는 3-7-1의 나.<표 251>의 건물유형별 설치수준 배점표를 기준하여 평가된다. 다시 말해 이 배점표의 점수에 대해 다음 표에서 각 건물유형별로 나타내고 있는 시설별 점수가 몇% 수준인지를 파악하게 되면 각 유형별로 설치된 수준을 알 수 있으며 수준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적정수준인 100%를 기준하여 보통이 66% 이상이며 33% 이하는 미흡 혹은 미설치수준임
- 또한 상위 설치 수준인 적정과 보통사이를 3단계 정도로 다시 보아 88% 이상은 적정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하며 77%이하는 보통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함.

이를 다시 정리하면 88%이상은 적정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 87%에서 77%까지는 보통수준으로 평가, 76%에서 66%까지는 보통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 66%미만은 보통이하로 평가하며, 33%이하는 미흡 혹은 미설치로 평가함

<표 252> 건물유형별 편의시설(중분류) 설치수준

편의시설 건물군(건물유형)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평균		
				접근로	주차구역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열람석		접수·작업대	매표소 등
근린 생활 시설	U31	소매점 등	배점	34.6	-	33.1	32.3	-	-	-	-	-	-	-	-	-	-	-	-	-	100.0	
			평점	24.4	-	16.2	21.7	-	0	-	-	-	-	-	-	-	-	-	-	-	-	60.1
	U32	일반음식점 등	배점	34.6	-	33.1	32.3	-	-	-	-	-	-	-	-	-	-	-	-	-	100.0	
			평점	23.9	-	14.6	22	-	0	-	-	-	-	-	-	-	-	-	-	-	-	57.5
	U33	일반목욕장	배점	34.6	-	33.1	32.3	-	-	-	-	-	-	-	-	-	-	-	-	-	100.0	
			평점	24.2	-	15.5	20.8	-	0	-	-	-	-	-	-	-	-	-	-	-	-	58.4
	U2	안마시설소	배점	34.6	-	33.1	32.3	-	-	-	-	-	-	-	-	-	-	-	-	-	-	100.0
			평점	26.7	-	16.6	24.9	-	0	-	-	-	-	-	-	-	-	-	-	-	-	63.5
	J	읍·면·동사무소 등	배점	17.5	11.5	16.7	16.3	9.5	9.9	12.7	-	-	-	-	4.4	-	-	-	-	1.6	-	100.0

편의시설 건물군(건물유형)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평 균		
			배점	주차구역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유선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시설	경도·피난설비	객실·전실	관람·전시실	점수·작업대	대표수		에	
문화 및 집회 시설	I	공공도서관	배점	14.1	5.9	11.5	19.2	10.8	5.9	4.9	-	-	-	-	1.7	-	-	-	1	-	64.4		
			평점	17.4	11.5	16.6	16.2	9.5	9.9	12.6	-	-	-	-	4.3	-	-	-	2.0	-	-	100.0	
	U4	대피소	배점	14.1	6.3	14	18.4	10.3	6.8	7.5	-	-	-	-	-	-	-	-	1.1	-	-	72.8	
			평점	34.6	-	33.1	32.3	-	-	-	-	-	-	-	-	-	-	-	-	-	-	-	100.0
	O	공중화장실	배점	29	-	21	24.7	-	0	-	-	-	-	-	-	-	-	-	-	-	-	71.1	
			평점	23.2	-	22.1	21.6	-	-	16.8	4.7	5.8	-	-	5.8	-	-	-	-	-	-	-	100.0
	N7	의원, 치과의원 등	배점	16.6	-	12.2	13.5	-	0	7.9	1.7	3	-	-	1	-	-	-	-	-	-	52.4	
			평점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	100.0
문화 및 집회 시설	T	종교집회장	배점	16.8	4.8	13	18.5	10.3	8.6	4.3	-	-	-	-	-	-	-	-	-	-	-	65.7	
			평점	28.2	18.6	26.9	26.3	-	-	-	-	-	-	-	-	-	-	-	-	-	-	-	100.0
	K	공연장, 관람장	배점	21.8	7.3	16.6	19.5	-	0	-	-	-	-	-	-	-	-	-	-	-	-	62.2	
			평점	18.2	12.0	17.4	16.9	9.9	10.3	13.2	-	-	-	-	-	-	-	-	2.1	-	-	-	100.0
	N51	집회장	배점	15.5	8	14.1	18.2	10.2	8.4	8.5	-	-	-	-	-	-	-	-	1.3	-	-	77	
			평점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	100.0
	L	전시장, 동식물원	배점	14.4	5.8	11.3	18.7	10	7.6	5.6	-	-	-	-	-	-	-	-	-	-	-	65.8	
			평점	17.7	11.7	16.9	16.5	9.7	10.1	12.9	-	-	-	-	4.4	-	-	-	-	-	-	-	100.0
판매 및 영업 시설	N3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배점	14.5	5.9	12.7	18	9.2	6.5	7	-	-	-	-	1.4	-	-	-	-	-	-	68.2	
			평점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	100.0
의료 시설	E	병원, 격리병원	배점	14.7	6.5	12.8	17.4	8.9	7.1	5.6	-	-	-	-	-	-	-	-	-	-	-	66.2	
			평점	16.4	10.8	15.7	15.3	9.0	9.3	11.9	3.4	4.1	-	-	4.1	-	-	-	-	-	-	-	100.0
의료 시설	N52	장례식장	배점	14	6.6	13.4	16.7	9.6	8.5	7.1	1.9	2.5	-	-	1.4	-	-	-	-	-	-	74.1	
			평점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	100.0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N2	학교(특수학교 제외)	배점	13.8	6.9	12.6	18.4	10.6	7.2	6.3	-	-	-	-	-	-	-	-	-	-	-	69.3	
			평점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	100.0
	B	특수학교	배점	14.4	6.1	11.6	17.5	10.4	7.1	6.5	-	-	-	-	-	-	-	-	-	-	-	67.6	
			평점	15.5	10.2	14.8	14.5	8.5	8.8	11.3	3.2	3.9	-	-	3.9	1.1	1.1	-	1.8	1.4	-	-	100.0
	N63	교육원 등	배점	14.2	5.6	12.9	15.1	8.7	7.6	7.9	2.5	2.6	-	-	1.5	0.2	0.5	-	1.3	0.9	-	-	74.5
			평점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	100.0
	G	도서관	배점	16.1	5.5	12.4	17.5	10.1	8.1	4.7	-	-	-	-	-	-	-	-	-	-	-	65.3	
			평점	16.8	11.1	16.0	15.6	9.2	9.6	12.2	3.4	4.2	-	-	-	-	-	-	-	1.9	-	-	100.0
	S	기타사회복지시설 등	배점	14.3	8.3	13.5	18	10.1	8.6	8.5	1.9	2.9	-	-	-	-	-	-	-	1.3	-	-	79.7
			평점	25.0	-	23.9	23.3	13.6	14.2	-	-	-	-	-	-	-	-	-	-	-	-	-	100.0
	N1	노인복지시설	배점	17.2	-	11.1	21.4	12.2	9.1	-	-	-	-	-	-	-	-	-	-	-	-	-	59.8
			평점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	100.0
A	장애인복지시설	배점	14.4	5.8	14	17.9	10.5	8.2	7.2	-	-	-	-	-	-	-	-	-	-	-	-	69.4	
		평점	15.1	10.0	14.4	14.1	8.2	8.6	11.0	3.1	3.8	0.3	0.3	3.8	1.0	1.0	1.7	1.7	1.4	0.3	-	100.0	
H	생활권수련시설 등	배점	12.3	5.4	12	14.8	8.5	6.8	6.5	1.8	2.5	0.2	0.2	1.2	0.1	0.4	1.7	0.9	1.3	0.3	-	67.8	
		평점	16.8	11.1	16.0	15.6	9.2	9.6	12.2	3.4	4.2	-	-	-	-	1.9	-	-	-	-	-	100.0	
운동 시설	U1	운동시설	배점	12.5	5.3	10.2	15.3	8.6	6.3	5.9	1.2	2.3	-	-	-	-	0.6	-	-	-	-	61.6	
			평점	34.6	-	33.1	32.3	-	0	-	-	-	-	-	-	-	-	-	-	-	-	-	100.0
업무 시설	C	청사	배점	26.4	-	20.1	25.1	-	0	-	-	-	-	-	-	-	-	-	-	-	-	69.4	
			평점	15.8	10.4	15.1	14.7	8.6	9.0	11.5	3.2	4.0	-	-	4.0	1.1	1.1	-	-	1.4	-	-	100.0
N62	금융업소, 사무소 등	배점	12.6	7.5	11.6	17.6	10.3	7.2	7.3	1.9	2.6	-	-	2.1	0.2	0.5	-	-	1	-	-	74.9	
		평점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	100.0	
숙박 시설	D	일반숙박시설 등	배점	16	5.6	13.1	18.1	10.2	7.7	4.8	0	0	-	-	-	-	-	-	-	-	-	66.3	
			평점	16.1	10.6	15.4	15.0	8.8	9.2	11.7	3.3	4.0	-	-	4.0	-	-	1.8	-	-	-	-	100.0
R	여관	배점	12.8	4.1	9.7	14.8	8.8	6.3	3.7	0.7	1.7	-	-	0.4	-	-	0.8	-	-	-	-	57.1	
		평점	26.8	-	25.6	25.0	-	-	19.5	-	-	-	-	-	-	-	3.0	-	-	-	-	100.0	
공장	Q4	공장	배점	21.3	-	18.3	20.1	-	0	4.6	-	-	-	-	-	-	1.3	-	-	-	-	61.2	
			평점	23.4	15.4	22.3	21.8	-	-	17.0	-	-	-	-	-	-	-	-	-	-	-	-	100.0
자동차 관련 시설	V	주차장	배점	16.9	4.4	10.6	15	-	0	3.1	-	-	-	-	-	-	-	-	-	-	-	48.6	
			평점	38.3	25.2	36.5	-	-	-	-	-	-	-	-	-	-	-	-	-	-	-	-	100.0
N61	운전학원	배점	29.8	11.1	25.2	-	-	0	-	-	-	-	-	-	-	-	-	-	-	-	-	61.1	
		평점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	100.0	
공공 시설	N4	방송국 등	배점	12.5	4.4	7.9	16.3	8.1	4.3	2.8	-	-	-	-	-	-	-	-	-	-	-	50.2	
			평점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	100.0
Q2	전신전화국 등	배점	15.2	8.2	12.9	19.5	10.9	7.7	7.7	-	-	-	-	-	-	-	-	-	-	-	-	74	
		평점	23.4	15.4	22.3	21.8	-	-	17.0	-	-	-	-	-	-	-	-	-	-	-	-	100.0	
			배점	18.8	10.2	16.1	18.5	-	0	8.9	-	-	-	-	-	-	-	-	-	-	-	71.2	

편의시설 건물군(건물유형)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평 균		
			배점 비율	주차 구역	높이 차이 제거	출입 구 (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위 생 실	샤 워 실· 탈의 실	점 자 블록	유 도· 안 내 시 설	경 보· 보 안 설 비	객 실· 전 실	관 람· 관 람 실	전 수· 작 업 대 대		매 표 소 에	
관광 휴게 시설	M	교도소, 구치소	배점	17.7	11.7	16.9	16.5	9.7	10.1	12.9	-	4.4	-	-	-	-	-	-	-	-	100.0	
			평점	15.3	8	12.2	17.8	9.7	1.7	7.3	-	2.8	-	-	-	-	-	-	-	-	-	69.4
	Q1	야외음악당 등	배점	23.4	15.4	22.3	21.8	-	-	17.0	-	-	-	-	-	-	-	-	-	-	100.0	
			평점	23.1	8	16.5	19.2	-	0	10.7	-	-	-	-	-	-	-	-	-	-	-	69.9
Q3	휴게소	배점	23.4	15.4	22.3	21.8	-	-	17.0	-	-	-	-	-	-	-	-	-	-	-	100.0	
		평점	19.5	11.4	16.6	18.5	-	0	11.8	-	-	-	-	-	-	-	-	-	-	-	76.8	
기숙사	P	기숙사	배점	25.1	-	24.0	23.4	-	-	18.3	-	6.3	-	-	-	-	2.9	-	-	-	100.0	
			평점	18.4	-	11.3	16.4	-	0	5.8	-	2.9	-	-	-	-	0.9	-	-	-	-	53.2
공동 주택	Y1	아파트	배점	24.3	16.0	23.2	22.7	-	13.8	-	-	-	-	-	-	-	-	-	-	-	100.0	
			평점	21.2	8.3	19	26.1	-	12.1	-	-	-	-	-	-	-	-	-	-	-	-	75.8
	Y11	아파트 부대복지시설	배점	19.3	-	18.4	18.0	10.5	11.0	14.0	3.9	4.8	-	-	-	-	-	-	-	-	100.0	
			평점	17.1	-	13.5	20.6	10.5	8.2	5.9	0.8	2.3	-	-	-	-	-	-	-	-	-	70.3
	Y2	연립주택	배점	34.6	-	33.1	32.3	-	-	-	-	-	-	-	-	-	-	-	-	-	-	100.0
			평점	21.9	-	15	20.4	-	0	-	-	-	-	-	-	-	-	-	-	-	-	55.8
Y3	다세대주택	배점	34.6	-	33.1	32.3	-	-	-	-	-	-	-	-	-	-	-	-	-	-	100.0	
		평점	23.5	-	16.6	21.7	-	0	-	-	-	-	-	-	-	-	-	-	-	-	60.5	
공원	Z1	도시공원	배점	50.6	-	-	-	-	-	36.8	-	-	-	-	12.6	-	-	-	-	-	100.0	
			평점	46.5	-	-	-	-	0	9.9	-	-	-	-	1.5	-	-	-	-	-	-	52.5
	Z2	자연공원	배점	50.6	-	-	-	-	-	36.8	-	-	-	-	12.6	-	-	-	-	-	100.0	
			평점	34	-	-	-	-	0	12.4	-	-	-	-	1.3	-	-	-	-	-	-	45.8
평균			배점	24.3	8.6	21.0	19.7	5.3	5.9	11.2	0.7	1.1	1.0	1.0	1.5	0.1	0.1	0.3	0.2	0.1	-	100
			평점	19	4.5	13.4	17.6	5.4	4.2	5	0.3	0.6	0	0	0.4	0	0	0.1	0.1	0.1	0	65

* 전체평균 점수는 각 편의시설의 평균 합산이 아닌 해당 유형별 대상건축물 전체의 평균 점수임

또한 편의시설별로 0점 표기된 항목은 건물유형별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해당이 없는 항목임

첫째, 44개 건물유형별 매개시설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앞의 대분류에 의하면 매개시설은 보통에 가까운 수준인 76%에서 66% 범위의 건물유형은 19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중분류에 의해 좀 더 세분화된 유형으로 평가해 보면,
 - 적정에 가깝거나 적정인 수준인 88%이상인 건물유형이 주출입구 접근로에서만 5개 건물유형(B, N7, Q1, Y11, Z1)로 나타나고 있음
 - 보통 수준인 87%에서 77% 범위의 건물유형도 주출입구 접근로 항목에는 25개 건물유형(A, C, D, E, G, I, J, K, L, M, N1, N2, N3, N4, N51, N62, N63, Q2, Q3, R, T, U2, U4, V, Y1)에 해당됨으로써 대부분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 범위에 해당되는 유형이 없으며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항목에서도 8개 정도의 건물유형(A, B, E, G, I, K, N1, Y1)
 - 보통에 가까운 수준인 76%에서 66% 범위의 건물유형은 주출입구 접근로 항목에서는 1개 건물유형을 제외하고 13개 건물유형(H, N52, N61, O, P, Q4, S, U1, U31, U32, U33, Y3, Z2)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항목에서는 7개 건물유형(C, G, K, M, N4, Q2, Q3)이며,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에서는 16개 건물유형(C, J, L, M, N3, N4, N52, N62, N63, N7, Q1, Q2, Q3, R, V, Y11)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매개시설 중에서는 주출입구 접근로가 가장 설치수준이 높은 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가장 설치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둘째, 44개 건물유형별 내부시설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앞의 대분류에서 내부시설은 매개시설보다는 좀 더 설치수준이 높아 보통 수준인 87%에서 77% 범위에 대부분의 건물유형이 분포되어 있음
- 중분류에 의해 좀 더 세분화된 유형으로 평가해 보면, 적정에 가깝거나 적정인 수준인 88%이상인 수준의 건물유형이 출입구(문) 항목에서 의무설치가 아닌 3개 건물유형(V, Z1, Z2)를 제외하고 26개 건물유형(A ~ N7, Q1, S, Y1, Y11)으로 가장 많으며, 복도 항목에서도 의무설치가 아닌 20개 건물유형을 제외하고 대부분 건물유형(A ~ N2, N4, N51, N52, N62, N63, N7, S, Y11)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계단 또는 승강기 항목에서는 2개 건물유형(E, G)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내부시설 중에서는 출입구(문)과 복도는 설치수준이 높은 반면 계단 또는 승강기 항목이 아직 설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셋째, 44개 건물유형별 위생시설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생시설 중에서 대변기의 경우에는 32개 건물유형에서만 해당이 되며, 소변기는 9개 건물유형에서, 세면대는 11개 건물유형에서만 해당이 되는 특이성이 있음. 또한 욕실, 샤워실·탈의실은 각 1개 유형에서만 해당이 됨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생시설 전체에서 보통 수준으로 볼 수 있는 77% 이상의 범위에 있는 건물유형이 대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에서는 아예 없으며 소변기에서만 특수학교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건물유형이 66%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됨으로써 전반적인 건물유형에서 위생시설의 설치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됨

넷째, 44개 건물유형별 안내시설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내시설 중에서 점자블록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건물유형이 33개로서 해당되는 건물유형은 11개 밖에 되지 않으며, 유도 및 안내설비와 경보 및 피난설비는 각각 3개 건물유형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와 같이 적은 해당 건물유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공공도서관의 점자블록이 50%대 설치수준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유형의 설치수준이 최저의 수준인 33%이하 정도의 설치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다섯째, 44개 건물유형별 기타시설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타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A)을 제외하고 몇몇개의 건물유형만이 객실·침실 혹은 관람석·열람석 그리고 접수대·작업대가 해당 있는 건물유형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적은 해당 건물유형에도 불구하고 안내시설과 같이 설치수준이 77%이하로 보통이하인 것이 대부분임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관람석·열람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87%이상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그 외 일반숙박시설, 생활권수련시설, 기숙사, 여관의 객실·침실 설치수준이 30~40%정도의 설치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특수학교, 도서관, 공연장·관람장의 관람석·열람석이 50~70%정도의 설치수준이며, 특수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읍·면·동사무소의 접수대·작업대가 60%정도의 설치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설치수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4. 종합평가 및 향후 편의증진 정책방향

4-1 종합평가

2008년 전수조사는 그동안 편의증진법이 1998년 시행된 이후 법 제11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에 의거하여 1998년 및 2003년 전수조사한 것과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와 방법을 달리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편의증진법이 처음 시행되던 1998년과는 매우 다른 사회변화의 흐름속에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던 법 시행 초기와는 달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 환경속의 장애물을 하나 둘씩 점차적으로 걷어내고 있는 시점에 당면에 있다. 또한 사회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점만을 장애물이라 여겨 개선을 시도했던 한계를 넘어 인적서비스나 정보접근성 등의 다양한 장애물 제거 방법 모색이 필수적 요건이 된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의 가장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것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함)이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제정된 장차법의 시행은 그동안 1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편의증진법의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최소의 법적 요건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편의증진법의 시행에 의해서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사회 구성원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아직도 설치율 및 설치수준이 매우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전국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수는 107,730개이며 대상편의시설수는 3,760,792개이다. 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율과 설치수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4-1-1. 편의시설 설치율 측면

대상편의시설수 3,760,792개 조사에서 나타난 설치율의 전체 평균은 77.5%이며 적정설치율은 55.8%이다. 대상 건물유형은 44개인데 건물유형을 대분류하여 15개의 건물군으로 볼 경우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가장 높은 건물군은 관광휴게시설군으로 단순 설치율이 85.5%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적정설치율도 65.9%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편의시설 종류별로 구분하여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매개시설로 분류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의 설치를 종합분석은 다음과 같다.

- 주출입구 접근로는 전체 적정설치율이 60.9%이며 설치율은 82.9%로 나타났다.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79.8%로 평가된 대피소이며 전체 해당 건물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7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 유형은 의원·한의원, 공연장·관람장, 병원, 특수학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청사), 방송국, 교도소, 휴게소,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다.

적정설치율 수준이 비교적 많이 낮은 소매점이나 음식점과 같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자동차와 보행자의 접근동선이 잘 분리되어 있지 않아 안전보행접근이 안되고 있는 것이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규모의 공동주택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소규모의 건물들이 신축될 때에도 반드시 좀더 적극적으로 보행자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50.8%이며 설치율은 67.4%로 나타났다.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65.4%로 평가된 휴게소이며 전체 해당 건물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6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유형은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공공업무시설(청사)에 불과하다.

집회장, 종교집회장, 도소매시장, 학교, 숙박시설,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은 40%대이므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좀 더 설치율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관련시설의 주차장의 경우에는 요즘과 같이 주차장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유료라도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매우 불편할 수 밖에 없으므로 행정조치 등을 통해 반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30%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는 공장의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아예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이 근무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10대 이상의 일반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43.9%이며 설치율은 71.7%이다.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71.5%로 평가된 특수학교이며 전체 해당 건물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6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유형은 공연장·관람장, 병원, 도서관,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아파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정도이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는 소매점, 일반음식점, 일반목욕장과 같은 소규모의 건물에서는 보도에서 바로 턱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아직도 처음 설계할 때부터 계단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출입구에는 계단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읍·면·동사무소, 공장, 운전학원, 기숙사, 연립주택 등과 같이 규모가 아주 작지 않은 건물에서도 출입구앞에 단차를 설치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대지주변의 여건을 잘 활용

하여 처음부터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단차없이 건물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편리한 것은 무엇보다 이와같은 불필요한 단차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도록 건축인들의 인식을 전환해 주는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

○ 내부시설로 분류된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의 설치율 종합분석은 다음과 같다.

- 출입구(문)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56.5%이며 설치율은 86.3%이다.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81.3%로 평가된 야외음악당이며 전체 해당 건물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7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유형은 공공도서관, 공연장·관람장, 병원, 특수학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청사), 방송국, 전신전화국, 휴게소이다.

일반목욕장, 아동관련시설, 운전학원, 연립주택, 다세대의 경우에는 40%대로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되는 건물유형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 등의 계획 등을 세워 지도·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집회장에서는 적정설치율이 58.4%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는데 많은 수의 불교 사찰이 전통건축양식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통건축양식을 보호하면서도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자들이 접근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도움체계를 대신 갖추게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면 보다 효과적인 설치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 복도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71.5%이며 설치율은 89.9%이다.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81.2%로 평가된 방송국이며 전체 해당 건물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7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 유형은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공연장·관람장, 병원, 장례식장, 특수학교,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청사), 아파트부대복지시설이다.

도소매시장의 경우에는 통로 등에 설치된 가판대 등으로 인하여 통로 유효폭을 확보하기 힘들며, 대형마트의 경우 무빙워크 하부공간 등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위험공간으로 노출되어 있고 바닥마감 등이 미끄러워 적정설치율이 낮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물갈기 처리 등으로 마감하면서도 바닥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미끄럽지 않게 마감하는 방법을 적용한 사례를 널리 소개하는 매뉴얼 등의 지속적인 자료보급과 교육이 필요하다.

- 계단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57.5%이며 설치율은 79.1%이다.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69.5%로 평가된 특수학교이며 전체 해당 건물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6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유형은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 경사로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79.8%이며 설치율은 87.5%이다. 건물유형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90.9%로 평가된 공공업무시설(청사)이며 전체 해당 건물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8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유형은 읍·면·동사무소, 병원, 도서관, 아파트, 아파트 부대복지시설이다.

- 승강기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79.9%이며 설치율은 87.6%이다. 건물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

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91.3%로 평가된 읍·면·동사무소이며 전체 해당 건물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8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유형은 공공도서관, 병원,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청사),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다.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의 1층에서 다른층으로 이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직이동수단은 계단이 가장 설치율이 낮게 설치된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승강기 등을 규정에 맞추어 설치하면 계단을 규정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층이상의 건물에서 승강기를 장애인용으로 의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입구에 들어서면서 바로 보이는 계단의 경우에는 약시인등이 4층이하 건물 수직이동을 할때 자주 이용하므로 좀 더 적극적인 계단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같이 계단이용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등의 계단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승강기를 설치하더라도 비상계단이 아닌 일반 층간이동 계단은 반드시 손잡이, 바닥마감 등을 잘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위생시설로 분류된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및 샤워실의 설치율 종합분석은 다음과 같다.

- 대변기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33.8%이며 설치율은 55.2%이다. 건물유형중에서도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61.9%로 평가된 야외음악당이며 전체 해당 건물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5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 유형은 공연장·관람장, 특수학교, 도서관, 교도소, 휴게소, 도시공원이다.

대변기 전체 적정설치율의 수준에서 말해주듯이 대부분의 건물유형에서 적정설치율은 매우 심각하다. 장애인 등의 직업이나 교육활동, 여가활동 등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읍·면·동사무소, 학교, 학원, 공장, 기숙사 등 반드시 위생시설이 필요한 곳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은 20%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휠체어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화장실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축건물에서부터 모든 건물에 남녀 구분하여 반드시 1개 이상씩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소변기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42.8%이며 설치율은 56.5%이다. 건물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다른 건물유형과는 확실한 설치율 차이를 보이고 있는 73.3%의 특수학교이며 전체 해당 건물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50%이상의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건물 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청사)이다.

소변기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변기에 손잡이만을 추가 설치하면 되는데 적정설치율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소변기 손잡이가 목발 사용자나 걸음이 불편한 시설이용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변기 설치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소변기 적정설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세면대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33.5%이며 설치율은 79.7%이다. 건물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다른 건물유형과는 확실한 설치율 차이를 보이고 있는 68.5%의 교

도소이며 그 외 대부분 건물유형은 30%정도의 낮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사이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일반세면대를 아무 고려없이 그냥 설치하고 있기 때문인데 휠체어사용자의 발부분이 세면대 하부로 들어가도록 하부공간을 약간 비워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적정설치율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인복지시설에만 해당되는 욕실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60.9%이며 설치율은 78.3%이다. 또한 샤워실·탈의실의 적정설치율은 57.6%이며 설치율은 78.1%이다. 최근들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목욕탕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와같이 복지시설안에 목욕탕 등이 설치되면 휠체어사용자도 사용가능하도록 하면서 목발사용자 등이 목욕탕 내부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벽측에 손잡이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 안내시설로 분류된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율 종합분석은 다음과 같다.

- 점자블록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27.7%이며 설치율은 50.6%이다. 건물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40.0%로 평가된 공공업무시설(청사)이며 그 다음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유형은 45.2%로 평가된 공공도서관이다.

읍·면·동사무소, 공중화장실, 전시장, 숙박시설, 공원과 같이 주출입구 접근로 구간이 비교적 긴 건물유형에서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은 2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점자블록을 표준블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블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안전보행통로 상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 접근로상에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동차통행로 등에도 마구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적정설치율을 더욱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와같은 원인을 줄이고 점자블록의 적정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주출입구 접근로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을 안전보행통로의 개념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의 도입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과 공공업무시설(청사)만 해당되는 유도 및 안내설비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16.0%이며 설치율은 24.8%이다. 3개의 건물유형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이며 적정설치율이 20.4%이다.

2008년 이후부터 개정된 법에서는 많은 건물유형에 의무설치 하도록 확대 적용한 점을 고려한다면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좀 더 편리한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의 연계성있는 확충이 가능하도록 법개정 등이 필요하다.

-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과 공공업무시설(청사)만 해당되는 경보 및 피난설비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23.9%이며 설치율은 68.1%이다. 3개의 건물유형 중에서 적정설치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특수학교이며 적정설치율은 34.3%이다.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소방설비 관련 지침에서 소방관련시설로 경보 및 피난설비를 갖추기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방관련 지침에 빠진 시설은 설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편의증진법과 소방설비 관련지침의 상호 비교검토를 통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것이 적정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 기타시설로 분류된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의 설치율 종합분석은 다음과 같다.

- 객실·침실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44.7%이며 설치율은 63.0%이다. 건물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70.5%로 평가된 장애인복지시설이며 그 다음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건물유형은 45.9%로 평가된 생활권수련시설이다.

객실·침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숙박시설, 기숙사 등에 설치되는 객실·침실이 휠체어사용자도 사용가능 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상승 등 직접적인 관련도 있기 때문에 관련 건물유형에 대한 홍보강화 등으로 적정설치율을 좀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관람석·열람석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66.6%이며 설치율은 80.6%이다. 건물 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74.4%로 평가된 장애인복지시설이며 그 다음 상대적으로 높은 적정설치율로 평가된 건물유형은 68.0%로 평가된 특수학교이다.

열람석을 갖추어야 하는 도서관에서는 특별히 장애인열람석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휠체어사용자가 함께 이용 가능한 열람석 설치를 통해 적정설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관람석의 경우에는 관람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통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인정해 주기 어려우므로 일반관람석을 제거하고 장애인용 관람석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적정설치율을 높일 수 있다.

- 접수대·작업대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50.4%이며 설치율은 79.7%이다. 건물 유형중에서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유형은 72.1%로 평가된 특수학교이며 그 다음 상대적으로 높은 적정설치율로 평가된 건물유형은 70.7%로 평가된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접수대·작업대가 민원인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인데 비해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은데 이므로 적정설치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특별한 접수대나 작업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반 접수대를 휠체어사용자가 함께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부공간을 잘 설치하고 높이를 잘 설치하여 적정설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매표소·판매기·음료대가 의무사항인 건물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이며 적정설치율은 71.7%이며 설치율은 81.2%이다.

4-1-2. 편의시설 설치수준 측면

대상편의시설수 3,760,792개 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평균 설치수준은 65.0점이다.

설치수준은 적정수준을 100점으로 보아 88점이상이면 적정에 가까운 설치수준으로, 87~77점

이면 보통수준으로, 76~66점이면 보통에 가까운 수준으로, 66~34점이면 보통이하로, 33점이하는 미흡 또는 미설치 수준으로 평가하므로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전체 대상편의시설의 설치수준은 보통이하의 수준이다.

44개 건물유형 중에서는 걱정 혹은 걱정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된 건물유형은 없으며 87~77점으로 보통수준인 건물유형은 공연장·관람장 및 도서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6~66점으로 보통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된 건물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공공업무시설(청사), 병원, 공공도서관, 전시장, 교도소, 노인복지시설, 학교, 도소매시장, 방송국, 장례식장, 사무소, 야외음악당, 전신전화국, 휴게소, 운동시설, 대피소,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인 것으로 많은 건물유형이 보통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대해 편의시설 종류별로 구분하여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건물유형별로 나타내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수준은 항목별 평점을 배점기준으로 볼 때 몇% 수준인지를 파악하게 되면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수준을 알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앞 3-7장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 매개시설의 설치수준 종합분석은 다음과 같다.

- 매개시설은 걱정에 가깝거나 걱정인 수준인 88%이상인 건물유형은 도시공원 1개이며 보통수준인 87%에서 77% 범위의 건물유형은 특수학교, 도서관, 휴게소, 부대복리시설이다. 보통에 가까운 수준인 76%에서 66% 범위의 건물유형은 19개로 장애인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병원, 공연장·관람장, 전시장, 교도소, 노인복지시설, 도·소매시장, 방송국, 장례식장, 사무소 등, 야외음악당, 전신전화국, 여관, 운동시설, 대피소, 아파트, 자연공원이며 대부분이다.

○ 내부시설의 설치수준 종합분석은 다음과 같다.

- 내부시설의 설치수준 분석에 의하면 걱정에 가깝거나 걱정인 수준인 88%이상인 건물유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도서관, 야외음악당으로 3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나며, 보통수준인 87%에서 77% 범위의 건물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일반숙박시설, 병원, 공공도서관, 읍·면·동사무소, 공연장·관람장, 전시장, 노인복지시설, 학교, 방송국, 집회장, 장례식장, 사무소등, 직업훈련소등, 의원등, 전신전화국, 휴게소, 여관, 운동시설, 안마시술소, 아파트, 부대복리시설로 대부분이 이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건물유형은 보통에 가까운 수준에서 보통수준 이하이다.

○ 위생시설의 설치수준 종합분석은 다음과 같다.

- 위생시설의 설치수준 분석에 의하면 걱정에 가깝거나 걱정인 수준인 88%이상인 건물유형은 전혀 없으며 보통 수준인 87%에서 77% 범위에 포함되는 건물유형도 전혀 없다. 다만, 76%에서 66% 범위로 보통에 가까운 수준에 포함되는 건물유형은 특수학교, 도서관, 휴게

소로 3개에 그치며, 그 외 대부분의 건물유형은 65%이하로 보통이하 수준이다.

○ 안내시설의 설치수준 종합분석은 다음과 같다.

- 안내시설의 설치수준 분석에 의하면 해당되는 11개 건물유형 모두 65%이하로 보통이하의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이중에서 특히 7개 유형 즉, 장애인복지시설, 일반숙박시설, 병원, 전시장, 공중화장실, 도시공원, 자연공원은 33%이하로 미흡 혹은 미설치 수준이다.

○ 기타시설의 설치수준 종합분석은 다음과 같다.

- 기타시설의 설치수준 분석에 의하면 기타시설의 11개 건물유형 중에서도 안내시설과 비슷한 설치수준을 보임으로써 65%이하로 보통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되는 건물유형은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일반숙박시설, 도서관, 공공도서관, 읍·면·동사무소, 공연장·관람장, 여관이며 생활권수련시설, 기숙사는 최하 수준인 33%이하이다.

4-1-3. 편의시설 설치 종합 평가

앞서 평가한 편의시설 설치율과 설치수준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설치율은 2003년 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치율이라는 것은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일단 설치만 되면 비율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시설이용약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적정설치율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적정설치율의 수준은 아직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앞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시설이용약자를 고려한 설치에 해당되는 적정설치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가 43.9%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과 화장실 대변기는 33.8%, 점자블록과 경보 및 피난 설비는 각각 27.7%와 23.9%, 유도 및 안내설비는 16%라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사된 4단계의 설치조사를 설치수준으로 평가해 본 결과에 의하더라도 적정에 가깝거나 적정인 수준인 88%이상인 건물유형은 매개시설에서 1개 건물유형, 내부시설에서 3개 건물유형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보통 수준인 87%에서 77% 범위의 건물유형이 제법 많은 편의시설은 내부시설 정도이며 위생시설이나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경우에는 65%이하의 보통이하 건물유형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치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적정설치율이나 설치수준은 그다지 높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설치율을 4단계로 분류하여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다양하면서도 세부적인 통계자료는 향후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전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구축된 전수조사DB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4단계로 나누어 조사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현장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항목별 조사에 그치게 되어 실질적인 시설이용자들의 대상건물 이용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제시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점도 있다.

- 이와같은 제한점을 좀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상건물을 일시에 조사하는 방법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번 조사에서 구축된 기초자료를 DB화하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DB화된 자료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이며 향후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대상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구축된 DB를 이용하여 설치된 시설의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행정 감시·감독체계 운영방식과 시설개선에 대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 지속적인 민간참여 노력이 요구된다.

- 이번 조사는 그동안 시설주관기관이 주체가 되었던 방향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포함한 전문 집단이 조사의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에는 이와 같은 노력이 확대됨으로써 실질적인 시설이용자들의 시설이용 제한요소를 보다 더 잘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은 조사 주체의 변화를 향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사요원 전문화등이 가장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4-2 향후 편의증진 정책방향

2008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의해 향후 편의증진 관련 정책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4-2-1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의 수립 측면

2000년도에 수립된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에서는 설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이 매년 1회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편의

시설 5개년 기간내에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 안전성 및 장애인등의 이용빈도 등을 2년마다 평가조사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해 2000년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편의시설 설치실태 평가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전국의 153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2003년 전수조사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75.8%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체감율은 33.2%로 나타났다.

이후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에서는 그동안 편의시설에 중점을 둔 것에서 벗어나 인적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편의증진으로 추진하면서, 실태조사 및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주관기관에서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적정·부적정·미설치 및 인적서비스 제공여부 등을 표본조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5년마다 편의증진 실태를 전수조사 하도록 하여 2008년 4월에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조사 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실태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치율 위주의 조사에서 벗어나 이용가능성·안전성·연계성 등이 반영된 편의증진 체감이 실질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조사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의 편의증진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편의증진 실태 평가·조사연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업무등의 평가에관한기본법 제6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편의증진 관련 평가항목을 삽입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해 2006년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편의시설 설치실태 표준조사표 개발 및 평가조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표준 조사표를 개발하였으며, 편의시설 이용체감율과 사회인식도를 함께 조사하여 체감율은 2003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33.6%로 나타났으며 사회인식 제고는 43.6%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에 의해 2008년에 시행된 전수조사 결과는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됨으로써 향후 편의증진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을 갖고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정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적정설치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일련의 기간별로 작성하고 실천하도록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필수적이다.

-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별 행정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본 조사는 4단계(적정, 보통, 미흡, 미설치)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가에 대

한 결정이 필요하며, 행정조치는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정비대상시설을 포함한 정부관련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취해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조치가 추후 민간에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모든 대상시설에 대해 반드시 시정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독려 공문과 같은 유연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추진해온 편의증진법 시행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와 함께 편의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추후 시정명령이 시행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전수 및 표본조사는 가능한 수시조사로 전환하여 축적된 DB를 보다 더 내실있는 자료로 구축하여야 한다.

- 그동안 매년 혹은 5년에 한번씩 조사하던 정기적 조사는 인력이나 비용적 측면 모두 국가와 시설주관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짧은 조사기간에 많은 조사시설을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사와 일체화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이에 본 조사에서 축적된 건물별 DB를 적극 활용하여 수시 설치현황을 업데이트한다면 별도의 편의시설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부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설치현황에 의한 향후 편의증진 정책 추진방향에 반영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DB의 지속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4-2-2 편의증진법의 개정 측면

지속적인 편의증진법 개정은 지난해 장차법의 시행과 맞추어 또 한번의 대폭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전수조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반영하여 개정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다음과 같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실태조사 방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 앞서 제3차 국가종합5개년계획에 반영된 내용 중에서 현행 편의증진법 제11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조사는 조사방법에 대해 좀 더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시설주가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 혹은 페널티를 가하기 위한 목적과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혹은 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현장에 다시 반영되는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설치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으로 대변된다.

- 이에 의해 조사방법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다만 조사방법의 변화와 함께 DB지속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화를 추가함으로써 설치수준에 대한 통계자료들은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심각한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위생시설과 안내시설에 대한 설치수준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

- 앞서 제시한 종합평가에서 나타났듯이 위생시설과 안내시설의 설치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축한 건물유형에서도 설치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편의증진법에서는 많은 건물유형들이 위생시설과 안내시설 설치 의무화를 하였으나 의무화만으로는 설치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보다 더 확실한 설치수준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건축법에서는 이를 의제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점적인 설치를 연계성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도 및 안내설비 부분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 이번에 조사된 내용은 법적 의무시설 설치현황만을 조사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어 실제 이용자들의 이용 동선에 따른 수준인 연계성 부분은 평가할 수 없었다.

- 하지만 이와같은 연계성 부분을 별도로 확충하도록 하는 것은 편의시설을 보편적인 시설로 설치하여 모든 사람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안내표시의 확충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용 동선상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안내표시는 장애인 편의시설만을 위한 별도의 안내표시가 아닌 일반 안내표시에 일체화하여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장애물 없는 사회환경에서 살아가는 데는 아직 많은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 비해 설치율에서는 5.2%의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자가 건물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정설치율 수준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적정설치율이 50%대에 머무르고 있어 시설이용자의 사회활동에 상당한 부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편의시설 설치수준은 향상되고 있는 점에 희망을 갖고 향후에는 좀 더 적정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의 수준변화를 위해 법적인 강화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회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전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관심이 없으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여야 하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은 여전히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인식의 변화이며, 모두가 함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은 사회구성원 대부분의 인식변화를 통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진

책임연구원 : 김인순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장 공학박사

연구보조원 : 권영숙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 공학박사

이규일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 연구원

안성준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 연구원

정현정 / 건국대학교 연구원

이도훈 / 건국대학교 연구원

김은경 / 건국대학교 연구원

보 조 원 : 이주송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 연구원

김광일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 연구원

이승훈 / 명지대학교

조사운영진

조사 총괄 운영 : 홍현근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편의증진팀장

박성오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편의증진팀 사원

이세나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편의증진팀 사원

조사 수행 센터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서울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로 함), 부산센터,

대구센터, 인천센터, 광주센터, 대전센터, 울산센터, 강원센터, 경기센터,

충북센터, 충남센터, 전북센터, 전남센터, 경북센터, 경남센터, 제주센터

<부록 1> 조사대상 건물군 및 건물유형

건물군	건물유형	
근린생활시설	U31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이용원, 미용원
	U3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U33	일반목욕장
	U2	안마시설소
	J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등
	I	공공도서관
	U4	대피소
	O	공중화장실
문화 및 집회시설	N7	의원·치과의원·한의원
	T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K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N51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L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판매 및 영업시설	N3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의료시설	E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
	N52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N2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각종 학교)
	B	특수학교
	N63	교육원(연수원 등)·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G	도서관
	S	아동관련시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포함)
	N1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제외)
	A	장애인복지시설
H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유스호스텔)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 집·청소년야영장)	
운동시설	U1	체육관,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업무시설	C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 제외)
	N62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숙박시설	D	일반숙박시설(여관제외),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
	R	여관
공장	Q4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V	주차장
	N61	운전학원
공공용시설	N4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Q2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M	교도소, 구치소
관광휴게시설	Q1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Q3	휴게소
기숙사	P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공장에 부설된 시설
공동주택	Y1	아파트
	Y11	아파트의 부대복지시설
	Y2	연립주택
	Y3	다세대주택
공원	Z1	도시공원
	Z2	자연공원

<부록 2> 조사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개수	조사 표 유형	용도구분		매개 시설			내부 시설			위생 시설					안내 시설			기타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시설	경보 및 피난 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차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건물군	건물유형	11	12	13	21	22	23	31	32	33	34	35	41	42	43	51	52	53	54		
1	A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	●	●	●	●	●	●	●	●	●	●	●	●	●	●		
2	B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특수학교	●	●	●	●	●	●	●	●	●	●	●	●	●	●	●	●		
3	C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	●	●	●	●	●	●	●	●	●	●	●	●	●	●	●		
4	D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	●	●	●	●	●	●	●	●	●	●	●	●	●	●	●		
5	E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	●	●	●	●	●	●	●	●	●	●	●	●	●	●	●		
6	G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	●	●	●	●	●	●	●	●	●	●	●	●	●	●	●		
7	H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생활권수련시설 등	●	●	●	●	●	●	●	●	●	●	●	●	●	●	●	●		
8	I	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	●	●	●	●	●	●	●	●	●	●	●	●	●	●	●	●		
9	J	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	●	●	●	●	●	●	●	●	●	●	●	●	●	●	●		
10	K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	●	●	●	●	●	●	●	●	●	●	●	●	●	●	●		
11	L	문화·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	●	●	●	●	●	●	●	●	●	●	●	●	●	●	●		
12	M	공공용시설	교도소, 구치소	●	●	●	●	●	●	●	●	●	●	●	●	●	●	●	●		
13	N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	●	●	●	●	●	●	●	●	●	●	●	●	●	●		
14	N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특수학교 제외)	●	●	●	●	●	●	●	●	●	●	●	●	●	●	●	●		
15	N3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	●	●	●	●	●	●	●	●	●	●	●	●	●	●	●		
16	N4	공공용시설	방송국 등	●	●	●	●	●	●	●	●	●	●	●	●	●	●	●	●		
17	N51	문화·집회시설	집회장	●	●	●	●	●	●	●	●	●	●	●	●	●	●	●	●		
18	N52	의료시설	장례식장	●	●	●	●	●	●	●	●	●	●	●	●	●	●	●	●		
19	N61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	●	●	●	●	●	●	●	●	●	●	●	●	●	●	●	●		
20	N62	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등	●	●	●	●	●	●	●	●	●	●	●	●	●	●	●	●		
21	N6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교육원 등	●	●	●	●	●	●	●	●	●	●	●	●	●	●	●	●		
22	N7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등	●	●	●	●	●	●	●	●	●	●	●	●	●	●	●	●		
23	O	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	●	●	●	●	●	●	●	●	●	●	●	●	●	●	●		
24	P	기숙사	기숙사	●	●	●	●	●	●	●	●	●	●	●	●	●	●	●	●		
25	Q1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등	●	●	●	●	●	●	●	●	●	●	●	●	●	●	●	●		
26	Q2	공공용시설	전신전화국 등	●	●	●	●	●	●	●	●	●	●	●	●	●	●	●	●		
27	Q3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	●	●	●	●	●	●	●	●	●	●	●	●	●	●	●		
28	Q4	공장	공장	●	●	●	●	●	●	●	●	●	●	●	●	●	●	●	●		
29	R	숙박시설	여관	●	●	●	●	●	●	●	●	●	●	●	●	●	●	●	●		
30	S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타사회복지시설 등	●	●	●	●	●	●	●	●	●	●	●	●	●	●	●	●		
31	T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	●	●	●	●	●	●	●	●	●	●	●	●	●	●	●	●		
32	U1	운동시설	운동시설	●	●	●	●	●	●	●	●	●	●	●	●	●	●	●	●		
33	U2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	●	●	●	●	●	●	●	●	●	●	●	●	●	●	●		
34	U31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등	●	●	●	●	●	●	●	●	●	●	●	●	●	●	●	●		
35	U32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등	●	●	●	●	●	●	●	●	●	●	●	●	●	●	●	●		
36	U33	근린생활시설	일반목욕장	●	●	●	●	●	●	●	●	●	●	●	●	●	●	●	●		
37	U4	근린생활시설	대피소	●	●	●	●	●	●	●	●	●	●	●	●	●	●	●	●		
38	V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	●	●	●	●	●	●	●	●	●	●	●	●	●	●	●		
39	Y1	공동주택	아파트	●	●	●	●	●	●	●	●	●	●	●	●	●	●	●	●		
40	Y11	공동주택	아파트 부대복지시설	●	●	●	●	●	●	●	●	●	●	●	●	●	●	●	●		
41	Y2	공동주택	연립주택	●	●	●	●	●	●	●	●	●	●	●	●	●	●	●	●		
42	Y3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	●	●	●	●	●	●	●	●	●	●	●	●	●	●		
43	Z1	공원	도시공원	●	●	●	●	●	●	●	●	●	●	●	●	●	●	●	●		
44	Z2	공원	자연공원	●	●	●	●	●	●	●	●	●	●	●	●	●	●	●	●		

<부록 3> 건물유형별 설치수준 배점표

조사표 유형	건물유형	1. 매개시설			2. 내부시설			3. 위생시설					4. 안내시설			5. 기타시설				계
		1.1	1.2	1.3	2.1	2.2	2.3	3.1	3.2	3.3	3.4	3.5	4.1	4.2	4.3	5.1	5.2	5.3	5.4	
A-type	장애인복지시설	15.1	10.0	14.4	14.1	8.2	8.6	11.0	3.1	3.8	0.3	0.3	3.8	1.0	1.0	1.7	1.7	1.4	0.3	100
B-type	특수학교	15.5	10.2	14.8	14.5	8.5	8.8	11.3	3.2	3.9	-	-	3.9	1.1	1.1	-	1.8	1.4	-	100
C-type	청사	15.8	10.4	15.1	14.7	8.6	9.0	11.5	3.2	4.0	-	-	4.0	1.1	1.1	-	-	1.4	-	100
D-type	일반숙박시설 등	16.1	10.6	15.4	15.0	8.8	9.2	11.7	3.3	4.0	-	-	4.0	-	-	1.8	-	-	-	100
E-type	병원, 격리병원	16.4	10.8	15.7	15.3	9.0	9.3	11.9	3.4	4.1	-	-	4.1	-	-	-	-	-	-	100
G-type	도서관	16.8	11.1	16.0	15.6	9.2	9.6	12.2	3.4	4.2	-	-	-	-	-	-	1.9	-	-	100
H-type	생활권수련시설 등	16.8	11.1	16.0	15.6	9.2	9.6	12.2	3.4	4.2	-	-	-	-	-	1.9	-	-	-	100
I-type	공공도서관	17.4	11.5	16.6	16.2	9.5	9.9	12.6	-	-	-	-	4.3	-	-	-	2.0	-	-	100
J-type	읍·면·동사무소 등	17.5	11.5	16.7	16.3	9.5	9.9	12.7	-	-	-	-	4.4	-	-	-	-	1.6	-	100
K-Type	공연장,관람장	18.2	12.0	17.4	16.9	9.9	10.3	13.2	-	-	-	-	-	-	-	-	2.1	-	-	100
L-type	전시장, 동·식물원	17.7	11.7	16.9	16.5	9.7	10.1	12.9	-	-	-	-	4.4	-	-	-	-	-	-	100
M-Type	교도소,구치소	17.7	11.7	16.9	16.5	9.7	10.1	12.9	-	4.4	-	-	-	-	-	-	-	-	-	100
N1-Type	노인복지시설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2-Type	학교(특수학교 제외)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3-type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4-type	방송국 등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51-Type	집회장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52-Type	장례식장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61-Type	운전학원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62-type	금융업소, 사무소 등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63-Type	교육원 등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N7-Type	의원, 치과의원 등	18.6	12.2	17.7	17.3	10.1	10.6	13.5	-	-	-	-	-	-	-	-	-	-	-	100
O-Type	공중화장실	23.2	-	22.1	21.6	-	0.0	16.8	4.7	5.8	-	-	5.8	-	-	-	-	-	-	100
P-Type	기숙사	25.1	-	24.0	23.4	-	0.0	18.3	-	6.3	-	-	-	-	-	2.9	-	-	-	100
Q1-Type	아외음악당 등	23.4	15.4	22.3	21.8	-	0.0	17.0	-	-	-	-	-	-	-	-	-	-	-	100
Q2-Type	전선전화국 등	23.4	15.4	22.3	21.8	-	0.0	17.0	-	-	-	-	-	-	-	-	-	-	-	100
Q3-Type	휴게소	23.4	15.4	22.3	21.8	-	0.0	17.0	-	-	-	-	-	-	-	-	-	-	-	100
Q4-Type	공장	23.4	15.4	22.3	21.8	-	0.0	17.0	-	-	-	-	-	-	-	-	-	-	-	100
R-Type	여관	26.8	-	25.6	25.0	-	0.0	19.5	-	-	-	-	-	-	-	3.0	-	-	-	100
S-Type	기타사회복지시설 등	25.0	-	23.9	23.3	13.6	14.2	-	-	-	-	-	-	-	-	-	-	-	-	100
T-Type	종교집회장	28.2	18.6	26.9	26.3	-	0.0	-	-	-	-	-	-	-	-	-	-	-	-	100
U1-Type	운동시설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U2-Type	안마시술소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U31-Type	소매점 등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U32-Type	일반음식점 등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U33-Type	일반목욕장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U4-Type	대피소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V-Type	주차장	38.3	25.2	36.5	-	-	0.0	-	-	-	-	-	-	-	-	-	-	-	-	100
Y1-Type	아파트	24.3	16.0	23.2	22.7	-	13.8	-	-	-	-	-	-	-	-	-	-	-	-	100
Y11-Type	아파트 부대복지시설	19.3	-	18.4	18.0	10.5	11.0	14.0	3.9	4.8	-	-	-	-	-	-	-	-	-	100
Y2-Type	연립주택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Y3-Type	다세대주택	34.6	-	33.1	32.3	-	0.0	-	-	-	-	-	-	-	-	-	-	-	-	100
Z1-Type	도시공원	50.6	-	-	-	-	0.0	36.8	-	-	-	-	12.6	-	-	-	-	-	-	100
Z2-Type	자연공원	50.6	-	-	-	-	0.0	36.8	-	-	-	-	12.6	-	-	-	-	-	-	100

<부록 4> 2008 전수조사표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전수조사표

2008. 6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장애인개발원

1. 매개시설[38.9]

평가기준	모든 이용자가 해당시설물의 대지경계선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접근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
-------------	--

1.1 주출입구 접근로(14.7)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1.1.1	해당건물 내 보도 및 접근로의 바닥재질과 마감상태는 보행 장애인에게 적절한가?	5.5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1.1.1.1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물이 묻어도 미끄러지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마른 상태에서만 미끄러지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미끄러우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미끄러우며 걸려 넘어질 염려 있음
▶ 1.1.1.2 보도블록 등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		틈새없이 평탄하게 마감 (보도블록, 아스팔트 등)	틈새가 2cm이하로 평탄하게 마감 (보도블록 등)	틈새가 2cm초과하여 평탄하게 마감 (보도블록 등)	틈새가 2cm초과하며 마감상태 불량 (자갈, 모래 등)
▶ 1.1.1.3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며,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2cm이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높이차 전혀 없으며, 한방향은 2cm이하, 한방향은 2cm초과	높이차 있으며, 한방향은 2cm이하, 한방향은 2cm초과	높이차 있으며, 양방향 2cm초과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1.1.2	건물 접근로의 단차는 휠체어 등의 통행에 적절한가?	1.8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1.1.2.1 대지내를 연결하는 모든 보도 및 접근로에 단차(段差)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높이차이는 2cm이하		전체구간에 단차 2cm이하	일부구간에 단차 3cm이하	일부구간에 단차 4cm이하	일부구간에 단차 4cm초과

※ 다만 2005년 12월 30일 이전 허가신청된 건물인 경우에는 대지내를 연결하는 모든 보도 및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 방향상의 높이차이는 3cm이하도 적정으로 표시.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1.1.3	보도 및 접근로의 유효폭과 기울기는 '편의증진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3.7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1.1.3.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0.9m이상	일부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0.9m미만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0.9m미만
▶ 1.1.3.2 보도 등의 진행방향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 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2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8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8초과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1.1.4	휠체어 등 보행자를 위해 보행안전통로는 확보되어 있으며 연속성이 있는가?	3.7

※ 보행자 접근시 차량과의 교차동선이 없는 경우는 안전보행통로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함.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p>▶ 1.1.4.1</p> <p>차도와 의 경계부분에 경계석·울타리·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p> <p>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과 색상을 구분 설치</p>		보행통로와 차도의 경계석이 설치되고, 보행통로의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보행통로와 차도의 구분이 재질과 색상 모두 분명함	보행통로용 안전선만 황색 또는 청색 등으로 그려져 있음	보행통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음
<p>▶ 1.1.4.2</p> <p>접근보행통로가 차량, 안내판, 가로수, 화분 등의 보행 장애물이 제거 되도록 설치</p>		대지경계선 내의 모든 구간에 안전보행통로 (폭 1.2m이상)가 설치되어있고 어떤 장애물도 없음(보행자 안전 접근이 가능)	대지경계선 내의 모든 구간에 안전보행통로 (폭 0.9m이상)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물이 있음	대지경계선 내의 일부 구간에만 안전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물이 있음	대지경계선 내의 모든 구간에 별도의 안전보행통로 없이 차량과 같은 레벨에서 접근함

1.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10.2)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1.2.1	주차장의 설치위치, 크기 및 수는 적절한가?	6.1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p>▶ 1.2.1.1</p> <p>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p>		주차 후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 접근 경사로로 바로 접근 가능함 (차량동선과의 간섭이 전혀 없음)	주차 후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로 바로 접근 가능함 (건널목 등 차량동선과의 간섭이 다소 있음)	주차 후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다는 표시(경사로 표시 등)가 있음	주차 후 계단 접근만 가능함
<p>▶ 1.2.1.2</p> <p>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확보 주차면수</p>		규정비율의 100%이상	규정비율의 90%이상	규정비율의 80%이상	규정비율의 79%이하
<p>▶ 1.2.1.3</p> <p>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평행주차인 경우 폭 2m이상, 길이 6m이상)의 규정에 적합한 주차공간의 확보</p>		100% 모두 규정 크기로 확보되어 있음	규정 크기로 확보되었으나, 바닥의 틈새 (잔디블럭 등)로 인해 휠체어 이동이 어려움	규정 크기로 확보되었으나, 바닥의 재질 (모래나자갈 등)로 인해 휠체어 이동이 불가	규정크기보다 작게 확보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1.2.2	주차구역의 표시, 유도, 안내표시는 적절하며 주출입구까지의 안전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4.1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1.2.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에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석안내 표시의 적정 설치		바닥 및 입석표시 모두 설치	모두 설치 되어있으나 차량내부에서 인식하기 어렵게 설치, 이동식 입석표시	바닥 또는 입석표시 중 한가지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없음
▶ 1.2.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안전통행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m 이상		모든 구간에 폭 1.2m이상 안전보행통로가 연속적으로 설치, 어떤 장애물도 없음 (보행 및 차량 동선 교차시 횡단보도 설치, 어떤 장애물도 없음)	모든 구간에 폭 0.9m이상 안전보행통로가 연속적으로 설치, 장애물이 일부 있음	일부 구간에 안전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장애물이 있음	모든 구간에 별도의 안전보행통로 없이 차량과 같은 레벨에서 접근함

1.3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14)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1.3.1	해당시설의 주출입구는 휠체어사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접근이 가능한가?	14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1.3.1.1 해당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는 2cm이하가 되고 주출입문까지의 휠체어 등의 접근 가능여부		2cm이하의 단차, 또는 그 이상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12이하 설치	2cm이상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8이하 설치	2cm이상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8초과 설치	2cm를 초과하는 단차 있음
▶ 1.3.1.2 경사로 또는 출입구의 폭 1.2m이상 (경사로의 경우, 기울기 1/12이하, 손잡이 높이 0.8~0.9m이하이고 굵기가 3.2~3.8cm이하) 으로 설치		단차없이 접근, 또는 규정에 적합한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설치)와 출입구의 폭이 1.2m이상	규정에 적합한 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와 출입구의 폭이 0.9m이상	규정에 부적합한 경사로 또는 출입구의 폭이 0.9m미만	규정에 부적합한 경사로와 출입구의 폭이 0.9m미만

2. 내부시설[30.9]

평가기준

모든 시설은 진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하며, 수평 및 수직이동에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2.1 출입구(문) (13.7)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2.1.1	해당시설의 주출입문은 전·후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유효폭, 구조, 턱낮추기 등이 적정한가?	6.9

※ 주출입문으로 단차제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출입문으로 단차제거가 된 경우에는 부출입문을 주출입문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없음(이와같은 경우에는 부출입문이 단차제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통이하에만 해당됨을 뜻함)

다만, 지형 구조상 불가피하게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인정함.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2.1.1.1 주출입문턱의 높이 차이 및 점형블록 설치 여부(단, 부출입문을 주출입문과 동일 인정시에는 부출입문도 동일하게 봄)		주출입문에 단차 2cm이하이며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주출입문 혹은 부출입문의 단차가 2cm이하이며 문의 0.3m 전면에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있음	주출입문 혹은 부출입문의 단차가 2cm 초과 또는 점형블록 미설치	주출입문과 부출입문의 단차가 2cm 초과 그리고 점형블록 미설치
▶ 2.1.1.2 주출입문 통과유효폭의 0.8m이상 확보 여부		주출입문의 유효폭이 0.8m이상	주출입문의 유효폭이 0.8m미만, 부출입문의 유효폭이 0.8m이상	주출입문과 부출입문의 유효폭이 0.8m미만	주출입문과 부출입문의 유효폭이 0.65m미만
▶ 2.1.1.3 주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1.2m이상 확보		주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	주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가 1.2m미만, 부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가 1.2m이상	주출입문과 부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가 1.2m미만	전·후면 유효거리 미확보
▶ 2.1.1.4 주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위치하여 설치		높이 0.8~0.9m 사이에 손잡이 설치 (자동문 포함)	높이 0.8m미만 0.9m초과에 위치하여 손잡이 설치	높이 1.2m이상에 위치하여 손잡이 설치	수동문인 경우이면서 손잡이가 없음 또는 손잡이 설치 위치가 1.4m이상 0.4m이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2.1.2	해당시설 일반출입문의 활동공간, 유효폭, 구조, 턱낮추기, 손잡이 형태 등이 적절한가?	6.8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2.1.2.1 출입문턱의 높이 차이		모든 문에 단차 2cm이하	모든 문의 단차 3cm이하	모든 문의 단차 4cm이하	모든 문의 단차 4cm초과
▶ 2.1.2.2 출입문 통과유효폭의 0.8m이상 확보 여부		모든 문의 유효폭이 0.8m이상	일부 문의 유효폭이 0.8m이상이며 나머지는 0.65m이상	모든 문의 유효폭이 0.65m이상	모든 문의 유효폭이 0.65m미만
▶ 2.1.2.3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1.2m 이상 확보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	일부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이며 나머지는 0.8m이상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0.8m이상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0.8m미만
▶ 2.1.2.4 공중의 이용을 주 목적으로하는 실의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위치하며 출입문 옆의 벽면에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 및 점자표지판 부착이 규정에 적합	손잡이 높이는 0.8~0.9m사이에 위치, 점자표지판 미부착	손잡이 높이는 0.8m미만 또는 0.9m초과,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는 0.8m미만 또는 0.9m초과, 점자표지판 미부착

※ 다만 2005년 12월 30일 이후 허가신청된 건물인 경우에는 벽면의 점자표시판이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에 설치되어야 함.

2.2 복도 (8.4)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2.2.1	해당시설 복도의 유효폭, 턱낮추기, 단차해소는 적정하며 시각장애인의 유도에 장애는 없는가?	8.4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2.2.1.1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모든 복도의 유효폭이 1.2m이상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음	유효폭이 1.2m이상, 바닥은 마른 상태에서만 미끄럽지 않음	유효폭이 1.2m이상, 바닥은 미끄러움	유효폭이 1.2m미만
▶ 2.2.1.2 복도 바닥면의 단차는 2cm 이하로 확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2cm이하 단차, 또는 경사로를 1/12이하 설치(또는 리프트설치)	2cm이하 단차, 또는 그 이상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8이하 설치	2cm이하 단차, 또는 그 이상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8초과 설치	2cm초과의 단차만 있음 (계단 등)
▶ 2.2.1.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였는가? 2.1m이내 장애물 있는 경우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여부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6m이하에 보호벽 설치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6m이하에 난간 설치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바닥면에 재질을 달리하여 접근을 경고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으나 아무런 접근방지 장치가 없음

2.3 계단 또는 승강기 (8.8)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2.3.1	수직이동 수단으로 계단 또는 경사로, 리프트, 엘리베이터 중에서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이 1종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단, 단층건물인 경우에는 모든 항목을 4(적정)으로 표기)	8.8

※ 승강기가 의무인 건물은 계단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도 승강기의 점수를 입력하여야 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3.1.1	계단의 유효폭, 휴식참, 난간의 굽기 및 높이 등은 적절한가? (8.8)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2.3.1.1.1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 0.9m이상 확보	일부 계단 및 참의 유효폭 0.9m이상 확보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 0.9m미만 확보
▶ 2.3.1.1.2 계단에는 철크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디딤판의 너비는 0.28m이상, 철크면의 높이는 0.18m이하로 설치되어 있으며, 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목발이나 발끝이 걸리지 않도록 설치		모든 계단에 철크면 설치 및 디딤판 0.28m이상, 철크면 0.18m이하	일부 계단에 철크면 미설치 및 디딤판 0.28m이상, 철크면 0.18m이하	모든 계단에 철크면 설치 및 디딤판 0.28m미만, 또는 철크면 0.18m초과	일부 계단에는 철크면 미설치 및 디딤판이 0.28m미만, 철크면 0.18m초과
▶ 2.3.1.1.3 계단측면에 굽기 3.2~3.8cm, 높이 0.8~0.9m에 손잡이가 연속되게 설치 또한, 손잡이 끝부분에 0.3m이상 수평손잡이를 연장설치		높이는 0.8~0.9m, 굽기는 3.2~3.8cm, 한쪽이상 연속 설치, 끝부분 0.3m이상 수평손잡이 설치	높이는 0.8~0.9m, 또는 굽기는 3.2~3.8cm, 한쪽이상 연속 설치, 끝부분 0.3m미만 수평손잡이 미설치	높이는 0.8m미만, 0.9m초과, 굽기는 3.8cm초과, 한쪽이상 설치, 끝부분 수평손잡이 미설치	손잡이 미설치
▶ 2.3.1.1.4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중간 참 포함) 0.3m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손잡이에 점자표기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만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 및 점자표기 설치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계단의 일부 폭 만큼 점형블록 설치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점자표기만 설치	모두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3.1.2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휴식참, 난간(손잡이), 안내 등은 적절한가? (8.8)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2.3.1.2.1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한 경우 0.9m까지 완화)		전체구간의 경사로의 유효폭이 1.2m이상	전체구간의 경사로의 유효폭이 0.9m이상	일부구간의 경사로의 유효폭이 0.9m이하	전체구간의 경사로의 유효폭이 0.9m미만
▶ 2.3.1.2.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0.75m 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0.9m 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1.2m 이내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1.2m 이상에 휴식참 설치
▶ 2.3.1.2.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설치		1/12이하로 설치	1/8이하로 설치	1/6이하로 설치	1/6초과로 설치
▶ 2.3.1.2.4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음,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바닥은 미끄럽지 않음, 1.5×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바닥은 마른 상태에서만 미끄럽지 않음 1.2×1.2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바닥이 미끄럽거나 1.2×1.2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바닥은 미끄러우며 1.2×1.2m 미만의 활동공간 확보
▶ 2.3.1.2.5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15cm이상인 경우에 양측면에 손잡이의 연속 설치 및 손잡이의 높이와 굵기의 적정여부		손잡이를 양측면에 연속 설치, 높이 0.8~0.9m 굵기 3.2~3.8cm	손잡이를 양측면에 연속설치, 높이 0.8~0.9m 굵기 5cm이내	손잡이를 한쪽면에 연속설치 또는 높이 0.9m초과 0.8m미만, 굵기 5cm이내	손잡이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3.1.3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등은 유효한 바닥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가? (8.8)

※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하지 않음 ()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2.3.1.3.1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전면에 1.4×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전면에 1.3×1.3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전면에 1.2×1.2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전면에 1.2×1.2m 미만의 활동공간 확보
▶ 2.3.1.3.2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	폭 1.1m이상, 또는 깊이 1.35m이상	폭 1.0m이상, 또는 깊이 1.1m이상	폭 1.0m미만, 깊이 1.1m미만
▶ 2.3.1.3.3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내외로 설치. 또한 일반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부착		우측면에 가로형설치, 높이는 0.85~0.9m에 설치, 일반조작반 점자표지 부착	우측 또는 좌측면에 가로형설치, 높이는 0.9m를 초과하여 설치, 일반조작반 점자표지 부착	우측 또는 좌측면에 가로형설치, 높이는 1m를 초과하여 설치, 일반조작반 점자표지 미부착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 미설치

3. 위생시설[18.9]

평가기준	위생시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또는 겸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반드시 남·여 구분하여 1개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	--

3.1 대변기 (11.1)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3.1.1	해당시설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대변기)이 남·여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4.7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3.1.1.1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여 구분하여 각각 1개 이상 설치		휠체어접근 가능층 중 일반화장실내 혹은 입구에 남·여 각 1개이상 설치	휠체어접근 가능층 중 일반화장실과 별도로 남·여 각 1개씩 설치	한 층 또는 각층에 남·여 공용으로 1개만 설치	설치되어 있지 않음
▶ 3.1.1.2 일반화장실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적설비 유무		색상 및 문자로 사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며 식별이 용이함	색상으로만 사용여부를 표시하며 식별이 용이함	색상으로만 사용여부를 표시하고 있으나 구분하기 어려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3.1.1.3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1.4×1.4m의 회전공간과 1.2m이상의 통로 공간을 확보	1.2×1.2m의 회전공간과 1.2m이상의 통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1.2×1.2m의 회전공간과 0.9m이상의 통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0.9×0.9m의 회전공간과 0.9m미만의통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 3.1.1.4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의 바닥과 화장실의 바닥 단차가 2cm 이하이면서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단차 2cm이하이면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음. (미끄럼 방지용 타일 사용)	단차 2cm이하이며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음	단차 3cm이하이면서 바닥면은 마른 상태에서만 미끄럽지 않음	단차 3cm초과이면서 바닥면이 미끄러움
▶ 3.1.1.5 화장실 입구에 시각장애인이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및 남녀구분용 점자표지판 설치		남·여 각각의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에 점형블록을 0.3m전면에 설치하고 1.5m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남·여 각각 또는 공용의 장애인화장실 입구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1.5m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남·여 각각의 일반화장실 또는 장애인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 또는 점자표지판만 부착	아무 표시 없음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3.1.2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구조, 화장실의 크기, 위생기기의 설치위치가 휠체어 등의 접근과 이동에 적절한가?	2.8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3.1.2.1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형태		자동문, 박여닫이, 미닫이, 접이문 (안여닫이인 경우 내부공간 확보)	잠금장치 있는 주름문	잠금장치 없는 주름문	안여닫이 (내부공간 미확보)
▶ 3.1.2.2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 폭 0.8m이상 확보		문의 유효폭이 0.8m이상	문의 유효폭이 0.75m이상	문의 유효폭이 0.65m이상	문의 유효폭이 0.65m미만
▶ 3.1.2.3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 확보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으로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가능함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 내부설치물로 인해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불가능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이나 깊이는 1.8m미만, 내부설치물로 인해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불가능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미만, 깊이 1.8m미만

※ 다만 2005년 12월 30일 이전 허가신청된 건물인 경우에는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m이상, 깊이 1.8m이상 확보 할수 있음.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3.1.3	대변기의 형태 및 보조손잡이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3.6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3.1.3.1 대변기는 양변기형태이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로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미만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5m초과	양변기가 아님
▶ 3.1.3.2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6m~0.7m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설치)		설치높이는 0.6~0.7m, 벽측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이내, 다른쪽손잡이는 회전식	설치높이는 0.6~0.7m, 벽측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이내, 다른쪽손잡이는 고정식	설치높이는 0.6m미만 0.7m초과, 벽측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5m초과 다른쪽손잡이는 고정식	수평손잡이가 없음
▶ 3.1.3.3 대변기의 한쪽옆에는 수직손잡이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있으며 손잡이 길이는 0.9m이상	수평손잡이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시작높이는 0.6m이내이며 길이는 0.9m미만	바닥면에서 부터 고정되어 설치, 이용자의 발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음	수직손잡이가 없음
▶ 3.1.3.4 대변기세장장치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광감지식 또는 바닥 및 벽누름버튼식 설치	바닥 또는 벽누름버튼식 설치	측면 레버식설치 (수조형)	후면 레버식또는버튼식 설치

※ 다만 2005년 12월 30일 이전 허가신청된 건물인 경우에는 대변기 양옆에 설치되는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6m~0.7m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5m이내의 지점에 고정식으로 설치할수 있음.

3.2 소변기 (3.2)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3.2.1	소변기의 구조, 손잡이 등의 설치는 적정한가?	3.2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3.2.1.1 장애인용소변기의 수평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높이는 0.8~0.9m, 길이는 0.55m내외, 좌우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높이는 0.8~0.9m, 길이는 0.55m내외, 좌우손잡이의 간격은 0.6m초과	높이는 0.8m미만, 길이는 0.55m미만, 좌우손잡이의 간격은 0.6m초과	수평손잡이 미설치
▶ 3.2.1.2 장애인용소변기의 수직손잡이는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1.2m이며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로 설치		높이는 1.1~1.2m, 길이는 0.25m내외	높이는 1.1~1.2m 또는 길이는 0.25m내외	높이는 1.1m미만, 1.2m초과, 길이는 0.25m초과	수직손잡이미설치

3.3 세면대 (3.8)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3.3.1	세면기 등의 설치 높이 등은 적정하며, 위생기기의 조작버튼 등의 설치 위치 등도 적정한가?	3.8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3.3.1.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이고 하단높이가 0.65m이상이며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확보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0.8~0.85m이며 세면대 하부에는 0.65m이상높이와 깊이 0.45m내외의 공간 확보 (높낮이 조절형 포함)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초과이며 세면대 하부에는 0.65m이상높이와 깊이 0.45m내외의 공간 확보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0.85m 초과이나 세면대 하부에는 0.65m미만의 높이와 깊이 0.45m미만 공간 확보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0.9m초과이거나 하부공간이 전혀 없음
▶ 3.3.1.2 장애인용을 포함한 모든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설치 및 점자표시		광감지식 혹은 레버식으로 설치, 점자표기 있음 (광감지형은 점자표기 필요 없음)	레버식으로 설치, 점자표기 없음	누름버튼식으로 설치 점자표기 없음	다이얼식으로 설치 점자표기 없음

※ 다만, 세면대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세면대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면대 하부공간의 깊이가 0.25m 내외의 공간확보된 것도 적정으로 봄.

3.4 욕실 (0.4)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3.4.1	해당시설의 욕실은 휠체어사용자가 이용가능 하도록 활동공간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0.2

※ 욕실이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은 시설임 ()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3.4.1.1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에 설치된 욕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욕실 등의 출입구 유효폭이 0.8m이상이며 단차가 2cm이하	욕실 등의 출입구 유효폭이 0.65m이상이며 단차는 2cm이하	욕실 등의 출입구 유효폭이 0.65m미만이며 단차는 2cm이하	욕실 등의 출입구 유효폭이 0.65m미만이며 단차는 2cm초과
▶ 3.4.1.2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으며 욕조의 전면에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 또한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출입문은 밖여닫이문 또는 미닫이문, 욕조 전면에 폭1.4×1.4m 활동공간을확보, 바닥은 미끄럼방지타일로 마감	출입문은 안여닫이문, 욕조 전면에 폭1.4×1.4m 활동공간을확보, 바닥은 미끄럼방지타일로 마감	출입문은 안여닫이문, 욕조 전면에 폭1.4×1.4m미만의 활동공간을 확보, 바닥은 미끄러운 일반 타일로 마감	출입문은 안여닫이문, 욕조 전면에 폭1.0×1.0m미만의 활동공간을 확보, 바닥은 미끄러운 일반 타일로 마감
▶ 3.4.1.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이내로 설치 (욕조에는 보조용 손잡이 설치)		욕조 높이가 0.4 ~ 0.45m	욕조 높이가 0.4m 미만 또는 0.45m초과	욕조 높이가 0.55m초과	욕조 높이가 0.65m초과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3.4.2	욕실내에 설치된 샤워기 등은 장애인을 이용을 고려하여 갖추어져있는가?	0.2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3.4.2.1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0.4 ~ 0.8m 범위내에 있으며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	0.4 ~ 0.8m 범위내에 있으나 접근이 어려움	입식샤워기만 설치	샤워기 미설치
▶ 3.4.2.2 욕실에는 비상용 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용 벨은 욕조로부터 사용 가능한 위치		버튼식 비상용 벨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욕조로부터 손이 닿는 위치에 있음	비상용 벨 또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으나 욕조로부터 손이 닿는데 어려움	비상용 벨이 설치되어 있으나 욕조밖에 설치	비상용 벨 미설치
▶ 3.4.2.3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설치		광감지식 혹은 레버식으로 되어 있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음

3.5 샤워실 및 탈의실 (0.4)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3.5.1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은 휠체어사용자가 이용가능 하도록 활동공간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0.4

※ 샤워실이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은 시설임 ()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3.5.1.1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에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유효폭이 0.8m이상, 단차 2cm이하	유효폭이 0.65m이상, 단차 2cm이하	유효폭이 0.65m 미만, 단차 2cm이하	유효폭이 0.65m 미만, 단차 2cm초과
▶ 3.5.1.2 샤워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 또한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 바닥은 미끄럽지 않음	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1.3m, 바닥은 미끄러움	바닥면적은 0.9m×0.9m 미만 또는 0.75m×1.3m 미만이며, 바닥은 미끄러움	바닥면적은 0.9m×0.75m 미만, 바닥은 미끄러움
▶ 3.5.1.3 샤워용 접이식 의자 또는 이동식 의자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이내		의자 높이가 0.4 ~ 0.45m	의자 높이가 0.45m초과	의자 높이가 0.55m초과 또는 이동식 의자	샤워용 의자 미설치
▶ 3.5.1.4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샤워기 높이는 0.8m~1.4m 범위, 휠체어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	샤워기 높이는 0.8m~1.4m, 휠체어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샤워기 높이는 0.8m미만 1.4m초과, 휠체어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샤워실내 단차 있음
▶ 3.5.1.5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광감지형 혹은 레버식으로 설치, 점자표기 있음 (광감지형은 점자표기 필요 없음)			다이얼식으로 설치 점자표기 없음
▶ 3.5.1.6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1.2m에 설치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 발판 공간 확보		높이는 0.4m~1.2m, 하부에는 깊이 0.25m 이상 공간 확보	높이는 0.4m~1.2m, 하부에는 깊이 0.25m 미만 공간 확보	높이는 0.4m 미만, 1.2m 초과, 하부에는 깊이 0.25m 미만 공간 확보	수납공간 미설치

4. 안내시설[6]

평가기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시설접근 및 이용, 긴급시 피난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유도 및 안내표시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	--

4.1 점자블록 (3.8)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4.1.1	해당시설의 주출입구 접근로에는 시각장애인이 접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3.8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4.1.1.1 시각장애인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접근로로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각장애이용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유지·관리가 불량하여 이탈블록이 있음	불연속적으로 설치, 점형 블록만 설치	주출입구 접근에 필요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4.1.1.2 표준형 점자블록의 사용		점형블록 및 선형블록 모두 표준형을 사용	점형블록 및 선형블록 중 한가지만 표준형을 사용	점형블록 및 선형블록 모두 표준형이 아님	설치되어 있지 않음

4.2 유도 및 안내설비 (1.1)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4.2.1	시각 및 청각장애인도 해당시설을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유도 및 안내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가?	1.1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4.2.1.1 시각장애인이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 안내판앞에 점형블록을 설치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나 점형블록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나 찾기 어려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미설치
▶ 4.2.1.2 시각장애인이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음성 안내 장치의 설치		대지경계선에 접근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설치	건물 주출입구에 직접버튼을 눌러서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설치	대지경계선 또는 건물 주출입구에 안내자를 기다리라는 간단한 음성 안내만 나오는 안내장치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이 없음

4.3 경보 및 피난설비 (1.1)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4.3.1	시각 및 청각장애인도 비상시 빠르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경보 및 피난설비가 잘 설치되어 있는가?	1.1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4.3.1.1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비상구에 함께 설치	비상시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나 연속성이 떨어짐	경보·피난설비 미설치
▶ 4.3.1.2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비상구에 함께 설치	비상시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연속성이 다소 떨어짐	경보·피난설비 미설치

5. 기타시설 [5.3]

평가기준	숙박시설 등의 해당시설에는 휠체어사용자가 가능하도록 객실·침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5.1 객실 또는 침실 (1.8)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5.1.1	객실 또는 침실에는 '편의증진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객실을 확보하고 있는가?	0.9

※ 침실이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은 시설임 ()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5.1.1.1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1.0%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음	1.0%이상 설치되어 있으나 문턱에 단차2cm초과	1.0%미만으로 설치되어 있음	장애인 이용 가능한 객실 설치되어 있지 않음
▶ 5.1.1.2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및 식당, 로비 등 공용공간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및 식당 등의 모든 공용공간에 접근가능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은 접근이 가능하나 공용공간 접근시 도움이 필요함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및 식당 등에 단차가 있어 접근시 도움이 필요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및 식당 등의 모든 공용공간에 접근 불가능
▶ 5.1.1.3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의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 확보		유효폭이 0.8m이상	유효폭이 0.75m이상	유효폭이 0.65m 이상	유효폭이 0.65m 미만
▶ 5.1.1.4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1.2m 이상 확보		폭1.2m이상의 활동공간이 침대옆까지 확보	폭1.2m이상의 활동공간이 침대 앞까지만 확보	폭1.0m이상의 활동공간이 침대 앞까지만 확보	객실 내 단차가 있음
▶ 5.1.1.5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이하		장애인 객실의 모든 침대 높이가 0.4 ~ 0.45m	장애인 객실 침대 중 1개 이상의 높이가 0.4 ~ 0.45m	장애인 객실 침대 중 1개 이상의 높이가 0.45m초과	장애인 객실 모든 침대높이가 0.45m초과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5.1.2	객실에 부설된 화장실은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에 차별이 없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0.5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5.1.2.1 화장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확보 및 2cm이하의 단차		유효폭이 0.8m이상 및 2cm이하 단차	유효폭이 0.75m이상, 3cm이하 단차	유효폭이 0.65m이상 또는 4cm이하 단차	유효폭이 0.65m미만 또는 4cm초과 단차
▶ 5.1.2.2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 확보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으로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가능함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 내부설치물로 인해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불가능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이나 깊이는 1.8m미만, 또는 내부 설치물로 인해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불가능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미만
▶ 5.1.2.3 대변기에는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수평·수직 손잡이 모두 적정 설치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적정 설치	수평 및 수직손잡이 부적정 설치	손잡이 미설치

※ 다만, 2005년 12월 30일 이전 허가신청된 건물인 경우에는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m이상, 깊이 1.8m이상 확보 할 수 있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5.1.3	객실 또는 침실은 진·출입구, 화장실, 샤워 및 욕실 등이 장애인을 고려하여 갖추어져있는가?	0.4

※ 침실이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은 시설임 ()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5.1.3.1 장애이용 객실 또는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1.2m로 설치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1.2m로 설치	콘센트·스위치의 높이는 0.8~1.2m로 설치, 수납선반·옷걸이 높이는 0.8m미만 1.2m초과 설치	콘센트·스위치의 높이는 0.8m미만 1.2m초과 설치 수납선반·옷걸이의 높이는 0.8~1.2m로 설치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미만 1.2m초과 설치
▶ 5.1.3.2 장애이용 객실 또는 침실 및 화장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이용 초인등이 설치 장애이용 객실에는 건축물 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이용 경보설비 설치		객실과 화장실 모두 초인등이 설치, 객실 등에 청각장애이용 경보설비를 설치	객실 등에 청각장애이용 경보설비 설치, 객실과 화장실에 초인등 미설치	객실 등에 청각장애이용 경보설비 미설치, 객실 또는 화장실에 초인등 설치	미설치

5.2 관람석 또는 열람석 (1.7)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5.2.1	해당시설의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정한가?	1.7

※ 관람석 또는 열람석이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은 시설임 ()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5.2.1.1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출입구 및 피난통로 옆에 설치, 단차 2cm이하	출입구 옆은 아니지만 피난통로 옆에 설치	피난통로와 거리가 멀지만 출입구 구분은 가능함	피난통로와 거리가 멀고 출입구는 보이지 않음
▶ 5.2.1.2 휠체어사용자용 관람석인 경우에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이 0.9m 이상, 깊이 1.3m이상으로 설치 휠체어사용자용 열람석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이며, 하단은 높이가 0.65m이하이며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관람석인 경우 열람석인 경우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 0.9m이상, 깊이 1.3m이상 이며 1.2m이상의통로와 구분 높이는 0.7~0.9m, 하부에는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확보 (높낮이 조절형)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 0.9m이상, 깊이 1.3m이상 이며 통로와 구분 없음 높이는 0.9m초과, 하부에는 높이 0.65m이상 깊이 0.25m이상의 공간 확보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 0.85m이상, 깊이 1.25m이하 이나 통로 별도로 없음 높이는 0.9m초과, 하부에는 높이 0.65m미만, 깊이 0.25m미만의 공간 확보	휠체어사용자용 관람석이 없음 높이는 0.7m미만, 하부에는 휠체어발받이 들어갈 공간이 없음

5.3 접수대 또는 작업대 (1.4)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5.3.1	해당시설의 접수대 및 작업대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정한가?	1.4

※ 접수대 또는 작업대가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은 시설임 ()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5.3.1.1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출입구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2cm이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출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2cm이하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접근로상에 단차 3cm이하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접근로상에 단차 3cm초과
▶ 5.3.1.2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이며, 하단은 높이가 0.65m이하이며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높이 0.8~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높이 0.9m초과,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25m이상 공간 확보	높이 0.9m초과, 하부 높이 0.65m미만, 깊이 0.25m미만의 공간 확보	높이는 0.7m미만, 하부에는 휠체어발받이가 들어갈 공간이 없음

5.4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0.4)

평가 번호	평가 내용	배점
5.4.1	해당시설의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정한가?	0.4

평가세부내용	점수	4(적정)	3(보통)	2(미흡)	1(미설치)
▶ 5.4.1.1 매표소의 경우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매표소의 높이는 0.7~0.9m이하에 설치하며 하부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높이는 0.7~0.9m, 하부에는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높이는 0.9m초과, 하부에는 높이 0.65m이상, 깊이 0.25m이상 공간 확보	높이는 0.9m초과, 하부에는 높이 0.65m미만, 깊이 0.25m미만 공간 확보	하부에 휠체어발받이가 들어갈 공간이 없음
▶ 5.4.1.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인 경우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등은 동전 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 등이 0.4~1.2m의 범위에 설치 또한 조작버튼은 시각장애인이 알기 쉽도록 점자가 표시되어 있으며, 누름버튼식 등으로 설치		조작버튼 높이는 0.4~1.2m 설치, 점자표시 및 누름버튼식 등 설치	조작버튼 높이는 0.4m미만, 1.2m초과 설치, 점자표시 및 누름버튼식 설치	조작버튼 높이는 0.4m미만, 1.2m초과 설치, 점자표시 미설치	조작버튼 1.4m이상 설치
▶ 5.4.1.3 음료대인 경우 음료대의분출구의 높이는 0.7~0.8m로 설치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으로 설치		분출구의 높이는 0.7~0.8m 설치, 레버식 조작기 설치	분출구의 높이는 0.7~0.8m 설치, 누름버튼식 조작기 설치	분출구의 높이는 0.7m미만 또는 0.8m초과 설치, 규정에 적합한 조작기 설치	분출구의 높이는 0.7m미만 0.8m초과 설치 다이얼식 조작기 설치

※ 다만 2005년 12월 30일 이전 허가신청된 건물인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매표소의 높이는 0.7~1.1m이하에 설치하며 하부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